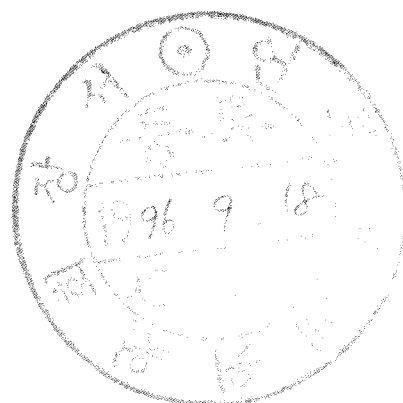


國內言論關係判例集

第 2 輯



言論仲裁委員會

言論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の登録 등에 관한 法律」, 「放送法」 및 「綜合有線放送法」에 의거 訂正報道請求와 追後報道請求에 따른 紛爭을 仲裁하고, 言論 侵害에 관한 사항을 審議합니다.

발 간 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건전한 국민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본질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무제한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 그 본래의 기능 즉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활동을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할 때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언론의 자유는 무한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권이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20세기가 저물어 가고 있는 지금 우리 언론은 다가올 21세기의 다양해질 국민의 정보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놀랍도록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쇄매체의 경우 정보화시대에 주요 매체로 활동할 뉴미디어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투어 지면을 늘리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전문화 세분화 하고 있습니다. 전파매체의 변화는 더욱 괄목할 만합니다. 기존의 방송사에 이어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역민방이 부산을 비롯 4개 광역시에 허가되었고, 또한 꿈의 TV라는 CATV가 도입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의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해 위성방송도 곧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 언론은 내부적인 힘을 길러야 하고 탄탄한 자리매김을 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언론양상의 변화는 점증하는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만, 그 변화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나친 경쟁에 따른 미숙한 보도나 오보, 개인의 자유와 권리침해, 국가적 사회적 책임의 외면 등의 부작용과 갈등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언론중재신청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언론에 의한 개인의 법익침해에 대한 소송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예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자칫하면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국민과

언론과의 일체감을 해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천부적(天賦的)으로 자유스러워야 함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언론에 의한 인격권침해등에 대해 지나치게 그 책임을 따지게 되면,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사권(私權)등의 보호 사이의 조화점을 슬기롭게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물론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사안에 따라 비교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러한 조화점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에 참고가 될 수 있고 언론자유가 갖는 내재적 한계를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논문 및 국내외 판례들을 모아 회보인 「언론중재」에 소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언론에 관계되는 법원의 판결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은 우리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바로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이를 따로 모아 지난 1990년에는 국내언론관계 판례집 제1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이제 제2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언론과 피해자간의 분쟁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중재되지 못해 법원에서 해결된 정정보도청구사례와 그외 손해배상, 위자료 및 사죄광고청구소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판결 및 헌법소원사례 등이 모아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과 지면관계상 1992년 말까지의 판례들을 주로 수록하였으며 1996년도 상반기 중에 최근까지의 판례를 모아 제3집을 곧 발간할 예정입니다.

우리 언론중재위원회의 이러한 조그만 노력이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시민법익간의 조율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김 두 현

차 례

I. 정정보도청구사례

1. '87년 대통령 선거시 신청인 발언의 요지는 유세장에서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지역 감정을 표출한 김용태 의원 발언과는 전혀 다르다는 신청인 주장이 사실에 반한다 할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이 대 동아일보사(서울고등법원 90나4848, 대법원 90다카25468) 13
2. 무허가 사설투자자문사 난립에 관한 기사에서 신청인 회사명을 그冒頭에 대표적으로 기재, 피해를 주었다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현대투자연구소 대 제일경제신문사(서울민사지방법원 89카28984) 21
3. 정부의 방송장악기도에 신청인들이 관련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영문이니셜을 사용했지만 독자가 이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김 , 차 대 한국기자협회(서울민사지방법원 90카41568)..... 27
4. 한국기자협회 충청북도 지부는 하부조직에 불과, 이 건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
한국기자협회 충청북도 지부 대 중부매일신문사(청주지방법원 90카1874) 32
5.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정정보도 심판을 청구, 신청이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
최 대 중앙일보사(서울민사지방법원 90카60650) 34
6. 신청인 교단을 지칭하는 구원파의 교리에 대한 비판 논문은 필자의 종교적 척도에 따른 의견 표현으로 사실적 주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대 목회와 신학(서울민사지방법원 91카81540, 서울고등법원 91라161) 35

7. 드라마 「배반의 장미」 작가인 신청인이 대본을 교부하지 않아 제작이 중단되었다는 등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김 대 중앙일보사(서울민사지방법원 90카68698)	41
8. 신문 판매권을 장악,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된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진 대 주간 노동자 신문(서울민사지방법원 90카74637)	45
9. 일기예보란의 지도에서 북한지역이 실제보다 작게 그려진 것과 관련,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각하한다	
이 대 중앙일보사(서울민사지방법원 90카110595)	54
10. 신청인이 불법해외유학 알선혐의로 경찰에 수배되었다는 보도에 의해 명예훼손등의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최 대 민주일보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1카7208)	56
11. 신청인이 불법해외유학 알선혐의로 경찰에 수배되었다는 보도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최 대 서울신문사(서울민사지방법원 91카65411)	60
12. 공익과 관련되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더라도, 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까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최 대 경향신문사(서울민사지방법원 91카65412, 서울고등법원 91나64670)	66
13. 교내 소요 무더기 징계 보도에 대해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보도에서 반박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	
영석학원 대 경인일보사(수원지방법원 90카18577)	79

14. 어린이들에게 운동권 의식을 심어주는 이른바 「문제교사」로 지칭된 신청인은 이 사건 사실보도에 대해 이미 상당한 반론권을 행사했으므로 정정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최 대 문화방송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9카8917)	86
15. 신청인이 소유 임야를 매각하면서 지목변경 조건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있다 이 대 경상일보사(부산지방법원 92카1386).....	97
16. 광고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이라 볼 수 없고 신청인이 그 광고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 신 대 경향신문사 외(서울민사지방법원 92카기474)	99
17. 남원시의회 의원인 신청인들이 토지 이용계획에 관여,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 김 외 대 전북일보사(전주지방법원 92카기50)	102
18. 신청인이 수입제한품목인 호주산 천연벌꿀을 수입,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 성 대 농민신문사(서울민사지방법원 92카77904)	105
19.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북한의 대남적화노선 추종집단이라는 보도는 기자의 주관적 판단 내지 의견이고,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대 서울신문사(서울민사지방법원 92카기649)	111

II.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례

1. 부도덕한 소문을 기사화하여 미혼여성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 김 대 동아일보사(서울고등법원 89나36528)	120
---	-----

2. 증언 언론인인 원고가 극우지에 전교조 교사를 매도하는 칼럼을 게재한
것으로 잘못 보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금전으로 위자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 송 대 한국기자협회 외(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51612)132
3. 원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도,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
김 대 김 숙 외(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5032) 141
4. 취재원이 제공한 불확실한 정보를 인용, 원고의 남성편력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국에 이른 것으로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 송 대 중앙일보사(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52649)147
5. 원고와 염문관계에 있는 듯한 허위사실을 유포,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혼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지불하라
손 대 조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961)152
6. 고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
신 외 대 국민일보사 외(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 90가합10957,
서울고등법원 91나27329)157
7. 원고등이 취재보도 활동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잘못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연합통신 외 대 매스컴신문사 외(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3033)171
8. 수사 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기한 정보를 인용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의
귀책 사유가 결하는 것이 아니며,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
최 대 조선일보사 외(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78412) 177
9. 수사 당국의 보도자료와 보충설명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취재 기자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
최 대 서울신문사 외(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78429, 서울고등법원판결 92나59071)186

10.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볼때 피해자가 특정되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조 대 한국일보사(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58180, 서울민사지방법원 92나36013, 대법원 93다36622)	206
11. 변호사인 원고가 상당한 재산가이며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 명예를 훼손했다 할 것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하고 판결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하라 노무현 대 조선일보사 외(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82923)	215
12. 김일성 초상이 들어 있다하여 논의가 된 걸개그림을 원고 스스로 떼어내는 과정을 기사화한 이 건 보도는 공공의 관심과 이해가 큰 사항이고, 보도 목적이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문화방송노동조합 대 동아일보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9가합18505)	232
13. 원고의 수기를 무단으로 게재, 저작공표권을 침해하고 성폭행 경험만을 묘사한 것으로 오인케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사과문을 게재하라 권 대 서울문화사(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15896)	245
14. 원고가 문 목사의 방북 및 지하철 노조 파업사태등을 교육내용으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논평은 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고 공익을 목적으로 보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최 대 문화방송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9가합13975)	250
15. 녹화된 강의 프로그램 내용을 임의로 삭제 수정 방송하여 중만이론가인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告知放送을 하라 한 대 한국방송공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0가합1404, 서울고등법원 92나35846)	261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례

1.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우유 영양가 시험결과에 대해 허위사실의 반박광고를 게재, 원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 최 (춘천지방법원 90고단108)	286
--	-----

2.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 . 심 (서울형사지방법원 91고단6158,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4099, 대법원 93도1732)	292
3.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문기자에게 설명, 허위기사가 게재되도록 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1고단4554, 서울형사지방법원 93노1025, 대법원 93도3535)	301

IV. 헌법소원 사례

1. 사죄광고가 명예회복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면, 가해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내지 굴욕감수를 강요하는 사죄광고제도는 불필요한 국민 기본권의 제한이 된다할 것이다 동양일보사 외(서울민사지방법원 89카3299, 헌법재판소 89헌마160)	315
2. 현행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반론게재청구권으로 해석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와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중앙일보사(서울고등법원 89카194, 헌법재판소 89헌마165)	324

I. 정정보도청구사례

’87년 대통령 선거시 신청인 발언의 요지는
유세장에서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지역
감정을 표출한 김용태 의원 발언과는 전혀 다르다는
신청인 주장이 사실에 반한다 할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0. 7. 3.자 판결(90나4848)

대법원 1991. 1. 15.자 판결(90다카25468)

事實概要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상원 대법관)는 1991년 1월 15일 전 건설부장관 이 씨가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진실에 부합되는 원문보도에 대하여도 정정보도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며 동아일보사가 낸 상고를 기각,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의 발언 요지는 선거 유세장에서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는 지역 감정을 표출한 김용태 의원 발언과는 전혀 다르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李씨는 東亞日報 1989년 8월 8일자 14면 『제2 싸늘이 발언 분노의 소리』 제하의 기사에서 「전북도민들은 金 의원의 발언을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李 전 건설부 장관의 싸늘이 발언에 이은 제2의 싸늘이 발언으로 간주하고…」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자, 「대통령 선거 당시 발언은 선거유세장에서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金의원의 발언과는 다르다」며, 당시 한양여전 김 강사와 평민당이 자신의 발언을 문제삼아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신을 고발한 일이 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했다(89서울중재53).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검찰의 사실 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일 뿐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라고 주장, 중재 불성립 되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다(국내언론관계판례1집 185~189면 참조).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유태현 부장판사)는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피신청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던 것이다.

2審 判 決 文

사 건 : 90나4848 정정보도게재

신청인, 피항소인 : 이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피신청인, 항소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병 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성 남

변론종결 : 1990. 6. 5.

제1심판결문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2. 29. 선고 89카 52256판결

주 문 :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동아일보의 제14면 좌측 상단에 가로 8센티미터 세로 5단의 크기로 제목은 0호 고딕체 활자로 하여 별지 2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심,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 1. 성립에 다툼 없는 소갑제7호증(신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89. 8. 8.자 동아일보 제14면 기사란에 『제2 짝썰이 발언 분노의 소리』라는 제목과 『김용태 의원 발언 전복도민 반응』이라는 소제목 아래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이 당정예산관계자 간담회에서 전라북도 90년도 예산에 관하여 특별대책을 세워달라는 지구당 위원장들의 요청에 대하여 '전원 야당을 뽑았으니 뜨거운 꼴을 한번 봐야

할 것'이라고 전라북도에서의 총선 패배에 대한 여권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전남 북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면 평민당이 생색을 낼 우려가 있다' '지역개발이 그렇게 급하면 민정당 후보를 좀 뽑아줬어야 했을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전북도민들은 이러한 김용태의 발언을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 전 건설부 장관의 싹쓸이 발언에 이은 <제2의 싹쓸이 발언>으로 간주하고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지역감정을 개탄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기사 중 신청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은 전북도민들의 반응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단 그 내용이 언론기관인 동아일보가 지득하여 이를 신문지상에 공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신청인이 지역감정을 나타내는 문제된 소위 「싹쓸이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것이 김용태 의원의 위 발언들과 같은 취지라는 내용인 이상 이 사건 기사는 이미 동아일보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기사가 김 의원의 발언에 관한 기사 속에 포함된 것이지만 신청인 및 신청인의 언행이 언급되어 있는 이상 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동아일보에 공표된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첫째, 가사 이 사건 기사가 신청인의 이 사건 발언에 관한 것이고 신청인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이 위 전체 기사내용의 본질적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신청인은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소갑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7단 크기로 김용태 의원의 발언요지 및 전북도민의 반응을 보도하는 기사 속에 1단 7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기사가 그 분량에 있어 위 전체 기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이 정정보도문으로써 이 사건 기사를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사건 발언은 위 김용태 의원의 발언과는 같은 취지가 아니었다는 것인 만큼 이 사건 기사의 기본 취지에 대한 반론이라 할 것이어서, 반론내용이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발언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언행은 그 내용 여하에 불구하고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에 관한 보도 및 비판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니 이 사건 기사가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한 이에 대

하여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의 의의는 피해자에게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리기 위한 번잡한 사실조사에 시간을 낭비함이 없이 신속하게 반박문 공표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언론사측에 대하여도 보도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마다 일일이 그 진실여부를 소상하게 가려내어 정정보도를 하여야 한다면 언론의 신속성과 신뢰성이 저절로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의가 제기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가려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정한 요건하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가능케 하는 데에 있으므로 가사 당시 건설부 장관이던 신청인의 이 사건 발언이 공익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관한 보도 및 평가가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도내용이 본래의 발언 취지와 달리 독자를 오도하여 보도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권까지 봉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5호증(불기소사건기록), 소을제2호증의 11(피의자 신문조서), 소을제2호증의 15, 16(각 진술서), 소을제2호증의 17, 18(각 자술서)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선거에서의 폭력을 추방하자는 신청인의 이 사건 발언이 지역감정을 표출하는 발언으로 오도되어 신청인 개인에게도 피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정정보도청구권은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의 보도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셋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부분은「전북도민들」의 항의 중 일부를 인용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보도된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다른 사실적 주장 즉「전북도민들」이 위 김용태 의원의 발언을「제2의 싸늘이 발언」이라고 평가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이 건 청구를 했어야 했는데 이에 관한 주장과 입증은 없을 뿐더러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청구인 자신의 개인적 변명이나 해명을 광고하려는 처사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제목의 표현과는 달리 언론사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의 보도내용을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이의 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 행사의 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이 사건 청구로서 이 사건 기사에 대하여 그 자신의 반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자신의 개인적 변

명이나 해명을 광고하려는 의사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다만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를 반박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별지1 기재의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7. 3.

재판장 판사 유 태 현
판사 최 세 모
판사 배 태 연

〈별지 1〉 정정보도문

89년 8월 8일자 동아일보 제14면 기사란에 『제2싸늘이 발언 분노의 소리』 『김용태 의원 발언 전북도민 반응』이라는 제목 아래 「...전북도민들은 김용태 의원의 발언을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 전 건설부 장관의 싸늘이 발언에 이은 <제2의 싸늘이 발언>으로 간주하고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지역감정을 개탄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제된 신청인의 발언(87년 12월 12일자 동아일보 「창」란 보도)은 선거유세장에서의 폭력을 근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김용태 의원의 위 발언과는 그 취지가 같지 아니하므로, 양자를 동일시한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인

〈별지 2〉 신청인이 신청한 정정보도문

동아일보는 1989. 8. 8. 『제2 싸늘이 발언 분노의 소리』 『김용태 의원 발언 전북도민 반응』이라는 제목 아래 「...전북도민들은 김의원의 발언을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 전 건설부 장관의 싸늘이 발언에 이은 제2 싸늘이 발언으로 간주 갈수록 골이 깊어지는 지역 감정을 개탄했다...」는 요지의 보도를 하였다.

응을 보도한 위 기사까지도 평가 내지 의견진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 서 위 기사를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이 점에서 소론과 같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위 기사 중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의 신청인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어서 원문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신청인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의 신청인의 발언 요지가 선거유세장에서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지역감정을 표출한 위 김용태 의원의 발언과는 전혀 다르므로 위 기사 중 신청인 관련부분은 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고 기록상 위와 같은 반박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위 반박을 주장하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도 실시한 바와 같이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의 진실여부를 가려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원문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내용을 공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문보도가 허위임을 요하지 않으며 원문보도 내용이 공익에 관련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정당한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실시 중에 선거에서의 폭력을 추방하라는 신청인의 발언이 이 사건 기사에 의하여 지역감정을 표출하는 발언으로 오도되어 신청인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대목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정정보도청구는 원문보도가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불필요한 대목으로서 판결 결론에 영향이 없는 실시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사실적 주장 및 정당한 이익에 관한 이유불비 및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만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91. 1. 15.

재판장	대법관	김 상 원
	대법관	이 회 창
	대법관	배 석
	대법관	김 주 한

무허가 사설투자자문사 난립에 관한 기사에서 신청인 회사명을 그冒頭에 대표적으로 기재, 피해를 주었다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5. 25.자 판결(89카28984)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5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1990년 5월 25일 주식회사 현대투자연구소가 제일경제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사실에 대한 타인의 논평을 인용한 것에 불과해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무가 있다」며, 신청인의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건 기사가 다수의 사설 투자 자문사를 상대로 한 기사이나, 그 모두에 신청인 회사의 상호를 대표적으로 기재, 그 이후의 기사 내용은 객관적으로 신청인 회사에 대한 기사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신청인이 위 기사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조세금융일보 1989. 4. 11자 9면 『무허가 사설투자자문사 활개』 1989. 4. 16자 1면, 『무허가 사설자문사 난립』 제하의 기사에서 「최근 증시가 활황을 보이자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사설투자자문사가 성행하고 있어 주가조작등 투자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투자클럽회원을 모집하는 현대투자연구소등 사설투자 자문사들은 주요경제지에 크게 광고를 내고 있는데 이들 클럽이 사기성이 없다면 그 많은 광고비를 어디에서 충당하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설무허가 자문사의 유형은 여러 경우가 있는데 현대투자연구소등의 경우 신문광고를 통해 증권전문가들이 투자전략을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사실상 10여명 남짓한 사무실을 갖추고 증권사가 자사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를 표지만 바꾸어 보급하고 2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5~6천원에 보급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문가들은 이들 사설투자자문사들을 일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신청인은, 무허가 사설투자 자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청인 회

사를 거론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했다(89서울중재21).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사실보도라며 정정보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89카28984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주식회사 현대투자연구소(現代投資研究所)

서울

대표이사 조 승 제

소송대리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영 기, 오 유 방, 김 태 경, 김 광 훈, 홍 윤 기

피신청인 : 주식회사 제일경제신문(第一經濟新聞)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의 1

대표이사 강 광 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준 열

변론종결 : 1990. 4. 20.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세금융일보」 제9면의 기사란 중 상단부분에 가로 8센티미터, 세로 2단의 크기로 별지 제1의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0호 활자로, 나머지 부분은 5호 활자로 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조세금융일보 다음 발행호의 9면 기사란 우측 최상단부분에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의 크기로, 제목 부분은 특호 활자로, 본문은 2호 활자로, 나머지 부분은 1호 활자로 하여 별지 제2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 1. 피신청인 회사(원래는 주식회사 조세 금융일보사이나 1989. 9. 19. 상호를 변

경합)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로서 일간신문인 조세금융일보의 1989. 4. 11.자 9면 머리기사에 『무허가 사설투자자문사 활개』라는 제목하에 「현대투자연구소등 많은 사설투자자문사가 주요 경제지에 크게 광고를 내고 있어 이들 클럽이 사기성이 없다면 그 많은 광고비를 어디에서 충당하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들 사설클럽은 월간 또는 주간 주식정보지를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6개월간 30만원씩의 회비를 받는가 하면 공공연히 지사까지 갖추고 있어 지방의 신규투자자들에게 한층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지적됐다.」라는 내용의 기사와 같은 해 4. 16.자 1면 머리기사에 『무허 사설증권자문사 난립』이라는 제목하에 「대표적으로 현대투자연구소등의 경우 신문광고를 통해 증권전문가들이 투자전략을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사실상 10여명 남짓한 사무실을 갖추고 증권사가 자사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를 표지만 바꾸어 보급하고 2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5~6천원에 보급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어 배포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조세금융일보에 위와 같은 기사가 게재되어 공표됨으로써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취지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신청인이 위와 같은 기사가 공표됨으로써 피해를 입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그 기사가 「현대투자연구소등 많은 사설투자자문사가」 및 「대표적으로 현대투자연구소등의 경우」로 시작되어 다수의 사설투자자문사를 상대로 한 기사이기는 하나 그 모두에 신청인 회사의 상호를 대표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그 이후의 기사내용은 객관적으로 신청인 회사에 대한 기사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신청인은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기사는 그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비평, 논평 등 의사표현 내지 가치판단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기사 중 사실적 주장에 관한 기사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위 기사 중 「이들 클럽이 사기성이 없다면 그 많은 광고비를 어디에서 충당하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방의 신규투자자들에게 한층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지적됐다」는 부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타인의 논평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지 위 기사내용이 사실적 주장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기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기사부분에 한하여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첫째, 1989. 4.경 국내의 증권시장은 활황국면에

접어들어 투자자가 급증하자 증시주변에는 탈법적으로 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례가 늘어 그 피해자가 속출하여 피고 회사에도 이 사건 각 기사와 같은 내용의 제보가 빗발치는 바람에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탈법적인 사례를 두차례에 걸쳐 대서특필, 고발하여 독자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의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것이며, 둘째 이 사건 각 기사는 모두 진실한 내용을 담은 기사이어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가. 「현대투자연구소등 많은 사설투자자문사가 주요경제지에 크게 광고를 내고 있다」 및 「공공연히 지사까지 갖추고 있다」는 부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율제1호증(신문광고), 소갑제18호증의 8, 9(각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임용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제4호증의 1, 2, 소갑제9호증(각 지사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1989. 4.경 한국경제일보등 주요 일간 경제지의 광고란에 『주식투자자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불과 5퍼센트, 5퍼센트의 길로 500명만 모시겠습니다』라는 제목하에 「정보의 허와 실을 날카롭게 포착해 내는 증권가의 베테랑들이 모여 500부 한정으로 주식정보속보를 발행합니다. 한정판매의 목적은 회원께 가장 질 높은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니 501번째 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오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신청인이 발행하는 「주식정보속보」라는 잡지의 광고를 게재한 사실, 위 광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증권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피신청인 회사의 증권부장인 신청외 마 의 지시에 따라 소속기자인 신청외 김 이 위 광고와 관련하여 신청인을 대상으로 취재한 후 위 마 은 재무부의 인가를 받은 몇군데의 투자자문사에 전화를 하여 신청인이 위 광고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게 된 사실, 한편 신청인은 1989. 3. 10.경 마산, 대구, 광명시에 지사를 설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소갑제18호증의 6, 7의 각 기재와 증인 임 의 일부증언(앞서 믿는 부분 제외)은 앞서 본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살피건대, 투자자문업이란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술,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1987. 11. 28. 법 제39945호. 증권거래법 제2조 제10항). 다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가능한 간행물 또는 통신물 중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 조언은 제외한다(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2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간행물 또는 통신물은 회원제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

으로 발행되는 것은 제외한다(1988. 1. 22. 투자자문회사의 등록 및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라는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위와 같은 광고의 내용은 500명의 특정 회원만을 모집하여 주식의 투자판단에 관한 조언을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보내준다는 것이어서 신청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투자자문업이라고 할 것이고 재무부에 투자자문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신청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때 이는 사설투자자문업 행위라 할 것이며 신청인이 주요 경제지에 광고를 내고 지사를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기사부분의 내용은 진실하다고 볼 것인 바, 위와 같이 진실한 기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신청인의 청구부분은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그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기사부분.

위 기사부분의 내용이 진실하여 신청인의 그 부분에 관한 정정보도의 청구가 정당한 이익이 없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소갑제18호증의 9, 17, 27, 28, 29의 일부 기재와 증인 이영재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기사부분에 대한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에서 인정하는 기사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다만 신청인들이 신청한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그 게재 방법에 관하여 보면, 우선 그 내용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반함을 시인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정기간행물 등록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진실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므로 주문 기재의 정정보도문의 내용의 범위 내로 인정하기로 하고, 다음 그 게재 방법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사의 게재경위, 인용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역시 주문 기재의 게재방법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25.

재판장 판사 김 대 환
판사 박 재 필
판사 이 동 신

〈별지 1〉 정정보도문

조세금융일보에 1989. 4. 11.자로 게재된 『무허가 사설투자자문사 활개』라는 기사 중 「현대투자연구소가 월간 또는 주간 주식정보지를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6개월간 30만원씩의 회비를 받는다」는 부분과 1989. 4. 16.자로 게재된 『무허가 사설증권자문사 난립』이라는 제하의 기사 중 「대표적으로 현대투자연구소등의 경우 신문광고를 통해 증권전문가들이 투자전략을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사실상 10여명 남짓한 사무실을 갖추고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를 표지만 바꾸어 보급하고 2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5~6천원에 보급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 신청인 주식회사 현대투자연구소

〈별지 2〉 정정보도문

본지 1989. 4. 11.자 9면에 게재된 『무허가 사설투자자문사 활개』 제하의 기사 및 1989. 4. 16.자 1면에 게재된 『무허가 사설증권자문사 난립』 제하의 기사 중 주식회사 현대투자연구소에 관련된 기사는 사실확인 없이 보도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1989. 4. 11.자 기사 중 「투자클럽회원을 모집한다는 현대투자연구소등 많은 사설투자연구소가 주요경제지에 크게 광고를 내고 있어 이들 클럽이 사기성이 없다면 그 많은 광고비를 어디에서 충당하겠느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는 부분, 「이들 사설클럽은 월간 또는 주간 주식정보지를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6개월간 30만원씩의 회비를 받는다 하면 공공연히 지사까지 갖추고 있어 지방의 신규투자자들에게 한층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지적됐다」는 부분 및 1989. 4. 16.자 기사 중 「대표적으로 현대투자연구소등의 경우 신문광고를 통해 증권전문가들이 투자전략을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사실상 10여명 남짓한 사무실을 갖추고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자료를 표지만 바꾸어 보급하고 20페이지 정도의 책자를 5~6천여원에 보급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 부분 등은 전혀 사실확인 없이 보도된 것이고, 주식회사 현대투자연구소는 결코 동 기사내용과 같은 무허가·사설증권자문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사실을 밝히고 정정하는 바입니다. □

정부의 방송장악기도에 신청인들이 관련된
것처럼 보도하면서 영문이니셜을 사용했지만
독자가 이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7. 19.자 판결(90카41568)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권 성 부장판사)는 1990. 7. 19일 서울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金 교수와 MBC 車 아나운서 실장이 韓國記者協會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기자협회는 정부의 방송장악기도에 관련된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며 신청인들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記者協會報가 1990년 4월 20일자 1면에『방송장악기도 일부 드러나』제하의 기사에서「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정부의 방송장악기도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 연구소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로 방송제도연구위원회에 참가한 K교수와 현직 MBC방송인 C씨 등을 거명하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비록 자신들의 이름을 영문 머리글자로 표기했지만 방송 현업과 학계에 널리 알려진 「서울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서울」을 「한국」으로만 변경하여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치 이 연구소가 방송장악을 위한 정부기관의 외곽팀인 양 보도하여 이 연구소를 개인적으로 운영해 왔던 신청인 및 연구소 운영과 무관하며 단지 金 교수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신청인 차 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였다(90서울중재21).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이 건 기사는 KBS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중간취재결과를 기사화한 것이며 따라서 조사가 완결되어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는 정정보도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 불성립되자 신청인들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을 영문 이니셜을 사용 K 교수, C씨 등으로 표기했지만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후 문화방송노동조합이 발행하는 노조 특보에서 이 사건 기사를 인용하면서 K교수와 C씨들은 신청인들이라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에서 볼때 기사와 신청인들간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0카41568 정정보도게제

신 청 인 : 1. 김

서울

2. 차

서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김 충 원, 신 재 송, 임 두 빈, 이 인 수

피신청인 : 한국기자협회(韓國記者協會)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한국언론회관 13층

대표자 이 근 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원 순, 안 상 운

변론종결 : 1990. 7. 13.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자협회보」 제1면의 기사란 중 좌측 상단부분에 가로 6.5센티미터, 세로 3단의 크기로 별지 제1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한문 초호고딕체 활자로 왼쪽에 가로로,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 관련』이라는 소제목은 한글 1호 명조체 활자로 오른쪽에 세로로,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한글(다만 신청인들 성명은 한문) 5호 명조체 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기자협회보」 제1면에 5단 16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 제2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한문 영호 활자로 오른쪽에 5단에 걸쳐, 『서울

커뮤니케이션연구소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이라는 소제목은 1호 활자로 위 제목 좌측에 세로로 5단에 걸쳐, 정정보도내용은 5호 활자로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 1. 피신청인이 매주 금요일 발행하는 기관지인 1990. 4. 20.자 기자회견보 제1면 우측 전단 및 제2면 우측 5단 부분에 걸쳐 『기자협회진상조사단 실체추적과정서 방송장악기도 일부 드러나』라는 제목 및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 개입에 의혹 집중』이라는 소제목 아래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가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작업과정에서 방송제도연구위원회와 유관기관들을 연결하는 일종의 외곽팀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소식통에 따르면 이 연구소에는 방송제도연구위원회에 참여했던 <케이(K)교수와 현직 엠비씨(MBC) 방송인 <씨이(C)씨... 등이 주축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이때 조심스레 거론된 이름 중 서울커뮤니케이션연구소나 서울언론클럽 등이 이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는 않았다.』라는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2호증(엠비씨 노조특보, 을제3호증과 같다), 강제4호증의 7, 10(각 중재조서)의 각 기재에 중인 남영진의 일부증언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지 3일 후인 같은 달 23. 신청의 문화방송노동조합이 발행하는 엠비씨(MBC) 노조특보에서 이 사건 기사를 인용하면서 위 기사내용 중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주축인사로 보도된 「케이(K)」교수와 「씨이(C)」씨는 바로 신청인들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 한편 신청인 김 ○은 이 사건 기사에서 보도된 서울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설립자인 동시에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여 왔고, 신청인 차 ○는 현직 문화방송 아나운서실장으로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될 무렵 문화방송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무시, 부당인사예의 관여 등과 같은 내용의 의혹을 사고 있었던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정기간행물에 의한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고 할 것(대법원 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서 영문 첫글자로 표기된 「케이(K)」교수와 「씨이(C)」씨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교수나 엠비씨(MBC) 방송인으로서 위와 같은 이니셜을 지닌 자들은 신청인들 이외에도 수인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본 신청인들의 경력이나 평판, 이 사건 기사의 보도 직후에 이를 인용보도한 엠비씨(MBC) 노조

특보 기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기자회견보의 독자로 예상되는 신문 및 방송기자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에 보도된 「케이(K)」 교수와 「씨이(C)」씨가 신청인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보여지므로, 결국 신청인들은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으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다만,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신청인들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영문 이니셜로 암시한 것에 그친 점은 뒤에서 보는 일부 해명보도의 점과 함께 신청인들이 갖는 정정보도청구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기자협회보」에 공표된 위 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후 신청인 김 의 요구에 따라 1990. 4. 27.자 기자회견보에서 위 김 의 해명주장을 보도한 바 있으니 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기자협회보)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후 신청인 김 의 해명요구에 따라 피신청인이 그 다음호인 1990. 4. 27.자 기자회견보 제1면 좌측 하단에 10행기사로 「김 이 운영하는 서울커뮤니케이션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 개인 연구소로 정부측의 방송개편작업과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당초 보도하였던 이 사건 기사가 기자회견보 제1면의 톱기사로 거의 전면에 걸쳐 신청인 김 을 지칭하는 「케이(K)」 교수가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주축인사로서 정부의 방송구조개편작업에 관여하였고 위 신청인이 운영하는 「서울커뮤니케이션연구소」와 위 방송구조 개편작업과의 관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볼 때에 위와 같은 후속보도의 게재내용 및 기사의 분량과 위치 정도로는 이 사건 기사 전부에 대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충분한 정정보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기사에서 신청인들을 지칭한 표현의 정도, 일부 해명기사의 보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주문 기재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7. 19.

재판장 판사 권 성
판사 조 해 현
판사 장 성 원

〈별지 1〉 정정보도문

소재목 : 한국 커뮤니케이션연구소 관련

1990. 4. 20.자 기자회견보에 『방송장악기도 일부 드러나, 한국 커뮤니케이션연구소 개입에 의혹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김 교수와 엠비씨(MBC) 차 아나운서 실장이 한국 커뮤니케이션연구소의 주축인사로서 정부의 방송구조 개편작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나, 김 교수와 車 실장은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소나 방송구조 개편작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정정보도 신청인

〈별지〉 정정보도문

제목 : 서울커뮤니케이션연구소 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1990. 4. 20.자 기자회견보에 『방송장악기도 일부 드러나 한국 커뮤니케이션연구소 개입에 의혹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위 연구소장 김 교수와 MBC 차 실장에 대하여 게재된 기사를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본보 1990. 4. 20.자 1면 기사로 처리된 『방송장악기도 일부 드러나』 제하의 한국기자협회의 KBS 사태 진상조사활동에 대한 서울커뮤니케이션연구소 관련보도는 사실무근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

한국기자협회 충청북도 지부는 하부조직에 불과, 이 건 정정보도청구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 1990. 7. 21.자 판결(90카1874)

事實概要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장준철 부장판사)는 1990년 7월 21일 한국기자협회 충청북도지부가 中部毎日新聞社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게재 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신청인인 한국기자협회 충청북도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독립된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한 바, 이 사건 신청에 대해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中部毎日 1990년 6월 16일자 15면에 『記者체육대회 協助 요청 물의』 제하의 기사에서, 「일부 郡 공보실이 관내 기관, 업체 등에 한국기자협회 충청북도지부가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보낼 성금품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부 기업체에서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일로 자율화시대를 맞은 언론의 횡포가 아니냐며 불평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신청인은 충북지역 사회발전과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자들이 친목을 위해 체육대회를 개최한 사실을 왜곡, 도내 기관 기업체 등에 압력을 넣은 양 인식되도록 함으로써 충청북도지부 및 한국기자협회 전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다(90충북중재3).

중재결과, 피신청인측이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작성된 사실기사이므로 정정보도를 할 수 없다 하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청주지방법원에 정정보도게재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0카 1874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한국기자협회 충청북도 지부

청주

지부장 양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부매일신문(中部每日新聞)

청주시 봉명동 642의 1

대표이사 이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그 발행의 중부매일신문 15면에 4단 제목을 사용하여 ‘정정보도문 : 1990. 6. 16.자 중부매일신문 15면 기자체육대회 협조요청 물의 제하의 4단 기사에서 한국기자협회 충북도지부가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도내기관, 기업체 등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자협회 충북도지부가 주체가 되어 성금품을 강요한 것처럼 보도, 한국기자협회 5,000여 회원과 충북도지회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바, 이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한국기자협회와 충북도지부의 명예가 실추된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90. 7. 중부매일신문 발행인 이 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한국기자협회보, 충청일보, 중부매일신문,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신문에 5단 전행 광고로 2회씩 게재하라.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재판.

이 유 :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신청인인 한국기자협회 충청도지부는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독립된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한 바,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정정보도등 청구사건심판규칙 제5조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7. 21

□

재판장 판사 장 준 철

판사 이 승 영

판사 유 숙 옥

언론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정정보도 심판을 청구, 신청이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5.자 판결(90카60650)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권 성 부장판사)는 1990. 9. 25. 최 씨가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의 신청은 중재 불성립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최씨는 중앙일보 사회면 날씨란에 게재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도에 북한이 실제크기보다 작게 그려져 있어 사실에 반한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0서울중재27)

중재부가 위 신청을 검토한 결과 중재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다.

決 定 文

사 건 : 90카60650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최

서울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김 동 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용 운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 한다.

이 유 : 직권으로 살피건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의 전체로서 행하여진 위 당사자 사이의 중재절차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1990. 6. 19. 신청인의 중재신청을 각하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 그 결정문이 같은 달 21. 신청인에게 송달된 사실 및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서가 1990. 7. 21. 당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중재 불성립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9. 25.

□

재판장 판사 권 성

판사 조 해 현

판사 장 성 원

.....

신청인 교단을 지칭하는 구원과의 교리에 대한
비판 논문은 필자의 종교적 척도에 따른 의견 표현으로
사실적 주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0. 10.자 판결(91카81540)

서울고등법원 1992. 8. 21.자 판결(91라161)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1992. 8. 21. 기독교 복음침례회가

「목회와 신학」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문제의 글은 필자의 종교적 척도에 기인한 의견 표현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반박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며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글을 게재한 목적이 종교적 성서적인 관점에서의 신청인 교단의 교리 비판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가치판단이나 의견에 대한 문제는 독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치판단에까지 반박할 권리를 인정하면 언론 활동이 마비 내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목회와 신학」 1991년 6월호에 대전침례회 신학대학 교수의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라는 논문이 게재되자, 신청인은 객관적·사실적인 증거없이 교단을 이단으로 또한 도덕률 폐기론자로 표현했다며 중재신청을 했다(91서울중재45).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4페이지 분량의 반론문 게재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신청인이 이를 넘어선 양의 반론문 게재를 요구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신청이 기각되었다.

1審 判 決 文

사 건 : 91카81540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기독교복음침례회

서울

대표자 총회장 정 행 덕

피신청인 : 하

서울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목회와 신학」 특별부록란에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그 정정보도문 제1면 4분지 1 상단 중앙에 50급 고딕체 활자로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가?』라는 제목을 쓰고, 정정보도 내용은 2단 본문 활자로 게재하

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 종교잡지인 「목회와 신학」 1991년 6월호 권말특별부록란에 신청인 교단을 왜곡하거나 허위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라는 제목의 신청외 이 쓴 논문이 29면에 걸쳐 게재되어 신청인 교단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신청인측의 반박내용인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가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정정보도문의 내용 역시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어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목회와 신학」지에 게재된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가?』라는 논문의 내용은 「이단구원파에서 계획된 수순에 따라, 필자는 …서부경찰서에 수감되었고 그날 밤 자정에 유치장에 수감되었다」, 「오대양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들을 비롯해 이 집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재산을 바치고 이혼한 피해자들은 한두명이 아니다」, 「극동방송 탈취음모를 꾸미던 구원파측 직원 11명을 1974년 7월 30일자로 해고했다」, 「구원파의 운동방향을 총지휘하던 한국 평신도복음선교회의 교주 유씨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목사가 역시 계의 사업운영을 비판하다 집단폭행을 당하고 전국 5천여 교인과 함께 이탈했다」, 「권씨와 유씨의 기만적인 설교에 현혹되어 수천만원을 바치고 알거지가 된 피해자들은 한결같이」라는 등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 기재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29면에 달하는 위 논문의 대부분이 신청인 교단을 지칭하는 구원파의 성서관, 하나님관, 구원관, 기도관, 예배관, 교회관, 종말관 등 교리에 대한 종교적 척도에 따른 주관적인 가치판단을 기재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으며, 나아가 위 보도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역시 위 논문 중 위에서 본 사실적 주장에 대한 사실적 진술로서의 반박이라기보다는 위 논문의 필자인 신청외 에 대한 개인적인 비방이나 위 구원파의 교리비판에 대한 종교적 척도에 따른 주관적인 반박비판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신청은 사실적 주장의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적 진술로서의 정정보도를 신청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0. 10. 10.

재판장 판사 이 규 홍
판사 김 창 보
판사 최 중 갑

2審 判 決 文

사 건 : 91라161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기독교복음침례회

서울

대표자 총회장 정 행 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정 서

상대방, 피신청인 : 하

서울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영 환

원 결 정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0. 10.자 91카 81540 결정

주 문 :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 원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목회와 신학」지 특별 부록란에 별지 기재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그 정정보도문 제1면 4분의 1 상단 중앙에 50급 고덕 활자로 『구원파,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쓰고, 정정보도문 내용은 2단 본문 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결정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 종교잡지인 「목회와 신학」지 1991년 6월호 권말 특별부록에 침례교신학대학교 교수인 신청의 이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라는 제목아래 머릿말, 구원파의 역사, 구원파의 비판에 임하는 입장, 구원파 교리비판(성서관, 하나님관, 구원관, 기도관 및 예배관, 교회관, 종말관), 맺음말의 순서로 기고한 글을 238면부터 265면까지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이 위 잡지에 게재된 위 글의 내용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신청인 교단의 교리를 허위비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월간지의 발행인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별지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청구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원 결정 법원은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보도가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뿐 아니라 그 정정보도문의 내용 역시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위 이 기고하여 「목회와 신학」지에 게재된 위 글에는 일부 사실적인 주장에 관한 기재가 있으나 위 글의 대부분은 신청인 교단을 지칭하는 구원과의 성서관, 하나님관, 구원관, 기도관, 예배관, 교회관, 종말관 등 교리에 대한 종교적 척도에 따른 주관적 가치판단을 기재한 것이고,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 역시 사실적 주장에 대한 진술로서의 반박이라기 보다는 위 글의 필자인 위 에 대한 개인적인 비방이나 구원과의 교리비판에 대한 종교적인 비판을 담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정정보도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한 항고 이유의 요지는, 위 정동섭이 기고한 위 글은 신청인 교단의 비리나 피해 사례 등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뿐더러 신청인 교단의 교리를 사실대로 적시한 다음 종교적, 성서적인 비판을 가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 교단의 교리가 아닌 것을 신청인 교단의 교리로 허위적시하였으므로 신청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사건 정정보도 신청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원 결정 법원이 이를 오해하여 단순히 종교적인 척도에 따른 주관적 가치판단에 관한 글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이를 반박하는 사실적 진술 및 이를 명백히 전달하기 위한 설명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문 기사가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만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고, 따라서 가치판단, 의견표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그 취지는 일방적인 보도로 인하여 독자에게 생길 편견의 우려는 사실보도인 경우에 크게 문제가 되고 가치판단이나 의견에 대한 문제는 독자 스스로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치판단에까지 반박할 권리를 인정하면 오히려 언론활동의 마비 내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때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반드시 외부적으로 인식가능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반면 가치판단이라 함은 윤리적, 종교적, 예술적 척도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어떤 글의 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관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그 글이 의도하는 바, 글이 실린 정기간행물의 성

격, 게재 경위, 독자층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 데 하나는 신청인 교단을 신청외 유 이나 그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세모 또한 오대양 사건과 관련시켜 「구원파 교주인 유 씨와」, 「구원파에서 계획한 수순에 따라 필자는 두번째 조사차 경찰에 출두하였다가 서부경찰서에 수감되었고」, 「오대양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들을 비롯해 이 집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재산을 바치고 이혼한 피해자들은 한 두명이 아니다」, 「권씨와 유씨의 기만적인 설교에 현혹되어 수천만을 바치고 알거지가 된 피해자들은 한결 같이 권씨와 유씨의 설교에 현혹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유씨는 교인이 운영하던 부실 기계자수회사 삼우레이닝을 인수, 교인들의 성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등의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교단은 위 유 과 주식회사 세모 및 오대양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반박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신청인 교단의 교리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고, 허위비방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반박내용과 원문내용이 사실적 주장에 관련된 경우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와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반박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는 바, 전자의 경우 중에는 정정보도문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에 게재된 내용이 원문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의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글을 게재한 목적이 종교적, 성서적인 관점에서의 신청인 교단의 교리비판에 있음은 위 글이 게재된 잡지의 성격, 위 글을 게재하게 된 경위, 위와 같은 기술내용이 위 글 중 자리잡은 위치 등에 비추어 명백한 만큼 위와 같은 위 의 기고문 중에 「구원파의 교주인 유 씨와」, 「구원파에서 계획한 수순에 따라 필자는 두번째 조사차 경찰에 출두하였다가 서부경찰서에 수감되었고」, 「유씨는 교인이 운영하던 부실 기계자수회사 삼우트레이딩을 인수, 교인들의 헌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는 등의 내용은 신청인 교단이 이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지엽적인 언급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비추어 볼 때 정정보도문의 내용 중 「오대양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들을 비롯해 이 집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재산을 바치고 이혼한 피해자들은 한 두명이 아니다」, 「본인은 1968년부터 1977년까지 8년간을 구원파 소속 교인으로 충성했던 사람이다. 특히 구원파의 두 지도자 씨의 측근에서 통역 및 수행원 역할을 했었다」는 등의 내용에 대한 반박은 오히려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반박보도내용이 일부 사실적인 주장에 관련된 것일지라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또한 「권씨와 유씨의 기만적인 설교에 현혹되어 수천만원을 바치고 알거지가 된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권씨와 유씨의 설교에 현혹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부분과 같이 신청인 교단이 아닌 위 권 목사나 유 씨가 피해자라고 해야 할 내용까지 반박하고 있다), 한편 신청인 교단의 교리 즉 성서관, 하나님관, 구원관, 기도관 및 예배관, 교회관, 종말관에 관한 내용(예컨데, 기도와 예배를 부인한다,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율법 폐기론자인 구원파 등)은 위 정동섭의 종교적 척도에 기인한 의견표현인 이상 사실주장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단은 독자에게 맡김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에 대한 반박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원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8. 21.

□

재판장 판사 신 명 균

판사 전 병 식

판사 김 옥 신

드라마 「배반의 장미」 작가인 신청인이 대본을
교부하지 않아 제작이 중단되었다는 등의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1. 30.자 판결(90카68698)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권 성 부장판사)는 1990. 11. 30. 작가 김 (필명

김 씨가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의 기사와 관련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간주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며 신청인 주장 일부를 인용했다.

중앙일보 1990. 7. 13.자 「중앙광장」란 『MBC-TV 「배반의 장미」 대본 못써 제작 “평크”』 제하의 기사에서 「MBC-TV 인기 주말 드라마 「배반의 장미」는 작가 김 씨가 대본을 쓰질 못해 토요일 프로는 생략하고 일요일만 방송될 듯」이라며 「안방 극장을 쉽사리 석권할 줄 알았던 김 씨의 밀도 높은 드라마 전개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신청인은 방송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저작권 문제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대본 교부를 거부한 것으로, 자신의 무성의 또는 무능력으로 대본을 못써 방송제작이 중단되었다는 위 보도는 잘못되었다며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내용의 진실여부는 권리행사의 요건이 아니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해 줄 의무가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이유없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이건 소송에 앞서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제의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했으나(90서울중재63) 피신청인측이 해명기사 형태로 보도할 수는 있으나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불성립 되었다.

判 決 文

사 건 : 90카68698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김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수 복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김 동 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순 호, 홍 석 제

변론종결 : 1990. 11. 9.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앙일보」의 주 1회 발행 특집지면 「중앙광장」의 제22면 기사란 중 좌측상단 부분에 가로 2단 세로 14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기재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한글 초호 명조체 활자로, 정정보도문 내용은 한글 5호 명조체 활자로,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한글2호 명조체 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중앙일보」 중앙광장 제22면의 기사란중 좌측 상단 부분에 가로 4단 세로 약 16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0호 고딕체 활자로 상측에 3단에 걸쳐, 정정보도문 내용은 본문 활자로 그 하측에 4단에 걸쳐, 정정보도 신청인 이름은 9 포인트 고딕체 활자로 1단에 걸쳐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 피신청인이 일간신문인 「중앙일보」를 발행하면서 매주 1회 「중앙광장」이라는 특집지면을 증면 발행하여 오던 중 1990. 7. 13.자 「중앙광장」의 제22면 기사란 좌측 상단 부분에 『「M-TV 「배반의 장미」』, 『대본 못써 제작 「핑크」라는 제목과 「밀도도 기대 못미치는데 연출진 푸념』이라는 소제목 아래 「MBC-TV 인기 주말드라마 「배반의 장미」는 이번 주에 작가 김 씨가 미처 대본을 쓰지 못해 토요일 프로는 생략하고 일요일만 방송될 듯, 중략, 작가 김씨가 핑크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중략, 안방극장을 쉽사리 석권할 줄 알았던 김 씨의 밀도 높은 드라마전개가 기대에 못미치는 데다, 중략, … 제작자는… “작가 김씨가 지방에 침거하면서 일방적으로 대본을 보내기만 하고 연락조차 어려워 수시로 접촉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푸념』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MBC-TV 「배반의 장미」의 한 장면』이라는 사진과 함께 가로 4단 세로 14센티미터의 크기로 게재한 사실 및 위 기사에 거시된 성명 「김 」이 신청인의 필명인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신청인이 위 기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반론의 게재를 구하고 있음은 이 사건 신청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사와 관련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간주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기사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

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는 그 권리 행사의 요건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신청인이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 및 크기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별지기재 정정보도문은 위 기사내용에 대한 신청인의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어 있어 이를 전부 게재하여야 할 것이나, 그 크기 및 활자는 위 기사의 크기 및 활자와 별지기재 정정보도문의 크기 등에 비추어 주문기재의 크기 및 활자로 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주문기재 한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1. 30.

재판장 판사 권 성
판사 조 해 현
판사 장 성 원

정정보도문

19990. 7. 13.자 본지 제22면 주말 TV저널란에 『M-TV 「배반의 장미」 대본 못써 제작, “핑크”』 밀도도 기대 못미치는데 연출진 푸념 등의 제목 또는 소재목 아래 「MBC-TV 인기 주말 드라마 배반의 장미는 작가 김 씨가 대본을 쓰질 못해 토요일 프로는 생략하고 일요일만 방송될듯... 안방극장을 쉽사리 석권할 줄 알았던 김 씨의 밀도 높은 드라마 전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작가 김씨가 지방에 칩거하면서 일방적으로 대본을 보내기만 하고 연락조차 어려워 수시로 접촉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작가 김 은 그 당시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으로서 방송작가들을 대표하여 방송드라마에 대한 방송작가의 저작권보호 문제에 대하여 방송국측과 협상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방송대본 교부를 거부키로 하고 1주일 전에 방송국에 통고한 후 1회분 『배반의 장미』 방송대본을 넘기지 아니하였을 뿐, 작가의 무성의 또

는 무능력으로 대본을 못써 방송제작을 중단케 한 사실이 없고, 한편 MBC 연출진이 밀도도 기대에 못미치는데 라는 말은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작가 김씨가 지방에 침거하여 제작진과 연락조차 어려웠던 사실은 없다.

정정보도 신청인

□

신문 판매권을 장악, 막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된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2. 7.자 판결(90카74637)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권 성 부장판사)는 1990년 12월 7일 진 씨가 주관 노동자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노동자신문의 관련기사에 의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간주되므로, 신청인의 반박을 내용으로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면서, 신청인 주장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위와 같이 판결했다.

주관 노동자 신문이 1990년 7월 27일자 제11면 『전철 신문판매원들 권익단체 결성 기도』와 『북마전을 방불케하는 치부 수법』등 제하의 기사에서 「수도권 전철의 신문판매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부녀복지연합회등 6개 복지법인이나 그 대리인들이 신문공급과정에서 막대한 중간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1호선 전철구간의 판매권을 장악하고 있고 부녀복지회 실제운영권자인 진 씨는 판매원들을 일일고용형태로 채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판매원들에게 협박 욕설 등 비인간적인 횡포를 일삼고 있고 판매원들이 권익단체를 결성하려하자, 방해공작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위 기사 내용은 허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0서울중재66).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위 기사는 사실에 부합하여 정정보도 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0카74637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진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명 훈

피신청인 : 주식회사 주간노동자신문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5의 98

대표이사 황 상 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병 모

변론종결 : 1990. 11. 9.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노동자신문」 제11면의 기사란 중 좌측 상단에 가로는 3단, 세로는 25센티미터 내외의 크기로 별지 제1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초호 명조체로,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5호 명조체 활자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 송달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노동자신문」 제11면의 기사란의 상단 부분에 가로 8단 세로 14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 제2 정정보도문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은 0호 고딕체 활자로 윗쪽에 가로 2단으로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본문 활자로 게재하여

야 한다는 판결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 신문인 1990. 7. 27.자 「노동자신문」 제11면 기사란에 『전철신문판매원들, 권익단체결성키로』라는 제목과 『오는 29일 부너복지연합회등 판매원자의 부당한 처우에 반발』이라는 소제목 아래 「수도권 4개호선 전철의 신문판매원은 한국 부너복지연합회등 6개 복지법인이나 그 대리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문사로부터 50원 안팎의 가격으로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원들에게 130원에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막대한 중간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6개 법인들은... 판매원들을 일일고용의 형태로 채용해 부당이득을 취할뿐 아니라 협박, 욕설 등의 비인간적인 횡포를 일삼고 있다. 특히 1호선 전철구간의 판매권을 장악하고 있는 부너복지연합회 사업국의 경우 실제 운영자인 사업과장 진 씨가 판매원들의 수입이 입금되는 개인통장을 통합관리하면서 자신의 인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해 부당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판매인 연합의 결성 추진사실이 알려지면서 판매원자들의 결성방해 공작도 노골화되고 있는데 부너복지연합회측의 경우 판매원들의 숙소를 폐쇄한 채 각서를 쓰고 다시 일을 하거나 그만 둘 것을 강요해 판매원들이 20일 오후에 일시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으며 다른 5개 법인도 문제의 비화를 염려해 부너복지연합회에 방해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보도기사와 『복마전을 방불케하는 치부수법』이라는 제목과 『신문판매원 결사 계기로 본 판매업자들의 비리』라는 소제목 아래 「...부너복지회... 사무실은 본부(마포구 공덕동)와 신문판매업전담의 사업국(중구 순화동)이 따로 운영되고 있어 실제로는 별개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즉 부너복지회사업국의 실제 운영자인 진 씨가 복지회의 명의만 빌려 수입을 나눠 먹는 수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소속판매원 30여명에게는 부너복지회 본부의 수입으로 할당되는 1천여부의 판매 할당량이 책정돼 있다... 사업국 사업과장으로 돼있는 진씨는 판매원들에게 「청소년 사업부장」으로 통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일보 판매국과 관련있는 「청운회」의 대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앙일보는 판매면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다... 판매원들을 일일고용형태로 채용 아무런 수당이나 상여금도 주지 않으면서 취한 막대한 중간이득이 진씨와 같은 판매원자들의 주요 수입원이다... 채용된 판매원들은 신문 1부당 70원씩 남는 이익금이 모여 목표액이 채워질때까지 조·석간 팀별로 1일 평균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감수해야 한다. 몸이 아파 쉬거나 요령을 피우는 것은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목표액이 채워질 때까지 판매원들의 수입금이 적립되는 개인통장은 사업과장인 진씨가 직접 관리한다. 통장의 인감은 예금주가 누구건간에 진씨의 것만이 사용돼 진씨만이 판매원들의 개인돈

을 자유롭게 빼내고 집어넣을 수 있다...사업국측은 또 근무규칙상의 「무료급식·거주·의복제공」 조항을 위배하고 1인당 급식비 및 거주비로 1일 2천원씩을 공제해 왔다. 판매원들의 숙소는 사업국에 딸려 있는데 부녀복지회에서는 무료의식주 제공을 위하여 얼마간의 보조비를 사업국측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과장 진씨는 나이 어린 판매원들을 학대해 이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각서내용에 따라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돈을 찾지 못하는 점을 이용 낙전을 챙기고 그간의 이자 역시 자신이 착복하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굳이 그 돈을 찾자면 3개월 혹은 6개월을 질질 끌었다. 뿐만아니라 진씨는 노른자위인 지하 서울역 및 지하 청량리역의 6개 신문 가판대를 친인척 명의로 사실상 소유, 가판대 1개당 연간 순수익만 수천만원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들 가판대에는 다른 가판대에 대한 신문의 부당 공급가격(1백원)이하인 70원씩에 넘겨진다는 것이다. 신문판매원들은 진씨가 이렇게 모은 재산이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라는 내용의 해설기사가 가로 8단 세로 14센티미터 내지 20센티미터의 크기로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신청인이 위 기사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반론의 게재를 구하고 있음은 이 사건 신청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사와 관련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간주되므로 피신청인은 위 기사내용에 대한 신청인의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게재를 구하는 반박문인 별지 제2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므로 이를 게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울제 1호증(취지문) 소울제2호증(나팔수 창간호) 소울제3호증(나팔수 제2호) 소울제4호증(우리의 결의) 소울제5호증(호소문) 소울제6호증(취업규칙) 소울제7호증(통장)만으로는 위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는 점과 위 기사의 크기 및 활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신청인이 게재하여야 할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활자는 주문기재의 범위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주문기재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송법 제89조 제92

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2. 7.

재판장 판사 권 성
판사 조 해 현
판사 장 성 원

〈별지 1〉 정정보도문

1990년 7월 27일자 노동자신문 11면에 게재된 『전철 신문판매원들 권익단체 결성기로』라는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수도권 4개호선 전철의 신문판매원은 한국 부녀복지연합회등 6개 복지법인이나 그 대리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문사로부터 50원 안팎의 가격으로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원들에게 130원에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막대한 중간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수도권 4개호선 전철의 신문판매원은 한국부녀복지연합회등 6개 복지법인에서 직접 운영하고 100~105원에 신문을 구입하여 신문판매원들에게 130원에 공급하여 주고 수익금은 전액 사회사업에 쓰고 있다.

「판매원들을 일일고용 형태로 채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뿐만 아니라 협박, 욕설 등의 비인간적인 횡포를 일삼고 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 운영자인 진 씨가 개인통장을 통합관리하면서 자신의 인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해 부당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진 씨는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관리과장일 뿐이며 인감을 통일한 것은 저축통장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자의 통장은 항상 비치해서 입출금을 본인이 확인한다. 「결성방해공작도 노골화되고 있는데 부녀복지 연합회측의 경우 판매원들의 숙소를 폐쇄한 채 각서를 쓰고 다시 일을 하거나 그만둘 것을 강요해 판매원들이 20일 오후에 일시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으며 다른 5개법인은 문제의 비화를 염려해 부녀복지연합회에 방해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판매원들이 신문판매를 집단 거부했을때 판매원들을 설득하였을 뿐이다.

「사무실은 본부(마포구 공덕동)와 신문판매업 전담의 사업국(중구 순화동)이 따로 운

영되어 있어 실체는 별개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즉 부녀복지회 사업국의 실제운영자인 진 씨가 복지회의 명의만 빌려 수입을 나눠먹는 수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진 씨는 사업부의 관리 과장으로 이동판매원을 관리하고 있는 직책을 수행하는 직원일 뿐이다.

「이와 관련 소속 판매원 30명에게는 부녀복지회 본부의 수입으로 할당되는 1천여부의 판매 할당량이 책정돼 있다고 판매원들은 주장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판매원들에게는 팔고 남은 신문은 전량 반품해 주고 있으며 강제적인 판매 할당량을 정한 일은 없다.

「사업국 사업과장으로 되어있는 진씨는 판매원들에게 청소년 사업부장으로 통하지만 실체는 중앙일보 판매국과 관련있는 청운회의 대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앙일보는 다른 신문들보다 판매면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들 판매원들을 일일고용 형태로 채용, 아무런 수당이나 상여금도 주지 않으면서 취한 막대한 중간이득이 진씨와 같은 판매권자들의 주요 수입원이다. 그러나 착취수단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채용된 판매원들은 신문 1부당 70원씩 남은 이익금이 모여 목표액이 채워질때까지 조·석간 팀별로 1일 평균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감수해야 한다. 몸이 아파 쉬거나 요령을 피우는 것을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전 판매사원들은 조간 5시~12시, 석간 12시~20시, 지방판 20시~24시까지의 3단계로 구분하여 판매토록 하고, 조간 석간반 판매원 중에서 판매원은 자기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방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목표액이 채워질 때까지 판매원들의 수입금이 적립되는 개인통장은 사업과장인 진씨가 직접관리한다. 통장의 인감은 예금주가 누구건간에 진씨의 것만이 사용돼 진씨만이 판매원들의 개인 돈을 자유롭게 빼내고 집어 넣을 수 있다. 예금주와 인감명의가 틀린 불법거래는 상업은행 서소문지점의 양해아래 이뤄진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통장관리를 해 주는 것은 저축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며, 판매원들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장을 통일해서 사용했을 뿐이며 그것이 불법거래는 아니다.

「사업국측은 또 근무규칙상의 무료급식, 거주, 의복제공 조항을 위배하고 1인당 급식비 및 거주비로 1일 2,000원씩 공제해 왔다. 판매원들의 숙소는 사업국에 딸려있는데 부녀복지회에서는 무료의식주 제공을 위해 얼마간의 보조비를 사업국측에 지급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자체 예산의 후생복지비 중 식비지원금을 1인당 1,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사업과장 진씨는 나이 어린 판매원들을 확대해 이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각서 내용에 따라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돈을 찾지 못하는 점을 이용, 낙전을 챙기고 그간의 이자 역시 자신이 착복하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굳이 찾자면 3개월 혹은 6개월을 질질 끌었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진 씨는 관리과장 8년 재직 기간 중 약 500여명의 판매원들을 선도하여 사회로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단 한마디의 욕설 또는 구타한 사실이 없고 언제든 그만두는 판매원들에게는 저축금을 정산하여 즉시 지급하였으며 이자는 모두 자기명의의 통장에 은행측에서 3개월마다 정산하여 입금시켜 주었다.

「뿐만 아니라 진씨는 노른자위인 지하 서울역 및 지하 청량리역의 6개 신문가판대를 친인척 명의로 사실상 소유 가판대 1개당 연간 순수익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특히 이들 가판대에는 다른 가판대에 대한 신문이 1부당 공급가격(1백원) 이하인 70원씩에 넘겨진다는 것이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한국부녀복지연합회에서는 신문사에서 100원 또는 105원에 구입하여 이동판매원이든 가판대이든 모든 신문은 130원에 공급하고 있다.

「신문판매원들은 진씨가 이렇게 모은 재산이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진 씨의 재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을 뿐이고 부당한 이득으로 모은 재산은 아니다.

정정보도 신청인

〈별지 2〉 정정보도문

본보 1990년 7월 27일자 (제40호) 11면에 보도된 전철 신문판매원들, 권익단체 결성키로 제하의 기사는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수도권 4개호선 전철의 신문판매권은 한국부녀복지연합회등 6개 복지법인이나 그 대리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은 신문사로부터 50원 안팎의 가격으로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원들에게 130원에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막대한 중간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보도했으나 수도권 4개호선 전철의 신문판매권은 한국부녀복지연합회등 6개 복지법원에서 서울지하철공사와 계약 체결하여 매년 판매권을 득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이 단체들은 100~105원에 신문을 구입하여 신문판매원들에게 130원에 공급해 주고 이익금에서 임대료,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은 각 단체별로 전액 사회사업에 쓰고 있다고 한다.

판매원들을 일일고용 형태로 채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뿐만 아니라 협박, 욕설 등의 비인간적인 횡포를 일삼고 있다. 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부당이득을 한 바 없고 판매원들에게 협박, 욕설 등의 비인간적인 횡포를 하는 곳은 없다고 한다.

실제 운영자인 진 씨가 개인통장을 통합관리하면서 자신의 인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해 부당유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진 씨에 의하여 그는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관리과장일 뿐이며 인감을 통일한 것은 저축통장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자의 통장은 항상 비치해서 입출금을 본인이 확인하므로 부당유출 가능성도 전혀없다고 하고 있다. 결성배후공작도 노골화되고 있는데 부녀복지연합회측의 경우 판매원들의 숙소를 폐쇄한 채 각서를 쓰고 다시 일을 하거나 그만둘 것을 강요해 판매원들이 20일 오후에 일시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으며 다른 5개법인도 문제의 비화를 염려해 부녀복지연합회에 방해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으나 판매원들이 신문판매를 집단 거부했을 때 판매원들을 설득한 것 외에는 숙소 폐쇄나 각서를 강요한 적이 없고 다른 단체에서의 방해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 있다.

사무실은 본부(마포구 공덕동)와 신문판매업 전담의 사업국(중구 순화동)이 따로 운영되어 있어 실체는 별개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즉 부녀복지회 사업국의 실제 운영자인 진 씨가 복지회의 명의만 빌려 수입을 나눠먹는 수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라고 보도된 바 있으나 진 씨는 사업부의 관리 과장으로 이동판매원을 관리하고 있는 직책을 수행하는 직원일 뿐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소속 판매원 30명에게는 부녀복지회 본부의 수입으로 할당되는 1천여부의 판매 할당량이 책정돼 있다고 판매원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판매원들에게는 팔고 남은 신문은 전량 반품해 주고 있으며, 강제적인 판매 할당량을 정한 일은 없다고 한다.

사업국 사업과장으로 되어있는 진씨는 판매원들에게 청소년 사업부장으로 통하지만 실체는 중앙일보 판매국과 관련있는 청운회의 대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앙일보는 다른 신문들보다 판매면에서 특별한 배려를 받고 있다. 라고 보도되어있으나 진 씨는 사업

국의 관리과장일 뿐으로서 중앙일보 판매국에는 청운회란 조직이 없으므로 그 대표가 될 수 없고 다른 신문에 비해 특별한 배려는 없다고 한다. 이들 판매원들을 일일고용 형태로 채용, 아무런 수당이나 상여금도 주지 않으면서 취한 막대한 중간이득이 진씨와 같은 판매권자들의 주요 수입원이다. 그러나 착취수단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라고 보도되었으나 진준강 씨는 아무런 중간이득을 취하거나 달리 착취한 일이 없다고 한다.

채용된 판매원들은 신문 1부당 70원씩 남은 이익금이 모여 목표액이 채워질때까지 조·석간팀별로 1일 평균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감수해야 한다. 몸이 아파 쉬거나 요령을 피우는 것을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보도되었으나 전 판매사원들은 조간 5시~12시, 석간 12시~20시, 지방판 20시~24시까지의 3단계로 구분하여 판매토록 하고 조간·석간반 판매원 중에서 판매원은 자기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지방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몸이 아파도 신문판매를 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목표액이 채워질 때까지 판매원들의 수입금이 적립되는 개인통장은 사업과장인 진씨가 직접 관리한다. 통장의 인감은 예금주가 누구건간에 진씨의 것만이 사용돼 진씨만이 판매원들의 개인 돈을 자유롭게 빼내고 집어 넣을 수 있다. 예금주와 인감명의가 틀린 불법거래는 상업은행 서소문지점의 양해 아래 이루어진다. 라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통장관리를 해 주는 것은 저축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며, 다수 판매원들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장을 통일해서 사용했을 뿐이며, 그것이 불법 거래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사업국측은 또 근무규칙상의 무료급식, 거주, 의복제공 조항을 위배하고 1인당 급식비 및 거주비조로 1일 2,000원씩 공제해 왔다. 판매원들의 숙소는 사업국에 딸려있는데 부녀복지회에서는 무료의식주 제공을 위해 얼마간의 보조비를 사업국측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되었으나 근무규칙상 이와 같은 조항도 없고 사업국에서는 거주비와 의복비는 일체받지 않고 있고 자체 예산의 후생복지비 중 식비지원금을 1인당 1,000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과장 진씨는 나이 어린 판매원들을 학대해 이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이 각서 내용에 따라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 돈을 찾지 못하는 점을 이용, 낙전을 챙기고 그간의 이자 역시 자신이 착복하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굳이 찾자면 3개월 혹은 6개월을 질질 끌었다.라고 보도되었으나 진 씨는 관리과장 8년 재직기간중 약 500여명의 판매원들을 선도하여 사회로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단 한마디의 욕설 또는 구타한 사실이 없고 언제든 그만두는 판매원들에게는 저축금을 정산하여 즉시 지급하였

으며 이자는 모두 자기명의의 통장에 은행측에서 3개월마다 정산하여 입금시켜 주었으므로 낙전을 챙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진씨는 노른자위인 지하 서울역 및 지하 청량리역의 6개 신문 가판대를 친, 인척명으로 사실상 소유, 가판대 1개당 연간 순수익만 수천만원을 얻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되었으나 진 씨가 소유한 가판대는 1개도 없다고 한다.

특히 이들 가판대에는 다른 가판대에 대한 신문이 1부당 공급가격 (1백원) 이하인 70원 켜에 넘겨진다는 것이다. 라고 보도되었으나 한국부녀복지연합회에서는 신문사에서 100원 또는 105원에 구입하여 이동판매원이든 가판대이든 모든 신문은 130원에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신문판매원들은 진씨가 이렇게 모은 재산이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라고 보도되었으나 진 씨의 재산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을 뿐이고 부당한 이득으로 모은 재산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

일기예보란의 지도에서 북한지역이 실제보다 작게
그려진 것과 관련,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각하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4. 3.자 판결(90카110595)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991. 4. 3. 이 씨가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위와같이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이씨는 중앙일보 사회면 날씨난에 게재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북쪽이 남쪽보다 더 축소되어 있어 사실에 관할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고 통일을 저해한다며 언

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0서울중재93).

중재부가 신청인이 본건 보도로 인해 어떤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어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냈다.

決 定 文

사 건 : 90카110595 정정보도제재

신 청 인 : 이

서울

피신청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김 동 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 용 운

주 문 :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 한다.

이 유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앙일보 사회면 일기예보 란의 우리나라 지도에 북한지역이 실제와 맞지않게 작게 그려져 있는 바 이는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그 정정보도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는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데, 신청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1991. 4. 3.

재판장 판사 이 규 홍

판사 김 창 보

판사 최 종 갑

신청인이 불법해외유학 알선혐의로 경찰에
수배되었다는 보도에 의해 명예훼손등의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1. 9. 9.자 판결(91카7208)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1991년 9월 9일 TV텔런 트겸 영화배우 최 씨가 민주일보사(主婦生活)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 발행의 <주부생활>에 공표된 이 사건 기사는 신청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의 성격을 띤 보도로서 그로 인해 신청인이 명예훼손등의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했다.

主婦生活 1991년 5월호 370~375면에 『일류대학 갈 수 있었던 내 딸, 유학병으로 가출소녀 되었습니다.』 제하의 기사에서, 「코리아 아카데미 유학원 이사장 최 씨가 불법해외유학 알선 혐의로 경찰에 수배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신청인은 일정액을 받고 코리아 아카데미의 광고모델과 학생들의 유학상담에 응했을 뿐 유학알선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냈다(91서울중재30).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를 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위 유학원이 주선하는 해외유학이 불법성을 띤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뿐 더러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외유학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데 관여 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 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1카7208 정정보도

신청인: 최

서울

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피신청인: 주식회사 민주일보사(民主日報社)

대표이사 김 영 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의 37

변론종결: 1991. 8. 19.

-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이 송달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부생활」 제373면의 중앙 하단 사각 테두리 내에 좌측에는 가로 4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 규격의 신청인 사진을 싣고 위 사진의 우측에는 제목 『정정보도문』을 38호 고딕체 동판 부식 활자로,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성명은 본문 활자로 하여,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게재를 구하는 정정보도문 내용이 별지2 기재와 같은 외에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갑제1호증(주부생활 표지 및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월간 여성잡지인 「주부생활」 1991년 5월호 제370면 이하에 『일류대학 갈 수 있었던 내 딸, 유학병으로 가출소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조기유학의 문제점등에 관한 수기형식의 기사를 실으면서, 그 내용 중 위 잡지 373면 중앙부분에 가로 7.3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 규격의 신청인 사진을 싣고 그 우측 하단에 「최 〈코리아 아카데미 유학원〉의 이사장으로 있으며 자신의 사진이 실린 신문광고를 통해 중고등학생을 모집, 거액의 수수료를 받으며 불법으로 이들의 해외유학을 주선해 왔었다」라는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 발행의 정기간행물인 「주부생활」에 공표된 이 사건 기사는 신청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의 성격을 띤 보도로서 그로 인해 신청인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위 「주부생활」에 이 사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신청인은, 첫째, 이 사건 기사의 보도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여 그에 반하는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명백히 진실에 반하고, 둘째, 그렇지 않더라도 신청인이 대중의 관심과 신

피를 바탕으로 한 인기 연예인의 위치에서 함부로 아무런 공신력이 없는 위 「코리아 아카데미 유학원」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 주고 나아가 위 유학원의 이사장이라는 호칭하에 신청인의 사진을 게시한 신문광고를 내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신청인을 믿고 위 유학원을 찾은 학부모들이 위 유학원의 실질적 경영자인 유 등의 사기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데 결과적으로 방조한 책임이 있으므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이니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첫째 신청인이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불법해외유학을 주선했다는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갑제3호증의 13, 27, 29, 30, 31, 35(각 피의자 신문조서), 66(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은 원래 (주)코리아 아카데미(이하 「위 유학원」이라 표시한다)의 주선으로 미국유학을 다녀 온 관계로 위 유학원의 실질적 경영자인 유 (신청의 등을 상대로 해외유학사기를 하였다는 죄목으로 1991. 5. 18.자 구속 기소됨)등으로부터 위 유학원의 광고모델을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응낙함으로써 위 유 등이 신청인의 사진(신청인이 위 유학원의 이사장인 양 표시하였다)을 실은 신문광고를 내보내고 신청인이 가끔씩 위 유학원의 강남지사 사무실에 나가 학부모들의 상담에 응하여 주고 교통비 등 명목으로 월 150만원 정도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 유학원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따라서 신청인은 위 유학원이 주선하는 해외유학이 불법성을 띤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뿐더러 위 유 등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외유학알선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데 관여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며, 둘째 비록 신청인에게 위 해외유학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주장과 같은 과실이나 결과적 또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가 그러한 신청인의 과실점등을 사실대로 보도한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허위내용을 보도한 것으로서 그로 인해 신청인에게 더 큰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이상 위 둘째의 주장 사실만으로 신청인에게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다만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를 반박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동법 제16조 제4항),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6항), 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규정 취지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법으로 원문보도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음에 비추어 정정보도문의 말미에는 정정보도 신청인 이름을 표시하여야지 원문보도자의 이름을 표시할 것은 아니

라 할 것이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도 위의 제점에 비추어 별지1 기재의 범위내에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9. 9.

재판장 판사 최 동 렬
판사 여 상 원
판사 김 용 대

〈별지 1〉 정정보도문

「주부생활」 5월호는 「최 씨는 <코리아 아카데미 유학원>의 이사장으로서 거액의 수수료를 받고 중고등학생들의 불법해외유학을 주선해 왔다」고 보도했으나,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 신청인

〈별지 2〉 신청인이 신청한 정정보도문

1991. 5. 1. 발행 본지 5월호 제373면에, 『일류대학 갈 수 있었던 내 딸, 유학병으로 가출 소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과 『나는 이렇게 유학사기 당했다』는 소제목 아래, 「최 씨의 사진」과 「최 씨는 <코리아 아카데미 유학원>의 이사장으로 있으며 자신의 사진이 실린 신문광고를 통해 중고등학생을 모집, 거액의 수수료를 받으며 불법으로 이들의 해외유학을 주선해 왔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주)코리아 아카데미여행사의 신문광고에 사진게시를 승낙하고 유학희망자들에게 상담을 하여 주는 조건으로 월 금 150만원을 받았을 뿐, 직접 수수료를 받거나 불법해외유학을 주선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1991.

主婦生活 발행인 김 영 수

□

신청인이 불법해외유학 알선혐의로 경찰에
수배되었다는 보도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1. 15.자 판결(91카65411)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1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1991년 11월 15일 TV탤런트겸 영화배우 **崔 씨**가 서울신문사(선데이 서울)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 발행의 <선데이 서울>에 공표된 이 사건 기사는 신청인과 관련된 사실적 주장의 성격을 띤 보도로서 그로 인해 신청인이 명예훼손등의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崔씨는, 선데이서울 1991년 4월 28일자 48~49면 『아역스타 최 유학경험 살려 유학사기』 제하의 기사에서 「코리아 아카데미 유학원 이사장 최 씨가 불법해외유학 혐의로 경찰에 수배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신청인은 일정액을 받고 코리아 아카데미의 광고 모델과 학생들의 유학상담에 응했을 뿐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1서울중재27).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으며 정정보도를 거부,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유학 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유학이 불법적인 것임을 알았든가, 또는 유학 희망자들을 기만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

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와같이 판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1카65411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이 건 호, 장 건 상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대표이사 신 우 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시 현

변론종결 : 1991. 10. 14.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선데이 서울」 제48면 전면의 사각 테두리 내에 중앙에는 4×5cm 규격의 신청인의 사진을 넣고 상단 중앙에는 제목 『정정보도문』을 특호 활자로, 그 여백에는 별지1. 정정보도문 내용을 9포인트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주문 제1항 중 게재할 정정보도문 내용을 별지2. 기재와 같이 하는 외에 나머지는 주문과 같다.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잡지인 1991. 4. 28.자 「선데이 서울」 제48면 및 제49면에 『아역스타 최 유학경험 살려 유학사기』라는 제목과 『미국서 대학졸업 후 귀국-중고생 불법 알선 혐의로 수배』, 『돈 챙겨 잠적』 『국가위신 실추』라는 소제목 아래 「영터리 해외유학을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영화배우 최 」라는 설명문과 함께 신청인의 사진을 넣고 「인기 여배우 최 (28)가 불법유학 알선업체의 이사장으로 사기행각을 해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중략) 서울시경은 지난 11일 해외유학 여권을 받을 수 없는 만 18세 이하 중고생 250명에게 미국 고등학교에 유학 알선해 주겠다며 10억 1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 등 관련자를 수사하게 된 것. (중략) CF감독 정모 씨(39·서울 강동구)에 따르면 (중략) 그가 나머지 돈을 받기 위하여 코리아 아카데미 사무실을 드나들던 중 최 가 어느새 그 곳의 이사장 직함을 갖고 학생들과 상담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됐다는 것. 최 는 이 회사에서 해외유학설명회를 유치, 주관해 오면서 미국에서 유학유치단이 오면 전국 호텔을 순회하며 그들을 인솔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정 씨는 최 로부터 코리아 아카데미의 이사장 직함이 찍힌 명함을 받았지만 언론계의 기자들은 코리아 아카데미의 강남지사장이라는 명함을 받았다고 한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수배된 최 가 경찰에 자진출두해서 조사를 받으면 확실히 드러날 듯. 그녀는 미국에 건너가 있다가 최근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략) 이렇듯 토플성적증명서등을 위조, 합법을 가장해 유학을 떠난 부유층 자녀들은 갈수록 성적이 떨어져 한국인의 위신을 실추시키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지 동포들의 투서가 속속 한국으로 들어와 유학알선업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 코리아 아카데미의 유 씨는 경찰에서 최 씨가 인기인이고 실제로 유학을 갔다가 온 사람이므로 광고효과도 얻고 유학희망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모델로 썼으며 나중에 이사장 직함과 함께 월 150만원의 월급도 주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한 정기간행물인 위 「선데이 서울」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이 인정됨에 따라 명백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 「선데이 서울」에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정정보도 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거나 또는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갑제3호증, 소갑제4호증의 1 내지 22, 소갑제5호증, 소을제1호증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강상철의 증언 및 기타 소명자료를 종합하면 신청의 유 는 국외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인데 교육법, 병역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는 사람의 경우 교육감의 유학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유학을 할 수 없음에도 1989. 1.부터 시행된 해외여행 자유화조치 이후 17세 미만자들의 경우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내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약 4주간의 단기어학연수과정
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미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출국하기만 하면 학업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허가
하는 학교가 있어 탈법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학을 원하는 중,
고등학생 및 학부형들을 상대로 마치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
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 알선하고 그 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여온 사실, 그런데 위 유 는 유학희망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1989. 2.경
미국유학경험이 있는 인기여배우인 신청인에게 위 회사에서 같이 일해 줄 것을 제의하였
고 신청인은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의 강남지사에서 근
무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강남지사장」이란 직함을 사용하였고 같은 해 말경 위 회사의
본사가 강남으로 이전한 후에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한 사실, 신청인이 담당하
는 유학생모집광고를 내는 데 있어 광고모델의 역할을 하는 일과 위 회사를 찾아온 유학
희망자나 그 학부모를 상대로 신청인의 유학경험을 토대로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 미국의 교육제도, 어학공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해 주는 일이었고
그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월 금 15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 신청인은 약 40명 정도의 학
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 주었고 1990년 여름에는 위 회사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토론회
형 없이 미국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회
를 보면서 미국 대학관계자들을 안내하고 소개하였으며 통역을 담당하 일 있고 같은 해
7. 하순 경에는 미국에 있는 엘리엇트 콕이라는 중, 고등학교에 약 30명의 유학희망자를 인
솔하여 안내한 일이 있는 사실, 이로 인하여 위 유 를 비롯한 위 회사관계자들과 신청
인은 1991. 4. 15. 여권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는 바 위 유
재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건의 유학을 알선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 같은 해 5. 18.자로 구속기소되었으나 신청인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위 회사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참고인인 신청의 유 (같은
혐의로 입건됨)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같은 날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실, 신청인은
1991. 3. 7.부터 3. 11.까지와 같은 해 4. 4.부터 4. 9.까지 두 차례 일본에 다녀온 일이 있을
뿐 경찰에 입건된 이후 잠적하거나 경찰에 의하여 수배된 일이 없고 위 유 가 기소된 2
건의 유학알선 행위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들을 직접 상담하거나 알선한 일이 없으며 위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월 금 150만원의 보수를 받는 이외에 유학상담자등으로부터 달리 돈
을 받은 일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과 신청인이 청구하

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비교하여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이 과연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지 신청인의 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

첫째, 신청인이 중고생의 불법유학을 알선하거나 사기행각을 해 온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의 강남지사장 또는 이사장이란 직함을 사용하여 유학희망자들과 상담하고 그들을 미국으로 인솔한 일이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신청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유학이 불법적인 것임을 알았든가 또는 유학희망자들을 기만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불법」 유학을 알선하거나 사기행각을 한 일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신청인이 사기혐의로 입건되어 수사중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참고인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여서 조만간 그 종국적 처분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므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소정의 추후보도청구 이외에 이 사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데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의 신문광고에 사진을 게재하는 일과 가끔 유학희망자에 대한 상담을 하여 주는 대가로 월 금 150만원을 받았을 뿐이며 달리 돈을 챙기거나 잠적한 바는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이 위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로부터 보수로 월 금 150만원을 받았을 뿐 달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과 신청인이 잠적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이 사실에 반하는 주장으로 볼 수는 없고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한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표현은 신청인은 그 이외에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유학을 소개하는 세미나에서 사회를 본다든가 유학희망자들을 미국으로 인솔하는 일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부분 중 신청인이 한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표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셋째,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는 토폴성적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회사가 토폴성적 증명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는 신청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신청인으로서 위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그렇다면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별지1.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신청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1991. 11. 15.

재판장 판사 정 지 형

판사 김 창 보

판사 최 중 갑

〈별지 1〉 정정보도문

1991. 4. 28.자 본지 제1157호 제48면 및 제49면에 『아역스타 최 유학경험 살려 유학사기』라는 제목과 『미국서 대학졸업 후 귀국-중고생 불법유학알선혐의로 수배』, 『돈 챙겨 참적』, 『국가위신 실추』라는 소제목 아래 「एं터리 해외유학을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영화배우 최 」라는 사진 설명문과 함께 「인기 여배우 최 가 불법 유학알선업체의 이사장으로 사기행각을 해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경은 해외유학 여권을 받을 수 없는 만 18세 이하 중고생 250명에게 미국 고등학교에 유학을 알선해 주겠다며 10억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 등 관련자를 수사하게 된 것. CF감독 鄭모 씨에 따르면 최 는 미국에서 유학유치단이 오면 전국 호텔을 순회하며 그들을 인솔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토플성적 증명서등을 위조, 합법을 가장해 떠난 부유층 자녀들은 갈수록 성적이 떨어져 한국인의 위신을 실추시키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최 는 중고생의 불법유학을 알선하거나 사기행각을 해 온 사실이 없고 (주)코리아 아카데미의 신문광고에 사진을 게재하는 일과 가끔 유학 희망자에 대한 상담을 하여 주는 대가로 월 금 150만원을 받은 일은 있어도 달리 돈을 챙겨 참적한 바는 없으므로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 신청인

〈별지 2〉 정정보도문

1991. 4. 28.자 본지 제1157호 제48면에 『아역스타 최 유학경험 살려 유학사기』라는 제목과 『미국서 대학졸업 후 귀국-중고생 불법알선 혐의로 수배』, 『돈 챙겨 참적』, 『국가위신 실추』라는 소제목 아래, 「एं터리 해외유학을 알선한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영화배우

최씨는 사진 설명문과 함께 「인기 여배우 최씨가 불법 유학알선업체의 이사장으로 사기행각을 해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경은 해외 유학 여권을 받을 수 없는 만 18세 이하 중고생 250명에게 미국 고등학교에 유학을 알선해 주겠다고 10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씨 등 관련자를 수사하게 된 것. CF감독 鄭모 씨에 따르면, 최씨는 미국에서 유학유치단이 오면 전국 호텔을 순회하며 그들을 인솔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토플성적 증명서등을 위조, 합법을 가장해 떠난 부유층 자녀들은 갈수록 성적이 떨어져 한국인의 위신을 실추시키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최씨는 중고생의 불법유학을 알선하거나 사기행각을 해 온 사실이 없고 (주)코리아 아카데미의 신문광고에 사진을 게재하는 일과 가끔 유학 희망자에 대한 상담을 하여 주는 대가로 월 금 150만원을 받았을 뿐이며 달리 돈을 챙기거나 잠적한 바는 없고, 위 (주)코리아 아카데미는 토플성적증명서를 위조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1991.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발행인 신 우 식



공익과 관련되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더라도, 보도에 대한 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까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1. 15.자 판결(91카65412)

서울고등법원 1992. 8. 20.자 판결(91나64670)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안문태 부장판사)는 1992년 8월 20일 신청인 최

씨와 경향신문사(週刊京郷)의 정정보도게재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週刊京郷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의 기사에 의해 최씨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주간 경향에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중앙 일간신문의 기사와 수사 기록의 일부 또는 수사관의 진술을 그대로 보도했을지라도 그것이 주간 경향에 공표된 이상, 이는 주간 경향의 사실적 주장이 됨으로 신청인이 반박할 권리를 갖게되며, 기사가 공익과 관련되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문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정정보도청구권까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피신청인이 週刊京郷 1991. 4. 20.자 34~35면에 『「미성년자 불법유학」 알선회사 최씨는 월급쟁이 이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코리아아카데미 유학원 이사장 최씨가 불법 해외유학 알선 혐의로 경찰에 수배되었다」고 보도하자, 신청인은 일정액을 받고 코리아아카데미의 광고 모델과 학생들의 유학 상담에 응했을뿐 유학알선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1서울중재29)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관련 기사에 의해 신청인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줄 의무가 있다」며, 신청인 주장을 인용하자 피신청인은 이에 불복 항소했었다.

1審 判 決 文

사 건 : 91카65412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이 건 호, 장 건 상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심 상 기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경향」 제34면 전면의 사각 테두리 내에 중앙에는 4×5cm 규격의 신청인의 사진을 싣고, 상단 중앙에는 제목 『정정보도문』을 특호 고딕체 활자로, 그 여백에는 별지1. 목록기재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9포인트 본문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별지2. 목록기재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잡지인 1991. 4. 28.자 「주간경향」 제34면 및 제35면에 『「미성년자 불법유학」 알선회사 최 는 월급쟁이 이사장』이라는 제목 아래 신청인의 사진을 싣고 「미국내 브로커들과 짜고 한국의 중·고생들을 불법유학시켜 온 유학알선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11일 서울 시경은 …유 (44·코리아 아카데미 상무)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코리아 아카데미 대표 유 씨(31)와 이사장 최 씨(28)를 수배했다. 이들은 …무려 1백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영화배우·MC·탤런트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최유리 씨가 개입되어 있어 그 충격은 날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양은 사전이 터지기 전에 미국으로 도망가 있어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위 「주간경향」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 「주간경향」에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간경향」에 게재한 위 기사는 1991. 4. 11. 및 12. 자 7대 중앙 일간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을 참조하고 같은 달 13. 위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시경 경제과 수사관으로부터 직접 취재하여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 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사 피신청인이 게재한 위 기사가 다른 중앙 일간신문의 기사와 수사관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주간경향」에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주간경향」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

다 할 것이므로 그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은 인기 연예인의 행위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피신청인으로서 당시 대학 낙방생은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불법유희알선업자에게 속아 유학하게 됨으로써 미성년자들의 불법유희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재발치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위 기사를 보도한 것이지 신청인의 명예훼손을 위하여 고의로 허위 기사를 보도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그 기사내용에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인기 연예인으로서 외견상 위 불법유희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듯이 보임으로써 이에 대한 기사가 공익과 관련되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권까지 봉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를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건 기사의 기본취지에 대한 반론이라 할 것이어서 그 반론내용이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중 「신청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 지금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1991. 5. 15.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자로 중재기일이 지정되어 출석요구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말미암아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강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기록송부축탁 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1991. 5. 23.자 중재기일에 불출석하여 같은 달 15.자 중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은 있으나 그후 이 사건 기사가 공표된 1991. 4. 28.로부터 중재신청기간인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같은 달 25. 다시 언론중재위원회에 같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중재신청을 하고 같은 해 6. 3.자 중재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중재가 불성립된 사실 및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위와 같이 제소 전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다음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마지막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중 「불법 유희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갑제3호증, 소갑제

4호증의 1 내지 22, 소갑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신청의 유 는 국외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이하「위 소외회사」라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위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인데, 교육법·병역법·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는 사람의 경우 교육감의 유학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유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9. 1.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유화조치 이후 17세 미만자들의 경우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련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내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약 4주간의 단기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미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출국하기만 하면 학업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허가하는 학교가 있어 탈법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학을 원하는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을 상대로 마치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알선하고 그 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여 온 사실, 그런데 위 유 가 유학회망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1989. 2.경 미국유학경험이 있는 인기 여배우인 신청인에게 위 소외 회사에서 같이 일해 줄 것을 제의함에 따라, 신청인은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소외 회사의 강남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강남지사장」이란 직함을 사용하였고 같은해 말경 위 소외회사의 본사가 강남으로 이전한 후에는「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소외회사 명의의 종합일간지 신문광고등에 신청인을 이사장으로 표기한 사진을 게재하도록 허락한 사실, 신청인이 담당한 업무는 위와 같이 유학생 모집광고를 내는 데 있어 광고모델의 역할을 하는 일 외에도 위 소외 회사를 찾아온 유학회망자나 그 학부모를 상대로 신청인의 유학경험을 토대로 미국 내에서의 학교생활과 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 미국의 교육제도, 어학공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해주는 일 이었고 그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월 금 15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아온 사실, 신청인은 약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 주었고 1990년 여름에는 위 소외 회사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토폴시험 없이 미국 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미국 대학관계자들을 안내하고 소개하였으며 통역을 담당할 일이 있었고 같은 해 7. 하순 경에는 미국에 있는 엘리엇트팝이라는 중·고등학교에 약 30명의 유학회망자를 인솔하여 안내한 일이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위 유 를 비롯한 위 소외 회사 관계자들과 신청인은 1991. 4. 15. 여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는 바 유 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건의 유학을 알

선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사기죄를 적용, 같은 해 5. 18.자로 구속기소되었으나 신청인의 사기혐의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위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참고인인 신청외 유 (같은 혐의로 입건됨)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같은 날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실, 신청인은 1991. 3. 7.부터 3. 11.까지와 같은 해 4. 4.부터 4. 9.까지 두 차례 일본에 다녀온 일이 있을 뿐 경찰에 입건된 이후 미국으로 도망가거나 경찰에 의하여 수배된 일이 없고, 위 유 가 사기죄로 기소된 2건의 유학알선 행위에 대하여도 그 피해자들을 직접 상담하거나 알선한 일이 없으며 위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월 금 15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이외로 유학상담자들로부터 달리 돈을 받은 일이 없는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신청인이 위 소외 회사의 강남지사장 또는 이사장이란 직함을 사용하여 위 소외 회사의 광고에 사진모델의 역할을 하고 유학희망자들과 상담하고 그들을 미국으로 인솔한 인정 사실만 가지고는 위 소외 회사의 유학알선 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신청인이 알았던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없음에 들어간다 할 것이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를 반박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만 국한되어 신청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와 같은 정정보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정정보도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주문 기재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11. 15.

재판장 판사 정 지 형
판사 김 창 봉
판사 최 종 갑

〈별지 1〉 정정보도문

1991. 4. 28.자 본지 제1150호 제34면 및 제35면에 『알선회사 최 는 월급쟁이 이사장』

이라는 제목과 『미성년자불법유학』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울시경은 중·고생 불법유학과 관련하여 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유 씨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崔 씨(28)를 수배했다. 이들은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崔양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도망가 있어서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주)코리아 아카데미의 불법 유학사실을 알지 못하고 학생·부모에 대한 상담과 위 회사의 신문광고에 사진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월 금 150만원을 받았던 것이며 이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 지금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 신청인

〈별지 2〉 신청인이 신청한 정정보도문

1991. 4. 28.자 본지 제1150호 제34면 및 제35면에 『알선회사 최 씨는 월급쟁이 이사장』이라는 제목과 『미성년자 불법유학』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울시경은 중·고생 불법유학과 관련하여 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유 씨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崔 씨(28)를 수배했다. 이들은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崔양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도망가 있어서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崔 씨는 (주)코리아 아카데미의 불법유학사실을 알지못하고 학생·부모에 대한 상담과 위 회사의 신문광고에 사진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월 금 150만원을 받았을 뿐이며 이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 지금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1991.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발행인 심 상 기

2審 判 決 文

사 건 : 91나 64670 정정보도계재

신청인, 피항소인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 현 석, 이 건 호, 장 건 상

피신청인, 항소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京鄉新聞社)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심 상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두 현, 최 윤 수

변론종결 : 1992. 7. 16.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1. 15. 선고, 91카65412 판결

주 문 :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경향」 제34면 전면의 사각 테두리 내에, 중앙에는 4×5cm 규격의 신청인의 사진을 싣고, 상단 중앙에는 제목 『정정보도문』을 특호 활자로, 그 여백에는 별 지2. 목록 기재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9포인트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항소취지 : 원심판결 중 피신청인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주간잡지인 1991. 4. 28.자 「주간경향」 제34면 및 제35면에 『미성년자 불법유학』, 『알선회사 최 는 월급쟁이 이사장』이라는 제목 아래 신청인의 사진을 싣고 「미국내 브로커들과 짜고 한국의 중·고생들을 불법유학시켜온 유학알선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11일 서울시경은... 유 (44. 코리아아카데미 상무)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코리아 아카데미 대표 유 씨(31)와 이 사장 최 씨(28)를 수배했다. 이들은... 무려 1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영화배우, MC, 탤런트로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최 씨가 개입되어 있어 그 충격은 날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최양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국으로 도망가 있어서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위 「주간경향」에

공표된 위와 같은 사실적 주장의 기사로 인하여 그의 인격적 법익에 피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위 「주간경향」에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가.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첫째, 피신청인이 「주간경향」에 게재한 위 기사는 1991. 4. 11 및 12.자 7대 중앙 일간신문에 보도된 기사내용을 참조하고 같은 달 12. 오후 위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시경 경제과에 가서 수사기록 및 보도자료를 보고 수사관으로부터 직접 취재하여 보도한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 위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사 피신청인이 게재한 위 기사가 다른 중앙 일간신문의 기사와 수사기록의 일부 또는 수사관의 진술을 그대로 옮겨 보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주간경향」에 공표된 이상 이는 이미 「주간경향」의 사실적 주장이 되었다 할 것이고 그 기사에 관련된 신청인에게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둘째,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같은 인기 연예인의 행위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피신청인으로서 당시 대학 낙방생은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불법유학알선업자에게 속아 유학하게 됨으로써 미성년자들의 불법유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위 기사를 보도한 것이지 신청인의 명예훼손을 위하여 고의로 허위 기사를 보도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그 기사내용에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인기 연예인인 신청인이 위 불법유학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보도한 위 기사가 가사 공익과 관련되어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문보도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정정보도청구권까지 봉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정정보도를 구하는 내용이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를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건 기사의 기본취지에 대한 반론이라 할 것이어서 그 반론내용이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셋째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 중 「신청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 지금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1991. 5. 15.자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여 같은 달 23.이 중재기일로 지정되고 그 기일의

출석요구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함으로써 중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2호증, 소을제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1991. 5. 15.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의 기사내용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3.의 중재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신청인은 같은 달 25. 다시 언론중재위원회에 같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중재신청을 하고 같은 해 6. 3.의 중재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중재가 불성립되자 법원에 이 사건 정정보도게재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의 1991. 5. 15.자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중재신청은 신청인이 중재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그 후 이 사건 기사가 공표된 1991. 4. 28.로부터 중재신청기간인 1개월 내에 다시 언론중재위원회에 같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중재신청을 하고 중재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중재가 불성립되자 이 사건 정정보도게재의 신청을 한 것이니 이 사건 신청은 제소전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다음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넷째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제16호증의 4 내지 9, 11 내지 13, 15 내지 24, 26 내지 28, 소갑제4호증의 3 내지 39, 소갑제5호증,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소을제9 내지 14호증, 소을제16호증의 10, 14, 2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의 유 는 국외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위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인데, 교육법, 병역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는 사람의 경우 교육감의 유학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유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9. 1.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유화조치 이후 17세 미만자들의 경우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약 4주간의 단기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미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출국하기만 하면 학업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허가하는 학교가 있어 탈법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학을 원하는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을 상대로 마치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알선하고 그 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여 온 사

실, 그런데 위 유가 유학 희망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1989. 2.경 미국유학 경험이 있는 인기 여배우인 신청인에게 위 소외 회사에서 같이 일해 줄 것을 제의함에 따라, 신청인은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소외 회사의 강남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강남지사장」이란 직함을 사용하였고 같은 해 말경 위 소외 회사의 본사가 강남으로 이전한 후에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소외 회사 명의의 종합일간지 신문광고등에 신청인을 이사장으로 표기한 사진을 게재하도록 허락한 사실, 신청인이 담당한 업무는 위와 같이 유학생모집광고를 내는 데 있어 광고모델의 역할을 하는 일 외에도 위 소외 회사를 찾아온 유학희망자나 그 학부모를 상대로 신청인의 유학경험을 토대로 미국 내에서의 학교생활과 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 미국의 교육제도, 어학공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해 주는 일이었고 그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월 금 1,500,000원 정도의 보수를 받아온 사실, 신청인은 주 1, 2회 정도 소외 회사 사무실에 나와 1시간 정도씩 있으면서 위 1989. 2.경부터 1991. 3.경까지 약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 주었고 1990. 여름에는 소외 회사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토폴시험 없이 미국 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미국대학 관계자들을 안내하고 소개하였으며 통역을 담당한 일이 있었고 같은 해 7. 하순 경에는 미국에 있는 엘리엇트 콕이라는 중·고등학교에 약 30명의 유학희망자를 인솔하여 안내한 일이 있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위 유를 비롯한 소외 회사 관계자들과 신청인은 1991. 4. 15. 여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는 바 같은 해 5. 18. 신청인과 위 유 등의 여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무 결정이 되었으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위 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건의 유학을 알선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사기죄를 적용, 같은 날 구속기소되었으나 신청인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참고인인 신청외 유 (같은 혐의로 입건됨)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같은 날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실, 그 무렵 신청인은 1991. 3. 7.부터 같은 달 11.까지와 같은 해 4. 4.부터 같은 달 9.까지 두 차례 일본에 다녀온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소외 회사의 유학알선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알고 위 유의 사기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하였다는 점 및 신청인이 경찰에 입건된 이후 미국으로 도망하거나 경찰에 의하여 수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소을제1 내지 14호증, 소을제16호증의 4, 7, 8, 11, 19, 20, 21, 24, 26, 소을제17호증, 소갑제4호증의 29의 각 기재는 아래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립에 다름이 없는 소갑제4호증의 12, 13, 16, 17, 27, 30 내지 37, 39, 소

갑제5호증, 소갑제6호증, 소갑제7호증, 소갑제8호증의 1 내지 3, 소갑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은 1981. 12.경 미국으로 유학을 갈 때 그 수속을 밟아 주어 알게 된 신청외 유 의 제의로 소외 회사의 광고모델 겸 상담원으로 일하고 월 1,500,000원씩을 받았을 뿐이고 그 명칭만 강남지사장, 또는 이사장(이사장 직함도 신청인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이 사용하는 것을 수차례 만류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여 그냥 사용하도록 묵인하여 왔다)으로 되어 있었지 위 소외 회사의 유학알선행위가 불법적인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위 회사가 하는 유학알선행등의 업무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또 위 소외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2건의 유학알선행위에 대하여도 그 피해자들을 직접 상담하거나 알선했던 일이 없으며 위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이외에는 유학상담자들로부터 달리 돈을 받은 바가 전혀 없으며, 위 기소중지되었던 신청인에 대한 사기사건에 대하여도 1992. 6. 26. 혐의무 결정이 된 사실, 신청인이 이 사건이 문제될 무렵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일본에 다녀 온 사실이 있을 뿐 경찰에 입건된 이후 미국으로 도망하거나 경찰에 의하여 수배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는 피신청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다만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는 문제된 보도를 반박하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만 국한되고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인 피신청인 명의가 아니라 신청인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정정보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신청인 신청의 별지2의 정정보도문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경향」 제34면 전면의 사각 테두리 내에, 중앙에는 4×5cm 규격의 신청인의 사진을 싣고, 상단 중앙에는 제목 『정정보도문』을 특히 고딕체 활자로, 그 여백에는 별지1 목록기재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9포인트 본문 활자로, 각 가로로 게재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8. 20.

재판장 판 사 안 문 태
판 사 강 용 현
판 사 김 상 호

〈별지 1〉 정정보도문

1991. 4. 28.자 본지 제1150호 제34면 및 제35면에 『알선회사 최 는 월급쟁이 이사장』이라는 제목과 『미성년자 불법유학』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울시경은 중·고생 불법유학과 관련하여 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유 씨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崔 씨(28)를 수배했다. 이들은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崔양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도망가 있어서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주)코리아 아카데미의 불법유학사실을 알지 못하고 학생·부모에 대한 상담과 위 회사의 신문광고에 사진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월 금 150만원을 받았던 것이며 이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 지금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정정보도 신청인

〈별지 2〉 신청인이 신청한 정정보도문

1991. 4. 28.자 본지 제1150호 제34면 및 제35면에 『알선회사 최 는 월급쟁이 이사장』이라는 제목과 『미성년자 불법유학』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울시경은 중·고생 불법유학과 관련하여 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유 씨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崔 씨(28)를 수배했다. 이들은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崔양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도망가 있어서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崔 씨는 (주)코리아 아카데미의 불법유학사실을 알지 못하고 학생·부모에 대한 상담과 위 회사의 신문광고에 사진을 게재하는 조건으로 월 금 150만원을 받았을 뿐이며, 이 사건 발생 당시는 물론 지금도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1991.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발행인 심상기

□

교내소요 무더기 징계 보도에 대해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보도에서 반박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1991. 11. 20.자 판결(90카18577)

事實概要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윤재선 부장판사)는, 1991. 11. 20. 학교법인 영석학원이 경인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보도에서 신청인측에 반박기회를 주었으므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다」며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의 주장 중 △교사를 임명할 때 정식교사로부터 미리 사직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 보도내용이 이미 임용된 교사로부터는 미리 사직서를 받아놓는다는 취지가 아니고, △학교에서 학생 17명을 무더기로 무기정학처분한 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이는 명백히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고 또 반박기회를 주었고, △강 교사의 해임은 일방적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 이는 강 의 말을 그대로 인용보도하면서, 이어서 학교측 입장을 보도 쌍방 당사자의 입장을 나뉘게 보도했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경인일보 1990. 11. 6.자 15면 『교내 소요 무더기 징계』 제하의 기사에서 「영석고등학교는 교사를 임명할 때 사전 사직서를 받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으며, 학내 민주화와 관련 학내 소요를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학생처장들을 징계처분하고 이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강세철 교사를 부당 해임 통보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했다.(90경기중재7)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사실보도이므로 정정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0카18577 신문보도정정보도

신 청 인 : 학교법원 영석학원

의정부시

대표자 이사장 안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여 달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인일보사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1122-11

대표이사 임 상 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성 오, 장 성 근

변론종결 : 1991. 10. 16.

주 문 : 1.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피신청인 발행의 「경인일보」 제15면 우측 상단부분 중 세로 4단, 가로 약 10센티미터의 지면에 별지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4호 활자로 우측에 4단에 걸쳐,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 이름은 6호 활자로 그 좌측에 4단에 걸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 1. 원문보도내용

소감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90. 11. 6.자 경인일보 15면 우측 상단에 『교내소요 무더기 징계』라는 제목 아래 신청인이 운영하는 영석고등학교가 학내 민주화 요구와 관련, 학내소요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학생회장 이모 군등 3명을 퇴학처분하고 고모 군(2년)등 19명을 무기정학처분하는 등 무더기로 학사징계를 했으며 이 사태와 관련, 평소 학생들에게 의식화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강 교사를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이들 징계학생들에 따르면 평소 학교측이 교사를 임명할 때 사전 사직서를 받아놓는 등 전횡을 일삼아 오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다 지난 달 24. 학생 대표들이 모여 *학생중심의 학교를 만들어 줄 것 *교사들의 실질적인 권익신장 *학교재정의 부당지출 공개 등을 결의 학교측에 이를 전달하려 했으나 학교측이 집회를 막는 한편 26일 전격적으로 이군등 3명을 퇴학처분하고 양군등 2명을 무기정학에 처하는 한편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기 위해 27. 사전 모임을 가진 고군등 17명의 학생들을 추가로 무기정학처분했다는 것이다. 또 해고된 강 교사는 지난 6월초 1, 2학년 학생들에게 「터」, 「상록수」 등 일명 의식화노래를 가르치는 등 학교측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해오다가 이번 소요가 터지자 여기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육성희의 결의등 요식절차를 거쳐 일방적으로 3일 부당해임을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학교측은 징계학생들이 불법적 집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신분에 안맞는 행동을 해 어쩔 수 없이 징계 조치했으며 강 교사 해임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가 가로 6 내지 4센티미터 세로 4단 크기로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첫째, 위 기사 중 영석고등학교 교사를 임명할 때 정식교사로부터 미리 사직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둘째, 학생회장인 이군등을 퇴학처분한 것에 대하여 학생들이 항의집회를 갖거나 학교에서 학생 17명을 무더기로 무기정학처분한 일이 없고, 단지 1학년생인 남 군 등 9명을 근신처분하였을 뿐이고, 셋째, 강 교사의 해임은 일방적인 해임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임에도 피신청인은 사실과 달리 보도함으로써 위 기사의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위 영석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인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별지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도한 기사내용은 객관적으로 사실이므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청인이 결원된 교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신문에 공고를 내거나 사범대학에 추천을 요구하여 이에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인에게 이력서 등 교사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 나름대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우선 강사로 채용하고 정식교사로 채용하기에 앞서 경기도 경찰국에 신원조회를 의뢰하고 만일 결격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이 오면 다시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교사임용 신청을 내고 그 승인을 받으면 정식교사로 발령내는데 위 기간이 통상 2~3개월이 걸리므로 강사

끝으로 강 교사의 해임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소갑제4 내지 12호증, 소갑제 13호증의 1, 2, 14호증의 1, 2, 3, 4, 소을제6호증의 1, 2, 소을제9호증, 위 증인 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위 영석고등학교의 음악교사인 소외 강 은 1989. 6. 1. 위 고등학교의 음악교사로 부임한 후 그해 여름 경부터 교과 외의 내용인 「터」, 「상록수」 등의 노래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가 학부형들로부터 위 노래가 소위 운동권의 학생들이 데모를 할 때 부르는 건전치 못한 내용의 노래라면서 강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여 강 교사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위에서 본 학내사태에서 첫 번째 모임이 사전에 발각되어 학생회장등이 퇴학당하자 이를 합의하기 위하여 2차로 19

90. 10. 29. 월요조회시에 강 교사가 지도교사로 있는 밴드부의 학생들이 데모노래를 연주하면서 소요를 하려고 계획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되자 위 고등학교의 육성회와 어머니회에서 위 강 교사에게 학내소요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강 교사는 지난번 소위 운동권노래를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은 잘못이나 이번 학내문제와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변소하자 육성회와 어머니회에서는 더 이상 강 교사가 위 고등학교의 교단에 설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1990. 10. 31. 결의문을 다시 고등학교 교장에게 보내어 신청인은 1990. 11. 1. 위 강 교사에 대해 11. 3. 학교 회의실에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하였으니 출석하라는 통지를 보내고 11. 3. 10 : 30. 징계회의를 열고 강세철 교사가 1990. 6. 4. 시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동인이 관장하는 밴드부 학생이 주동이 되어 학내소요를 계획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징계를 요구한다고 하여 위 강 교사가 자신은 이번 학내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징계를 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징계위원 5명 전원이 참석하여 전원 강 교사를 해임하기로 결의하여 위 강 교사가 해임된 사실, 위 강 교사는 위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90카5803호로 지위보전 및 급료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는 1991. 4. 9. 위 강 교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이 사건의 신청인)이 1990. 11. 3. 강 교사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해임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피신청인은 강 교사에 대해 1990. 11. 4.부터 위 판결선고시까지 매월 금 771,366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위 강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일방적인 해임조치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해임된 것임에도 위 기사에서는 신청인의 해임조치가 일방적인 조치인 것처럼 보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보도의 내용은 위 「강 교사는... 3일 부당해임을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고 되어 있어 이는 강 교사의 주장 즉 자신이 부당하게 해임되었다는 것을 강 교사의 말 그대로 인용보도한 것이고 뒤이어 학교측의 입장 즉 강 교사의 해임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는 부분을 보도하는 등 쌍방 당사자의 입장을 나뉘대로 보도하고 있으며 위 보도내용의 취지는 비록 일방적으로 부당해임을 통보해왔다는 표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강 교사가 자신이 학교소요에 관련이 없음에도 관련이 있는 혐의를 두고 해고한 것은 그 비록 육성회의 결의등 징계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해임처분 그 자체 즉 해임처분의 사유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이지 육성회의 결의만으로 자신을 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해임하였다는 주장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와 별도로 그 해임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강 교사의 해임에 관한 원문보도내용은 신청인의 입장 즉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임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이라 할 것임에도 신청인이 제멋대로 이를 해석하고서 그에 대한 반박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 주장 역시 이를 요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어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11. 20.

재판장 판사 윤 재 선

판사 한 명 수

판사 임 치 용

정정보도문

1991. 11. 6.자 일간지 경인일보 제15면에 『교내소요 무더기 징계』라는 제목하에 의정부시 용현동 산 33 영석고등학교가 학내 민주화와 관련, 학내소요를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학생회장 이모 군등 3명을 퇴학처분하고 고모 군(2년)등 19명을 무더기로 무기정학 처분하는 학사징계를 하였으며... 학교측이 교사를 임명할 때 사전 사직서를 받아놓는 등 전횡을 일삼아... 항의집회를 갖기 위해 27일 사전모임을 가진 고군등 17명의 학생을 추가로 무기정학처분하였다... 여기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강 교사에 대하여 육성회의 결의등 요식절차를 거쳐 일방적으로... 부당해임 통보해왔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그러나 영석고등학교에서 교사임용시에 사전 사직서를 징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사실이 아니고, 학생들이 항의집회를 하거나 위 학교에서 학생 17명을 무기정학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위 강 교사에 대하여는 일방적인 해임조치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해임된 것이므로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어린이들에게 운동권 의식을 심어주는 이른바
「문제교사」로 지칭된 신청인은 이 사건 사실보도에
대해 이미 상당한 반론권을 행사했으므로
정정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2. 2. 20.자 판결(89카8917)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여헌 부장판사)는 1992. 2. 20. 최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방송청구소송에서 「신청인은 이미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상당한 반론을 행사한 이상 정정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며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보도는 신청인의 사전 동의 하에 대담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사실보도에 관한 대담장면을 방영함으로써 신청인의 입장과 주장을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 후 신청인을 자신이 방영하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문제된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MBC-TV 1989. 5. 14. 21:00 뉴스센터시간에 보도된 『천방지축조의 담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서울 신방학국민학교 담임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방송사가 자신을 어린이들에게 운동권의 의식을 심어주는 이른바 「문제교사」로 지칭하면서, 신청인으로 인해 「신방학국민학교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다」고 보도하는 한편, 신청인이 취재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따라 1시간 30분가량 자신의 교육관 및 교육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이를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고 일부만을 발췌하여 왜곡하고, 허위사실까지 보도함으로써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89서울중재30).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본건 보도내용은 취재기자의 개인적인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되지 않았으며 왜곡이나 과장보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

원 남부지원에 정정보도방송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신청인은 이와 함께 사과방송등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판결을 받았다.

判 決 文

사 건 : 89카8917 정정보도방송

신 청 인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용 환, 이 석 태, 김 형 태, 안 상 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진 국, 신 장 수

피신청인 : 주식회사 문화방송(文化放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창 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후, 한 만 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 병 석, 함 영 주, 최 재 경

변론종결 : 1991. 11. 22.

주 문 :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그가 방송하는 문화방송에 별지1.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 방송방법에 따라 별지2. 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위 정정보도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인에게 매주 금 5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신청인은 1989. 3. 2.부터 서울

소재 신방학국민학교에서

담임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하는 방송법인인 사실, 피신청인은 1989. 5. 14. 21 : 00 텔레비전 뉴스센터 시간에 약 11분 20초에 걸쳐 『천방지축조의 담임』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당시 담임을 맡고 있던 신방학국민학교 의 학급 교육 활동에 관하여 신청외 엄 이 취제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동 보도의 도입부에 프로그램

진행자인 소의 손석희가 「교육이라는 것은 발전적인 변화를 추구하되 서서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이론의 하나입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가치관을 갑작스럽게 심어줄 때 거기에는 혼란이 따를 것이고, 먼 훗날 그 어린이가 오도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신방학국민학교를 배경으로 엄 기자가 화면에 등장하여 「이 학교는 지금 한 젊은 여교사 때문에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은 우리나라 국민학교 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라고 서두를 꺼낸 다음 「올해 살된 교사 최 씨가 부임과 동시에 학급담임을 맡은 지 보름도 안되는 지난 3월 14일부터 이 학교에 파문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숙제도 제대로 내주지 않고, 사회시간에는 이상한 내용의 수업을 하는 것 같다는 항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라고 보도함과 동시에 위 신방학국민학교의 교감인 소의 노 이 신청인에게 보낸 「사회시간에 교과내용은 잘 취급하지 않고 울산 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로자 데모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의 말, 과제를 내주지 않는다, 김일성에게 편드는 듯한 내용의 말, 자녀를 다른 반으로 옮기고 싶다, 다른 반 아이들의 공부한 내용을 보면 부럽다라는 취지의 학부모로부터 항의전화가 왔으니 사실이면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와 「노 교감 선생님께 라는 제하의 위와 같은 학부모들의 항의는 사실이 아니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전화는 유언비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러면 교사 탄압 사례로 생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신청인의 반박편지를 낭독한 후, 신청의 엄 은 계속하여 「최 교사는 익명으로 된 전화는 교권침해와 교사탄압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상한 내용의 가사가 적힌 이른바 운동권에서 흔히 부르는 노래가 여러 어린이들의 일기장이나 약속장이라는 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급기야 4월 20일 학부모 29명은 최 교사에게 어린이를 맡길 수 없다는 탄원서를 관할 교육구청에 냅니다」라고 보도하고, 신방학국민학교 학부모 2명이 신청인이 교육한 노트 및 학급에 있는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신청인의 학습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신청인이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한 문 목사 북한방문 문제, 노사분규관계, 학생데모관계 등은 국민학교 과정에 부적합하고, 신청인이 담임하였던 의 특별활동 조 명칭이 괴상하며 신청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어린이를 맡길 수 없으므로 전화로 항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대담장면을 학부모들의 얼굴을 화면에 담지 않은 상태에서 방영하고, 다시 교실을 배경 화면으로 하여 신청의 엄 이 등장하여 「문제의 교실입니다. 책상은 물론 교실 전체가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칠판에는 내일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해서 풀어야 할 숙

제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보름전만 해도 이 교실의 분위기는 이렇게 않았습
 니다. 이 교실에서 이와 같은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1분단 2분단 같은 통상적인 분
 단 이름 대신에 말썽천재조, 핵폭탄과 유도탄조, 천방지축조 등등 기상천외의 이름이 사용
 되었습니다」라고 보도한 후, 신청인이 위와 같은 분단의 명칭은 학생들이 만화를 보고 나
 림대로 정한 이름일 뿐 신청인의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항변하는 내용의 대
 답장면을 방영하고, 「남북음악축전은 열려야 한다. 대통령이 선거때는 보통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문 목사가 통일에 대한 문제로 방북을 한 것
 인데 별을 주면 옳지 않다」라는 내용의 학생들의 학습활동 자료를 낭독한 후 「최 교사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른 인물이었음이 학교 관계자가 찍어 놓은 사진들과 복사물들이 말
 해 주고 있다는 말과 함께, 「신청인은 교장을 규탄하는 소리, 또 게시물 끝부분에 연호를
 표기함에 있어 헤어져 살아온 45년 ○월 ○일이라 표기하고, 보안법이 어떻고, 자유당 때
 이승만 박사가 왕창 돈을 먹어 버렸다 라는 내용의 4·19 관계 만화, 기타 도시빈민 자포
 자기의 말, 경희여상 데모 찬양 등 내용의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학교 배면 칠판에 게시
 하였다」고 비난하는 신방학국민학교의 교장인 신청외 은 의 신청인에 대한 비난 대담
 장면을 방영하고, 이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한 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사
 회 동태성의 민감한 배양 기타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라는 사회과
 교육 목표에 따라 행하여진 것인데, 신문스크랩 내용은 이를 직접 지도한 바는 없고 단지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게시한 것일 뿐이라는 신청인의 반박 대담장면을 방영하고, 이어서
 신청외 엄 은 「결국 최 교사는 지난 달 25일 학교로부터 담임자리를 박탈당합니다」라
 는 말과 함께 신청인의 전 근무지인 방학국민학교의 학부모들이 신청인을 담임직에서 박
 탈한 신방학국민학교의 처사는 부당하다면서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보도와
 함께, 「신청인이 전 근무지에서 학생들에게 자연식품을 많이 권한다든가 외국상품을 사용
 하지 말라고 교육시키는 등의 교육활동을 보고 젊은 교사가 패기있게 교육을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였는데 깊은 내용은 잘모른다」는 취지의 신청인의 전 근무지인 방학국민학교
 의 학부모와의 대담장면과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고 있던 신방학국민학교 학년주임
 교사인 신청외 황 이 「신청인이 참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신의 교직경력이 20년이
 되나 신청인과의 교육방식이 다르니 결국 자신이 참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밖에 되
 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담장면을 각 방영한 후, 문교부 장관 및 장학편수실장 방을 배경
 화면으로 하여 신청외 엄 은 「문교행정의 최고책임자들이 일선 국민학교 교단에서 무
 슌 일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과 함

게 「최씨는 에 알맞지 않는 교육의 시켰고 사회 전체가 합의를 본 교과내용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주장을 학생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내세워 학생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교육자 양성지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나 심지어 동료교사들은 최교사가 어떻게 교원자격증을 받았고 또 어떻게 임용되었으며 또 어떻게 담임까지 맡았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방영이라 줄여쓴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의 이 사건 텔레비전 보도프로그램인 9시(오후) 뉴스센터는 방송망을 타고 전국에 방영되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 사건 주장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보도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므로 방송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매주 금 5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는 신청인의 사전 동의하에 대담등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신청인의 개별적 교육활동에 대한 사실적 관계에 대하여는 사실에 기초한 충실한 보도를 행한 것이고,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입장 및 그에 대한 해명 등의 대담장면이 이 사건 보도에 같이 방영됨으로써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반박권을 행사한 데다가, 신청인의 이 사건 보도에 나타난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보도 부분은 사실적 관계에 대한 보도가 아니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후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영하는 「박경재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신청인을 출연시켜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보도에 나타난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론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다룬다.

3. 정정보도 청구권

언론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존립을 뒷받침 하는 기본적 요소로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언론의 보도가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여론형성에 미치는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의 피해는 참으로 큰 것이므로 이른바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피해자인 개인에게도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방송법 제41조는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게 정정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바, 위 방송법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대등한 방법으로 방송에 대하여 반박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입

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보도내용을 진실되게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보도내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형식적 권리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정보도청구는 사실보도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언론기관의 의견이나 논평에 해당하는 보도에 대하여는 반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실보도에 관하여도 신청인의 권리행사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예컨대, 원문보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정정보도를 구하는 사항이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점에 관련됨에 불과하거나, 언론기관 자신이 속보 등의 형식을 빌어 전의 보도를 충분히 정정하거나, 언론기관 스스로 피해자에게 별도의 반론 기회를 부여하였다거나, 요구된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원보도와 다른 내용이 없거나 오히려 이의대상인 보도내용을 합리화하는 내용인 경우, 인터뷰등에 의한 충실한 보도가 있는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원문 기사를 왜곡 해석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 정정보도를 함으로써 오히려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등의 경우 기타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언론기관이 이의 방송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당원의 판단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방영은 다소 평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신청인의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사실관계를 취재하여 보도한 내용이므로 방송법 소정의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바 신청인이 위 보도로 인하여 법익을 침해당하였음을 전제로 그에게 반론권을 부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제2호증(방송원고)의 기재와 이 법원의 각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를 방영하기에 앞서 신청인으로부터 동인의 교육활동에 관한 대담형식의 녹화방영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서 이 사건 방영을 하게 된 것이고 방영내용된 피고측 질문에 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단명칭은 학생들이 만화책등에서 따라 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분단의 명칭을 붙였고, 문익환 목사의 방북문제, 남북음악축전 등을 토론 학습의 소재로 선정하고 기타 신문기사등을 스크랩하여 교실 배면 칠판에 게시한 것은 학생들에게 사회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사회동태에 대한 민감성을 배양시켜 주고 기타 가치관의 올바른 형성과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회과 교육목표에 따라 이를 실시하였던 것이며, 위와 같은 교육 소재에 대하여 신청인은 특정한 목표에 따라 지도한 바 없이 단순히 토론의 주제로 삼거나 게시하였을 뿐이라는 내용의 반박 대담장면을 그대로 방영하였던 사실, 피신청인은 그후 신청인으로

부터 이 사건 보도에 대한 항의를 접하고 1989. 5. 26. 피신청인이 방영하는 「박경재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신청인 및 현직 교사로서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동조하는 신청외

와 신청인이 근무하던 위 신방학국민학교 관할 교육구청인 북부교육구청의 학무과장 신청외 및 당시 현직 교사로서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비교적 비판적인 신청외

을 각 출연시켜 「무엇이 참교육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위와 같은 교육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바르게 알아서 민주주의의 정착과 함께 분단민족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자기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주위 사람들의 어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해 주기 위하여 교과목표와 관련된 사회현상들, 예컨대 문 목사 방북문제, 지하철 노사 파업 사태, 대통령 등에 대하여 토론수업을 실시하였고 학생들로 하여금 TV 뉴스나 신문을 보도록 지도하였으며, 위와 같은 시사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한 수업은 사회시간에 실시한 토론수업의 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토론결과 또한 찬성과 비판의 다양한 견해가 도출되었으며, 신방학국민학교 학부모들 연명의 진정서에 서명한 사람 중 일부는 신방학국민학교 학부모가 아니었다거나,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서력기원 대신 「헤어져 살아온 45년 ○년 ○일」의 연호를 개인적 차원에서 사용하였고, 신청인은 천편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숙제를 지양하고 학생들 각자의 학습능력에 따른 차별과제를 부과하였으며, 이 사건 신청인이 담임하였던 교실의 배면 칠판에 게시하였던 「미완의 4·19」라는 제하의 만화는 「이야기한국사」에서 발췌한 것이고, 신청인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일요일이 다가오는 소리」 「도깨비 뺨스」 등의 노래는 문공부의 심의를 거쳐 음반으로 제작 배포되고 있는 노래로서 그 가락이 경쾌하고 흥겨운 노래이며, 신청인이 신방학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한 위와 같은 수업은 불과 한달여에 걸친 것으로서 그 결과를 선불리 논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실시한 위와 같은 교육활동은 세칭 「의식화교육」이 아닌 「참교육」이라는 취지의 의견 및 주장을 방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는 신청인의 사전동의하에 대담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사실보도에 관한 대담장면을 방영함으로써 신청인의 입장과 주장을 보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 후 신청인을 자신이 방영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문제된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신청인은 이를 통하여 위 보도에 대한 반론권으로서 이 사건 신청취지 별지2 목록 기재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반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 이외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위와 같은 교육활동에 대

하여 마치 어떠한 경향성이 있었던 것으로 이를 평가하여 보도한 부분은 피신청인의 의견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사실보도가 아닌 이상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달리 신청인의 교육활동을 잘못 평가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반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이 사건 신청취지 위 목록기재 ①항 및 ⑪항은 사실적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이라기보다는 신청인의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등에 관한 피신청인측의 의견보도에 대한 것이고, 일부 사실보도에 대한 반론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도의 주된 내용인 신청인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수적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이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이 신청인이 이미 이 사건 사실적 보도에 대하여 상당한 반론권을 행사한 이상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 청구는 정당한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인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2. 20.

재판장 판사 윤 여 헌
판사 전 오 영
판사 오 종 윤

〈별지 1〉 정정보도문 방송방법

1. 이 사건 판결문의 송달후 첫번째 일요일 21:00에 방송되는 문화방송텔레비전(MBC) 「뉴스데스크」의 정규 뉴스방송이 끝난 직후 광고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정정보도문」이라는 글씨를 화면 중앙 상단에 큰 글씨로 가로 표기하고, 그 다음줄에는 「1989년 5월 14일 뉴스센터」라는 글씨를, 그 다음줄에는 「천방지축조의 담임」이라는 글씨를 각각 시청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명조체 글씨로 화면 가운데에 가로로 표기하여 5초간 음향없이 송출함으로써 정정보도문이 방송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2. 이어서 직전의 뉴스데스크를 방송한 진행자가 별지 제2목록 「정정보도문」의 내용을 뉴스데스크의 뉴스진행보다 빠르지 않은 속도로 제목부터 읽어 방송하는 동시에 화면 상

단에는 「1989년 5월 14일 천방지축조의 담임의 정정보도문」이라는 글까지 계속 송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정정보도의 대상을 알 수 있게 하고 화면의 중, 하단에는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의 읽는 속도에 맞추어 정정보도문의 전문을 계속 두줄씩 적절한 크기의 명조체 글씨로 가로로 표기하되 한줄에 들어가는 글자수는 10자 내지 15자로 한다. 다만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소재목, 단락이 끝나는 부분은 10글자에 미달하여도 한줄로 처리한다.

〈별지 2〉 정정보도문

다 음

2. 최 교사의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교실에 아이들이 앉는 위치에 따라 통상적으로 1분 단부터 5분단까지 나누어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외에 특별활동이나 미술과 실과시간의 협동작업, 자연 시간의 실험과 토론 등을 위하여 아홉개의조를 나누었는데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속한 조의 이름을 자유롭게 붙였으며 최교사는 그 이름들이 어린이들의 밝고 친진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세대교체조」 「달려라 꼴찌조」 「노벨조」 「비둘기조」 「파란새싹들조」입니다.

이들에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을 위하여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 외에 어린이들의 수준에 알맞다고 생각되는 노래와 전통민요를 가르쳤습니다. 최 교사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친 노래는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아침이슬, 상록수 외에 춤백이, 캠프의 노래, 찔레꽃, 냉면, 진달래꽃 처녀, 포장마차, 감자꽃 등 10여곡입니다.

4. 1989년 4월 20일 최교사에게 어린이를 맡길 수 없다는 이유로 「29명의 학부모」 명의 로 제출된 진정서에는 실제로는 27명만이 서명을 하였고 그중 최 교사의 학교에 있는 어린이의 부모는 15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들로부터 권유를 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반 또는 다른 학급에 다니는 어린이의 학부모들이거나 학부모가 아닌 이웃사람들입니다. 또 이 진정서가 제출된 후 1988년까지 최 교사가 담임을 했던 학급의 학부모 70여명이 최 교사의 담임박탈이 잘못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1989. 4. 26. 신방학국민학교 교장이 소집하여 열린 학부모회의에서는 최 교사 학급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모두 최 교사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최 교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항의한 일도 있습니다.

5. 최 교사는 사회시간에 교과서의 내용에 따라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5학년 1학기 사회과목이 정치·경제를 가르치는 과정인 점과 문교부가 발간한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사회 5-1의 내용을 참작하여 사회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의 기사를 조별로 나누어 읽고 토론하게 하였으며 어린이들의 자율적인 토론내용을 서로 발표하게 하였습니다.

6. 당시 최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읽어야 할 일간신문을 제시해 주었을 뿐 구체적인 주제에 대하여는 지시한 바가 없고 어린이들이 자기가 속한 조의 친구들과 의논하여 읽고 토론할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아홉개의 조 사이에도 구체적으로 읽고 토론한 신문기사의 주제가 서로 달랐습니다. 어린이들이 토론한 주제 가운데에는 남북음악회, 대통령의 시청방문, 문 목사의 북한방문, 지하철 노조의 무임승차실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그룹이나 학생데모관계, 그밖의 노사분규관계는 주제 가운데에 포함된 일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조별로 읽은 일간신문은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 여덟개의 시중 일간신문입니다. 토론의 과정과 내용은 어린이들의 자율에 맡겨졌고 최 교사가 어떤 결론을 내리도록 강요하거나 암시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또 토론된 주제에 대하여 어린이는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평가를 자유롭게 내렸으며 하나의 획일적인 의견을 가지게 되거나 표시한 일은 없습니다.

7. 교실의 환경정리는 학교에서 제시한 지침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같은 학년의 다른 동료교사들과 의논하여 자율적으로 하였습니다. 최 교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만든 환

경정리란은 교실 뒷면 가운데 칠판에 한국의 인물평전, 과학학습, 이달의 역사, 이달의 행사, 시와 노래, 다같이 읽는 동화, 밤하늘의 별처럼, 이웃사람들, 교사도 일기를, 시대의 아픔, 교사의 기쁨, 종알종알 등의 난을 배치하고 그 양쪽으로 어린이들의 글쓰기 작품을 붙였습니다.

8. 글쓰기 작품란은 학급에 속한 모든 학생별로 고정란을 만든 다음 일주일에 한번씩 어린이들이 겪은 일이나 자연환경의 변화 등을 주제로 글을 쓰게 하고 자기의 작품을 해당 난에 계속 붙여 나감으로써 모든 어린이가 자기 글쓰기의 변화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모두 읽고 감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약 6주일 동안 학급 전체 어린이들이 쓴 300편 이상의 작품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 중에 아침조회시간에 장난하는 어린이를 교장선생님이 불러내어 심하게 나무란 사건에 대하여 어린이의 솔직한 느낌이 표시된 글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내용도 「교장을 규탄하는 소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최 교사가 그러한 작문을 따로 붙여 놓은 것은 아닙니다.

9. 최 교사는 국민학교 4학년의 수준에 맞는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이 헤어져 있음을 일깨우기 위하여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쓴 편지 및 「교사도 일기를」이라는 환경정리란에 붙여 놓은 최 교사의 일기에 「헤어져 살아온 45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로서 공식적인 문서에 쓰거나 어린이들에게 그렇게 쓰라고 요구한 일이 전혀 없으며 어린이들도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일부는 그러한 표현을 따라 쓰기도 하였고 또 쓰지 않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10. 최 교사는 환경정리란에 4·19를 주제로 한 만화의 평화신문 등에 난 기사를 오려붙인 일이 있습니다. 그중 4·19에 관한 만화는 4·19주년을 맞아 신방학국민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이야기 한국사」 10권 중 4·19에 관한 내용을 덧붙이거나 빼지 않고 만화로 그린 것이며 신문의 기사는 「우리의 정의로운 경희여상 아이들」 등으로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거나 올바른 교육을 모색하는 내용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테모를 찬양한다든가 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1. 최 교사는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경기국민학교의 강사를 거쳐 서울 방학국민학교에서 4년간 교과담당 및 담임교사로 근무하다가 신방학국민학교로 전보되었으며 교육을 하는 가운데 교육과정의 테두리안에서 어린이들을 밝고 자율적으로 키우는 것 외에 어떤 「특정목적」을 가진 일이 없고 어린이들에게 「사회 전체가 합의를 본 교과내용에서 벗어나 주관적인 주장을 강요」한 일이 없습니다. □

신청인이 소유 임야를 매각하면서 지목변경 조건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한, 신청인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있다

부산지방법원 1992. 8. 18.자 판결(92카1386)

事實概要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재판장 한기춘 부장판사)는 1992. 8. 18. 김재광 전 국회 부의장 비서관인 이 씨가 경상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신청이 일부 이유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경상일보 1992. 1. 3.자 15면 『중앙 고위층 결탁여부 수사 대립 사기분양 20억 「로비자금」 사용 가능성』 제하의 기사와 1. 4.자 15면 『울산군 공무원 소환조사』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이 산림보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목변경해 준다는 조건으로 자신 소유 임야를 시세보다 비싸게 대림건설에 매도한 후 지목변경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도되자, 신청인은 유언비어를 마치 국가기관에서 수사한 결과인 양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 했었다(92경남중재1).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무혐의로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정정보도하겠다고 주장, 중재불성립되자, 신청인이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 했다.

決 定 文

사 건 : 92카1386 정정보도

신 청 인 : 이

경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홍

피신청인 : 경상일보사

울산시 남구 신정1동 635의 9

대표자 이 동 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환

- 주 문 :** 1. 피신청인은 이 판결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경상일보」 사회면 기사란의 하단에 가로 약 19센티미터, 세로 2단의 크기로 별지목록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 『정정보도문』은 50급 고딕체 활자로서 위쪽에 가로로, 정정보도 내용은 13급 명조체의 본문활자로서 그 옆과 아래쪽에 세로로 게재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8. 18.

재판장 판사 한 기 춘

판사 이 수 용

판사 이 승 호

정정보도문

본보 1992. 1. 3.자 및 같은 달 4일자 사회면에 대림건설 아파트 사기 분양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지주이던 김재광 전 국회의장의 비서관인 이 씨가 산림 보전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목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소유 임야 1만2천여평을 대림건설에 시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매도한 후 지목변경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위 이 씨가 자신의 소유 임야를 대림건설에 팔았다는 사실 외에 위와 같이 지목변경을 받아준다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그 지목변경건의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광고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이라 볼 수 없고 신청인이 그 광고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9. 15.자 판결(92카기474)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1992. 9. 15. 신 씨가 京鄉新聞社 등 8개 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광고는 언론기관의 사실적 주장이 아니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광고는 언론기관이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해 주는 광고주의 주장에 불과할 뿐 언론기관이 여론의 형성등을 목적으로 공표한 사실적 주장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신청인이 그 광고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京鄉新聞 등 7개 신문 1992. 6. 10.자 1면 하단과, 東亞日報 6월 11일자 1면 하단에 게재된 민주당 정책 광고에 의해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정서생활상의 저항과 불쾌감을 느끼는 등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

담당 중재부는 법원의 기각이유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고,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 신청기각결정을 받은 것이다.

決 定 文

사 건: 92 카기 474 정정보도

신청인: 신

서울

(정치공해추방 캠페인)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최 종 룰

2.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윤 형 섭

3. 주식회사 세계일보사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

대표이사 박 보 희

4.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 재 국

5. 주식회사 한겨레신문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의 25

대표이사 김 명 걸

6. 주식회사 국민일보사

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의 16

대표이사 조 용 우

7.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병 관

8.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홍 두 표

주 문 : 1.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판결이 송달된 후 피신청인들이 최초로 발행하는 경향신

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각 1면 하단에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안)을 별지2 기재 신청외 민주당의 『지방예산을 4조 2천억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문과 같은 판형, 같은 크기, 같은 활자체로 게재하라.

이 유 : 신청인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그들이 발행하는 1992. 6. 10.자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중앙일보의 각 1면 하단에, 피신청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그가 발행하는 같은 달 11.자 동아일보의 1면 하단에, 신청외 민주당의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제목의 별지 2 기재 광고문을 각 게재하였는 바, 위 광고문은 허위 내용의 광고로서 위 광고문의 공표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정서생활의 저항과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았으므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문(안)의 게재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은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중략)...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신청인들이 게재하였다는 신청외 민주당 명의의 위 광고가 위 법에 정한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으로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광고는 언론기관이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에 의하여 광고주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를 그대로 게재해 주는 광고주의 주장에 불과할 뿐, 언론기관이 여론의 형성 등을 목적으로 공표한 사실적 주장이라고 할 수 없는데다가, 광고는 언론 기관이 광고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고 이를 게재해 주는 것임에 반하여 정정보도는 이를 무료로 게재해 주어야 하는 것이어서 이른바 대등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의 게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광고주 또는 언론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구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광고 자체를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위 광고의 공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에서 말하는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6. 1. 28.선고, 85 다카 1973 판결 참조), 신청인이 위 광고문에서 지명된 바 없음은 위 광고문 기재 내용에 의하여 명백하고, 또 신청인이 그 광고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불 필요 없이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9. 15.

□

재판장 판사 정 지 형

판사 이 태 섭

판사 이 광 만

남원시 의회의원인 신청인들이 토지 이용계획에 관여,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

전주지방법원 1992. 10. 29.자 판결(92카기50)

事實概要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이흥기 부장판사)는 1992. 10. 29.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전북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남원시의 도시계획에 특혜의혹이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남원시 의회 의원들이 정정보도를 요구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간접적으로 여론의 이름을 빌어 오해할 소지가 있는 형식으로 행하는 보도태도는 무책임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라 볼 수는 없지만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들의 사건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전북일보 1992. 6. 11.자 13면 『남원시 도시계획에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남원시 의회 의원들이 토지이용계획에 관여하여 특정지역과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관계 공무원

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되자, 남원시 의회는 공식 주례회의에서 남원시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균형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했다(92전북중재7).

중재결과, 피신청인은 시의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도시과장에게 직접 도시계획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목격, 특혜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어 정정보도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전주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2카기50 정정보도

신 청 인 : 1. 김

남원시

2. 김

같은 시

3. 김

같은 시

4. 공

같은 시

5. 조

같은 시

6. 오

같은 시

7. 김

같은 시

8. 윤

같은 시

9. 최

같은 시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전 봉 호

피신청인 : 주식회사 전북일보사(全北日報社)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10의 5

발행인 서정상

심문종결 : 1992. 10. 8.

주 문 :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1992. 6. 11.자 전북일보 제13면에 게재한 『남원시 도시계획 특혜의혹, 일부 의원들 지나친 간섭』이란 제하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정보도하라.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이 유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1992. 6. 11.자 전북일보 제13면 기사란에 『남원시 도시계획에 특혜의혹』이라는 제목과 『일부 의회의원들 지나친 간섭』이라는 소재목 아래 「특히 시의회 의원들은 비공식 개별적으로 토지이용계획에 관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을 특정지역과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 직, 간접 압력을 행사해 오면서 공익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할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먹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들은, 남원시 의회 의원 공식 주례회의에서 남원시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도시계획안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이 특정지역과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지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으로 압력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므로 이의 정정을 구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본 사건 기사 중 사실적 주장은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그 진위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청구의 당부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나아가 그 진위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안은 1990. 12.경 주민과 시의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가 마쳐져 그 확정절차만 남았었는데 확정 전 남원시 의회 의원들에 의해 3차례에 걸쳐 그 안이 수정됨으로써 당초 예정했던 일정보다 6개월 이상이나 지연되었고 몇몇 의원들은 법정절차를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남원시 도시과장에게 직접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함으로써 그 계획안의 확정을 기다리는 남원시 시민들 사이에서 시의회 의원들이 특정지역과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직, 간접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에 찬 여론이 형성되자, 피신청인은 이를 기사화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거나 잘못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신문은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 자신의 올바른 견해를 공표하여 건전한 여론을 형성시키는 데에 그 책임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그가 수집한 남원시 의회 일부 의원들의 도시계획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그에 따른 도시계획안 확정지연이라는 기사거리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여론의 이름을 빌어 일부 시의회 의원들이 공익에 반하고 특정인의 사익만을 위하여 시당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는 내용의 「...비판이 있다」는 전문형식의 보도 태도는 다소 무책임한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실에 대한 피신청인의 보도태도가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기는 하나 피신청인의 위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0. 29.

□

재판장 판사 이 홍 기

판사 김 영 성

판사 오 재 성

신청인이 수입제한품목인 호주산 천연벌꿀을 수입,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1. 26.자 판결(92가77904)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1992. 11. 26. 벌꿀수입업자인 성

씨가 농민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에서 「보도내용이 사실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며,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계산내역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농민신문 1992. 5. 1.자 『벌꿀 불법수입 단속 시급』 제하의 기사에서 「선진물산(대표 성)이 수입제한품목으로 되어 있는 호주산 천연벌꿀을 국내에 들여와 터무니 없이 비싼 값에 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되자 신청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했다.(92서울중재70)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한국양봉협회가 관세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근거한 사실보도라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2카77904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성

서울

송달장소 : 서울

피신청인 : 사단법인 농민신문사

서울 종로구 종로1가 36

대표자 이사 한 호 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경 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백 수

주 문 : 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판결이 송달된 후 피신청인이 최초로 발행하는 농민신문의 제4면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 중 제목 『정정보도문』을 본문기사 제목의 활자크기로, 그 내용을 본문 활자크기로 2단에 걸쳐 게재하라.

이 유 :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특수일간신문인 1992. 5. 1.자 농민신문의 제4면 우측 하단에 『별꿀 불법수입 단속 시급』이라는 제목과 『호주산 변칙으로 들여와 폭리』라는 소제목 아래 「수입제한품목으로 묶여 있는 외국산 천연벌꿀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량 불법 수입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호주 시드니에서 <골든넥타>(리얼레자우드 허니)라는 상표가 붙은 호주산 천연벌꿀 1t(2kg들이 5백개)이 항공편으로 김포에 들어왔음을 확인했으며... (중략) 특히 벌꿀수입업자들은 외국에서 벌꿀을 탁송할 때 국내 수취인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 기재토록 한 다음 국내 도착 후에는 한 사람이 모두 찾아가는 변칙적인 수입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방법도 주로 연고가 있는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개별 방문해 판매하는 점조직 형태의 외판형식을 취하고 있어 국내 양봉농가의 피해는 물론 벌꿀유통질서마저 크게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벌꿀수입업자들은 또 수입벌꿀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진물산(대표

의 경우 호주산 천연벌꿀제품 <골든넥타> 2kg들을 국내산의 2배, 호주 현지 값의 6~7배에 달하는 4만원씩에 팔고 있다고 한국양봉협회측은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총 2단 73행에 걸쳐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2. 5. 1.자 피신청인의 신문보도에 대하여 14일이 지난 같은 달 29.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간신문의 경우 피해자는 분쟁된 공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고(위 법 제16조 제1항), 정정보도청구권이 있는 자 또는 그 상대방은 분쟁된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1월(제16조 제1항의 경우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위 법 제18조 제1항)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때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분쟁된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라고 할 것이므로(위 법 제18조 제1항), 1992. 5. 1.자 피신청인의 신문보도에 대하여 같은 달 29.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신청인의 중재신청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청인이 위 기사 중 「수입제한품목으로 묶여 있는 외국산 천연벌꿀이 변칙적인 방법으

로 대량 불법 수입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벌꿀수입업자들은 외국에서 벌꿀을 탁송할 때 국내 수취인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 기재토록 한 다음 국내 도착 후에는 한 사람이 모두 찾아가는 변칙적인 수입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방법도 주로 연고가 있는 가정집이나 사무실을 개별 방문해 판매하는 점조직 형태의 외판 형식을 취하고 있어 국내 양봉농가의 피해는 물론 벌꿀 유통질서마저 크게 혼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벌꿀수입업자들은 또 수입벌꿀을 터무니 없이 비싼 값에 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선진물산(대표

의 경우 호주산 천연벌꿀 제품 <골든넥타> 2kg들이를 국내산의 2배, 호주현지값의 6~7배에 달하는 4만원씩에 팔고 있다고 한국양봉협회측은 주장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 2kg들이 호주산 벌꿀의 경우 수입가격이 1kg당 미화 12불로서 한화로 는 약 19,200원이 되고 여기에 관세 3,840원(19,200×20%), 항공 운송료 8,000원, 통관수수료, 인건비 및 통신비 등 부대비용 10,000원을 모두 합하면 금 41,040원으로서 위 기사에서 말하는 판매가격 40,000원보다 더 높고, 신청인은 위 호주산 벌꿀에 대한 관세를 모두 납부하고 적법하게 수입하였으므로, 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으로 「선진물산

이 수입벌꿀을 터무니 없이 비싼 값에 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확인 결과 오보임이 밝혀졌습니다. 선진물산은 벌꿀을 대량 수입했거나 불법 유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하는 위 정정보도문은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여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소갑제2호증(국제건강산업전시회 팸플렛), 소갑제3호증, 소갑제7호증(각 오퍼시트), 소갑제4호증(운임표), 소갑제5호증(영수증), 소갑제6호증(사업자등록증), 소갑제8호증(수입면장), 소갑제9호증의 1, 2(각 사진), 소을제4호증의 1(진정서), 2(명함), 3(사진), 소을제4호증의 1(세금계산서), 2(지불증), 소을제6호증의 1, 2,(품목별수출입요령 책자 표지 및 내용), 소을제7호증의 1, 2(각 신문), 소을제8호증(진정서에 대한 회신), 소을제9호증의 1, 2(국제건강산업전시회 책자 표지 및 내용), 소을제10호증(출품신청서), 소을제11호증의 1, 2(무역통계월보 표지 및 내용), 소을제12호증의 1(진정서에 대한 중간통보), 3(조사결과보고), 4(편지봉투), 5(진정서), 6(조사보고), 7(수출입공고사본), 8 내지 18(각 수입신고 내역조회), 19(수입신고서 사본), 20(경위서), 21(무환수입물품 과세가격조정)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이종순의 증언에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빌딩 904호에서 선진물산이라는 상호로 도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신청인은 축산업협동

조합중앙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는 수입할 수 없는 수입제한품목인 천연벌꿀을 위 중앙회의 추천 없이 수입할 목적으로 1992. 3. 11. 호주국 시드니 소재 신청외 이 발송한 호주국 벌꿀 88kg을 위 이 이 국내 거주 친척들에게 발송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해 3. 18.부터 4. 7.까지 사이에 신청외 민 외 10명 명의로 각 8kg씩 분산하여 소정의 관세(뒤에서 보는 과세가격의 20%)를 납부한 후 통관한 사실, 신청인은 같은 해 3. 22.에는 위 이 발송한 같은 벌꿀 48kg을 신청인이 1992. 6. 4.부터 같은 달 8.까지 사이에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6회 국제건강산업전시회에 전시용으로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라고 신고하여 위 중앙회의 추천을 면제받고 위 벌꿀 48kg을 수입한 사실, 그런데 신청인이 위 전시회에 출품신청한 전시용 물품은 위 호주산 천연벌꿀이 아니라 수입자유화 품목인 호주산 로얄젤리 제품이었던 사실, 신청인은 위 전시회에 호주산 로얄젤리 제품을 전시하면서 위와 같이 수입한 호주산 천연벌꿀 136kg 중 극히 일부를 위 전시회에 같이 출품하였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벌꿀은 이를 국내에서 2kg들이당 금 000원 정도에 판매한 사실, 한편 신청인이 수입한 위 천연벌꿀의 호주 현지 가격은 1kg당 호주화 5불 정도로서 한화로 금 2,730원 정도(호주 1불의 1992. 10. 24. 현재 전신환 매도율은 545.37원이다)이고, 항공운송료는 1kg당 4,000원 정도이며, 위 수입가격에 운송료등을 포함하여 결정되는 천연벌꿀에 대한 관세부과 과세가격은 1kg당 미화 12불(한화 약 금 9,324원)로서 신청인은 위 1992. 3. 22. 수입한 벌꿀 48kg에 대하여 총 89,510원($9,324\text{원} \times 48\text{kg} \times 20\%$)의 관세를 납부한 사실, 따라서 2kg들이 벌꿀의 경우 수입가격과 운임 및 관세를 모두 합하여도 금 17,190원($(2,730\text{원} \times 2) + (4,000\text{원} \times 2) + (89,510\text{원} / 24)$)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수입제한품목인 위 천연벌꿀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추천 없이 발송자의 국내 거주 친척들이 수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통관하거나 또는 전시회 출품 목적으로 가장하여 위 중앙회의 추천을 면제받고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호주산 천연벌꿀을 불법, 변칙적으로 수입하여 국내 유통시켰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천연벌꿀의 매입원가에 관하여서도 호주 현지가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kg당 호주화 5불로서 한화로 금 2,730원 정도에 불과함에도(따라서 위 기사에서 신청인이 2kg들이 호주산 천연벌꿀을 호주 현지값의 6~7배에 달하는 금 40,000원씩에 팔았다고 보도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신청인은 관세부과 과세가격으로 결정된 1kg당 미화 12불을 호주 현지 가격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관세 3,480원($12\text{불} \times 2\text{kg} \times 20\%$)을 가산한 다음 다시 호주에서 김포까지의 운송료 8,000원 및 통관수수료, 인건비 등 부대비용 10,000

원을 합산하여 위 2kg들이 벌꿀의 매입원가는 금 41,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같은 계산 내역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허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은 앞서 본 수입가격, 운임, 관세 등을 모두 합한 2kg당 금 17,190원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인건비등 부대비용 10,000원(신청인 주장과 같이 통관수수료, 인건비 등으로 금 10,000씩이나 소요될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을 합산한다 하더라도 금 27,190원 정도인 위 벌꿀 2kg들이를 금 40,000원 정도에 판매한 이상 그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셈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는 「선진물산(대표)이 수입벌꿀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확인 결과 오보임이 밝혀졌습니다. 선진물산은 벌꿀을 대량 수입했거나 불법 유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은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26.

재판장 판사 정 지 형
판사 이 태 섭
판사 이 광 만

별지(정정보도문)

농민신문 1992. 5. 1. 자 4면에 보도된 『벌꿀 불법수입 단속 시급』 제목의 기사 중 선진물산(대표)이 수입벌꿀을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팔아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 확인 결과 오보임이 밝혀졌습니다.

선진물산은 벌꿀을 대량 수입했거나 불법 유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보도 신청인

□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북한의 대남적화노선
추종집단이라는 보도는 기자의 주관적 판단 내지
의견이고,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1.26.자 판결(92카기649)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1992. 11. 26.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성 준비위원회와 동위원회의 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이 씨가 서울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게재청구소송에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원문기사는 기자의 주관적 판단 내지 의견에 불과하여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할 것이고,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정정보도문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고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해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서울신문이 1992. 6. 27.자 18면 『국내외 망라한 북의 「主思」 추종집단』 제하의 기사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재야운동권의 친북성향인사들인 이른바 주사파 계열에 의해 장악되어,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신청인은 이 기사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음해하고, 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했다(92서울중재133).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중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決 定 文

사 건 : 92카649 정정보도게재

신 청 인 : 1.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

서울

대표자 위원장 직무대행 강

2. 이

충북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중

피신청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윤 형 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주 문 : 1.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결정이 송달된 후 피신청인이 최초로 발행하는 서울신문의 초판부터 게재당일자 최종판까지 제18면 좌측 상단 부분 지면에 가로 2.4센티미터, 세로 18.5센티미터의 크기로 별지 기재 정정문 중 제목『범민련 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고딕체 영호 활자로, 제목 좌측에 위 정정문 중 소제목 1『자민련이 국내외 망라한 북의 주사 추종집단은 오보』를 세로로 명조체 초호 활자로, 그 좌측에 위 정정문 중 소제목 2『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에 따라』를 세로로 명조체 초호 활자로, 그 좌측에 정정보도내용 및 정정보도 신청인들 성명을 본문 초호 활자로 7단에 걸쳐 게재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1.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서울신문의 1992. 6. 27.자 제18면 우측 상단에『국내외 망라한 북의 「주사」 추종집단』이라는 제목과『「범민련」의 정체와 목표』라는 소제목 아래「범민족대회를 위한 범민련의 제1 추진 주체는 베를린 3자 회담을 주도한 북한 공산정권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중략) 조직소위, 재정소위, 정책소위 등의 소위원회는 사실상 재야운동권의 친북성향 인사들이 실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주사와 계열에 의해 장악돼 있는 실정이다. (중략) 범민련은 겉으로는 남북합의서 이행등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슬로건을 내걸고 실제로는 반전, 반핵, 미군철수 등과 연방제 통일을 위한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지지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지난 90년 9월 15일자 전민련 신문에 실린 범민족추진본부의 범민족대회 평가서에도 남·북한

해외를 망라한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적 단결의 사상 및 조직적 조건 마련 등 5개항을 명시 김일성이 주장해 온 민족통일전선의 추종세력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총 7단 137행에 걸쳐 게재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서울신문에 공표된 위 기사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이라고 약칭한다) 남측본부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모임일 뿐 독립된 조직이 아니고, 대표자의 선임, 총회의 운영방법,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 등이 정관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현재 구성원은 신청인 이○○ 혼자 뿐이므로 위 신청인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가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신청인 위원회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으므로 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대표자 강○○은 위 신청인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인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신청인 이관복은 위 기사에서 거명되지 않았고 본건 기사에 의하여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신청인은 본건 기사에 의한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신청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이하 신청인 위원회라고 약칭한다)가 정정보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건대, 소갑제3호증(내규), 소갑제5호증, 소을제2호증(각 판결), 소갑제6호증의 1(범민련결성 베를린 3자회담 관련 자료집 표지), 2(범민련결성 베를린 3자실무회담까지의 경과과정), 소을제1호증(조국통일범민족연합 규약초안)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1990. 8. 15. 판문점에서 범민족대회 북측 추진본부측과 해외본부측이 남·북 해외연대 공동투쟁체로서 소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결성하자고 합의한 후, 1990. 11. 19. 베를린에서 개최된 베를린 3자 회담에서 통일운동체의 명칭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으로 결정되고, 그 지역조직으로서 남·북 해외 본부를 각 구성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신청외 이창복등 40인은 1991. 1. 말까지 범민련 남측본부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후, 1991. 1. 23. 위 신청인 이○○ 등 60명이 범민련 남측본부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내규(위 소갑제3호증)를 채택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신청외 문○○을, 부위원장으로 신청외 계훈제등 5명을, 준비위원으로 신청인 이○○ 등 144명을, 실행위원장으로 위○○을, 실행위원으로 위○○ 등 12인을 각 선출한 사실, 위 소갑제3호증 내규는 「준비위원회는 남측본부의 결성을 마칠 때까지 준비과정에서 업

무상 원환을 기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 총회에서 구성한 실행위원회가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실행위원회는 총회의 결의사항과 제반업무를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준비위원회는 1991. 2. 8. 남측본부를 결성한다. 준비위원회에 정책소위, 조직소위, 재정소위를 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법인 사단이란 계속성이 있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그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를 집행할 기관과 대표자 및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 등이 사단 규약등으로 정해져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 위원회는 1991. 1. 23.자 모임에서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문익환을 선출한 다음 위 내규(소갑제3호증)를 채택하였으나, 그 내용은 1991. 2. 8. 범민련 남측본부를 결성한다는 한시적인 목적으로, 위 남측본부 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방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위 준비위원회에 계속성이 있는 목적이 있다든지 총회의 운영이나 대표자의 선임방법에 관한 규약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신청인 위원회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정정보도청구권의 재판상 행사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신속, 엄정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특수한 소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당사자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엄격한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비록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정보도게재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인 경우에는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소갑제4호증의 1, 2(회의록 표지 및 내용), 소갑제5호증(판결), 소을제3호증의 2, 6, 13, 14(각 유인물)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 위원회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1991. 2. 8. 범민련 남측본부를 결성하지 못하고 위원장 문 이 구속되자 1991. 6. 29. 69명이 모여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강 을 선출하는 등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 위원회는 사회생활상 하나의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개체로서 정정보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1991. 6. 29. 위원장 직무 대행으로 선출된 강 은 신청인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 건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 위원회가 당사자 능력이 없다거나 강 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신청인 이 이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소정의 피해자인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법에서 말하는 피해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

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 내지 반박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97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사에서 위 신청인이 직접 지명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민련 남측본부결성 준비위원회에는 조직소위, 재정소위, 정책소위 등 소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는 사실상 주사파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는 실정이다」고 보도되었고, 한편 소갑제5호증(판결)의 기재에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청인은 1991. 1. 25. 위 재정소위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신청인은 위 보도내용등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신청인은 위 법 소정의 피해자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신청인들이 구하는 이 사건 정정보도에 관하여 살펴건대, 신청인들은 첫째 위 기사 중 「범민족대회를 위한 범민련의 제1추진 주체는 베를린 3자 회담을 주도한 북한 공산정권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보도한 부분에 관하여 「범민련은 남한측의 민간통일운동 진영이 북한과 해외동포들에게 그 결성을 제의하고 북한과 해외 동포들이 그 제의를 받아 들여 1990. 7. 남·북 해외 3자 실무회담을 열고 1990. 8. 15. 제1차 범민족대회를 열게 된 것이므로 베를린 회담을 주도한 측과 범민련의 제1추진 주체도 남한의 민간운동 진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문 보도가 사실적 주장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할 것인데, 위 기사 부분은 그 앞에서 「범민련은 지난 90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범민족대회> 개최를 이른바 범민족통일운동을 벌인다고 남·북한 및 해외 인사 9명이 이른바 <3자 회담>을 갖고 태동시킨 단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합의에 따라 북한의 이른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부위원장 윤 을 본부장으로 하는 북측본부와 재독교포 윤 씨를 위원장으로 하는 <해외본부>가 지난해 1월 결성되었으며 이들과 함께 결성하려던 <남측본부>는 등 추진 세력의 핵심인사들이 구속되는 바람에 <준비위원회>만 발족시켜 문 씨를 위원장으로 뽑았으나 문씨 또한 구속돼 강 씨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삼아 활동해 오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따라서 범민족대회를 위한 범민련의 제1추진 주체는 베를린 3자 회담을 주도한 북한 공산정권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위 범민련의 제1추진주체에 관한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 내지는 의견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기사에 관한 신청인들의 정정보도청구는 이유없다.

다음으로, 위 기사 중 「조직소위, 재정소위, 정책소위 등의 소위원회는 사실상 재야운동권의 친북성향 인사들이 실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주사파계열에 의해 장악돼 있는 실정이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신청인들은 「범민련 남측준비위원회에는 3개 소위가 있는데 3개 소위에 관련된 사람들 중 친북성향의 주사파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으며, 특히 재정소위 위원장인 신청인 이 ○은 고등공민학교 국어교사로 7년 4개월, 대명중학교장으로 13년을 근무하는 등 교직에 몸 담고 있었고 제3공화국 시절부터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민주투쟁을 하다가 투옥된 적도 있는 바, 친북성향 주사파 계열에 속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구하는 위 정정보도문은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소갑제5호증, 소을제2호증(각 판결), 소을제5호증의 1, 2(각 책자)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 ○ 등 신청인 위원회 구성원들은 동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재판에서, 위 신청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남 적화 선전, 선동 전략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신청인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신청인 이 ○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의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신청의 ○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모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3개 소위에 관련된 사람들 중 친북성향의 주사파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는 부분과 「신청인 이 ○이 친북성향 주사파 계열에 속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는 부분은 그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여 이부분 정정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신청인 이 ○이 고등공민학교 국어교사로 7년 4개월, 대명중학교장으로 13년을 근무하는 등 교직에 몸담고 있었고 제3공화국 시절부터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민주투쟁을 하다가 투옥된 적도 있다」는 부분은 신청인 ○의 과거 경력에 관한 내용으로서 위 기사 및 정정보도문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에 관하여서는 위 신청인이 그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 기사 중 「범민련은 겉으로는 남북합의서 이행등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슬로건을 내걸고 실제로는 반전, 반핵, 미군철수 등과 연방제 통일을 위한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지지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지난 1990.

9. 15.자 전민련 신문에 실린 범민족추진본부의 범민족대회 평가서에도 남·북한 해외를 망라한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적 단결의 사상 및 조직적 조건 마련등 5개항을 명시 김일성이 주장해 온 민족통일전선의 추종세력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신청인들은 「범민련에서 반전, 반핵,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통일의 전단계로서 평화정착을 통하여 민족끼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 뿐이고, 범민련이 주장하는 연방제도 북한의 고려연방제와는 그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즉 범민련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1국가 2체제라고 한다면, 고려연방제는 1국가 2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민련은 북한의 입장과 다른 순수한 민간통일운동단체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남적화노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 또한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 위원회는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에 기초한 대남 적화 선전, 선동 전략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로 인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범민련에서 반전, 반핵,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통일의 전단계로서 평화정착을 통하여 민족끼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 뿐이고, 범민련은 북한의 입장과 다른 순수한 민간통일운동단체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남적화노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에 반하므로 이 부분 정정보도문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범민련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1국가 2체제라고 한다면, 고려연방제는 1국가 2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북한과 범민련의 노선 중 일부 차이가 있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위 기사 및 정정보도문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발단적인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 정정보도에 관하여서는 신청인들이 그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정정보도청구 또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정정보도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신청비용은 패소자자인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2. 11. 26.

재판장 판사 정 지 형
 판사 이 태 섭
 판사 이 광 만

별지 (정정보도문)

제목 : 범민련 관련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소제목 1 : 「범민련이 국내외 망라한 북의 주사추종 집단」은 오보

소제목 2 :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에 따라」

내용 : 본보는 지난 6. 27. 발행한 14728호 18면 좌측 상단 기사로 『국내외 망라한 북의 주사추종 집단』이라는 제목 아래 범민족대회를 위한 범민련의 제1추진 주체는 베를린 3자 회담을 주도한 북한 공산정권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조직소위, 재정소위, 정책소위 등의 소위원회는 사실상 재야운동권의 친북성향 인사들이 실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주사파 계열에 의해 장악돼 있는 실정이다. 범민련은 겉으로는 남북합의서 이행등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슬로건을 내걸고 실제로는 반전, 반핵, 미군철수 등과 연방제 통일을 위한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소집을 지지하는 등 북한의 대남적화 노선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

지난 1990. 9. 15.자 전민련 신문에 실린 범민족 추진본부의 범민족대회 평가서에도 남·북한 해외를 망라한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적 단결의 사상 및 조직적 조건 마련등 5개항을 명시 김일성이 주장해 온 민족통일전선의 추종세력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범민련은 남한측의 민간통일운동진영이 북한과 해외동포들에게 그 결성을 제의하고 북한과 해외 동포들이 그 제의를 받아들여 1990. 7. 남·북 해외 3자 실무회담을 열고, 1990. 8. 15. 제1차 범민족 대회를 열게 된 것이므로 베를린 회담을 주도한 측과 범민련의 제1 추진 주체도 남한의 민간운동진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민련 남측준비위원회에는 3개 소위가 있는데 3개 소위에 관련된 사람들 중 친북성향의 주사파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으며, 특히 재정소위 위원장인 신청인이 은 고등공민학교 국어교사로 7년 4개월, 대명중학교장으로 13년을 근무하는 등 교직에 몸담고 있었고 제3공화국 시절부터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민주투쟁을 하다가 투옥된 적도 있는 바, 친북성향 주사파 계열에 속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 또한 범민련에서 반전, 반핵,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통일의 전단계로서 평화정착을 통하여 민족끼리의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 뿐이고, 범민련이 주장하는 연방제도 북한의 고려연방제와는 그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즉 범민련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1국가 2체제라고 한다면, 고려연방제는 1국가 2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민련은 북한의 입장과 다른 순수한 민간통일운동단체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남적화노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본지가 범민련에 대하여 게재한 기사는 잘못된 보도이므로 바로 잡는다. 범민련 남측준비위원회와 재정소위 위원장 은 1992. 6.27.자 보도내용에 대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신청을 하였는데 동 법원의 인용판결에 의하여 본 기사를 싣는다.

정정보도 신청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

II.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례

부도덕한 소문을 기사화하여 미혼여성인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

서울고등법원 1990. 5. 4. 자 판결(89나36528)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용훈 부장판사)는 1990. 5. 4. 1977년 미스코리아眞金 양이 월간여성지 女性東亞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女性東亞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고 女性東亞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판시,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女性東亞가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고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잡지사 기자의 이야기만을 듣고 근거 있는 소문인 양 기사화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金양은 女性東亞 1988년 6월호 『과의 소문』 기사에 5억 청구한 진상해명－호기심 끌려고 진실 외면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전 과 김 사이에 부도덕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은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그 밖에도 김 씨의 품성에 관한 좋지 못한 소문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송을 제기,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4부(재판장 조희래 부장판사)로부터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불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국내 언론관계판례 1집 301~311면 참조). 쌍방이 이에 불복 상고했으나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되었다.

2審 判 決 文

사 건 : 89나36528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김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용 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병 관

2. 김

서울

3. 권

서울

4. 현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승 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 장 환

변론종결 : 1990. 4. 13.

원 판 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5 선고 88가합31161판결

주 문 :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8. 6.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금 450,000,000원에 대하여는 1988.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여성동아지에 3회에 걸쳐 제1면 전면에 제목은 특호활자, 내용은 2호활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송달 3일 후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각 7면 광고란에 2일간 계속하여 하단 우측에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크기로 제목은 2호활자,

내용은 3호활자로 하여 별지 3 기재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 「원고」 원 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 6. 1.부터 1989. 7. 2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여성동아지에 3회에 걸쳐 제1면 전면에 제목은 특호 활자, 내용은 3호활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송달 3일후 발행되는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각 7면 광고란에 2일간 계속하여 하단 우측에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크기로 제목은 2호활자, 내용은 4호활자로 하여 별지 4 기재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들」 원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1호증(여성동아), 강제3, 21호증(각사업자등록증), 강제8호증(증인신문조서), 강제14호증의 3(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 생으로서 195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된 후 모델, 가수, 방송사회자 등으로 활동하다가 1988. 3. 19. 약 2년전부터 의상학원등에서 배운 의상디자인 기술로 「그리니스모드」라는 상호의 의상실을 개설 경영하고 있는 미혼의 여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는 일간신문 동아일보와 월간잡지 여성동아 등을 발행, 판매하는 언론기관, 피고 김 은 여성동아의 발행인, 피고 권 는 여성동아의 편집인, 피고 현 은 별지 1 기사내용을 취재, 작성한 여성동아 기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1) 위 강제 1, 6, 14호증의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7호증(증인신문조서), 강제9호증의 1, 2, 3(마드모아젤 88. 5월호 표지 및 기사), 강제14호증의 8(수사보고), 강제15호증(공소장), 강제18호증의 1(공판조서, 을 제6호증의 3과 같다), 2 내지 5(각 증인신문조서), 강제22호증(판결), 강제23호증의 1(확정증명), 을제1호증의 2, 6, 7, 11(각 피의자신문조서), 8, 9(각 진술조서), 10(진술서), 을제6호증의 4 내지 6(각 증인신문 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1988. 5. 중순경

여성월간잡지 마드모아젤 88. 5월호 156페이지 이하에 4페이지에 걸쳐 『전 과 김 소문의 진상확인』이라는 표제의 기사가 위 두사람 사이의 실재하지 않는 관계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마드모아젤의 발행인, 주간, 기자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각 일간신문에 일제히 보도되자 여성동아 편집부장인 소외 이 은 피고 현 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위와 양 당사자들의 주장 및 소문의 진상 등을 취재하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 현당은 같은 달 23.경 문제가 된 마드모아젤 88. 5월호의 기사를 취재, 작성한 소외 유 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동인이 위 기사를 취재하게 된 동기와 경우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한편으로는 자유기고가인 소외 임 으로 하여금 원고와의 직접 인터뷰를 통한 취재를 하도록 부탁하여 위 임 이 같은 달 17.과 18. 2차례 원고를 면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원고를 여성동아 편집부에 제출한 사실, 피고 현 은 위 임 이 작성한 원고에 자신의 취재부분을 보충하여 이 사건 기사 초안을 작성한 다음 소외 이 과의 협의하에 문구를 다듬어 여성동아 88. 6월호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 사이에 『「전경환과의 소문」 기사에 5억 청구한 김 진상해명-호기심 끌려고 진실 외면했다』는 제목으로 206페이지는 사진화보, 207페이지 1행부터 7행까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내용, 같은 페이지 8행부터 208페이지 중앙단 2행까지와 19행부터 우단 6행까지는 위 임 의 인터뷰 내용, 208페이지 우단 7행부터 209페이지 우단 30행까지는 피고 현 이 위 유 으로부터 전문한 사실을 요약한 내용, 나머지는 논평의 성격을 띤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싣고 같은 해 6. 1. 위 잡지 약 10만부가 발행, 배포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무릇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여론형성과 전달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신문, 잡지, 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보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자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으나, 그 언론, 출판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 제21조 제4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만약 언론, 출판이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한편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생명권,

인격권 등을 보장하고 있어 어떤 개인이 국가권력 또는 타인에 의하여 부당히 인격권의 침해 받았을 경우에는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행위의 배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인 바, 특히 현대의 대기업이나 국가의 관리하에 있는 매스미디어가 보도의 자유를 매개로 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회적 영향력과 회복의 어려움, 더욱이 오늘날의 보도기관이 영리추구의 입장에서 공, 사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즐겨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이익을 최대한 배려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견지에서 헌법 제21조 제4항 후단은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언론기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러한 증명이 없더라도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고, 정치인, 연예인과 같은 이른바 공적 존재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보도와 비판 및 평가의 대상이 된다 하겠으나 이 경우도 신문에 비하여 신속성의 요청이 덜한 잡지에 인신공격의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는 기사내용의 진실여부에 대하여 미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할 것이고, 기사의 내용 중에 「...한 소문이 있다, ...라고 한다」와 같은 전문적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독자로 하여금 사실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결과에 있어서는 통상의 기사와 크게 다름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문이나 전문내용의 진실여부에 관한 조사의무는 통상적 표현을 사용한 기사와 동등하게 부과된다 할 것이다.

(3) 살펴건대,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이 『...진상 해명』이라는 부제와 함께 『호기심 끌려고 진실 외면했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해명과 마드모아젤의 경솔한 보도태도를 앞에 내세우고 있고, 이 사건 기사의 내용 가운데 앞에서 본 소외 임의 면담부분은 문제가 된 마드모아젤의 기사를 읽고 난 원고의 심경을 묘사하고 해당 기사 중 원고가 특히 불만을 품고 있는 몇가지 내용을 그대로 적시, 인용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원고의 명예를 새로이 침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반면 이 사건 기사내용 중 208페이지 좌단 26행 이하에서는 일종의 논평기사로서 「그녀는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소문이 사실이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소문은 기사화할 수 없는 것이란 점을 추궁하겠다고 한다」고 기술되어 있고 같은 페이지 중앙단 3행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해당 잡지사측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입수했는 듯 별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증은 확신이 가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미비된 듯 조심스럽기도 하다. 항간에는 제보자의 말을 녹음해두었을 것이다. 또는 기사 중에서도 언급했듯이 구체적인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전 미스코리아인 김

라고 쓸 수 있을 만큼 뭔가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 또 다른측에서는 나름대로 소문의 진상을 조사해 보고 기사본문에 쓰여진 그녀를 둘러싸고 최근 1~2년전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다는 말이 맞는다고 동조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이 부분 기사와 피고 현 이 소외 유 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술한 208페이지 우단 7행 이하의 「한편 문제가 된 기사를 쓴 유 씨는 소송건에 대해 담담하게 받아넘겼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당사자의 확인을 받고 쓴 글이어서 양심에 찢리는 점은 없다」는 기사부분과 209페이지 우단 24행 이하의 「소송직후 김

씨를 만난 모 잡지기자는 본인이 묻고 대답한 내용 그대로를 실었는데 왜 문제로 삼느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그 질문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는 기사부분을 함께 연결하여 보면 마치 문제가 된 마드모아젤의 기사가 목격자나 물적 증거 등 상당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원고와 전 과의 부도덕한 소문은 진실일 개연성이 크다는 인상을 준다 할 것이고, 한편 209페이지 좌단 13행 이하의 「그는 당사자에게 직접 묻기엔 너무 지독한 얘기를 수집하고 있었으나 차마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모 아파트 경비원이 커버를 씌운 자동차가 들쭉거리며 플래시를 켜고 들여다 보았더니 누구였더라는 카섹스에 관한 것등이다. 성남시에서의 행각등등도 너무 구체적이라서 질문을 생략했다」는 기사부분은 역시 피고 현 이 위 유 의 취재내용을 기사화한 것이기는 하나 마드모아젤에도 게재된 바 없는 새로운 보도기사로서 이는 마치 원고가 자신의 아파트앞 승용차속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였다거나, 성남등지를 왕래하면서 미혼의 여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정한 행실을 보이고 다녔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중에 원고의 주장 및 해명을 보도하고 기사의 공정성이라는 명목하에 마드모아젤측의 반론을 게재한 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적시한 기사부분의 내용과 기술방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여기에는 소외 그리고 소외 모 잡지기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의 형식으로 원고의 인격을 심히 비방하는 표현이 상당 포함되어 있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미혼녀인 원고가 가정이 있는, 더욱이 당시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특정인과 부도덕한 관계에 있다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진실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및 반포로 인하여 우리의 건전한 윤리관념상 미혼의 여성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공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 현당이 원고에 관한 소문으로 기술한 부분은 직접 원고를 면담하고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을 들은 소외 으로부터 청취한 내용의 것이어서 그 소문의 진실성을 신빙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니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고 항변하나, 상당한 발행부수를 가진 여성동아의 기자로서 한 개인의 일신에 관한 기사를 취재, 작성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직접 당사자를 면담하고 소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조사활동은 하지 아니한 채 이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잡지사 기자의 이야기만 듣고 이를 근거로 있는 소문인 양 기사화한 피고들의 행위가 소문의 진실성을 신빙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사진게재로 인한 저작권 침해등에 관한 판단

위 강제1호증, 위 을제1호증의 6, 8, 1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2호증(비밀)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초 자신의 가수활동등에 대한 선전용 책자로서 사진영상집의 발간을 계획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책자의 제작의뢰를 받은 그린프로덕션 대표 소외 이 기획 및 총연출을 담당하고 사진작가인 소외 이 원고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수천컷 촬영하여 1984. 12. 30. 「비밀」이라는 사진영상집을 제작한 사실, 원고는 위 「비밀」을 무상으로 배포하기도 하고 유상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피고 현 은 1985. 2.경 이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앞에서 본 원고에 대한 취재 기사를 여성동아에 게재함에 있어서 소외 이 과의 협의를 거쳐 위 「비밀」에 수록된 사진 중 원고를 신체가 비교적 많이 노출된 사진 2매를 골라 여성동아 88. 6월호 기사 중 206페이지 전면과 209페이지 좌측에 임의로 복사, 게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제작의뢰, 비용부담 그리고 보관, 배포 등 여러가지 사실로 보아 원고의 저작물임이 분명한 위 「비밀」 영상잡지에 실린 위 사진 2매의 무단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및 초상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비밀」 영상잡지의 저작권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사진도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자신의 선전용 책자로 발간한 사진영상집에 위 사진을 실음으로써 그 공개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은 물론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0조, 제41조 제1항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는 저작한 때로부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저작재산권은 양도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비밀」 영상잡지는 그린프로덕션 대표 소외 이영식이 제작한 창작물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비밀」 영상잡지 후면 말미에 그 책의 저작권은 그린프로덕션에 속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책이 원고에 대한 인기선전용으로 원고의 제작의뢰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갑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88. 6. 1. 그린프로덕션 대표이던 소외 이 「비밀」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나 위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원고에게 양도 또는 귀속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한편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사진을 저작물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초상사진도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초상저작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행 저작권법상 사진 촬영자인 위 김 에게 그 저작권이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비밀」이라는 잡지나 거기에 수록된 사진의 저작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 침해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정신에 비추어 보면, 일반사진이 아닌 초상사진의 경우 초상 본인은 당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른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즉,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촬영할 수 없고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사진을 공표할 수 없는 권리를 보유한다 할 것이고, 원고와 같은 유명인의 경우 비교적 초상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는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의 경우 연예인인 원고가 자기의 선전용으로 기획한 「비밀」의 제작과정에서 초상사진의 촬영을 위 에게 의뢰하였고 나아가 「비밀」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일반대중에게 배포,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초상의 촬영 및 공표에 관하여 원고의 일반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는 해석될 수 있으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피고들은 여성잡지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의 보도 기사를 게재하면서 「비밀」에 수록된 사진 중 비교적 선정적으로 보이는 2매의 사진을 함께 복사, 게재함으로써 이를 보는 독자들로서는 위 사진을 원고의 부정한 추문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의 일부로 인식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할 것이니, 여성동아의 사진무단게재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나, 이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과 아울러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이라 할 것이다.

다. 피고들의 책임.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진게재로 인한 초상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 현은 취재 및 기사작성자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피고 김은 여성동아의 발행인, 피고 권은 그 편집인으로서 직접 이 사건 기사의 작성이나 게재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잡지에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사와 사진 등이 실리도록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그 피용자인 나머지 피고들의 사무집행에 관한 위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할 것인 바, 피고들이 위 기사내용에 관하여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또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의 명예 및 초상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방법

가. 위자료

원고가 여성동아에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어 반포됨으로서 명예가 훼손되고 자신의 사진이 무단게재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경력과 나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그 게재경위, 위 여성동아잡지의 발행부수, 기사의 크기, 위 기사 게재후 피고들이 원고의 손해전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그리고 당심에서 사과문의 게재가 명예회복처분으로서 인용되는 점, 특히 원고가 월간 마드모아젤 잡지의 발행인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로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

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나. 사과문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훼손된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4 기재와 같은 사죄광고를 여성동아에 3회, 5개 일간지에 2회씩 항소취지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할 것을 구하나, 앞서 위자료 액수 산정시 참작한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명예훼손의 양태 및 정도, 사과문 게재에 따른 비용, 위와 같이 금전배상으로서 위자료의 지급이 인용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서 피고들은 별지2 기재 사과문을 위 여성동아지 한면에 가로 7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크기로 제목은 2호활자, 내용은 5호활자로 하여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잡지 발행일인 1988. 6. 1.부터 원판결선고일인 1989. 7. 25.까지는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와 위 월간 여성동아잡지에 별지2 기재 사과문을 위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1회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및 피고들 각자 부담으로 하며, 한편 원고는 위 사과문 게재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의 성질상 가집행을 붙이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가집행은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4.

재판장 판사 이 용 훈
판사 이 교 립
판사 조 연 호

〈별지 1〉 기사내용

(생략)

〈별지 2〉사 과 문

당사가 1988. 6. 1. 발행한 월간잡지 여성동아 1988. 6호의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전 과의 소문」 기사에 5억 청구한 김 진상해명』이라는 제목하에 「전 과 김 사이에 부도덕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은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그밖에도 김 씨의 품행에 관한 좋지 못한 소문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게재된 기사는 확실한 근거 없이 기술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 기사가 진실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김 씨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는 바입니다.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이사

〈별지 3〉사죄광고문

폐사는 본지 6월호에 『확인취재 의 소문기사에 5억 청구한 김 진상해명』이라는 제하의 기사 및 김 씨의 사진 2매를 실어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중요 일간지에 위 기사를 광고하고 전국 각 서점에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폐사는, 위 기사는 마드모아젤사가 발행한 여성 월간잡지인 마드모아젤 5월호에 게재된 『직격 인터뷰 전 과 김 소문의 진상확인』 기사 및 광고로 인하여 김 씨가 마드모아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관하여 마드모아젤사의 입장을 옹호하고, 김 씨를 비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로 마드모아젤사의 진술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며, 위 기사와 같이 게재된 사진 2매는 김 씨의 저작물인 영상음악집 「비밀」에 게재하였던 것으로 김 씨의 승낙 없이 무단 게재하였음을 아울러 인정합니다.

폐사는 위 잡지기사 및 사진게재로 미스코리아 진이었으며, 탤런트, 가수 등으로 폭넓은 활약을 하여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아 왔으며, 근래에는 전문 의상디자이너 겸 사업가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김 씨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점을 인정합니다. 이에 대하여 폐사는 폐사의 위와 같은 과오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김 씨와 가족들은 물

론 그녀를 아끼는 분들에게 심심한 사죄와 위로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잡지의 공적 책임 및 윤리를 깊이 인식하여 근거 없는 소문등 전혀 사실무근의 내용을 기사화하고 타인의 사진을 무단 복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건전한 대중을 자극하는 일이 없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1988. 7.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회장

〈별지 4〉 사죄광고

폐사가 1988. 6. 1. 발행한 월간잡지 여성동아 1988. 6월호의 206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전 과의 소문 기사에 5억 청구한 김 진상해명』이라는 제목하의 기사는 「전 과 김 씨 사이에 부도덕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은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그 밖에도 김 씨의 품행에 관한 좋지 못한 소문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위 기사는 폐사의 잘못으로 확실한 근거 없이 기술, 게재된 것이며, 또 위 기사에 사용한 김 씨의 사진은 김 씨의 허가도 없이 무단히 사용하여 김 씨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폐사는 여성동아 1988. 6월호의 위 기사내용 및 사진게재로 일반독자들에게 김 씨에 대한 나쁜 소문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김 씨의 명예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김 씨의 가족과 평소 김 씨를 아끼는 많은 분들에게도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끼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자 회장

(이 사죄광고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게재하는 것입니다)

□

중견 언론인인 원고가 극우지에 전교조 교사를
매도하는 칼럼을 게재한 것으로 잘못 보도,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으므로 금전으로
위자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5.자 판결(89가합51612)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37부(재판장 심일동 부장판사)는 1990년 9월 5일 서울신문 宋
논설위원이 한국기자협회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청구소송에서 「기자협회와
기자협회 前회장 魯 씨는 宋씨에게 배상금 3백만원을 지급하고기자협회보 1면 하단
에 가로 7cm, 세로 10cm 크기의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宋씨는기자협회보 1989. 9. 1.자 2면 「잠망경」란 『사정위원의 면모』 제하의 기사에서
「…전교조를 패륜아로 매도한 자유신문이라는 극우지에 전교조를 패륜아로 매도한 기자
칼럼을 쓰면서 유명해진 서울신문 송 논설위원은 곧바로 사정자문위원에 위촉됐고
…」라는 내용과, 9. 8.자 『고침』란에 「본보 제559호 2면 잠망경 송 씨등 관련기사중 ‘자
유신문이란 극우지에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한 기자 칼럼’ 부분은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한 극우지에 기자 칼럼’의 오기로 바로잡습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자, 소
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宋씨가 자유신문에 기고한 적은 있으나 교원노조문제에 관해서
는 전혀 논평한 적이 없음에도기자협회보가 이를 잘못 보도한 것이 인정되며, 위 내용의
칼럼을 기고하여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으로 보도함으로써 이 기사의 독자인 언론인들의
사실 판단에 착오를 일으키고 중견 언론인인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判 決 文

사 건 : 89가합51612 손해배상(기)등

원 고 : 송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 수 근, 황 규 민, 최 성 곤, 전 재 중

피 고 : 1. 한국기자협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한국언론회관 13층

대표자 회장 이 근 성

2. 노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상 대, 이 재 명

변론종결 : 1990. 7. 4.

-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 9. 1.부터 1990. 9. 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한국기자협회는 같은 협회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보 제1면 하단에 가로 7 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크기로 앞의 제목과 뒤의 피고 이름은 3호 활자로, 내용은 5호 활자로 하여 횡서로 별지 1기재 사과문을 1회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기자협회보 제1면 하단에 가로 24센티미터, 세로 12센티미터의 크기로 제목은 특호 활자로, 내용은 2호 활자로 하여 별지 2기재 사과문을 2회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 1. 원고 및 피고들의 지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호증의 1 내지 11(기자협회 규약), 을제4호증의 1, 2(간행

물제작내규)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63. 2.경

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61. 7.경 서울일일신문 문화부 기자로 언론인 생활을 시작한 이래 한국일보사를 거쳐 서울신문사에서 차장, 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신문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중견 언론인이고, 피고 한국기자협회는 「회원의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그 자질을 높이며 기자의 권익옹호와 민주정론 창달 및 국제교류에 힘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주로 차장급 이하 평기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단체이고, 각 회원이 소속되는 분회에서 일정비율로 선출되는 대의원들로 다시 구성되는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되는 회장이 위 협회를 대표할 뿐 아니라 그 산하의 사무국 내의 편집위원회에서 회보로서 주간지인 「기자협회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회장이 발행인 겸 편집인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편집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열리고 여기에서 편집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그 편집 및 발행에 대해서는 발행인 겸 편집인이 총괄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사실, 기자협회보의 발행부수는 약 10,000부 정도로서 그 중 약 4,500 내지 5,000부가 회원에게, 약 1,000부가 명예회원 및 각 언론사 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될 당시 피고 한국기자협회의 회장으로서 기자협회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었던 사실, 1990. 3. 30.자로 그 직책은 소외 이 이 맡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1호증(기자협회보), 강제3호증의 1(사정업무현황표지), 2(목차), 3(제4조정관실 직제 및 기능), 4(사정 정책자문단 설치운용계획안), 5(사정정책자문위원 위촉안), 강제4호증의 1(사정업무현황표지), 2(목차), 3(사정업무추진체계), 4(사정업무 기본방향), 5(최근 공직기강동향), 6(국민생활보호대책), 을제5호증의 1, 2(각 자유신문), 을제6호증(세계일보), 을제9호증(기자협회보),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제7호증의 1 내지 3(원고)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자유신문사 발행인,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하는 격주간지인 자유신문 1989. 8. 21.자(제4호)에 『학생·부형 울리는 전교조』라는 제목하에 소외

가 토론자로 참가하고 소외 박 이 사회 및 집필을 한 좌담회 기사가 실렸고 이 기사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재야단체인 전교조를 용공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이고

일부 참석자의 발언중에는 전교조 참가 교사들에게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있었는데 원고는 위 토론이나 위 기사의 작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되어 거론되고 있는 전교조 문제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전혀 논평을 하지 않은 사실, 다만 원고는 위 자유신문 같은 호의 자유정론란에 『미국영주권 가진 신부 목이 쉬도록 반미구호 외쳤다』라는 제목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소외 문 신부와 그가 소속한 재야단체인 정의구현사제단을 비판하면서 사석에서 들은 이야기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소외 문 신부와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신부들이 간첩에 의하여 포섭되어 종교계에 침투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사실, 한편 국무총리 제4행정조정관실에서는 1989. 1. 30.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직제 개편에 따라 공직사회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해 높은 식견과 학식, 덕망을 고루 갖춘 학계등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국무총리 사정정책자문단을 설치 운영키로 하고 원고를 언론계 대표로서 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1989. 5. 초순경 원고에게 위촉 의뢰를 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고 1989. 8. 30. 공식적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고 1989. 8. 30.자 세계일보에 「정부가 원고를 포함한 14명을 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된 사실, 원고가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신문의 논설내용과 원고가 같은 신문에 써 온 여러 칼럼내용이 친정부적이라고 생각해온 위 기자회견보의 잠망경란 담당기자 소외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원고의 행위를 권언유착행위로 보고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 먹고 원고가 사정정책자문위원에 위촉된 경위에 관하여 위촉기관인 국무총리 제4담당관실등에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제목을 『사정위원의 면모』로 하고 부제목을 『부화뇌동 언론인 속출에 언론귀족 탄생 임박』으로 하여 「교육개혁, 공무원 숙정, 폭력배 단속 등 5공 초와 똑같은 굵직굵직한 구호들이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인들의 부침도 어찌먼 그렇게 5공 초와 똑같냐는 데 화제가 집중.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한 자유신문이란 극우지에 기자칼럼을 쓰면서 유명해진 서울신문 송

논설위원은 곧바로 사정자문위원에 위촉됐고, 천방지축조 담임의 특집보도로 의식화교육 왜곡보도의 상징물로 부각시켰던 강 보도국장도 역시 사정자문위원이라는 정치적 배려를 받았을 뿐더러... 언론노조운동을 카프에 빗대 이데올로기 운동으로 매도하는 데 급급했던 신 당시 연합통신 논설위원실장(현재 국민일보 논설위원)은 그 공로 덕인지 요즘 티.브이에까지 출연하는 각광을 받고 있기도. 그래서 그런지 언론인이라는 미명 아래 특권 향유에 여념이 없었던 속칭 선배·원로 언론인들도 최근 언론노조운동을 매도

하는 데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어 5공초와 같이 언론귀족의 탄생이 임박한 듯]이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편집부에 넘긴 사실, 그런데 편집과정에서 편집부 기자인 소외 김가위 기사 중에 원고가 썼다는 칼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위 원고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속단하고 위 기사를 작성한 잠망경 담당기자에게 그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전교조를 패륜아로 매도한 자유신문이라는 극우지에 전교조를 패륜아로 매도한 기자칼럼」이라고 바꾸어 이를 인쇄소에 넘긴 사실, 이에 따라 1989. 9. 1.에 위 회보 2면 잠망경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제목은 5호 활자로, 부제목은 4호 활자로, 본문은 6호 활자로 실린 위 기자협회보 제559호 약 10,000부가 발행되어 배포된 사실, 그 후 1989. 9. 8.자 기자협회보 제560호 고침란에 「본보 제559호 2면 잠망경 송씨등 관련기사 중 ‘자유신문이란 극우지에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한 기자 칼럼’ 부분은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한 자유신문이란 극우지에 기자 칼럼’의 오키이므로 바로잡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기사가 6호 활자로 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기사 중 원고가 「자유신문에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하는 기자 칼럼을 써서 유명해졌다」는 부분과 「위 칼럼 기사로 인하여 원고가 곧바로 사정자문위원에 위촉됐다」는 의미를 나타내주는 부분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실린 위 기자협회보 약 10,000부가 발행되어 주로 언론계 종사자들에게 배포됨으로써 중견언론인인 원고는 언론인으로서의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며, 위와 같은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의 발행에 관하여 소외 성명불상의 잠망경 담당기자는 원고가 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원고를 작성한 잘못이, 편집기자 소외 김가위는 위 잠망경 담당기자에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함부로 위 원고를 수정한 잘못이, 피고 노영환은 위 기자협회보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직접 이 사건기사의 작성이나 게재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기자협회보에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총괄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각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한국기자협회는 그 피용자인 위 기자들 및 피고 노영환의 사무집행에 관한 위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진다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의 명예를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위 기사 중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인」「특권향유에 여념이 없었던 속칭 선배·원으로 언론인들」「언론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원고를 마치 그 표본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와 같은 표현은 친정부적인 보도나 논설을 하고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부여받는 언론인들에 대하여 이를 언론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측에서 이를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위와 같은 표현으로 지칭된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다소간 침해하는 점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서울신문의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반정부인사인 문 신부와 그가 소속한 재야단체인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난하는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논설태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정부로부터 사정정책자문위원 위촉이라는 일종의 혜택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중견 언론인으로서 공인인 원고가 친정부적인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원고를 비판하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원고의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원고는, 또한 위 기자협회보 제560호 고침난의 정정기사도 위 기자협회보 제559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새로이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정정기사는 그 문맥상 위 잠망경란 기사 중 「자유신문이란 극우지에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한 기자칼럼」 부분은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한 자유신문이란 극우지에 기자칼럼」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앞서 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기자협회보 제559호가 배포된 후 원고가 즉시 피고들에게 위 기사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위 기사에 대한 정정기사 및 원고의 반론을 기자협회보에 실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음호인 기자협회보 제560호에 정정 기사를 게재하고 그 다음호인 제561호에 원고에게 반론할 기회를 부여하며 원고는 더 이상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제560호에 정정 기사를 실고 원고에게 반론 기사를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원래의 기사 및 제560호 정정 기사에 대한 반론까지 요구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분쟁을 종결짓기 위하여 이에 동의하여 1989. 9. 22. 발행되는 제561호에 반론을 게재할 것

이니 반론원고를 보내라고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반론원고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나온 을제9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8호증의 1, 2, 을제10호증(각 내용증명) (을제8호증의 1, 2는 갑제2호증과 같은 내용임) 의 각 기재와 증인 김 ○○ 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위 제559호가 발행된 직후 원고는 기자협회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위 기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하였고 그 후 한국기자협회 서울신문사 분회장인 소외 김 ○○ 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하고 반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들도 위 소외 김 ○○ 를 통하여 이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정기사가 제560호에 실린 사실, 제560호에 위와 같은 정정기사가 실린 후 원고는 위 정정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불충분하다면서 제559호 및 제560호 기사에 대한 반론의 지면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정정기사의 보도 및 반론기회를 부여받고 더 이상 위 기사 게재로 인한 손해를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피고들과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 ○○ 의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손해배상의 방법

가. 위자료

위 기자협회보 제559호에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위 기사 부분이 실려 배포되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경력, 피고들의 위 기사 게재 경위, 위 기자협회보의 발행부수 및 구독자의 구성, 기사의 크기, 위 기사 게재 후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 기사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정정보도를 그 다음회의 기자협회보에 실은 사실, 피고들의 재정상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과문의 게재가 명예회복처분으로서 인용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사과문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훼손된 명예의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사과문을 기자협회보 제1면 하단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

면으로 2회 게재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 한국기자협회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지금까지 전교조 문제에 관하여 전혀 논평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사정정책자문위원으로 곧바로 위촉된 것은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칼럼 기사를 쓴 때문이 아님에도,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써서 이로 인하여 곧바로 위 위원에 위촉되었다는 이 건 기사내용은 원고에 대한 사회인 특히 위 기사의 독자인 언론인들의 사실판단에 착오를 일으키고 중견 언론인인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비록 피고 협회가 그 회보 제560호에서 이를 고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진실에 반하는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정내용도 위와 같이 내용의 일부가 오식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협회는 그가 스스로 발행하는 기자협회보에 사죄광고를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노 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노 는 위 기사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아니며 다만 위 협회보의 총괄 감독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그 잘못된 기사에 대한 사죄는 위 협회보의 법률상 발행자인 피고 협회가 이를 행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그 발행인 겸 편집인 개인인 피고 노 가 사죄광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사죄광고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위자료 산정시 참작한 제반 사정과 이 사건 명예훼손의 태양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 협회는 별지 1 기재 사과문을 기자협회보 제1면 하단에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형식과 지면 등으로 하여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자협회보 제559호 발행일인 1989. 9.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0. 9.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한국기자협회는 그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보 제1면 하단에 별지 1 기재 사과문을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 형식과 지면으로 1회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

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불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9. 5.

재판장 판사 심 일 동
판사 정 종 관
판사 최 종 갑

〈별지 1〉 사과문

본 협회(당시 발행인 겸 편집인 노)가 1989. 9. 1. 발행한 기자협회보 제559호 2면 잠망경란에 『사정위원회 면모』라는 제목 아래 서울신문 논설위원 송 씨에 대하여「송 정숙이 자유신문이란 극우지에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한 기자칼럼을 썼으며, 이로 인하여 곧바로 사정자문위원회에 위촉됐다」는 취지로 실린 기사는 전혀 진실이 아니며 그로 인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여 송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한국기자협회

〈별지 2〉 사과문

저희 기자협회보는 1989년 9월 1일자(제599호) 잠망경란에서 서울신문 송 논설위원에 관한 기사를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비평하였음을 인정합니다.

그 난에 인용된 자유신문의 자유칼럼에 송 씨는 인용된 내용과 같은 주제의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협회보의 잠망경이 잘못 비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30년 가까이 언론에 종사한 중진 언론인으로서 송 씨의 명예에 손상을 입혔음을 사과합니다.

특히 송 씨가 자유신문 칼럼으로 유명해져서 정부로부터 사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추측기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음도 밝혀졌으므로 그 점도 사과합니다. 기사가

나간 직후 당사자인 송 씨의 항의가 있었으므로 다음호(제560호) 기자협회보에 고침을 실었으나 그 고침이 정정과 사과의 내용으로 충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1. 한국기자협회 회장

2. 노

□

.....

원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도,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11. 9.자 판결(90가합15032)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5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1990. 11. 9. 前국회의원 趙씨의 부인 金 씨가 가수 金 씨(본명)와 「주부생활」기자 金 씨, 민주일보사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金씨의 남편과 金 나 씨의 동거사실을 게재함으로써 金씨가 본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각자 위자료 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金씨는 지난 1977년 3월 남편 趙씨와 결혼, 자녀 2명을 두고 살아오던 중 주부생활 1989년 11월호에 『金 나 前국회의원 숨겨온 사랑고백』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金 나가 12대 신민당 국회의원을 지낸 부산사업가 趙 씨와 서울 金 나 아파트에서 5년째 비밀 동거중」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6면에 걸쳐 실리자 金 나

와 민주일보사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0가합15032 손해배상(기)

원 고 : 김

부산

송달장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후, 천 정 배, 김 영 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 만 수, 이 진 홍, 정 병 석, 황 영 주

피 고 : 1. 김 (일명 김 나)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종 현, 김 선 수, 김 한 주

2. 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의 37(주부생활사)

3. 주식회사 민주일보사(民主日報社)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의 37

대표이사 김 영 수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승 현

변론종결 : 1990. 10. 12.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 4. 4.부터 같은 해 11. 9.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지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피고 김 ○의 본인 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뒤에서 보는 월간지「주부생활」에 실린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만 한다)에서 지칭된 소외 조 ○와 1977. 3. 22. 혼인한 법률상의 처이고, 피고 김 ○은 이 사건 기사를 취재한 기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민주일보사(이하 피고 민주일보사라고 한다)는 위 월간지「주부생활」을 발행하는 회사로서 피고 김 ○의 사용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불법행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 2(주부생활 표지 및 내용), 을제1호증(스포츠서울 기사)의 각 기재에 증인 ○의 증언, 피고 김 ○의 본인 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김 ○은 1989. 8. 31.자「스포츠서울」이라는 일간신문에 가수인 피고 김 ○이 소외 조 ○와 동거중이고 위 조 ○가 독신 상태로서 피고 김 ○과 1988. 말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어 배포되자 두 사람간의 관계를 월간지「주부생활」에 기사화하기 위하여 1989. 10. 초 경 피고 김 ○에게 주부생활 잡지사 기자임을 밝히고 위 피고와 3회 정도 만나 위 피고와 위 조 ○와의 관계를 취재한 후 위 피고가 밝힌 내용과 위 스포츠서울의 기사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 그리하여「주부생활」1989. 11.호에『김 ○나 전국회의원 숨겨온 사랑고백』이라는 제목 하에 6면에 걸쳐「김 ○나가 부산 사업가와 비밀 동거중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둘다 이혼의 상처를 지닌 이들은 현재 김 ○나의 아파트에서 이미 5년째 새살림 중. 젊은 연인들 못지 않게 깊은 사랑을 나누면서도 정식 부부의 절차를 미루고 있는 속사정을 김 ○나가 직접 털어놓았다.」라는 표지 기사와「86년 두번째 남편과 헤어졌던 그녀가 세 번째 신접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새삼스럽게 애기 꺼내기 쑥스럽군요. 벌써 5년째 돼요. 숨기려 한 건 아니예요. 두번이나 이혼하고 만난 사람이에요. 새삼스럽게 면사포 쓰고 주위사람 불러 모아 뒀하겠어요.’ 정식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는 그녀의 말에서 그 웃음의 내력을 읽을 수 있었다. 말하자면 동거중인 사이. 새 남자 조 ○씨(48세)는 부산에서 큰 갈비집과 고급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가. 12대 신민당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는데 전 김영삼 총재의 경호책임자를 역임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직선적이고 솔직한 분이셨지요. 그러면서도 자상하기도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잠시도 보지 않으면 서로 견딜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때부터 조씨와 두 사람은 바늘과 실처럼 붙어다녔다. 지방여행

은 물론 해외사업 여행에 조차 조씨는 김 나를 분신처럼 데리고 다녔다. 사업관리를 위해 조씨가 부산에 내려가 있게 되면 하루에도 수십번씩 장거리 전화로 김 나의 안부를 묻곤 했다. 귀가 시간을 챙기고 식사 여부와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이다. 어느 쪽도 함께 살자는 말을 꺼내진 않았다. 그런 말을 하기엔 둘 다 나이가 들어 있었고 상처를 갖고 있었다. 조씨 역시 이혼한 경력을 가진 남자였던 것이다. 조씨에게도 이혼한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 아이들에게 엄마라고 불릴 자신도 없었다. ‘다시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사실에 이젠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 분은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저 역시 그 분을 사랑해요. 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합해진 이상 형식과 절차 따져 무슨 소용 있겠어요.’ 12대 전국구 의원을 거친 조씨는 13대에도 출마할 뜻을 보였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이유는 김 나와의 동거사실 때문. ‘그렇데 이번 그이와는 궁합이 아주 좋대요. 참쌀궁합이래요.’ 조씨의 두 아이들은 현재 부산의 친척집에서 키우고 있다. 동래 별장 부근에 새로 호텔을 짓고 있는 조씨는 12월 완공 예정인 호텔건립이 끝나면 믿고 사업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경영하게 하고 김 나의 아파트를 떠나지 않을 계획이다.]라는 내용으로 피고 김 이 직접 한 이야기를 인용하는 형식을 포함한 이 사건 기사가 소외 조 의 명함판 크기의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배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듯한 증인 의 증언은 앞서 본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살피건대, 신문이나 잡지기사에 의한 명예훼손등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는 그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통상 기사를 읽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 기사의 내용, 기사의 배치, 기사의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제목의 배치와 내용,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기사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소외 조 의 나이, 경력 등을 그의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있고 비록 위 조 를 독신이라고 표현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그가 처와 이혼을 하고 자녀들은 친척집에서 기르고 있는 독신남이며 피고 김 과는 5년째 위 피고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사실혼의 관계를 맺고 있고 바로 위 피고와 법적으로도 혼인할 예정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를 직접 거명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가 월간지에 게재되어 독자들에게 널리 공표됨으로 인하여, 위 조 의 처인 원고뿐만 아니라 위 조 와 원고가 부부인 사실을 알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조 와 이혼하고 그들 사이의 자녀들도 따로 살고 있어 원고가 독신으로 살고 있다거나 적어도 원고가 남편인 위 조 의 피고 김 과의 사실혼관계로 인하여 원고와 위 조 간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위 조 의 처로서의 원고의 부부생활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하게 침해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위 「주부생활」의 발행, 배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김 , 피고 민주일보사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기사는 피고 김 이 피고 김 으로부터 들은 내용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사에는 아무런 허위사실이 게재된 바 없어 위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잡지기사의 공표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그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기사의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에 있어서 그 기사가 진실되었다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인용하여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도 취재기자로서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그 정보가 진실하다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기사라는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아무런 주장도 없고 이 사건 기사가 모두 진실하다거나 피고 김 이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위 강제1호증에 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와 위 조

는 그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 2명과 함께 가족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기사라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책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월간지 「주부생활」의 발행, 배포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 김 은 피고 김 이 이 사건 기사를 월간지에 게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기사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게 한 자이고 피고 김 은 월간 잡지사의 기자로서 이 사건 기사를 취재하고 잡지에 게재함에 있어 그 기사가 공익에 관련된 것으로서 기사의 진실 여부와 이 사건 기사가 잡지에 게재됨으로 인하여 기사와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훼손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등의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기사를 잡지에 게재한 자이며, 피고 민주일보사는 피고 김 이 이 사건 기사를 취재, 게재하는 업무에 관한 사용자이므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월간지가 배포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에 원고의 성명이 직접 적시되지 아니한 사정,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원고의 나이와 지위, 위 월간지 「주부생활」의 발행부수, 원고와 소외 조 와의 부부관계 및 이 사건 기사의 내용과 크기,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4,000,000원을 위자료로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 소송대리인이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 4. 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같은 해 11. 9.까지는 민법에 정하여진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다만 피고들이 이 사건 금전채무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위 특례법에 정하여진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은 위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90. 11. 9.

재판장 판사 김 대 환
판사 박 재 필
판사 이 동 신

취재원이 제공한 불확실한 정보를 인용, 원고의 남성편력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국에 이른 것으로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2. 27.자 판결(91가합52649)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42부(재판장 조중한 부장판사)는 1991.12. 27. 전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 씨의 첫부인 송 씨가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기사 작성자가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기사화하였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해 그 정보의 진실성을 신뢰한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송씨는 중앙일보 기획기사인 『청와대 비서실』 중 1991. 3. 1.자 제15회 『학생, 신민당 탱크로 뭉개 버리자』 제하의 기사에서 차지철 측근이 공개한 비화를 인용, 원고가 끼이는 여성으로 남성 편력이 심했고 결혼 후에도 외간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등으로 인해 결혼 6개월만에 이혼했고 그것이 차지철의 기이한 성격 형성에 일조하였다고 차지철과 원고의 혼인 및 이혼에 얽힌 사연을 기사화하자, 2억원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남성 편력과 여성으로서의 부정한 생활태도에 관한 이 건 기사는 공익에 관한 기사라 단정하기 곤란하고, 당사자인 원고에게 아무런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원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고,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91서울중재9) 중재 합의에 따라 정정 기사를 게재한 사실등을 인정 이와 같이 판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1가합52649 위자료

원 고 : 송

광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 덕 렬

피 고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김 동 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태 영

변론종결 : 1991. 12. 6.

-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7. 26.부터 같은 해 12. 2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다만, 증인 김 진의 증언 중 아래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부분은 제외)

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19 . . 1.생인 원고는 전라남도 지역구로 하여 제헌국회의원을 역임한 소외 망의 딸로서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마친 후 1966. 여름 부친의 친구로서 국회의원까지 지낸 소외 김 의 중매로 소외 차지철(위 차지철은 원래 공수단원으로서 5·16 군사혁명에 참가한 후 정계로 진출하여 민주공화당 소속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재임 중 1979. 10. 26. 대통령시해사건 현장에서 피살된 인물이다)과 교제를 시작하여 그 해 9. 27. 육군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에 들어 갔으나(혼인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사실상의 혼인생활이었다) 성격 차이로 불과

29일만에 그와의 혼인생활을 청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가 전국적으로 발행, 배포하는 일간지인 중앙일보의 19면 전면과 20면의 일부에 거쳐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제하의 기획 기사를 주 1회씩(서울판 석간 : 매주 금요일, 일부 지방판 조간 : 매주 토요일) 연재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인물들의 행적을 소재로 한 기사를 게재하여 오고 있는데(집필자는 피고 소속 기자인 소외 이다), 청와대 경호실장을 역임한 위 차지철의 행적을 다룬 1991. 3. 1.자(일부 지방판 조간 3. 2.자) 연재물에서는 위 차지철의 성장과정과 기이한 성격 형성의 배경을 기술하면서 원고와의 첫 결혼이 실패로 끝난 것도 위 차지철의 기이한 성격 형성에 일조를 하였다 하여, 위 차지철 측근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위 차지철과 원고의 혼인 및 이혼에 얽힌 사연을 다음과 같이 기사화(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만 한다)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하였다.

「실패로 끝난 차씨의 결혼에 대하여 측근 Q씨가 알고 있는 비화.

“차 의원이 과감하게 미국을 비판하는 등 박력있는 의정활동을 보이자 어느날 의원사무실로 미모의 20대 중반 여인이 찾아 왔어요. E여대 국문과 출신으로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외형상 조건이 화려했죠. 이 여인은 다짜고짜 ‘차 의원님처럼 매력적인 남성은 일찌기 보지 못했습니다. 꼭 한번 만나 뵈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며 면회를 신청했지요. 보좌관들이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차 의원을 만나게 해 주었죠. 그런데 차 의원이 이 여자를 보자마자 첫눈에 홀딱 반해버렸어요. 만난지 한 달 만에 결혼하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주위의 몇몇 사람은 ‘아무래도 끼있는 여자 같으니 조심하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한지 며칠 안돼서 빼적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이 여인은 남성 편력이 심했고 결혼 후에도 외간 남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오는 거예요.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차 의원은 머리맡에 일본도를 놓고 자기도 했지요. 차 의원은 이 여인의 마음을 잡아 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여섯달 만에 이혼을 하고 말았죠.”

차씨는 이때부터 신앙에 빠지기 시작했다. 비천한 성장과정과 허영심이 빚은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그의 몸부림은 처절하게 보일 정도였다.]

한편, 원고는 위 차지철과의 혼인생활을 청산한 후 소외 노 과 결혼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현재 슬하에 고등학교 재학 중인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광주 지역 동문회장,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위원, 한국지방자치연구회 광주 전남 원장, 광주직할시 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광주지부장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남편인 위 노 은 광주시내 모대학 교육학과의 정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일반 독자들에게 명문가에서 출생하여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미모까지 갖춘 원고가 어느날 느닷없이 위 차지철의 사무실로 찾아가 그를 유혹하여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1개월도 되기 전에 결혼하는데 까지는 성공을 하였으나, 결혼 후에까지 전에 교제하던 남자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등 아내로서 정숙하지 못한 생활을 계속하였고, 결국 원고와 위 차지철과의 결혼생활은 위 차지철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남성편력과 바람기로 인하여 6개월 만에 파국을 맞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 차지철의 성격은 더욱 더 괴팍해지게 되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사가 원고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고향인 이나 원고가 현재 활동 중인 의 독자들은 물론 원고가 위 차지철의 전처임을 알고 있는 전국의 독자들로서는 위 기사에서 지칭하는 인물이 원고임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신문의 발행, 배포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기사가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와 인격에 손상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상 위 기사가 취재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기사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기사 작성자인 소외 김 이 위 차지철의 측근 인사들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 게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진실이거나 진실이 아니더라도 여러명의 취재원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그대로 (오히려 보다 험한 내용을 축소하여) 게재한 것이어서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기사의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또는 진실성을 증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취재한 내용이 진실

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언론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에 비추어 그 기사가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기사 작성자의 신뢰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기사 작성자가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기사화하였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기사 작성자가 그 정보의 진실성을 신뢰한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 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법리이다.

둘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차지철이 5·16 군사혁명으로 인한 제2공화국의 붕괴와 이에 이은 제3공화국 및 유신시대로 불리워지는 제4공화국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사를 조명함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로서 이른바 공인(公人)이라 하더라도, 위 차지철 본인에 관한 기사가 아닌 그와 29일간 혼인생활을 한 전력이 있음에 불과한 원고에 관한 기사, 그것도 원고의 남성편력과 여성으로서의 부정한 생활태도에 관한 기사가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킬 만한 기사임은 별론으로 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기사라고까지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나아가 위 기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한편 피고가 직접 당사자인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사실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음을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이 위 차지철 생전의 측근 인사들로부터 취재한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하였다는 사정(그나마 이 사건 기사의 작성자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위 이 증언 외에는 이 사건 기사가 위 차지철의 측근 인사들로부터 취재한 내용 그대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만으로 위 이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전국에 배포하여 원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위자료의 결정

이 사건 기사에서 원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는 아니한 점, 전체 기사의 분량 중 원고에 관한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 갑제1, 3,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전국적으로 배포한 후 원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자 1991. 3. 22.자 같은란 기사 말미에 원고의 반론을 게재하고,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같은 해 4. 12.자 같은

기사 말미에 원고의 반론을 게재하고,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같은 해 4. 12.자 같은란 기사 말미에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정정기사를 게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위 중앙일보의 발행부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1. 7.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1. 12.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부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91. 12. 27.

재판장 판사 조 중 한
판사 김 선 우
판사 강 선 희

원고와 염문관계에 있는 듯한 허위사실을 유포,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혼에
이르도록 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지불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4. 17.자 판결(90가합3961)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8부(재판장 林完圭 부장판사)는 1991년 4월 17일 孫 씨가 인기가수 趙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趙씨가 언론을 통해 孫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되므로 趙씨는 孫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孫씨는 1989년 5월 趙씨가 일간지등과 인터뷰하면서 자신과 염문관계에 있는 듯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判 決 文

사 건 : 90가합3961 손해배상(기)

원 고 : 손

경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일 두, 하 창 우

피 고 : 조

서울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정 규, 박 상 만, 김 영 균, 이 재 운, 안 동 일, 윤 성 한

변론종결 : 1991. 2. 27.

- 주 문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2. 13.부터 1991. 4. 1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22,47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는 원고 남편인 소외 김 의 친구로서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인데, 피고는 1989. 5. 27. 「김 원장 (김)이 “내 아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 잘 대해 줬으면 좋겠다”며 하소연조로 이야기해와 무척 당황했다」, 같은 해 6. 11.경 「손 여인(원고)이 나를 좋아한 것 같다」 「김 원장이 어느 날 나에게 자기 부인이 무척 좋아하고 있으니 가끔씩 소식이나 전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같은 해 6. 중순경 「가정주부인 손 여인이 한동안 조용필이 좋다며 일본에까지 찾아가 만났는가 하면 지방공연 때도 따라다니다시피 했다」, 같은 해 6. 23. 「동정에 있는 센트리하얏트호텔에서 손 씨(원고) 일행과 같은 층에서 묵었다」

「그 날 매니저의 안내로 내 방에 온 손 씨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하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1989. 6. 17.경 손 씨가 머물고 있는 기흥별장으로 전화를 했더니 다 끝난 일이라고 하면서 2년 후에 결혼하자고 했다」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언론에 보도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의 남편인 위 김 및 시부모, 일가친척, 친구들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와의 관계를 의심하게 하여 결국 원고와 위 김 이 이혼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신경성 위염등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먼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2호증(진단서), 강제3호증의 1(형사 제1심 소송기록 표지), 5(유인물), 6 내지 9, 15 내지 17(각 신문기사), 18 내지 20(각 진술조서), 23(잡지 기사), 24(피의자신문조서), 26 내지 29, 32 내지 35(각 잡지기사), 36, 37(각 진술조서), 39, 40, 46(각 잡지기사), 49, 50(각 피의자신문조서), 51(진술조서), 강제6호증(호적등본), 을제1호증의 13(진술조서)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

를 종합하면, 피고는 한국, 일본 등지에서 활약하는 유명 가수인데, 원고는 1986. 9. 중순 경 피고의 부친인 소외 망 가 서울 강남구 소재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 경영의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피고를 알게 된 사실, 위 김 이 소외 망 조

를 치료해 준 것을 계기로 피고도 몇 차례 입원, 통원 치료를 받는 등 위 병원에 자주 들르게 됨으로써 원고, 소외 김 은 피고와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가 된 사실, 그런던 중 소외 김 은 자신의 아내인 원고와 친구인 피고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금전대여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친구와 친구 아내라는 관계 이상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음을 알아내고 이로 인하여 괴로워 하다가 1989. 5. 26. 17 : 00경 위 역삼동 소재 자신의 병원에 스포츠 서울 기자 소외 , 한국일보 기자 소외 이 , 레이디 경향 기자 소외 황 등을 불러 피고가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의 신경안정제를 투여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등 우려할 만한 약물 중독에 빠져 있으며 약명 미상의 알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부하여 이러한 내용을 위 각 신문, 잡지 등에 보도하게 한 사실, 이에 가수로서 일본 공연을 마치고 막 귀국한 피고는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자신은 약물중독상태에 있지 않음을 해명하는 한편 위 김 이 원, 피고간의 관계를 확대해서 받아들인 나머지 위와 같은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임을 비쳐 같은 달 27. 일간스포츠 신문에 「김 원장이 피고에게 “내 아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며 하소연조로 이야기해 와 무

척 당황했다」, 1989. 6. 11.자 주간경향 잡지에 「손 여인이 일본까지 나를 찾아와 호텔방에서 커피를 들고 헤어진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행동을 보면 나를 좋아한 것 같다」, 동일자 선데이서울 잡지에 「김 원장이 어느날 피고에게 자기의 부인이 무척 좋아하고 있으니 가끔씩 소식이나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같은 달 18.자 선데이서울 잡지에 「가정주부인 손 여인은 한 동안 조용필이 좋다며 일본에까지 찾아가 만났는가 하면 지방공연 때도 따라다니다시피 했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되게 된 사실, 위와 같은 보도내용으로 친척,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 원고는 같은 달 22. 경기 소재 음식점에서 레이디 경향 기자 소외 황

등 6명의 기자들의 취재요청에 응하여 「피고는 연예인 사기꾼으로서 원고에게 접근하여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쓰려 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부하고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피고는 내게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사랑을 고백하는 메모를 건네준 적도 있고, 또 언젠가는 텔런트 최모 양을 김 원장에게 붙여줘 간통하게 해 구속시킨 뒤 우리 두 사람이 합치자고도 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한 사실, 이에 위 6명의 기자들이 피고를 찾아가 원고와의 취재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피고는 같은 달 23. 16 : 30경 서울 여의도 소재 오지 카페에서 위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자들이 물으면 그에 대하여 해명하는 형식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접근하였음을 밝혀 그 무렵 레이디 경향등 여러 잡지에 원고와의 회견내용에 이어 피고의 반박진술로서 「동경에 있는 센트리하얏트호텔에서 손 씨를 만난 적이 있다. 일행과 같은 층에서 묵었다. 그날 내 매니저의 안내로 내 방에 올라온 손 씨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했다」, 「1989. 6. 17. 후배인 텔런트 강 가 전화를 연결해줘 통화한 적이 있다. 그때 손 씨는 2년 후에 결혼하겠다고 했다」라는 등의 내용이 보도된 사실, 한편 원고와 소외 김 은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더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1989. 6. 5.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확인을 받고 같은 해 8. 30.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원고는 그후 만성위염, 신경성장염 등이 생겨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9. 5. 27. 부터 같은 해 6. 23.까지의 신문, 잡지 등에 의한 일련의 보도를 통하여 유부녀로서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원고와 소외 김 간의 결혼생활의 파탄, 만성위염 등의 발생에도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겪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일련의 보도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게 된 발단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 이 먼저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표한 데에 있었

년 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에 있어 가장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던 피고의 1989. 6. 23.자 회견은 원고가 그 전날인 1989. 6. 22. 기자들을 모아놓고 답변한 내용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피고와 같이 세인의 관심을 끄는 유명가수의 경우 그와 관련된 취재내용이 실제보다 다분히 흥미위주로 각색되었을 것이라는 점 및 피고에 의한 원고의 명예훼손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재산관계,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1987. 6. 13.경 금 20,000,000원, 1988. 9. 6.경 금 40,000,000원을 각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각 금원 합계 금 60,000,000원 중 금 30,000,000원은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 30,000,000원은 동인의 벤츠 승용차로 대물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1987. 6. 하순 경 금 10,000,000원, 1989. 3.경 금 20,000,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 피고가 그 중간인 1988. 10. 초순 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자신의 78년형 벤츠 승용차로 대물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명하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제1호증(양도증명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대물변제를 함에 있어 그 양도계약서에 위 벤츠 승용차의 가격을 금 7,530,000원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대물변제에 있어서는 그 채무액보다 가치가 적은 대물금부를 하더라도 채권전액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부의 대물변제라는 뜻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그 일부에 한하여 채권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래의 대여금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피고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양도하기로 함에 있어 위 벤츠 승용차의 가격을 금 7,530,00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계약서에 표시한 것은 위 대물변제가 전체 대여금 채권의 일부인 금 7,530,000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임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대물변제는 위 금액 부분에 한하여 대여금채권 소멸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7. 6. 하순 경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1987. 6. 13.자 대여금 채무는 금 10,000,000원이 남게 되었고 그후 1988. 9. 6. 금 40,000,000원의 대여금 채무가 새로 발생한 것인 바, 피고의 1988. 10. 초순경 대물변제와 1989. 3. 경 변제로는 위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므로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1987. 6. 13.

자 대여금 채무는 금 5,506,000원 $\{27,530,000 \times 10,000,000 / (10,000,000 + 40,000,000)\}$ 이 소멸하고 금 4,494,000원이 남게 되며, 1988. 9. 6.자 대여금 채무는 금 22,024,000원 $\{27,530,000 \times 40,000,000 / (10,000,000 + 40,000,000)\}$ 이 소멸하고 금 17,976,000원이 남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10,000,000원과 대여금 잔액 금 22,470,000원(4,494,000+17,976,000) 합계 금 32,4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0. 2.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1. 4.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4. 17.

□

재판장 판사 임 완 규
판사 김 우 진
판사 김 소 영

고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1. 5. 7.자 판결(90가합10957)

서울고등법원 1991. 9. 25.자 판결(91나27329)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김학세 부장판사)는 1991년 9월 25일 故 陸英修 여사

살해사건 보도와 관련, 명예훼손등을 이유로 靑瓦臺 경호실 前경호과장 申 씨(56)등 일가족이 국민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회사는 원고 申씨등에게 2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申씨등은 1990. 5. 17.자 국민일보 1면 『陸여사 암살 진범은 이 사람』 제하의 기사와 국민일보가 발행하는 「시사토픽」 1990. 5. 24.자 『이 사람이 쏘았다』, 『최후의 저격 카메라가 잡았다』, 『괴청년 지금 어디에 있나』 제하의 기사와, 5. 31.자 『문세광·경비팀 암살전야에 만났다』, 『원손잡이 저격수는 측근의 한 사람』 등의 제하의 기사에서, 원고가 경호과장으로 서 육영수 저격 사건 현장에서 육영수 여사를 직접 저격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의 부하 경호원을 시켜 저격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명예가 훼손당했으며 2억2천만원의 위자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1심 법원은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의 작성이나 게재 및 배포에 있어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7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쌍방은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1審 判 決 文

사 건 : 90가합10957 손해배상(기)

원 고 : 1. 신

2. 이

3. 신

4. 신

5. 신

6. 신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홍 수

피 고 : 1. 주식회사 국민일보사(國民日報社)

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의 16

대표이사 조 용 우

2. 노 (盧)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 양

변론종결 : 1991. 4. 16.

- 주 문** :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신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이, 원고 신, 원고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0. 10. 17.부터 1991. 5. 7.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각 3분의 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신에게 금 171,486,858원, 원고 이에게 금 10,000,000원, 원고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분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갑 제10호증의 8은 그 일부), 을 제3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간 시사토픽지에 실린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에서 1974. 8. 15. 광복절 29주년 기념식장에서 벌어진 고 육영수 여사 암살사건에 연루된 대통령 경호과장으로 지칭된 자이고, 원고 이은 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아들, 딸들이며, 피고 주식회사 국민일보사(이하 피고 국민일보사라 한다)는 일간 국민일보와 위 주간 시사토픽지를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노은 피고 국민일보사의 객원기자로서 이 사건 기사를 취재, 기고한 자이다.

(2) 피고 노은 1990. 4. 피고 국민일보사의 객원기자로 일하게 되기 이전인 1989. 초 경고(故) 육영수 여사 암살사건의 수사에 참여했던 그 당시 서울시경 감식계장 소의 이를 알게 되어 동인으로부터 육영수 여사의 암살범은 당시 사건현장에서 붙잡혀 범인으

로 지목된 문세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많으니 그 진상을 조사하여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관한 정보와 자료들을 동인으로부터 입수하는 한편, 1989. 4.경 위 이의 주장을 토대로 한 책을 출판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소위 차 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던 중 사건 당시의 대통령 경호과장이 원고 신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후 위 이견우의 주장과 동인이 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1989. 9월호 월간 다리지에 『육영수 암살 진범 따로 있다-이견우 양심선언』이라는 제하의 글을 기고하였다.

(3) 그후 피고 노 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국민일보사의 객원기자로 있던 1990. 5. 초순 경 피고 국민일보사의 편집국 주간부 차장인 소외 김 으로부터 육영수 여사 암살사건에 관한 기사를 주간 시사토픽에 실어 보자는 요청을 받아 이를 응락한 후, 그 무렵 위 월간 다리지에 기고한 글로 인하여 알게된 위 사건 당시 엘 에이 타임즈(L.A. TIMES) 서울 특파원이었던 샘 제임슨(SAM JAMESON)을 만나 동인으로부터 육영수 여사를 저격한 사람은 문세광이 아니라 당시 식당 단상 오른편에 서 있던 대통령 경호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과 함께 그 근거로 제시한 당시 현장사진 4매를 전달받아 이를 동행한 피고 국민일보사 사진기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사진촬영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노 은 사건 당시 식당 단상 오른편에 경호과장이 있었다는 내용이 실린 1989. 10월호 월간 마드모아젤지의 기사등을 포함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종합한 후 자신의 견해를 곁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것이 위 현장사진 4매와 함께 1990. 5. 24.(제8호)자, 같은 달 31.(제9호)자 및 같은 해 6. 7.(제10호)자 주간 시사토픽지에 3회에 걸쳐 게재됨과 동시에 전국에 배포되기에 이르렀다.

(4) 그리하여 먼저 1990. 5. 17.자 국민일보 1면에 『육영수 여사 암살 진범은 이사람』이라는 제목 아래 위 사건 당시 식당 단상 오른편에 서 있던 세 사람의 모습을 점선으로 둘러싸고 그 중 한 사람의 손 부분을 화살표로 표시한 사진과 함께 「이 사진은 기념식장인 장충동 국립극장 무대 오른쪽 뒤편에서 괴청년이 뛰어 나오며 왼손에 든 권총으로 육여사를 향해 발사하는 순간의 모습(점선부분)과 총구의 섬광(화살표)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진설명을 곁들인 기사가 게재되었고, 이어서 1990. 5. 24.자 시사토픽지에는 1면에서 3면에 걸쳐 위 현장사진 4매와 함께 『육영수 여사 이사람이 쏘았다』, 『최후의 저격 카메라가 잡았다, 괴청년 지금 어디있나』라는 큰 제목과 『육여사 암살 결정적 현장』, 『베일에 가렸던 왼손잡이의 저격 확인』이라는 작은 제목 아래 「그렇다면 이 사진의 왼손잡이 경호원이 발사한 총은 사진에는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셈이다. 과연 그럴수도 있는

것인가」,「제임슨은 이렇게 증언했다. ‘당시 경호원중에 원손잡이를 밝혀내면 그가 육여사를 저격했을 가능성이 있다」,「지난해 육여사 저격 사건의 의혹이 증폭되면서(관중쪽에서 무대를 향해) 오른쪽 단상에서 괴청년이 뛰어나와 육여사 뒤로 달려간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그 경호원이 육여사를 향해 뛰쳐나감과 거의 동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또 한 명의 경호원이 육여사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포착되고 있다」「(사진) 상태가 나쁘지만 그 총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유의해야 한다. 사진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하면 그 총구는 바로 무대 안쪽, 즉 육여사를 향하여 불을 뿜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는 등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같은 달 31.자 시사토픽지에도 1면에서 3면에 걸쳐 『문세광·경비팀 암살전야 만났다』, 『원손잡이 저격수는 측근의 한사람』이라는 큰 제목과 『당일 전례없는 경비허술 왜 그랬나』 『원손잡이 옆 두 사람 왜 방관했나』라는 등의 작은 제목아래 「육영수 저격사건의 배후 조종자가 당시 경호책임자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제기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 경호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행사가 시작되었을때 원손잡이 경호원이 있던 단상 오른쪽에는 육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뛰어든 경호원 외에도 신 경호과장이 서 있었다고 한다, 단상 오른쪽에 있던 경호과장이 행사가 시작되자 각 지정 포스트에 있던 경호원 관계자들에게 서 있지 말고 앉으라는 무전지시를 내렸으며 이 때 문세광 뒤편에 서 있던 경호관계자는 그 지시를 받고 즉각 식장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지난해 시사토픽에 발표된 사진에 의하면 원손잡이 경호원 곁에 두명의 경호원(?)이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원손잡이 경호원은 신 당시 경호과장이었거나 아니면 경호과장 측근의 누구였음을 알 수 있다」, 「경호실 경호계장이 음모에 가담했다면 지난해 시사토픽에 공개한, 육여사를 향해 권총에 섬광을 뿜고 있는 원손잡이 경호원이 서 있는 자리 즉, 단상 오른쪽에 있었던 당시 경호과장 또한 음모에 무관할리 없을 것이다. 당시 청와대 경호실 간부들의 면면을 보면 경호실장 밑에 보안과장, 신 경호과장, 안전과장, 총무과장 등」, 「이상의 증언과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육영수 저격 사건은 경호실의 음모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이다」, 「원손잡이 경호원이 육여사를 향해 총격을 가하고 있는 그 자리에 당시 경호과장이 같이 있었다(물론 그 원손잡이 경호원이 경호과장과 동일인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등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5) 그런데 이 사건 기사에서 경호과장으로 지칭된 원고 신은 위 사건 당시 대통령 경호원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그 직책이 경호과장이 아닌 경호3과 1계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에는 청와대 본관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사건 현장에는 간 적이 없고, 다

만 위 사건 직후인 1974. 8. 31. 경호 2과장으로 승진되어 계속 근무하다가 1979. 11. 24. 퇴직하였을 뿐이다.

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함으로써 개개인이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인격발전을 이룩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원리가 유지, 발전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때 여론의 형성과 그 전달을 주된 기능으로 삼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자유임에 틀림없으나 그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헌법 제21조 제4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고 더우기 언론기관에 있어서 비진실을 보도할 자유가 인정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에서 본 이 사건 기사에 따르면 당시 경호과장의 지위에 있지도 아니한데다가 사건 현장에 간 적도 없는 원고 신○○이 마치 현장에서 육영수 여사를 쏘았다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하들을 시켜 총을 쏘게 하였다는 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위 기사 중 다른 내용의 진위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원고 신○○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는 허위보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당시 대통령의 안전을 최대 사명으로 삼는 경호원의 자리에 있던 원고 신○○로서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동인의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저하되어 그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에 바탕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및 배포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경우이거나 가사 그 진실성이 증명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취재등의 행위에 관련된 자에 있어서 그 기사가 진실된 것이라고 믿는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데,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입각한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피고 노종상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노○○은 신빙성이 있는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기 보다는 그 자신이 나름대로 수집한 여러 가지 확실치 않은 단편적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독자적인 판단을 덧붙여 이 사건 기사

를 작성하였는데다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류의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선행될 것이 요구되는 기사와 관련된 당사자 본인에 대한 확인 절차도 거친 사실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피고 국민일보사와 피고 노은은 이 사건 기사의 작성이나 게재 및 그 배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 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명예훼손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위 주간 시사토픽지가 배포됨으로 인하여 원고 신은 물론 그와 가족 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원고 신의 경력과 나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 그 내용과 크기 및 원고들간의 신분관계, 그리고 1990. 6. 7.자 주간 시사토픽지에 원고 신현순과 관련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정정보도가 실린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때 피고들은 원고 신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이금순을 비롯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을 위자료로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원고 신은 이 사건 기사가 게재, 배포될 당시 소외 대한설비공사협회의 상임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위 기사가 나간 이후 주변 및 사회 각계 각층에서 직장 및 자택으로 항의 내지는 협박전화 등이 빗발치듯 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낄뿐 아니라 주위의 이목이 두려운 나머지 1990. 8. 3.자로 위 직장에서 사직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같은 원고가 상실하게 된 60세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손해를 또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 신이 위 직장을 사직한 것이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및 배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주장과 같은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같은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신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이을 비롯한 나머

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 10. 17.부터 이 판결 선
고일인 1991. 5. 7.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별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5. 7.

재판장 판사 이 진 영

판사 최 호 근

판사 오 석 준

2審 判 決 文

사 건 : 91나2732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신 외 5인

원고들의 주소 서울

원고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홍 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주식회사 국민일보사(國民日報社)

서울 마포구 신수동 371의 16

대표이사 조 용 우

2. 노 (盧)

서울 노원구 공릉동 415의 40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 양

변론종결 : 1991. 8. 13.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1. 5. 7. 선고, 90가합10957 판결

- 주 문 :** 1. 원심판결의 원고 신 ○에 대한 부분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 신 ○에게 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년 10월 17일부터 1991. 9. 25.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의 원고 신 ○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신현순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신현순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8등분하여 그 중 1은 피고들의, 나머지 7은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원심판결의 원고 ○에 대한 각 인용금액 중 가집행 선고가 없었던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신 ○에게 돈 171,486,858원, 원고 이 ○에게 돈 10,000,000원, 원고 ○에게 각 돈 5,000,000원 및 각 이 ○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 원고 신현순의 항소취지 : 원심판결의 원고 신 ○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에게 돈 91,486,858원 및 이에 대한 1990. 10. 17.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금전지급 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피고들의 항소취지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1호증의 1(호적등본), 강제2호증의 1, 2(각 신문), 강제3호증의 1 내지 6(시사토픽), 강제7호증(공무원 인사카드), 강제8호증(이력서), 강제10호증의 3(고소장), 강제10호증의 4(진술조서), 강제10호증의 7(육 여사 암살사건 의혹의 실체), 을제3호증(주간 다리), 을제5호증(월간 마드모아젤)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

는 강제10호증의 5(피의자 신문조서), 강제10호증의 8(진술조서)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 인정에 반하는 강제10호증의 5, 8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 증인 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신 은 1963. 12월 경 대통령 경관으로 임용된 후, 1974. 8월 경 대통령 경호 과장으로 승진되어 근무하던 중, 1979. 11월 경 의원면직된 자이고, 원고 이 은 그의 처 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국민일보(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일간신문인 국민일보와 주간잡지인 시사토픽을 발행하는 회사이며, 피고 노 은 1990. 4월 경부터 피고회사의 객원기자로 일하여 온 자이다.

(2) 피고 노 은 피고회사의 객원기자로 일하기 이전인 1988년 말 경, 이른바 육영수 여사 암살사건 당시 서울특별시 경찰국 소속 감식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건의 수사에 참여했던 소외 로부터, 육영수 여사의 암살범은 당시 사건현장에서 권총을 발사하여 체포된 문세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에 관한 정보와 비공개 자료 등을 건네 받았고, 같은 해 11월 경 및 1990. 5월 경 위 암살사건 당시 미국 엘 에이 타임즈(L.A.TIMES) 서울특파원으로 일하면서 위 암살사건 현장에 있었던 소외 샘 제임슨(SAM JAMESON)으로부터 육영수 여사의 암살범은 위 문세광이 아니라 위 암살사건 당시 단상 오른편에 서 있던 원손잡이 경호원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동인이 제시하는 위 사건 당시의 현장 사진 4매를 사진촬영하는 등 위 사건에 관한 정보를 취재하였으며, 1989. 4월 경에는 소외 으로부터 위 암살사건 무렵의 청와대 경호과장이 원고 신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편 1989. 10월호 월간잡지인 우먼센스지와 마드모아젤지의 위 사건에 관한 기사를 읽는 등의 방법으로 육영수 여사 암살사건에 관한 취재를 하였다.

(3) 그리하여 피고 노 은 1990. 5월 경 피고 회사의 출판국 주간부 차장인 소외 으로부터 피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인 시사토픽지에 육영수 여사 암살사건에 관한 기사를 실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 회사는 피고 노 의 기사를 게재하기에 앞서,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1990. 5. 17.자 국민일보 1면 중단에 『육영수 여사 암살진범은 이 사람』이라는 제목 아래 위 사건 당시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위 사진에 나타난 단상 오른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을 점선으로 둘러싸고 그 중 한 사람의 손부분에서 나오는 섬광을 화살표로 표시한 후, 위 사진 밑에 「...이 사진은 기념식장인 장충동 국립극장 무대 오른쪽 뒤편에서 괴청년이 뛰어 나오며 원손에 든 권총으로 육여사를 향해 발사하는 순간의 모습(점선부분)과 총구의 섬광(화살표)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등

의 사진설명을 곁들인 기사를 게재한 다음,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시사토픽 1990. 5. 24.자 제8호와 같은 달 31.자 제9호에 피고 노 이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2회에 걸쳐 게재하고, 이를 전국에 배포하였는데,

(가) 시사토픽 1990. 5. 24.자 제8호에 게재된 기사는, 1면에서 3면에 걸쳐 『이 사람이 쏘았다』 『최후의 저격 카메라가 잡았다』 『괴청년 지금 어디에 있나』라는 제목 아래, 위 암살 사건 당시의 현장 사진들을 게재하면서, 위 사진들 밑에 「...무대 오른쪽 뒤편에서 괴청년이 뛰어 나오며 왼손에 든 권총으로 육여사를 향해 발사하는 순간 둥근 섬광이 선명하게 보인다(점선부분)...」 「...암살의 순간을 확대해 본 현장 공식적인 수사기록에도 없고, 어떤 추적조사에도 나타나지 않은 제3의 저격수 괴청년의 모습이 확인하다...」라는 등의 사진설명을 게재한 후, 본문에서 「...이 사진의 왼손잡이 경호원이 발사한 총은 사진에는 나타나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셈이다...」 「수사본부 요원으로 현장검증을 했던 당시 서울시경 감식계장 역시 문(세광)이 4발을 발포했다고 증언했고... 문이 쏜 4발 중 1발은 오발, 2발은 연설대, 3발은 태극기, 4발은 천장에 탄흔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메슨은 이렇게 증언했다. 당시 경호원 중에 왼손잡이를 밝혀 내면 그가 육 여사를 저격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육 여사 저격사건의 의혹이 증폭되면서 (관중쪽에서 무대를 향해)오른쪽 단상에서 괴청년이 뛰어나와 육 여사 뒤로 달려간 것이 문제가 됐다...그러나 그 경호원이 육 여사를 향해 뛰쳐나감과 거의 동시에 바로 그 자리에서 또 한명의 경호원이 육여사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포착되고 있다...」 「자메슨은...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바로 그가 육여사를 쏘았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상태가 나쁘지만 그 총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유의해야 한다. 사진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하면 그 총구는 바로 무대 안쪽, 즉 육 여사를 향하여 불을 뿜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호에서는...단장 뒤편의 왼손잡이 경호원이 누구이며...그 정체에 대해 철저히 추적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었고,

(나) 시사토픽 1990. 5. 31.자 제9호에 게재된 기사는, 1면에서 3면에 걸쳐 『문세광·경비팀 암살전야 만났다』 『왼손잡이 저격수는 측근의 한사람』 등의 큰 제목과 『문(文), 검문 안받고 비표없이 식당 통과』 『당일 전례없는 경비 허술 왜 그랬나』 『왼손잡이 옆 두사람 왜 방관했나』 『암살 전야 상면...발설 수사관 파면』 등의 작은 제목 아래, 「육영수 저격사건의 배후조종자가 당시 경호책임자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제기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육영수 여사를 향해 의문의 총을 발사한 왼손잡이 경호원은 누구인가...」 「...한 경호원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행사가 시작되었을 때 왼손잡이 경호원이 있던 단상 오른

편에는 육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뛰어든 경호원 외에도 신 경호과장이 서 있었다고 한다. 단상 오른편에 있던 경호과장이 행사가 시작되자 각 지정 포스트에 있던 경호원 관계자들에게 서 있지 말고 앉으라는 무전지시를 내렸으며 이때 문세광 뒤편에 서 있던 경호관계자는 그 지시를 받고 즉각 식당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지난호 시사토픽에 발표된 사진에 의하면 왼손잡이 경호원 곁에 두명의 경호원(?)이 더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왼손잡이 경호원은 신 당시 경호과장이었거나 아니면 경호과장 측근의 누구였음을 알 수 있다…» 「경호실 경호계장이 음모에 가담했다면 지난호 시사토픽에 공개한 육 여사를 향해 권총에 섬광을 뿜고 있는 왼손잡이 경호원이 서 있는 자리 즉, 단상 오른편에 있었던 당시 경호과장 또한 음모에 무관할 리 없을 것이다. 당시 청와대 경호실 간부들의 면면을 보면 경호실장 밑에 보안과장, 신 경호과장, 안전과장,

총무과장 등…» 「…이상의 증언과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육영수 저격사건은 경호실의 음모에서 비롯됐다는 결론이다…» 「왼손잡이 경호원이 육 여사를 향해 총격을 가하고 있는 그 자리에 당시 경호과장이 같이 있었다(물론 그 왼손잡이 경호원이 경호과장과 동일인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4) 그런데 원고 신 은 육영수 여사 암살사건 당시 대통령 경호과장이 아니라 경호3과 1계장으로서 청와대 본관 근무를 하고 있었고, 위 사건 당일 현장에 간 일조차 없었으며, 다만 위 사건 직후인 1974. 8. 31. 경호2과장으로 승진되어 근무하다가 1979. 11. 24. 퇴직하였을 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건 당시 원고 신 은 경호과장도 아니었고, 위 사건현장에 간 일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노 은 마치 위 원고가 경호과장으로서 위 사건 현장에서 육영수 여사를 직접 저격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의 부하 경호원을 시켜 저격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 소속 시사토픽 발행인등 관계자들은 위 기사를 위 시사토픽지에 게재하여 배포함에 있어 위 각 기사의 허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위 기사를 시사토픽 제8, 9호에 게재하여 전국에 배포함으로써, 그 당시 대통령의 경호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위 원고의 명예를 공동하여 훼손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으로 말미암아 위 원고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뚜렷하고, 한편 앞에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진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이 위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으로 말미암아 위 원고와 앞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허위의 기사를 작성한 피

고 노 과 피고 회사 소속 시사토픽 발행인 등 관계자들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공익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는 그 위법성이 저각되어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공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앞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노 은 소 외 차 으로부터 위 암살사건 무렵에 원고 신 이 대통령 경호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위 원고에게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위 피고가 단편적으로 수집한 자료에 터잡아, 위 암살사건 당시 대통령 경호과장이었던 위 원고가 육영수 여사를 저격하였거나 또는 그의 부하 경호원에게 이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회사 역시 이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시사토픽에 위 기사를 게재하여 이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의 작성, 게재, 배포 당시 피고들에게 위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기사로 말미암아 원고 신 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금전의 지급으로써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시사토픽)의 기재에 의하면 그 후 피고들은 시사토픽 1990. 6. 7.자 제10호에서 이 사건 기사 중「신 경호과장」을「김 모 경호과장」으로 바로잡고, 원고 신 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정정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앞에서 본 이 사건 기사의 게재경위, 피고들의 과실정도, 원고 신 의 나이와 경력, 원고들의 신분관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은 원고 신현순에 대하여 돈 2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신 은, 그가 이 사건 기사가 게재, 배포될 당시 소외 대한설비공사협회의 상임 부회장으로 재직중이었는데, 이 사건 기사로 말미암아 항의, 협박전화 등이 빗발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또한 주위의 이목이 두려워 1990. 8. 3. 위 직장을 그만두었으니, 피고들은 그로 인한 위 원고의 일일수입 돈 71,486,858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4호증(납세필증명서), 갑제5호증(봉급지급명세서), 갑제6호증(퇴직증명서), 갑제8호증(이력서)의 각 기

재에 의하면 원고 신 이 이 사건 기사가 게재, 배포되기 이전인 1989. 11. 1.경부터 소외 대한설비공사협회의 상임 부회장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이 사건 기사가 게재, 배포된 후인 1990. 8. 3.경 위 직장을 그만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원고가 이 사건 기사로 말미암아 위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맞는 강제11호증(사직경위서)의 기재와 원심 증인 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위자료로 원고 신 에게 돈 2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1,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아울러 원고 신 에 대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뚜렷한 1990. 10. 17.부터 피고들이 위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1. 9. 25.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위 1990. 10. 17.부터 피고들이 위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1. 5. 7.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원고 신 의 청구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 범위 안에서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위 원고에 대한 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피고들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신 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91. 9. 25.

재판장 판사 김 학 세
판사 백 영 엽
판사 김 종 백

원고등이 취재보도 활동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잘못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7. 29.자 판결(91가합3033)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9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1992. 7. 29. (주)연합통신등이 매스컴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매스컴신문이 지난 1월 4일자에 보도한 촌지관련 기사는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매스컴신문은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聯合通信 玄 사장이 받은 99만원은 91년도 연합화보의 여수시정 특별광고료이며 여수 주재 기자 이 이 받은 돈은 연합화보의 대금인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취재보도 활동과 관련해서 언론인들이 유관기관으로부터 부정하게 받는 금품 또는 향응을 의미하는 <촌지>라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원고 (주)연합통신등은 매스컴 신문 1992. 1. 4.자 1면 『언론계 또 「촌지파문」』 제하의 기사에서 자신들이 취재보도 활동과 관련 여수시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도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원고 聯合通信은 매스컴신문에 이 사건기사가 게재되자 현 사장이 받은 돈은 촌지가 아닌 「연합연감」 광고대금이며, 이 기자가 받은 돈은 「연합화보」 판매대금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하였고, 중재결과 합의가 되어 피고는 매스컴신문 1992년 2월 1일자 2면에 『정정보도문』 제하의 정정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92서울중재7).

判 決 文

사 건 : 92가합3033 손해배상(기)

원 고 : 1. 주식회사 연합통신(聯合通信)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의 1

대표이사 현

2. 현

서울

3. 이

여수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인 섭, 이 정 훈, 김 종 길

피 고 : 1. 주식회사 매스컴신문사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 58의 14

대표이사 이

2. 이

광주

3. 이

4. 윤

피고 3, 4주소 :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58의 14 매스컴신문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회 동

변론종결 : 1992. 7. 8.

주 문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2. 1. 4.부터 1992. 7. 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2. 1. 14.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분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실관계

갑제1호증(신문기사), 갑제2호증(청구서), 갑제3호증(세금계산서), 갑제4호증의 1 내지 4(각 지출부), 갑제5호증(해명서), 갑제7호증(신문기사), 갑제8호증(정정보도문), 갑제9호증(해명서), 갑제10호증(신문폐간계수리요청), 갑제11호증(중재화해조서), 갑제12호증(세출예산집행결의), 갑제13호증(여수시조례), 갑제14호증(피의자신문조서), 을제1호증의 2, 을제2호증의 2(각 공소장) 을제1호증의 3, 4, 5(각 공판조서), 6, 7(각 증인신문조서), 을제3호증의 3(결과보고), 을제3호증의 4 내지 11(각 진술조서), 12, 16, 18(각 지출결의서), 13, 14, 19(각 세금계산서), 15(유인물), 17(사례금 집행), 20(청구서), 21, 22(각 기안용지), 23, 30, 33, 34(각 피의자 신문조서), 24(예산내역), 25(보고서), 26(협조요망), 27(유인물), 28(결과보고), 29(심의결과), 31(통장), 32(진술조서), 35(해명서), 36(신문기사), 을제4호증의 1, 2(각 지출부), 을제5호증, 을제6호증(각 유인물)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광화문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이하 원고 연합통신이라 한다)은 뉴스를 취재하여 다른 언론기관에 공급하는 통신사(通信社)이며, 원고 현 은 동 연합통신의 대표이사, 원고 이

은 연합통신의 여수 주재기자인 사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매스컴신문사는 국내외 신문, 방송, 출판물 등 언론매체와 관련한 정보를 주로 보도하는 주간(週刊)신문인 매스컴신문을 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이 원이 그 대표이사로서 동 매스컴신문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고, 피고 윤 는 동 편집국 산하의 매체 1부장으로서 매스컴신문에 게재되는 신문관계 기사에 대한 편집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자이며, 피고 이 영은 동 신문의 광주지사장 겸 주재기자인 사실, 1991. 12. 28.자 한겨레신문에 『여수시 언론인에 거액촌지』라는 제목 하에 여수시가 91년도에 13개 언론사의 사장, 간부, 출입기자 등 33명에게 7,600만원의 촌지를 뿌린 사실이 여수시 의회 고 의원에 의하여 밝혀졌으나 촌지를 받은 언론인 명단을 자세히 밝히는 것은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자 피고 윤 는 동 이 영에게 이에 대한 취재를 지시를 하였고, 이에 동 이 영은 현지에서 그 내용을 취재하던 중 같은 달 29.경 여수시의 언론인에 대한 거액촌지규명대책위원회 소속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부터 27.경까지 실시한 여수시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자료를 교부받았는데, 그 자료상에 여수시의 예산 중 「홍보활동비」, 「보도사례비」의

지급내역과 이를 수령한 언론인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속칭 「촌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매스컴신문 본사로 위 자료들과 함께, 위 홍보활동비등은 실제로는 각 언론사들이 촌지로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송고한 사실, 피고 윤 는 위와 같이 송고받은 기사 내용 중 원고 연합통신의 대표이사인 동 현 이 보도사례비 명목으로 99만원의 촌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같은 달 30.경 동 현 및 위 연합통신의 지방국장인 소외 백 과 사이에 전화 확인을 통하여 그들로부터 위 99만원은 1991년도 연합연감에 여수시 시정특별광고를 싣고 그 광고비로서 수령한 것이고, 원고 이 이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받았다는 금 100만원 역시 같은 해 11월분 연합화보 1,000부를 여수시에 금 400만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서 수령하여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서 여수증등 관계자료를 언제라도 제시하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던 사실, 이에 동 윤

는 동 이 영에게 위 전화통화 내용을 알리면서 그 사실 여부의 확인을 구하였으나 동인으로부터 위 보도사례비와 홍보활동비 등의 금원들이 촌지임이 분명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듣게 되자 더 이상 별다른 확인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이 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보고한 후, 1992. 1. 4.자 위 매스컴신문 제1면에 톱기사로서, 『언론계 또 촌지파문』이라는 대제목하에 『사장, 간부, 기자 등 여수시서 8천만원 챙겨』, 『자정결의 무색... 현 지선 진상규명위 구성』이라는 소제목을 붙이고, 「...연합통신등 13개 언론사 사장을 포함한 편집, 보도국 간부 기자 등 32명이 지난해 1월부터 구랍 20.까지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시정홍보보도 사례비, 홍보 활동비, 시정역점시책 특집료, 해외시찰 사례금, 언론인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회에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도합 8,7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사무특별조사위원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김 광주일보 사장과 현 연합통신 사장이 보도사례비로 330만원과 99만원을 각기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현 사장에게 지출된 99만원도 여수시가 연합연감에 광고를 게재한 후 발행인 명의로 요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언론인들에게 촌지로 뿌려진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에 촌지를 받은 기자 중에는 지난 수서, 보사부 뇌물사건 이후 윤리강령제정, 촌지 청산결의 등 자정결을 외친 언론사들도 다수 포함돼 이들의 구호가 공염불에 그쳤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라는 취지의 본문 기사와 그 바로 우측에 『여수시 언론대책비 지급내역』이라는 제목하에 연합통신 사장 현 이 보도사례비 명목으로 금 990,000원을, 연합통신 여수 주재기자 이 이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도표를 각 게재한 다음, 같은 날 전국 일원에 동 신문 약 75,000부를 독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국내 유수의 언론기관인 원고 연합통신의 대표이사과 기자인 원고 현 동 이 이, 취재보도활동과 관련하여 언론인들이 유관기관등으로부터 부정하게 수수하는 금품 기타 향응을 지칭하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른바 「촌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함으로써 동 현 , 동 이 의 명예는 물론 동 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원고 연합통신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의 위와 같은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역시 진실에 합치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항쟁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이 신문보도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도 당해 보도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또한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는 때에는 그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또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는 경우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보도내용은 언론사의 관계자들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촌지를 수수하였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과연 피고들이 보도한 위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는지, 혹은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먼저 위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을3호증의 12, 16(지출부), 을제4호증의 1(여수시 지출부)에는 원고 현소환이 91연합연감 발간에 따른 시정방침 특집료로, 동 이 은 유공언론인에 대한 사례금으로 위 금원들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동 문서만으로 원고들이 이른바 촌지로 위 금원들을 수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1호증의 6(증인 신문조서), 을제3호증의 4, 5, 10, 11(각 진술조서), 을제3호증의 13(세금계산서), 14(청구서), 15(광고내용), 22(연합화보 배부계획), 31(통장), 당원의 광화문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앞으로 지급된 위 금원들 중 동 현 앞으로 지급된 위 99만원의 여수시가 원고 연합통신이 매년 발행하는 연합연감(聯合年鑑) 1991년도 분에 여수시정 특별광고(이른바 행정 피아 알)를 게재하고, 1991. 6. 18. 그 광고료(부가가치세 9만원 포함)로서 사장인 동 현 명의로 수령하여 회사에 입금된 것

이고, 동 이 이 수령한 위 금원은 여수시가 그해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민속 경연대회 기사가 특집으로 수록된 1991년도 11월분 연합화보 1,000부(1부당 4,000원)를 금400만원에 구입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수령하여 1991. 12. 2.자로 연합통신 광주지사로 입금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동 금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미의 「촌지」로 수수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보도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는 볼수 없다 할 것이다.

(2) 다시 피고들이 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보도하기에 앞서 이미 1991. 12. 28.자 한겨레신문에는 『여수시 언론인에 거액촌지』라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었고, 피고 이 이 그 내용을 취재 확인하던 중 입수한 여수시 의회 감사결과보고자료상에 원고 현 등이 시정방침 특집료, 유공언론인 사례금 등의 항목으로 위 각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당시 여수시에는 「여수시 언론인 거액촌지사건 규명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언론인들의 촌지 수수를 기정사실로 단정하여 이를 규탄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정등이 있기는 하나, 위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은 특정사실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실만을 보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었고, 또한 피고들이 당시 입수한 위 감사자료는 여수시 의회에 의하여 정식으로 채택되고 발표된 것이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비공식적인 경로로 유출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위 원고들이 시정방침 특집료등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 바로 위 금원들이 촌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할 자료로는 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더우기 피고 윤 가 위 기사의 보도에 앞서 원고 현 등에게 그 내용의 확인을 구한 결과 위 금원들은 촌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광고비와 연합화보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것이며, 영수증 등 증빙자료도 가지고 있으니 필요하면 확인해도 좋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더 이상 사실 여부에 관한 확인조치를 취한 바 없이 위 보도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위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면책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경력, 사회적 지위와 평가, 교육정도,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위 보도가 일으킨 사회적 영향과 이로 인한 원고들의 명예실추 정도, 그리고 피고들이 그 후 원고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일간지에 해명서를 게

재하였고, 위 보도를 계기로 동 매스컴신문은 자진폐간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도일인 1992. 1. 4.부터 판결선고일인 1992. 7.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2할 5분의, 각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7. 29.

□

재판장 판사 오 세 립

판사 권 오 창

판사 김 시 철

수사 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기한 정보를 인용한
경우에도 불법행위의 귀책 사유가 결하는 것이 아니며,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9. 8.자 판결(91가합78412)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992년 9월 8일 TV탤런트 겸 영화배우 **崔 씨**가 주식회사 朝鮮日報社, 주식회사 中央日報社,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주식회사 世界日報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손해배상을

1천만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 당국의 잘못된 판단에 기한 정보를 인용하여 보도한 경우에도 취재기자로서는 불법행위의 귀책사유를 결하는 것은 아니다」며 「보도자료에 보면 원고에게 적용된 죄명은 사기죄가 아니며, 원고가 수배되어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내용이 없고, 취재기자들이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의 사무실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취재한 사실이 없다」는 등 각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발행하는 신문 및 잡지 등에 원고가 해외유학 사기혐의로 수배를 받아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등의 기사가 게재되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1가합78412 손해배상(기)

원 고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 현 석, 이 건 호, 장 건 상

피 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우 영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성 기, 정 주 교, 이 병 선, 장 원 찬, 박 충 희, 강 정 먼

2. 주식회사 중앙일보사(中央日報社)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김 동 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 순 호

3. 주식회사 한국일보사(韓國日報社)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 재 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인 철
4. 주식회사 세계일보(世界日報)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의 1
대표이사 광 정 환

변론종결 : 1992. 8. 18.

- 주 문** :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5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 1. 손해배상책임의 발행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사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이하 중앙일보사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이하 피고 한국일보사라 한다) 사이에서는 강제17호증의 1, 강제18, 19호증의 각 1 내지 4, 강제21, 22, 23호증, 강제24호증의 1, 2, 강제25호증, 강제28, 29, 30호증, 강제31호증의 7, 10 내지 17, 강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주식회사 세계일보(이하 피고 세계일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가). 피고 조선일보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조선일보 제23면에 『여우가 해외유학 사기』라는 제목과 『미 도피 최 씨 중·고생 2백50명에 백억 가로 채』, 『「토플」등 위조... 알선업자 넷 영장』이라는 소제목 아래 「수배된 최 씨」라는 설명문과 함께 원고의 사진을 싣고 「서울시경은 11일 해외유학에 필요한 토플성적표를 위조해 무자격자를 유학보내거나 중·고생을 관광여권으로 출국시켜 미국 사립 중·고교에 편입시켜 온 혐의로... 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유 씨()등 유학 알선업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미국으로 도피한 영화배우 최 (28·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등 2명을 수배하고, (중략) 또 영화배우 최씨등 코리아 아카데미 관계자들은 부유층 자녀들의 조기유학붐을 이용해 작년 1월부터 유학여권을 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중·고생 2백50여명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1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을 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등은 이들 중고생들을 1년짜리 관광비자로 미국고등학교 어학연수과정에 취학시킨 뒤 최근 물의를 빚자 미국으로 도피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나). 피고 중앙일보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1.자 중앙일보 제23면에 『여우가 해외유학 사기』라는 제목과 『최 씨 미 도피, 2백여명에 백억원 가로채』, 『중고생들 미국서 영어 못해 목장일 하기도』라는 소제목 아래 「수배된 최 씨」라는 설명문과 함께 원고의 사진을 싣고 「해외유학자격이 없는 중·고생을 미국등지에 불법유학시켜 주고 1백억원을 챙긴 영화배우 최 씨등 2개 해외유학 알선업체 대표·브로커 등 4명이 구속되거나 영장이 신청됐으며 최씨등 2명은 수배됐다. 최씨등을 통해 불법유학간 중·고생들은 미국학교에서 성적 미달 등의 이유로 기숙사에 집단수용돼 말사육등 목장일까지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경은 11일 해외유학 여권을 받을 수 없는 만 18세 이하 중·고생들을 미국 캘리포니아고등학교에 유학알선해주겠다며 2백50여명으로부터 1백억원 상당을 받은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 최 (28·영화배우) 대표 유 씨(31) 등 2명을 여권법 위반등 혐의로 수배하고 상무 유 씨(44)를 구속했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이모 양(16·중3)등 부유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미국·프랑스 등 외국 정규종합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중·고생 조기유학생모집이라는 신문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백50여명을 1년짜리 관광비자로 미국고등학교 어학연수과정에 취학시킨 뒤 알선비등 명목으로 1인당 1천만원씩 모두 1백억원 상당을 받았으며 최근 물의를 빚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중략)」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1991. 4. 12.자 중앙일보에 『미 시골분교서 생고생』이라는 제목과 『불법유학 중고생들 돈만 날려』, 『어학연수에 엄청난 수업료』, 『과정 마쳐도 졸업장은 없어』, 『한 학교 45명 중 한국인만 40명도』라는 소제목 아래 「해외유학자격이 없는 한국 중고생들의 관광비자를 이용한 불법유학이 급증하자 미국의 재정이 어려운 한 벽지 고등학교에서는 이들로부터 엄청난 수업료를 받으며 분교까지 설치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서울시경에 적발된 영화배우 최 씨가 낀 불법유학알선사건과 관련, 구속된 이화텍사스주립유학원장 김 씨가 알선한 미국 코네티컷 소재 사우스켄트고교의 경우 한국 학생들이 몰려들자 이들을 특별수용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엠버서더분교를 설치, 총원 45명의 학생 중 40명을 한국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중략)」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피고 중앙일보사가 발행하는 월간지인 1991. 5. 여성중앙 제310면, 311면에 『유학사기사건으로 수배받고 미국으로 도피한 탤런트 최 씨』라는 제목과 『이사장 직함으로 월급받으며 사기행각 장단 맞춘 깜찍한 아역스타(?)』라는 소

제목 아래 「아역스타 출신으로 일반인들에게 낯을 익혀온 영화배우 최 (27)가 유학알선업체인 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 직함으로 중·고교생들에게 사기유학을 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줬다. (중략) 최 는 이번 사건이 밝혀지기 전 미국으로 도피, 최

의 보다 정확한 관련사항은 알 수 없는 상태로 (중략)」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피고 중앙일보사가 발행하는 월간지인 1992. 5. 하이틴 제334면에 『긴급! 세태르쁘』라는 제목과 『고삐 풀린 조기유학』, 『외국현지사정 모르고 무조건 떠나는 중·고생 조기유학 실태와 문제점 진단』이라는 소제목 아래 「중·고교생들의 도피성 해외유학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89년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되면서 자비유학 자격요건을 대폭 늘려 대입낙방생의 <도피성 유학>과 부유층 자녀의 <사치성 유학>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기유학알선업체에 대한 일제 단속에서 적발된 코리아 아카데미 대표 최 씨(전 탤런트)는 지난 3년간 해외유학자격이 없는 중·고생들을 미국등지에 불법 유학시켜 주고 1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수배됐다.(중략)」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다). 피고 한국일보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한국일보 제23면에 『중고생에 유학사기』라는 제목과 『2백50여명 알선... 1백억 챙겨』, 『여배우 최 씨등 6명 적발』이라는 소제목 아래 「수배된 최 씨」라는 설명문과 함께 원고의 사진을 싣고 「서울시경은 11일 해외유학자격이 없는 중고생들을 관광여권을 이용해 미국의 부실 사립고교에 편입학시켜온 (주)코리아 아카데미(서울 강남구 신사동) 상무 유 씨(44)를 여권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사장 최 (28·영화배우), 사장 유 씨(31)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중략) 경찰에 의하면 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 최씨등은 지난해 1월부터 일간지에 『외국정규종합대학입학을 위한 중고생 조기유학생모집』이라는 신문 광고를 낸 뒤 이모 양(16)등 부유층의 중고생 자녀 2백50여명을 1년 체류의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출국시킨 뒤 미 캘리포니아주 T중고교등에 입학시켜온 혐의다. 최 씨등은 이 과정에서 알선비등 명목으로 1인당 1천만원 이상씩 1백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피고 한국일보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일간스포츠 제15면에 『여배우 최 미 유학사기 수배』라는 제목과 『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 돈 받고 토폴성적 위조』, 『중고생 2백50여명 관광여권으로 편입학 알선』이라는 소제목 아래 「최」라는 설명문과 함께 원고의 사진을 싣고 「서울시경은 11일 해외유학자격이 없는 중고생들을 관광여권을 이용해 미국의 부실 사립고교에 편입학시켜 온 (주)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유 씨(44)를 여권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사장 최 (28·영화배우), 사장 유 씨(31)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

다. (중략) 경찰에 의하면 최 씨등 코리아아카데미 관계자들은 부유층 자녀들의 조기 유학 붐을 이용해 지난해 1월부터 유학여권을 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중고생 2백50여명을 유학알선비조로 1천만원씩 받고 관광여권으로 출국시킨 뒤 미국 캘리포니아 H중고교에 입학시킨 혐의다. (중략)」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1992. 4. 15.자 일간스포츠 제 22면에 『4월은 잔인한 달...연예인들 몸조심』이라는 제목과 『최 유학사기(중략)』라는 소제목 아래 「최」라는 설명문과 함께 원고의 사진을 싣고 「아역배우 출신의 최」가 중고생들을 관광여권을 이용해 미국의 부실 사립학교에 편입학시킨 혐의로 수배중입니다. (중략)」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피고 한국일보사가 발행하는 주간지인 1991. 4. 28.자 주간여성 제68면에 『심층취재, 적발된 불법유학 알선업체 학생송출실태 전말』이라는 제목과 『「토폴성적표」 위조 무자격 학생 관광여권으로 보내 말썽』, 『미국유학 랭귀지 스쿨이 함정, 실력없이 가면 「유학(遊學)」으로 끝장』, 『미국에만도 1만명 넘어... 연수생 대우 받으며 목장 사역까지』라는 소제목 아래 「불법으로 중·고생의 유학을 알선하고 1백여억원을 챙긴 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 최 씨를 비롯한 유학 브로커등 4명의 적발사건이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중략) 경찰은 또한... 행방을 감춘 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 최 씨(28·영화배우)와 대표 유 씨(31) 등 2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중략)」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라). 피고 세계일보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세계일보 제23면에 『여우 최 1백억 사기』라는 제목 아래 「미국으로 도피한 이사장 최 씨」라는 설명문과 함께 원고의 사진을 싣고 「서울시경은 중고생 250여명에게 유학을 알선해 주겠다고 1백억원을 받은 (주)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유 씨를 여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사장 최

씨(28·영화배우) 대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최씨는...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250여명에게 1년짜리 관광비자로 미국고교 어학연수과정에 취학시킨 뒤 이 들로부터 모두 1백억원을 받았으며 최근 물의를 빚자 미국으로 도피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고, 같은 피고가 발행하는 월간지인 1991. 5. 세계여성 제17면에 『실력 없이 허영으로 유학 보낸 아이들, 미국에서 이렇게 멍들어가고 있다』라는 제목 아래 「영화배우 C양이 포함된 유학알선업체의 사기를 계기로 조기유학생들의 현재생활이 문제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2) (가). 소외 유 는 국외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인데 교육법, 병역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는 사람의 경우 교육감의 유학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유학을 할 수 없음에도 1989. 1.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이후 17세 미만자들의 경우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약 4주간의 단기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미 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출국하기만 하면 학업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을 허가하는 학교가 있어 탈법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학을 원하는 중·고등학생 및 학부형 등을 상대로 마치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 알선하고 그 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여 왔다.

(나). 그런데, 위 유 는 유학 희망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1989. 2.경 미국유학 경험이 있는 인기 여배우인 원고에게 위 회사에서 같이 일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강남지사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강남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같은 해 말 경 위 회사는 본사가 강남으로 이전한 후에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다).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유학생모집광고를 내는 데 있어 광고모델의 역할을 하는 일과 위 회사를 찾아온 유학 희망자나 그 학부모를 상대로 원고의 유학경험을 토대로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 미국의 교육제도, 어학공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해 주는 일이었고 그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월 금 1,500,000원의 보수를 받았다.

(라). 원고는 약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 주었고, 1990. 여름에는 위 회사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토폴시험 없이 미국 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미국대학 관계자들을 안내하고 소개하였으며 통역을 담당한 일이 있고 같은 해 7. 하순 경에는 미국에 있는 엘리어트팍이라는 중·고등학교에 약 30명의 유학 희망자를 인솔하여 안내한 일이 있다.

(마). 이로 인하여 위 유 를 비롯한 위 회사 관계자들과 원고는 1991. 4. 15. 여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는 바 위 유 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건의 유학을 알선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하여 같은 해 5. 18.자로 구속기소되었으나 원고의 사기혐의에 관하여는 원고와 위 회사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참고인인 소외 유 훈(같은 혐의로 입건됨)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같은 날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같은 해 9. 재기수사신청을 하여 1992. 6. 26.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위 처분이유에 의하면 소외 유 등은 위 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고를 위 회사의 광고모델로 고용하고 아울러 원고의 과거 유학경험을 토대로 하여 학부모들을 상대로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어학공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월 금 1,500,000원의 보수를 주었으나 원고는 위 회사의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또한 해외유학알선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는 위 유 , 위 회사의 유학부 차장 강 및 경리 두 의 진술을 이유로 원고의 사기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다).

(바). 원고는 1991. 3. 7.부터 같은 달 11.까지와 같은 해 4. 4.부터 같은 달 9.까지 두 차례 일본에 다녀온 일이 있을 뿐 경찰에 입건된 이후, 잠적하거나 경찰에 의하여 수배된 일이 없고 위 유 가 기소된 2건의 유학알선행위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들을 직접 상담하거나 알선했던 일이 없으며 위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월 금 1,500,000원의 보수를 받은 이외로 유 학상담자등으로부터 달리 돈을 받은 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발행의 위 각 신문, 잡지상의 기사 중 원고가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 원고가 위 각 기사작성 당시 미국으로 도피하여 수배중이었다는 점, 원고가 토플성적의 위조에 관여하였다는 점 등은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각자 위 조선일보, 중앙일보, 여성중앙, 월간 하이틴, 한국일보, 일간스포츠, 주간여성, 세계일보, 세계여성 등의 신문, 잡지상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재, 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다. 피고 조선일보사, 중앙일보사, 한국일보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위 각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위 각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담당수사관이 배포한 보도자료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위 각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신문, 잡지기사의 보도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적시된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되어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는 귀책사유를 결하여 결국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 잡지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 비추어 그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근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

그런데 먼저 위 각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그 각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임은 명백하므로 다음에서는 위 각 기사가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취재과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든 각 증거, 을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기사 중 위 한국일보의 기사를 취재한 피고 한국일보사 소속의 기자인 소외 이○○○는 1991. 4. 11. 09 : 30경 서울시경 수사과 기자실에 수사과 경제계담당 수사관인 소외 박○○○ 경장으로부터 보도자료를 배포받고 「원고의 공모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현재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신병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배중이다」라는 정보를 얻은 후 위 한국일보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위 조선일보의 기사를 취재한 피고 조선일보사 소속의 기자인 소외 배○○○은 같은 날 팩시밀리로 위 보도자료를 전송받아 서울시경 공보실에 전화를 하여 팩시밀리 전송내용의 진위 여부, 사건의 내용 및 원고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등을 문의하고 「경찰이 원고의 신병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미리 미국으로 도피하여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정보를 얻은 후 위 조선일보의 기사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피의자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사문서 위조, 동행사, 여권법 위반이고 사기죄는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수배되었다거나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토플성적표 위조의 범죄사실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김선태등에 대한 범죄사실인 사실, 위 기자들은 모두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의 사무실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취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배○○○은 원고의 집에 직접 전화를 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위 각 기사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기사의 취재과정에서 소외 이○○○, 배○○○ 등 취재기자들이 위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각 그 소속기자들의 위와 같은 취재를 토대로 위 각 기사를 그들의 신문, 잡지 등에 게재, 배포한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위 각 기사가 게재된 신문, 잡지가 배포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사

실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기 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유 등의 유학 알선행위의 불법성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코리아 아카데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유학 희망자나 그 학부모들의 상담에 응함으로써 일반인의 오해를 야기한 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지위, 피고들의 규모와 신문발행부수, 위 각 기사 의 내용과 크기, 그 게재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손해배상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9. 8.

□

재판장 판사 황 인 행

판사 김 용 빈

판사 김 익 현

수사 당국의 보도자료와 보충설명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취재 기자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9. 9.자 판결(91가합78429)

서울고등법원판결 1993. 7. 21.자 판결(92나59071)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993. 7. 21. TV탤런트 겸 영화배우 최 씨가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연합통신 등을 상대

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신문, 경향신문에 대해선 「문제의 기사가 게재된 신문, 잡지가 배포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었다」며 원고에게 각 1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연합통신에 대해서는 「취재 기자가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당국의 보도자료와 보충설명만 듣고,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해 원고 및 코리아 아카데미 유학원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취재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발행하는 신문 및 잡지등에 원고가 해외유학 사기혐의로 수배를 받아 미국으로 도피했다는 등의 기사가 게재되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이 건 기사는 일반 독자들에게 연예인으로 널리 알려진 원고가 사기로 유학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백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뒤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당사자인 원고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박의 기회를 부여함이 없이 게재 공포되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은 원고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연합통신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경향신문이 연합통신이 작성·배포한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고, 그 기사 내용은 당시 수사 진행 상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양 당사자는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1가합78429 손해배상(기)

원 고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건 호

피 고 : 1.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신 우 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시 현

2. 주식회사 경향신문사(京郷新聞社)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심 상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두 현, 최 윤 수

3. 주식회사 연합통신(聯合通信)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의 1

대표이사 현 소 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인 섭, 김 인 만, 황 의 인, 김 종 길, 김 성 진, 이 정 한, 강 종
구, 이 후 동, 오 양 호, 정 의 종, 최 우 석

변론종결 : 1992. 8. 26.

주 문 : 1.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원고에게 각 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에 대한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50,0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연합통신사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7호증(출입국사실증명), 갑제20호증의 1 내지 3, 갑제21, 22호증의 각 1, 2(각 기사), 갑제23, 24호증(각 판결), 갑제26호증의 10

내지 12(각 피의자 신문조서), 을제8호증(기사), 을제11호증(증인신문조서, 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을제12호증의 1, 2(인증서 표지 및 내용, 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3세때부터 방송에 출연하여 연예활동을 해 온 연예인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1981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 그 곳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1986. 6월 경 귀국하여 국내에서 다시 연예활동을 계속하여왔다.

(나) 원고는 1989. 2월 경 소외 유 가 경영하던 유학알선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여행사(이하 코리아 아카데미라고 한다)와 광고모델로 출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유학경험과 대학 전공과목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위 코리아 아카데미의 고객들에게 유학에 관한 상담을 하여 주기로 하고 그 보수로 월 금 1,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일주일에 한두번 약 1시간씩 위 코리아 아카데미에 출근하여 유학에 관한 상담을 하였는데 그 후 위 유 는 원고를 코리아 아카데미의 이사장으로 하여 유학알선 광고를 하였다.

(다) 교육법과 병역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중고등학교 재학생등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위 규정에 따른 해당 교육감의 유학자격인정을 받지 않고는 국외유학을 할 수 없음에도 1989. 1월 경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이후 국외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사들이 유학자격이 없는 중고생들에게 유학비자가 아닌 관광이나 친지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여권이나 방학기간 중의 단기어학연수와정에 등록하는 경우의 학생비자 등을 발급받게 한 후 위 유학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해외유학을 갈 수 있도록 알선하는 경우가 늘어나 문제가 되자 1991. 3월 경 서울시 경찰국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라) 위와 같은 수사 사실을 취재한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와 경향신문사는 원고를 수배중이라는 수사관의 말만 믿고 원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원고의 사진을 함께 실어 위 피고들이 제작, 배포하는 일간지 및 주간지에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의 기사 내용]

× 1991. 4. 12.자 서울신문

제목 : 중고생 2백 50명에 1백억대 유학 사기 여우 최 미(美)로 도피

내용 : 서울 시경은 11일 해외유학의 자격이 없는 중고생들을 일반여권으로 출국하도록

하거나 토폴시험성적을 위조해 유학여권을 발급받게 해 준 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유씨등을 여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미국에 체류 중인 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인 영화배우 최 양등을 수배하는 한편 (중략) 코리아 아카데미의 이사장 최양과 상무 유씨 등은 일간지에 중고생 조기유학등의 광고를 내 유학여권을 받을 수 없는 이모 군 등 2백50여명을 모집, 한 사람마다 1천만원씩을 받고 일반 여권으로 출국시켜 (중략) 지금까지 1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1991. 4. 12.자 스포츠서울

제목 : 배우 최 해외유학사기 자격없는 중고생들 불법알선 1백억원 챙겨

내용 : 해외유학 자격이 없는 중고생들을 미국 호주 등지에 불법 유학시켜 주고 금품을 챙겨 온 영화배우 최 씨 등 4개 해외유학 알선업체 대표, 브로커 등 6명이 사문서 위조, 여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영장이 신청됐으며 최씨는 수배됐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1월 해외유학 알선업체인 (주)코리아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최 씨를 월 1백50만원씩 주고 이사장으로 내세운 뒤 대대적인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남모 씨등으로부터 1천만원씩을 받고 관광비자로 자녀들의 사기유학을 주선했다는 것

※ 1991. 4. 28.자 선데이 서울

제목 : 아역스타 최 유학경험 살려 유학사기

내용 : 인기 여배우 최 가 불법 유학알선업체의 이사장으로 사기행각을 해온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중략) 서울 시경은 지난 11일 해외유학여권을 받을 수 없는 만 18세 이하 중고생 250여명에게 미국 고등학교에 유학알선해주겠다며 10억1천여만원의 받은 혐의로 최 등 관련자를 수사하게 된 것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의 기사 내용]

※ 1991. 4. 12.자 경향신문 기사

제목 : 부유층 자녀 유학 사기

4명 영장 미(美) 도피 최 수배

내용 : (전략) 경찰은 또 말썽이 나자 미국에 체류 중인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인 영화배우 최 씨등 2명을 수배했다.

또 유씨와 최씨 등 코리아 아카데미 관계자들은 부유층 자녀들의 조기유학 붐을 이용, 지난해 1월부터 신문광고를 통해 유학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중고생 2백50여명에게 유학알선비 명목으로 1천만원씩을 받고 1년짜리 관광여권으로 출국시킨 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중고등학교와 어학연수과정 등에 입학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 1991. 4. 28.자 주간경향

제목 : 미성년자 불법유학 알선회사 최 는 월급쟁이 이사장

내용 : 미국내 브로커들과 짜고 한국의 중고생들을 불법유학시켜 온 유학알선업자 속에 영화배우 최 가 개입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토플성적 위조, 불법비자기간 연장, 가짜 대학 입학허가서 등으로 1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도망가 있어서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다.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일반 독자들에게 연예인으로 널리 알려진 원고가의 소외 유 등과 공모하여 불법유학 알선업체인 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해외유학을 갈 수 없는 중고생들을 상대로 가짜 여권과 토플성적위조 등의 방법으로 유학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백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며, 당사자인 원고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그 반박의 기회가 부여됨이 없이 위와 같은 기사가 게재되어 막대한 수의 독자들에게 보도,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발행, 배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3)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같은 피고들 소속 기자들은 당시 서울시 경찰국의 수사관이 이 사건 기사의 정보로 제공한 보도자료 및 각 일간지의 기사를 참작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 게재한 것이며 그 내용 또한 사실에 부합되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라고 다툰다.

(나) 일반적으로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적시된 기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또는 진실성을 증명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

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취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언론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에 비추어 그 기사가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기사 작성자의 신뢰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할 것이며 수사당국의 수사과정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취재 기자로서는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기사화하였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기사 작성자가 그 정보의 진실성을 신뢰한 것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닌 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기사의 경우를 살펴건대, 먼저 원고는 영화배우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인(公人)이며 위 기사 내용이 불법유학알선등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내용이거나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취재과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강제26호증의 10 내지 12, 14 내지 16(각 피의자 신문조서), 강제27호증의 1, 2(불기소장 표지 및 내용), 을제7호증의 25(불기소, 기소중지 사건 기록), 26(범죄정보보고), 29(수사결과보고), 을제9호증(수사결과보고), 을제11호증(증인신문조서, 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을제12호증의 1, 2(인증서 표지 및 내용, 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유 등이 경영하는 코리아 아카데미에서 월 금 1,500,000원을 받고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소개 및 현지적응 등의 상담을 하였을 뿐 그 유학 절차 및 경영 등에는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 같은 해 4. 11. 피고 소속 기자들이 위와 같은 수사개시 사실을 알고 이를 취재하기 위하여 서울시 경찰국을 방문하자 그 담당직원인 수사관은 기자들에게 위 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위 유 과 그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여권발급 신청시 그 목적과 체류기간 등을 유학이 아닌 일반 관광 목적 등으로 허위기재하여 불법유학을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여권법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며 위 유 는 여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만 원고는 현재 소재 불명(당시 원고는 1991. 4. 4. 출국하여 같은 달 9. 입국하여 국내에 있었다)으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

지의 이른바 보도자료를 제시하였고 당시 원고등에 대한 사기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위 유학알선을 의뢰한 사람들의 수나 그들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등에 대하여는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아니하여 위 피고들이 제공받았다는 보도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그 후 1991. 5. 18. 원고 및 소외 유 등에 대한 여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여권 신청시 그 목적을 유학이 아닌 관광등으로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 후 그 목적과는 달리 유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권발급신청 자체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진 후 1992. 6. 26. 원고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고가 위 유 등이 불법유학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받는 데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코리아 아카데미의 경영 및 유학알선절차에는 관여하지도 아니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고도 할 수 없고, 위 피고들 소속 기자들이 서울시 경찰국에서 제시한 위 보도자료 및 각 일간지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보도자료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는 위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것과도 다르게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과장 보도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기사의 취재과정에서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전국에 배포하여 원고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의 결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원고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나 서울시 경찰국의 수사 보도자료에 기하여 작성된 점, 전체 기사의 분량 중 원고에 관한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 갑제23, 24호증(각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91카65411, 65412 정정보도게재청구사건에서 1991. 11. 15. 피고들은 피고들이 발행하는 주간지인 선데이 서

울 및 주간경향에 원고는 불법유학을 알선하거나 사기행각을 해온 사실이 없고 위 코리아 아카데미의 신문광고에 사진을 게재하는 일과 유학희망자에 대한 상담의 대가로 월 금 1,500,000원을 받은 일은 있어도 달리 돈을 받아 챙겨 잠적한 일은 없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는 위 코리아 아카데미로부터 월 금 1,500,000원을 받고 유학상담 및 광고모텔을 하였으며 위 코리아 아카데미의 강남지사장으로 행세하다가 그 후 소외 유가 원고를 그 이사장으로 하여 광고를 내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해 온 사실, 그 밖에 이 사건 기사 게재 경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각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위 피고가 1991. 4. 12. 원고의 사진과 함께 『여우(女優)가 해외유학 사기-미(美)도피 최 씨 중고생 2백50명에 백억 가로채』라는 제목 아래 원고가 소외 유등과 함께 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중고생들의 조기유학알선을 명목으로 1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취지의 기사와 『아역배우로 명성, 미(美) 대학 나와-최 는 누구인가』라는 제목 아래 원고의 그 동안의 연예활동과 유학사실 및 최근의 사생활을 담은 기사를 작성, 각 신문사에 배포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같은 날 일간지에 실리게 함으로써 위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므로 같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위 기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강제21호증의 1, 22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1, (각 신문기사)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피고가 작성하여 각 신문사에 배포하였고 주장하는 위 내용의 기사는 소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및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가 작성하여 1991. 4. 12.자 조선일보 및 경향신문에 게재한 기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조선일보 및 경향신문의 기사가 위 피고가 작성, 배포한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제8호증(연합통신 기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1991. 4. 11. 위 불법해외유학사건에 관하여 『학생 250여명 불법유학, 알선업자 넷 영장신청, 토폴성적위조-권광비자 이용』이라는 제목 아래 서울 시경은 해외유학자격이 없는 중고생들을 상대로 해외유학을 시켜 온 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소외 유 등 알선업자 4명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아카데미 이사장 원고를 같은

협의로 수배하였는데 원고는 유학희망자 모집과 진학상담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각 신문사에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피고가 작성한 기사 내용은 당시 수사진행 상황을 그대로 보도하였고 달리 위 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는 각 원고에게 위 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92조, 93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9. 9

재판장 판사 조 용 무
판사 홍 승 면
판사 강 선 희

2審 判 決 文

사 건 : 92나5907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창 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건 호

피고(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1.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윤 형 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동 환

소송복대리인 김 시 현

2. 주식회사 경향신문사(京鄉新聞社)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심 상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두 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 윤 수

피항소인 : 주식회사 연합통신(聯合通信)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의 1

대표이사 최 종 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인 섭, 김 인 만, 황 의 인, 김 종 길, 김 성 진, 이 정 한, 강 종 구,
이 후 동, 오 양 호, 정 의 종, 최 우 식

변론종결 : 1993. 6. 23.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9. 9. 선고 91가합 78429판결

주 문 :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에 대한 부대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5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 원고의 항소취지 :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연합통신(이하 연합통신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연합통신은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이하 서울신문사라고만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경향신문사(이하 경향신문사라고만 한다.)의 항소취지 : 원심판결 중 위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서울신문사, 경향신문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신문사, 경향신문사는 원고에게 각 금 20,000,000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 1. 원고의 피고 서울신문사, 경향신문사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호증

의 각 1, 2, 갑 제23, 24호증, 갑 제26호증의 7, 10 내지 18, 을제7호증의 4 내지 51, 을제8, 9호증, 을제14호증, 을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제11호증, 을제12호증의 1, 2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와 증인 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서울신문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서울신문에 『중고생 2백 50명에 1백억대 유학 사기』라는 제목과 『여우 최 미(美)로 도파』 『토플성적 위조해 유학알선도, 4명 명장』이라는 소제목 아래 「최 양」이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내용 : 「서울 시정은 11일 해외유학의 자격이 없는 중고생들을 일반여권으로 출국하도록 하거나 토플시험성적을 위조해 유학여권을 발급받게 해 준 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유

씨등을 여권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미국에 체류 중인 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인 영화배우 최 양등을 수배하는 한편 (중략) 코리아 아카데미의 이사장 최양과 상무 유씨 등은 일간지에 중고생 조기유학등의 광고를 내 유학여권을 받을 수 없는 이모 군 등 2백50여명을 모집, 한 사람마다 1천만원씩을 받고 일반여권으로 출국시켜 (중략) 지금까지 1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피고 서울신문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스포츠 서울에 『배우 최 해외유학사기』라는 제목과 『자격없는 중고생들 불법 알선 1백억원 챙겨, 4개 업체 대표 브로커 등 6명 명장』이라는 소제목 아래 「최 」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내용 : 「해외유학 자격이 없는 중고생들을 미국 호주 등지에 불법유학시켜 주고 금품을 챙겨 온 영화배우 최 씨등 4개 해외유학 알선업체 대표, 브로커 등 6명이 사문서 위조, 여권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영장이 신청됐으며 최씨는 수배됐다. (중략)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해 1월 해외유학알선업체인 (주)코리아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미국유학 경험이 있는 최 씨를 월 1백50만원씩 주고 이사장으로 내세운 뒤 대대적인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모 씨등으로부터 1천만원씩을 받고 관광비자로 자녀들의 사기유학을 주선했다는 것」

또한 피고 서울신문사가 발행하는 주간지인 1991. 4. 28.자 선데이 서울에 『아역스타 최 유학경험 살려 유학사기』라는 제목과 『미국서 대학졸업 후 귀국, 중고생 불법알선 혐의로 수배, 돈챙겨 잠적, 광고모델 출연이 계기, 이사장으로 학생상담, 설명회 주관등 손수

나서』이라는 소제목 아래 「잉터리 해외유학을 주선한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영화배우 최
」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을 중앙에 크게 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
되었다.

내용 : 「인기 여배우 최 가 불법 유학알선업체의 이사장으로 사기행각을 해 온 사실
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중략) 서울 시경은 지난 11일 해외유학여권을 받을 수 없는
만18세 이하 중고생 250여명에게 미국 고등학교에 유학알선 해주겠다며 10억 1천여만원
을 받은 혐의로 최 등 관련자를 수사하게 된 것」

(나) 피고 경향신문사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인 1991. 4. 12.자 경향신문에 『부유층 자녀
유학사기』라는 제목과 『4명 영장, 미 도파 최 수배, 관광비자로 출국시켜』라는 소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으며, 그 말미에는 「수배된 최 양』이라는 설
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을 싣고 『아역배우로 명성, 미 대학 나와』라는 제목과 『최 은 누
구인가』라는 소제목 아래 원고의 약력을 설명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내용 : 「서울시경은 11일 해외유학용 토플성적표를 위조해 무자격자를 알선하거나 중고
생들을 관광여권으로 출국시켜 미국 사립 중고교에 편입시켜온 (중략) 김 씨와 (주)
코리아 아카데미 대표 유 씨등 4명을 여권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
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말썽이 나자 미국에 체류중인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
인 최 씨 등 2명을 수배했다. (중략) 또 유씨 와 최씨등 코리아 아카데미 관계자들은
부유층 자녀들의 조기유학 붐을 이용, 지난해 1월부터 신문광고를 통해 유학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 중고생 2백50여명에게 유학알선비 명목으로 1천만원씩을 받고 1
년짜리 관광여권으로 출국시킨 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중고등학교와 어학연수과정 등에
입학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고 경향신문사가 발행하는 주간지인 1991. 4. 28.자 주간경향의 표지에 『여배우
최 유학 사기 소동』이라는 제목을 게재한 후, 그 34면에 『미성년자 불법유학, 알선회
사 최 는 월급쟁이 이사장』이라는 제목과 『이민 갔다 대학 마치고 5년전 귀국, 베드신
척척 연기활동하다 일 벌여』라는 소제목 아래 「최 씨는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주위의
이목을 끌기도 했었다.」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을 우측 상단 중앙에 크게 싣고 다음
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내용 : 「미국 내 브로커들과 짜고 한국의 중고생들을 불법유학시켜 온 유학알선업자 측
에 영화배우 최 가 개입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토플성적위조, 불법 비자기간
연장, 가짜대학 입학허가서 등으로 1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양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미국으로 도망가 있어서 경찰이 소재파악에 나섰다.]

(다) 한편 원고는 3세때부터 방송에 출연하여 연예활동을 해 온 연예인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1981. 미국으로 유학을 가 그 곳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1986. 6.경 귀국하여 국내에서 다시 연예활동을 계속하여 왔다.

(라) 소외 유 는 국외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코리아 아카데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는데, 교육법, 병역법 및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갖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유학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국외유학을 할 수 없음에도 1989. 1. 부터 시행된 해외여행자유화조치 이후부터는 17세 미만자들이 관광이나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다는 점과 미국 내 고등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약 4주간의 단기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미대사관으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출국하기만 하면 학업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학비만 지급하면 쉽게 입학할 허가하는 학교가 있어서 탈법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학을 원하는 중, 고등학생 및 학부형 등을 상대로 마치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유학생을 모집, 알선하고 그 비용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하여 왔다.

(마) 원고는 1989. 2월 경 소외 회사의 광고모델로 출연한 바 있었는데, 위 유 는 유학희망자들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국유학경험이 있는 인기 여배우인 원고에게 위 회사에서 같이 일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의 강남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어 처음에는 「강남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같은 해 말 경 위 회사의 본사가 강남으로 이전한 후에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유학생모집광고를 내는데 있어 광고모델의 역할을 하는 일과 시간이 나는대로 위 회사에 출근하여 원고의 유학경험과 대학에서의 전공과목인 심리학을 바탕으로 위 회사를 찾아온 유학 희망자나 그 학부모들에게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 미국의 교육제도, 어학공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해 주는 일이었고 그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월 금 1,500,000원의 보수를 받아 왔는데, 그 후 위 유 는 「소외회사의 이사장」이라는 설명이 붙은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팸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한편, 같은 내용으로 광고문안을 작성하여 일간신문 등에 유학알선 광고를 하였다.

(사) 원고는 그 후 약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 주었고 1990. 여름에는 위

회사가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 토플시험 없이 미국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사회를 보면서 미국 대학관계자들을 안내하고 소개하였으며 그 세미나의 통역을 담당하였고, 같은 해 7. 하순 경에는 미국에 있는 엘리엇 팝이라는 중, 고등학교에 약 30명의 유학희망자를 인솔하여 안내하였다.

(아) 한편 서울시 경찰국에서는 해외여행자유화 조치 이후 국외여행알선업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사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학자격이 없는 중고생들의 유학을 알선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1991. 3.경 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수사 결과 소외 유 를 비롯한 위 회사관계자들과 원고는 1991. 4. 15. 여권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는 바, 위 유 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건의 유학을 알선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부분에 관하여 같은 해 5. 18.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었으나 원고의 사기혐의에 관하여는 관하여 원고와 위 회사와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참고인인 유 훈(같은 혐의로 입건됨)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같은 날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같은 해 9. 재기수사신청을 하여 1992. 6. 26.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위 처분이유에 의하면, 소외 유 등은 소외 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고를 위 회사의 광고모델로 고용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자신의 과거 유학경험을 토대로 하여 학부모들을 상대로 미국에서의 학교생활과 어학공부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월 금 1,500,000원의 보수를 받아 왔으나 위 회사의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더욱이 해외유학알선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는 내용의 위 유 , 위 회사의 유학부 차장 강 및 경리 두 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에 대한 사기죄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자) 또한 원고는 1991. 3. 7.부터 같은 달 11.까지와 같은 해 4. 4.부터 같은 달 9.까지 두 차례 일본에 다녀온 일이 있었으나 위와 같이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원고가 입건된 이후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잠적하거나 경찰에 의하여 수배된 일이 없었으며, 소외 유 가 기소된 2건의 유학알선행위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피해자들을 직접 상담하거나 알선하지도 아니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월 금 1,500,000원의 보수를 받은 이외에 유학상담자등으로부터 달리 돈을 받은 일은 없었다.

(차) 서울 시경에서는 1991. 4. 11. 시경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 유학에 관한 보도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소외 유 등과 함께 여권법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원고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토플성적 위조와 사기 부분은 원고에 대한 혐의 사실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서울 시경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넘겨 받은 피고 서울신문사와 경향신문사 소속 기자들은 원고를 수배 중이라는 수사관의 보충설명만을 믿고 원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위 피고들이 제작, 배포하는 일간지 및 주간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원고의 사진과 함께 실어 보도하였다.

(2)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발행의 위 각 신문, 잡지상의 기사 중 원고가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 원고가 위 각 기사 작성 당시 미국으로 도피하여 수배중이었다는 점, 원고가 토플성적의 위조에 관여하였다는 점 등은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 독자들에게는 마치 연예인으로 널리 알려진 원고가 소위 유 등과 공모하여 불법유학 알선업체인 코리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해외유학을 갈 수 없는 중고생들을 상대로 가짜 여권과 토플성적위조 등의 방법으로 유학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백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로서는 그 반박의 기회가 부여됨이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피고들 발행의 위 각 신문, 잡지가 막대한 수의 독자들에게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발행, 배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3) 피고 서울신문사, 경향신문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같은 피고들 소속 기자들은 당시 서울시 경찰국의 수사관이 이 사건 기사의 정보로 제공한 보도자료 및 각 일간지의 기사를 참작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 게재한 것으로서 그 내용 또한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며, 가사 위 각 기사가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담당수사관이 배포한 보도자료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위 각 기사를 작성한 피고 소속 기자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라도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하고, 적시된 기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또는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취재 행위에 관련된 자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는 위법성 내지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취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언론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에 비추어 그 기사가 취재원이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한 기사 작성자의 신뢰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존재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이 사건 기사의 경우를 살펴건대, 원고는 영화배우등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공인(公人) 또는 유명인(有名人)이며 위 기사 내용은 불법유학알선등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영향이 지대한 것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일응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기사가 진실한 내용이라거나,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취재행위에 관련된 자가 취재과정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유 등이 경영하는 소외 회사에서 월 금 1,500,000원을 받고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소개 및 현지적응 등의 상담을 하였을 뿐 그 유학 절차 및 경영 등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에서 든 증거들 갑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ㄱ) 피고 소속 기자들은 1991. 4. 11. 09 : 30경 서울 시경 수사과 기자실에서 수사과 경제계 담당수사관인 소외 박 경장으로부터, 불법해외유학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화텍 사스주립유학원 원장인 김 가 정 , 모 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토폴시험성적표를 위조하였고, 소외 정 , 모 은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와 같은 위조된 토폴시험성적표를 이용하여 그들의 자녀를 유학하게 한 사실이 밝혀져 동인들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소외 회사를 운영하는 위 유 , 유 과 그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원고에 대하여는 그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여권발급 신청시 그 목적과 체류기간 등을 유학이 아닌 일반 관광 목적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는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였는데, 위 유 는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여권법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원고와 유 은 현재 소재 불명(당시 원고는 1991. 4. 4. 출국하여 같은 달 9. 입국하여 국내에 있었다)으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른바 보도자료를 받으면서 위 서울 시경의 담당직

원으로부터 「원고가 소외 유 등과 공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원고는 현재 출두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배중이다」라는 설명을 들은 사실,

(ㄴ) 위와 같은 보도자료와 보충설명을 들은 피고 경향신문사의 기자인 소외 임 은 그 내용의 사실여부에 관하여 원고 또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취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이를 토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경향신문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경향신문사가 발행하는 주간경향 기자인 소외 이 은 그 무렵 각 일간신문에 게재된 원고에 관한 기사를 보고 서울시 경찰국 수사과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그 보도자료의 사실여부에 관하여 문의한 후 역시 원고 또는 소외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직접 취재를 하지 아니한 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주간경향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서울신문사 소속 기자들 역시 위와 같은 보도자료와 보충설명만을 믿고 원고 또는 소외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직접 취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일간 신문기사 등을 참고로 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사실.

(ㄷ) 그런데 당시 원고등에 대한 사기등의 혐의에 관한 수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아니하여 유학알선을 의뢰한 사람들의 수나 그들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 등에 대하여도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들 소속기자들이 제공받았다는 보도자료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1991. 5. 18. 원고 및 소외 유 등에 대한 여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여권 신청시 그 목적을 유학이 아닌 관광 등으로 기재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 후 그 목적과는 달리 유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권발급 신청 자체에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고, 경찰에서 그 후에 입건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소외 유 등이 소외회사를 운영하면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원고와 소외 유 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모두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진 후 1992. 6. 26.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고가 위 유 등이 불법유학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받는다는 관련 바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1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이 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반증이 없다.

(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코리아 아카데미의 경영 및 유학알선절차에는 관여하지도 아니하고 그 대가로 학부모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일이 없으므로 이 사

전 기사는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고(오히려 위 보도자료와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는 그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위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한 것보다 다르게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과장 보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들 소속 기자들이 그 기사의 취재과정에서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위 각 기사가 게재된 신문, 잡지가 배포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기 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 즉 위 피고들 소속 기자들이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원고에 대하여 사실 여부 확인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기사는 그 내용이 취재원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 소속 기자들이 서울시 경찰국이 제공하는 보도자료에 기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는 점, 전체 기사의 분량중 원고에 관한 기사가 차지한 비중,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한 서울민사지방법원 91카65411, 65412 정정보도게재 청구사건에서 1991. 11. 15. 피고들은 피고들이 발행하는 주간지인 선데이 서울 및 주간경향에 원고는 불법유학을 알선하거나 사기행각을 해온 사실이 없고 위 코리아 아카데미의 신문광고에 사진을 게재하는 일과 유학희망자에 대한 상담의 대가로 월 금 1,500,000원을 받은 일은 있어도 달리 돈을 받아 챙겨 잠적한 일은 없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후에 이를 취하한 점, 원고로서도 소외 회사로부터 월 금 1,500,000원을 받고 유학상담 및 광고모델을 하면서 소외 회사의 강남지사장 및 이사장으로 행세하였으며, 소외 유가 원고를 소외회사의 이사장으로 하여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하여 옴으로써 일반인들의 오해를 야기하여 온 점, 피고 경향신문사는 1992. 8. 23.자 주간경향에 원고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관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기 위하여 노력한 점과 그밖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사회적 지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각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의 피고 연합통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연합통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피고가 1991. 4. 11. 『학생 250명 불법유학, 토폴성적위조-관광비자 이용』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시경은 유학자격이 없는 중고생들을 토폴성적을 위조하거나 관광비자를 발급 받게 하여 미국등지로 유학

시켜온 (주)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유 씨등 4명에 대해 사문서위조, 여권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주)코리아 아카데미 이사장 최 씨 (28·여배우)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최씨는 유학희망자 모집과 진학 상담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취지로 마치 원고가 토플성적표를 위조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또 경찰의 수사를 피하여 달아남으로써 수배를 받고 있으며, 원고 스스로 유학희망자를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하여 각 신문사에 제공함으로써 같은 날짜 소외 인천일보등 지방신문에 같은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는 바, 위 피고의 위와 같은 기사의 작성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는 1991. 4. 11. 위 불법해외유학 사건에 관하여 『학생 250여명 불법유학』이라는 제목과 『알선업자 넷 영장신청 2명 수배, 토플성적위조-관광비자 이용』이라는 소제목 아래 「서울 시경은 해외유학자격이 없는 중고생들을 토플성적표를 위조하거나 관광비자를 발급받게 해 미국과 호주등지로 유학시켜 온 (주)코리아 아카데미 상무 소외 유 씨등 해외유학 알선업자 4명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여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아카데미 이사장 최 씨(28·영화배우)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중략)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중략) 미국유학 경험이 있는 배우출신의 최씨를 월 1백 50만원씩 주고 이사장으로 내세운 뒤 (중략) 최씨는 유학희망자 모집과 진학상담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각 신문사에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앞에서 인정한 소외 유 등의 해외유학 알선에 대하여 원고가 관여하게 된 경위와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사의 내용은 그중 원고가 사기등의 혐의를 받고 달아난 것으로 표현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할 것이나(그 이외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장으로 내세워졌고 월급을 받으면서 유학희망자의 모집과 상담을 한 것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실에 부합된다),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연합통신 소속 기자는 1991. 4. 11. 서울 시경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받고 담당직원으로부터 「원고가 소외 유재호등과 공모하여 여권발급 신청시 그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불법유학을 알선하여 부당이득을 한 사실은 확인이 되었으나 원고는 현재 출두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도피하여 신병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배중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기사 작성의 경위와 함께 피고 연합통신이 작성 제공한 위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기사를 작성한 피고 연합통신 소속 기자는 위 기사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설사 피고 연합통신이 제공한 위 기사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 연합통신이 위 기사를 작성 배포한 행위는 위법성 내지는 책임성을 결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연합통신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서울신문사, 경향신문사는 각 원고에게 위 금 10,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연합통신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 및 부대항소와 피고 서울신문사, 경향신문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93. 7. 21.

재판장 판사 이 용 우

판사 김 지 형

판사 이 혁 우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볼때 피해자가 특정되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0. 15.자 판결(92가합58180)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6. 11.자 판결(92나36013)

대법원 1994. 5. 10.자 판결(93다36622)

事實概要

대법원 제2부(재판장 안우만 대법관, 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1994년 5월 10일 원고 조

씨가 한국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한국일보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5백만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 조윤환 씨가 비록 한국일보의 기사에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딸과 사위의 이름 등이 명시되어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했다.

한국일보 1992년 4월 9일자에 『장인의 분노 17세 딸 망쳤다, 사위 고소』란 제하로 원고의 딸 조모 양이 가출하여 조 수와 동거생활을 하다 임신을 하게 되자 출생전에 혼인신고를 마치려 하던 중 조양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자, 사위인 조 수가 원고의 도장을 새겨 혼인신고를 했고, 이에 원고는 조군을 고소하고 혼인무효신청까지 해 놓아 장인이 사위와 딸의 신세를 망쳐놓았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에 조 환 씨는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되자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부(재판장 박상선 부장판사)에 항소, 5백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피고 한국일보사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조 환 씨는 혼인무효신청은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딸의 호소에 따른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별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해 한국일보는 4월 22일자에 정정보도를 게재했다(92서울중재49 참조).

1審 判決文

사 건 : 92가단58180 손해배상(기)

원 고 : 조

의정부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수 근

피 고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 재 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인 철

변론종결 : 1992. 9. 24.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4.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1. 피고가 발행하는 1992. 4. 9.자 한국일보 사회면 고정란에 고덕채 음각활자의 『장인의 분노』, 명조체 활자의 『17세 딸 망쳤다, 사위고소』라는 제목하에 별지 기재와 같은 기사가 보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원고의 딸인 소외 조 숙이 가출한 후 1992. 1.경 동인이 소외 조 수와 혼인 신고를 마치고 아이 1명까지 낳아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 위 조 숙이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혼인신고는 위 조 수가 원고와 위 조 숙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신고한 것이니 동인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여 원고는 1992. 3.경 위 조 숙과 함께 혼인무효심판 청구를 하고 집으로 되돌아오는데 위 조 수가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와 원고를 밀치고 위 조 숙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가므로 원고가 이를 추적하자 위 조창수가 위 조 숙을 도망가지 못하게 폭행, 협박을 가하여 원고는 부득이 위 조창수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동인이 구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신문사의 소외 이 기자는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조 수 가족의 말만을 듣고 (1) 위 조 숙이 위 조 수와 행복하게 동거생활을 하여 왔는데 원고가 이를 저지한 것처럼, (2) 위 조 수가 원고, 위 조 숙 몰래 혼인신고한 것이 주위사람들의 권유로 행하여진 당연한 것으로, (3) 원고가 위 조 숙과 조 수의 혼인무효심판청구를 단독으로 결정한 것처럼, (4) 위 조 숙은 위 조 수와 결혼생활을 원하는데도 원고가 이를 저지하고 위 조 숙을 강제로 집에 가두어 둔 것으로 허위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가 그 발행의 신문에 이를 보도함으로써 전국가출인찾기운동본부의 간부직을 맡고 있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갑 제2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피해자가 원문보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원문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위 증거만

으로 위 보도원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 황 의 증언도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3, 4, 12, 13, 14, 15, 1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문사의 사회부 소속으로서 송파경찰서 출입 기자인 위 이 는 1992. 4. 8. 송파경찰서 조사계에서 취재하던 증 위 조 수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등 죄로 구속된 사실을 알고 동인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였던 바, 원고의 딸인 위 조 숙은 가출하여 봉제공장에 다니다가 위 조 수를 알게 되어 1991. 1. 27.부터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동거생활 중 위 조 숙이 임신하게 되자 아이의 출산 후의료보험카드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조 수와의 합의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위 조 숙은 16세의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혼인동의서가 필요하게 되자 위 조 수는 1991. 12. 13.경 원고 명의의 혼인동의서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후 이를 알게된 원고의 고소에 의하여 1992. 4. 7.경 위 조 수가 사문서위조등 죄로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위 조 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 조 숙은 혼인신고를 마치게 된 이유를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원고가 혼인무효신청을 하여두면 나중에 쉽게 헤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위 조 수와 헤어지고 집에 와 있으라고 하여 친정집에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조 수와 함께 살 계획이며 남편인 위 조 수를 빨리 석방하여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하여달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이 기자가 위 조 숙을 직접 면담한 결과 위 조 숙이 「친정집에서 몰래 빠져 나왔다」 「집으로 안들어 갈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이를 토대로 위와 같은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사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거나 일부 기사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기사의 작성자인 기자가 위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조 숙의 진술에 의하여 위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신문사가 위 기사를 게재한 행위는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을 결하여 결국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가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0. 15.

판사 여 상 훈

신문기사

서울송파경찰서는 8일 조 수 군(20·공원)을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조군이 위조한 사문서란 지난해 12월 경기 포천군 포천면사무소에 제출했던 혼인신고서 4통. 조군은 17살짜리 딸의 신세를 망친데 분개한 장인에 의해 지난 6일 경찰에 고소당했다.

조군의 아내 조모 양은 중학 3학년 때인 재작년 10월 가출했다. 국민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이혼, 새엄마 밑에서 정을 붙이지 못한 채 어려운 환경에서 커오던 조양은 그보다 앞서 집을 나가버린 여동생을 찾아오지 않는다고 아버지마저 나무라자 미련없이 집을 나왔다. 화양동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조양은 야학에서 가구공장에 다니는 조군을 만났다. 이들은 만난 지 단 한달만에 결혼하기로 합의, 조군의 직장이 있는 포천면에 보증금 30만원짜리 단칸방을 빌려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이웃들로부터 듣는 「새댁」 소리에 마냥 행복해 하던 조양은 아기를 갖게 되자 「이 기쁜소식을 아버지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 성동구 친정을 찾았으나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다. 「출생전에 빨리 호적에 올려야 산모와 아기가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주위의 권유에 마음이 급해진 이들은 조양 아버지의 도장을 새겨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이달초 어렵게 연락이 닿은 친정아버지는 기막힌 사정에 대경실색, 결혼이 철부지들의 불장난이라며 혼인무효신청과 함께 조군을 고소했다. 일단 혼인무효신청을 해놓으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마음이 바뀌어도 이혼녀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조양 아버지의 생각이었다.

생후 3개월된 아들은 시택에, 남편은 경찰에 각 빼앗긴 채 친정집에 가두어졌던 조양은 8일 하오 몰래 빠져나와 남편을 면회하러 경찰서에 달려왔다. 분홍색 운동화에 청바지차림의 조양은 애엄마가 아닌 10대 소녀의 앳된 모습 그대로였다. 면회를 주선해주던 경찰들은 「왜 내 남편, 내 아들과의 행복한 삶을 빼앗느냐」며 우는 철부지의 호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곤혹스런 모습이었다.

2審 判決文

사 건 : 92나3601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조

의정부시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서울 종로구 중학동 14
대표이사 장 재 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인 철

변론종결 : 1993. 5. 28.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0. 15. 선고, 92가단58180 판결

- 주 문** : 1. 원심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신문), 갑 제2호증(화해조서사본), 원본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 14(각 진술조서사본), 증인 이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취재수첩)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문사의 사회부 소속으로서 송파경찰서 출입기자인 소외 이 ○은 1992. 4. 8. 송파경찰서 조사계에서 취재하던 중 소외 조 수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등 죄로 구속된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하였던 바, 원고의 딸인 소외 조 숙은 가출하여 봉제공장에 다니다가 위 조 수를 알게 되어 1991. 1. 27.부터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동거생활중 위 조 숙이 임신하게 되자 아이의 출산후 의료보험카드가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조 수와의 합의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위 조 숙은 16세의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혼인동의서가 필요하게 되자 위 조 수는 1991. 12. 13.경 원고명의로 혼인동의서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 후 위 조 수는 이를 알아차린 원고의 고소에 의하여 1992. 4. 7.경 구속되었음을 알게된 사실, 위 조 수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에서 위 조 숙은 위 조 수는 밖으로 자주 나가고 직장도 소홀히 하고 있던 터에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위 조 숙에게 혼인무효신청을 하여두면 나중에 헤어질 때 쉽게 헤어질 수가 있다고 하며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친정집에 와있으라고 하여 친정집으로 왔으나,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조 수와 함께 살 계획이며

남편인 위 조 수를 빨리 석방하여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하여 달라고 진술하고 있었고, 위 이 가 위 조 숙을 직접 면담한 결과 위 조 숙이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친정집에서 몰래 빠져 나왔다」, 「집으로는 안들어가고 친구집으로 가겠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 이 가 작성한 별지기재와 같은 기사가 피고가 발행하는 1992. 4. 9.자 한국일보 사회면 고정란에 고덕채 음악활자의 『장인의 분노』라는 큰제목과 명조체 활자의 『17세 딸 망쳤다, 사위 고소』라는 작은 제목 아래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어린 딸인 조 숙이 아기를 낳은 후 그 남편이 밖으로 자주 나가고 직장도 소홀히 하고 있어 그녀의 장래를 걱정한 원고가, 비정상적인 동거생활로 불안해하는 위 조 숙을 설득하여 친정집에 와있게 한 후 위 조 숙의 동의를 얻어 혼인무효신청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기자인 위 이 는 위와 같이 취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조 숙과 조 수 사이의 일을 알아차리고는 대경실색하여 일방적으로 혼인무효신청을 하였으며 위 조 수를 구속되게 하고 위 조 숙을 강제로 친정집에 가두어 놓았고, 결국 원고로 인하여 그의 딸인 위 조 숙의 행복한 삶이 빼앗겼다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를 위 신문에 게재·배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가 피고 또는 피고의 피용자인 위 이 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 인정의 위 사건의 내용 및 취재경위, 위 허위기사부분이 기사의 전체내용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후 일부 정정 기사를 낸 사정과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등 기타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액은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중 위 인정범위내의 원고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6. 11.

재판장 판사 박 상 선

판사 김 용 빈

판사 류 제 산

신문기사

〈1심 판결문 중 신문기사 참조〉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3다3662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 조

피고, 상 고 인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인 철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6. 11. 선고, 92나36013 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판결 참조), 원심이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이 발간하는 일간지인 1992. 4. 9.자 한국일보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비록 원고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소위 조 수의 장인 또는 조모 양의 친정아버지라고 표현하였고, 원고의 딸 조 숙에 관하여도 그 성명을 명시하지 않고 조(曹)모 양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기사에 원고의 딸과 혼인신고를 한 상대방의 성명, 그 혼인신고지 등을 명시하였고, 원고가 이혼한 후 새로 결혼을 하였고, 위 조 숙의 여동생도 가출을 하였으며 원고가 살던 마을 이름 등 원고의 생활환경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위 조 숙이 가출한 경위, 그 이후의 생활상 역시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위 기사를 읽어 본 사람 중 적어도 원고를 아는 사람이면 위 기사에서 말하는 조 수 장인 또는 조모 양의 친정아버지가 원고를 지목하는 것이라는 것쯤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기사로 명예가 손상될 피해자가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원고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고와 그 가족의 성명을 일부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위의 결론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기사에 원고가 「일방적으로」 혼인무효신청을 한 것이고, 「강제로」 위 조 숙을 친정에 가두었다고 표현된 바가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일반독자의 보통의 주의와 독서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사내용이 그와 같은 뜻으로 작성되었다고 이해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혼인무효 신청이나 위 조 숙이 친정인 원고의 집에 있었던 것이 그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반대되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발행의 신문인 1992. 4. 9.자 한국일보에 게재된 이 사건 기사는 일반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보도내용으로 보아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그 기사가 진실성과 다른 부분이 있음은 위에서 본 바대로이다.

일반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미리 조사, 점검하여야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기본적 책무라고 할 것이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 담당기자가 미성년자인 위 조 숙의 보호자인 원고를 만나보는 등의 필요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그 때문에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된 것이라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 발행의 신문에 이 사건 기사가 게재·반포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신문의 발행자로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위의 결론이 좌우될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기사가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취재경위를 살펴보면 취재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없

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위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론 주장의 판단유탈사유는 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4.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의 내용 및 취재경위, 허위기사부분이 기사의 전체내용에 미치는 영향, 그 후 일부 정정 기사를 낸 사정과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을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자료산정의 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994. 5. 10.

재판장 대법관 안 우 만

대법관 김 용 준

주심 대법관 천 경 송

대법관 안 용 득

변호사인 원고가 상당한 재산가이며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 명예를 훼손했다 할 것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하고 판결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12. 4.자 판결(91가합82923)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7부(재판장 이진영 부장판사)는 1992년 12월 4일 盧武鉉 전 의원이 『통합 야당대변인 노무현 의원은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제하의 1991년 10월 6일자 주간조선 기사와 관련,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고 판결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盧 전 의원은 1991년 10월 6일자 주간조선이 자신을 상당한 재산가이며 부동산 투기를 하는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와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기사가 원고의 명예와 관련된 일부 사항에 대해 허위사실을 게재했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일면만 적시하고 다른 면은 누락해 원고가 부도덕한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도 과장됐다는 인상을 주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조선일보사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判 決 文

사 건 : 91가합82923 손해배상(기)

원 고 : 노 무 현(盧武鉉)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용 일, 최 일 숙

피 고 :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 우 영, 방 상 훈

2. 안 병 훈

3. 우 종 창

피고 2, 3의 주소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주간조선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성 기, 정 주 교, 이 병 선

변론종결 : 1992. 11. 6.

주 문 :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10. 6. 부터 1992. 12. 4.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간되는 주간조선

에 별지 1 기재 공고문을 게재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10. 6.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사건 판결 송달 3일 후 발행되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각 7면 광고란 및 이 판결 송달 후 처음 발간되는 주간조선에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크기로 제목은 2호, 내용은 3호 활자로 하여 별지 2 기재 공고문을 각 게재하고, 이 판결 송달 후 처음 발간되는 주간조선에 제목은 2호, 내용은 5호 활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문을 전면 게재하라는 판결.

이 유 : 1. 기초사실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5.경부터 1992. 5.경까지 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이하 피고 조선일보라 한다)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와 주간잡지인 주간조선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피고 안 ○○은 피고 조선일보의 직원으로서 주간조선의 편집인이며, 피고 우 ○○은 피고 조선일보의 직원으로 주간조선의 기자이다.

나. 피고 조선일보는 1991. 10. 6.자 발행의 주간조선(제1171호) 표지에 위 주간조선에 실린 다른 기사의 표제와 함께 『노무현 의원은 재산가인가』라는 표제를 실고, 5면 목차란에 원고의 사진과 함께 『노무현 의원은 재산가인가』라는 표제를 실은 다음, 제34면부터 39면까지의 지면에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표제하에 별지 3과 같은 기사내용과 함께 36면 좌측상단에 「7개월 만에 판사직을 사퇴한 것은 관료주의 체질에 회의도 있었지만 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38면 좌측상단에 「「시국사건은 재미도 없고 끝나도 고맙다는 인사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다시는 말지 않겠다고 했다」는 발문을 가로, 세로 각 5센티미터의 박스에 실고, 34면 우측 중간에 「노 의원의 재산상당하다는 얘기는 1년 전부터 정가에 파다하게 나돌아」, 36면 좌측 중간에 「82년 요트동호인 10명과 함께 부산 요트클럽결성, 회장에 앉아」, 37면 우측 중간에 「형 건평 씨의 부동산 투기에 노 의원, 상당액 지원하기도」, 38면 중간에 「13대 총선 때 YS가 2억원 지원 남

은 돈 6천만원으로 아파트 계약』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34면 좌측하단에 원고가 1990. 2. 임시국회때 소외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다른 의원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사진을, 35면 상단에 원고가 1988. 11. 5공 청문회에서 질문을 하는 사진을, 38면 하단에 1990. 5. 원고가 국회의원이던 소외 김정길과 함께 현대중공업 파업현장에서 파업중인 근로자의 얘기를 듣고 있는 사진을 싣고, 36면 좌측 및 37면 하단에 마패와 금고가 있는 방의 침대 앞에서 속옷차림의 원고가 방안의 모습을 찍으려는 수대의 카메라를 막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의 풍자만화를 싣었고(이하 원고에 관한 위 주간조선의 기사 전체를 이 사건 기사라 한다), 1991. 9. 28.자 조선일보 5면 광고란에 1991. 10. 6.자 주간조선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위 풍자만화 중 일부인 속옷차림으로 침대 앞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원고의 모습 부분과 함께 『통합야당 대변인 노무현 의원 과연 「상당한 재산가」인가』라는 기사 제목을 위 광고의 일부(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로 싣었다.

다. 위 주간조선의 기사내용은 피고 우 이 작성하였고, 위 기사의 표제와 발문 및 소제목을 발췌, 각 사진 및 풍자만화의 선정 및 배열은 피고 안 이 담당하여 위 기사를 편집하였다.

2. 명예훼손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가 일반적으로는 때묻지 않은 깨끗한 정치인이고, 근로자와 농민들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로서 알려져 있으나, 정가에는 1년 전부터 원고가 겉으로는 돈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재에 밝아 재산이 상당액에 달하고,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도 과장되어 있으며, 요트타기를 즐겼고,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재미를 보았다는 소문이 나돌았는데, 실제로도 원고는 어려운 환경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관되었으나, 돈을 벌기 위하여 법복을 벗었고, 그 이후에도 돈을 벌기 위하여 사법서사의 직역인 등기업무를 취급하여 부산지역의 사법서사들의 반발을 샀을 뿐 아니라, 1982년부터 1985년까지는 요트에 정신없이 빠져 시국 사건 변호에는 등한히 하고, 1985년 당시 고급이었던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하였으며, 부동산투기를 하는 형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재산을 증식하였고, 선거자금 중 남은 돈으로 자신의 집을 마련하였으며, 노사분쟁 중재과정 중 노, 사 양측으로부터

터 돈을 받는 등 부도덕한 정치인일 뿐 아니라,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도 과장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이 사건 기사 중 사진은 원고가 5공비리 청문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국회내에서는 3당 통합에 반대했던 원고가 3당 통합 이후에도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인 위 김영삼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이중성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며, 풍자만화는 언론에 의하여 사생활이 공개된 원고가 당황해하며 이를 숨기려는 내용으로서 원고는 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한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광고는 풍자만화와 함께 원고가 상당한 재산가로서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기사 및 광고가 독자들에게 보도, 공표됨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원고의 명예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우종창의 이 사건 기사내용의 작성, 피고 안병훈의 이 사건 기사의 편집 및 피고 조선일보의 이 사건 기사 및 광고의 발행, 배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명예훼손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는 1991. 9. 27.자 조선일보 23면 광고란, 1991. 9. 29.자 10면 광고란의 1991. 10. 6.자 주간조선에 대한 광고 중 『노무현 의원은 재산가인가』라는 표제의 게재도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주장하나, 위 제목만으로는 원고가 재산가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피고들의 면책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이하 사건 광고 포함)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기사 게재 당시 국회의원이고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이른바 공인(公人)이라할 것인데, 공인의 경우 공적 활동 및 그에 부수되는 평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국회의원은 그 자격 및 자질에 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그러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사는 국회의원인 원고의 재산상태, 변호사로서의 활동, 취미생활, 노사분쟁 중재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부수되는 평

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 진실성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는 진실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사가 부분적으로 사실에 기초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사실을 누락하거나, 어떤 사실의 발생시기 또는 그 선후관계를 바꾸거나, 근거없는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거나 부정적인 수식어 등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전체로서 허위이고 과장된 내용을 게재한 것이라고 다룬다.

생각컨대, 신문이나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배포한 경우라도, 적시된 기사 내용이 진실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하여는, 다소 부적절하거나 과장된 표현 및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주요부분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여야 함은 물론, 부수적인 사실이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진실성을 갖추어야 하고, 어떤 사실에 관하여 일면만을 적시하고 다른 면을 누락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또 어떤 소문을 보도한 기사는 그러한 소문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소문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기사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것인 바, 이 사건 기사는 (1) 원고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내용, (2) 인권변호사로서의 원고의 활동이 과장되었다는 내용, (3) 요트 타기를 즐겼다는 내용, (4)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구분되므로, 위 각 내용에 관한 진실성 여부에 관하여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15, 을제8호증의 1 내지 9, 을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1 내지 3, 갑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 문재인,

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살핀다.

(1) 원고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내용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되었으나, 7개월만에 판사직을 사임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고, 개업초기 형사사건을 조금 하다가 민사사건을 주로 하였으며, 등기업무를 취급하여 부산지역 사법서사들의 반발을 샀던 사실, 원고가 1985년 요트클럽회원 중 1인으로부터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금 4,5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가 1987. 7.경 구속될 당시 부산 사상공단내 대지 98평을 금 150,000,000원에 매입하여, 위 대지를 소외 선봉술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상사의 부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월 120만원을 받았으며, 당시 원고는

부산 남천동 소재 삼익아파트 1채 약 40평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1986년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재산증식을 제외한 변호사 업무등으로 인한 원고의 재산증식은 중단된 사실, 원고의 형인 소외 노건평이 1985. 2. 경남 김해군 임야를 매수할 때, 1986. 7. 경남 김해군 답 약 1,500평을 매수할 때, 원고가 금 15,000,000원씩을 위 노건평에게 빌려 주었고, 위 노건평이 1989. 7.경 소외 와 공유로 경남 김해군 992평방미터를 매수할 때 원고가 위 노건평에게 금 250,000,000원을 빌려 준 사실, 원고는 위 노건평으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보조받아 온 사실, 원고는 13대 총선 직후 선거자금 중 금 100,000,000원이 남았는데, 그 중 금 40,000,000원은 부산의 재야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금 60,000,000원 중 일부로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현재 재산은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 1채(47평), 콘도 회원권, 부인 명의로 된 부산 대연동 소재 택지 40평, 원고가 위 노건평에게 대여한 금 250,000,000원인 사실(원고와 위 노건평은 위 금 250,000,000원으로 산 경남 김해군 진영읍 여래리 700의 166 답 992평방미터 중 120평을 원고의 몫으로 하기로 하였다)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사내용 중 위 노건평이 경남 창원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거나 1984년 이후 거래한 부동산이 40전에 육박한다고 한 내용(을제7호증의 1 내지 15 및 을제8호증의 1 내지 9의 기재에 의하면 24건이다), 원고의 현재 재산상태에 관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미성아파트, 콘도 회원권, 부산 대연동 소재 택지 40평과 원고가 위 노건평에게 대여한 금 250,000,000원 외에, 위 노건평 명의로 된 평당 시가 금 5,000,000원인 김해군 진영읍 땅 200평과 같은 읍 소재 잡종지 1,500평이 원고의 재산에 추가되는 것처럼 기재한 내용은 과장된 것이다.

(다) 위 과장된 기사내용 중 위 노건평의 부동산 거래정도에 관한 사실은 원고의 재산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관하여 다소 과장된 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원고의 현재 재산상태에 관한 사항은 원고의 재산형성, 그 증식과정 등과 함께 독자로 하여금 원고가 상당한 재산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사항이며, 그 재산이 주거용인 주택이 아니라 다른 용도의 부동산인 경우 그 소유에 관한 사항은 정치가의 성향을 판단하게 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고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위와 같이 원고의 현재 재산상태에 관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콘도 회원권, 부산 대연동 소재 택지 40평과 원고가 위 노건평에게 대여한 금 250,000,000원 외에, 위 노건평 명의로 된 평당 시가 금 5,000,000원인 위 김해군 진

영읍 땅 200평과 같은 읍 소재 잡종지 1,500평이 원고의 재산 중의 일부에 포함되는 것처럼 게재한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인권변호사로서의 원고의 활동이 과장되었다는 내용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기사내용 중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소위 김 이 원고의 1980년 초반의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에 관하여, 원고가 위 김 의 요청에 따라 1981년(이 사건 기사에서는 1982년으로 보도되었다) 소위 「부림사건」에서 최초로 시국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였다가, 위 활동 이후 위 김 에게 시국사건은 재미도 없더라, 사람들이 효과도 못보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평을 하였고, 1982년(이 사건 기사에는 1985년으로 보도되었다)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에서는 위 김 의 간청에 의하여 공동변호인의 1인이 되었으나,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부림사건」 때 처음 시국사건의 변호를 맡아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과 이에 관하여 부산의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 부분 중 「선배 변호사가 원고에게 부림사건 때 변호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을 때 ‘돈도 되지 않는 사건을 내가 왜 맡느냐’며 고사했다. 그는 돈이 되지 않는 사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위 김 은 1990. 8.경 피고 우 과의 인터뷰에서 「81년 부림사건 발생 당시 내가 범인 도피자금을 준 것으로 입건이 되어 변론을 못할 입장에 놓여 부산에 있는 변호사 5명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때 원고가 5명의 변호인단의 한 사람이 되었고, 피고인들이 고문당한 내용을 듣고 흥분해서 그 때 변론했다고 했는데, 원고는 그 사건하고나서 재미도 없더라, 사람들이 효과도 못보고, 고맙다는 인사도 안한다는 이유를 들어 하지 않으려고 했다. 원고는 감정의 기복이 대단히 심하다. 자신이 설득해서 원고를 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변호인단에 들어가게 했는데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 2심은 했는지 모르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걸쳤을 것이다. 82년도 그 사건 끝나고 나서 또 안했다. 그 다음에 계속 그런 사건이 생기니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83, 4년 경에는 원고에게 분류와 접수 및 상담을 부탁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터뷰 내용이 위 기사내용과 같이 원고가 「부림사건」에서 변론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부림사건」의 변호에 관하여 돈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고사했다거나, 원고가 돈이 되지 않는 사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음에도 그러한 취지로 위 김 의 인터뷰를 인용한 부분은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부산의 변호사가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사내용은 진실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가 요트타기를 즐겼다는 내용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1982년 요트동호인 10여명과 부산요트클럽을 조직하여 회장이 되었고, 소위 김 이 요트의 돛을 만드는 공장을 차리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위 부산 요트클럽의 회원들과 함께 2인승 스나이프(딩기) 5, 6척을 만드는 등 1985년까지 취미생활로 요트를 즐긴 사실, 원고가 위 김 로부터 요트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재미있다고 말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동료 변호사들에게 부산 요트클럽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은 과장된 것이고, 원고가 8인승 크루저 1척을 건조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건조한 스나이프는 모터없는 범선으로서 제작비가 금 1,200,000원이고, 원고가 도움을 준 위 김 의 요트공장은 건물의 지하실 50평 남짓한 곳에 위 스나이프의 돛을 만들기 위한 공장에 지나지 않으며, 위 김 등 부산 요트클럽 회원이 1986년부터 1988년까지 8인승 크루저를 1척 건조하였으나, 원고는 위 요트의 제작에 관하여 금전적 지원등 관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어떤 사실에 관하여 일면만을 부각을 시키고 다른 면을 누락함으로써 그 사실에 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인 바, 원고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요트를 취미로서 즐기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탄 요트는 제작비가 금 1,200,000원의 범선이고, 원고가 위 김 에게 요트의 돛을 제작하도록 도움을 준 공장은 건물의 지하실 50평 정도임에도, 이러한 사실은 누락한 채 요트는 일반적으로 모터를 부착한 고가품이고 요트타기는 호화사치성 오락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가 부산 요트클럽의 회장이 되어 요트를 즐겼고, 아는 사람에게 공장을 차려주어 딩기 5, 6척과 8인승 크루저 1척을 건조하게 하였다고만 게재함으로써, 위 기사내용은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1982년부터 1985년까지 사치성 오락을 즐긴 것과 같은 인상을 주도록 의도되었다고 보여지고, 위 기사내용 중 일부의 개별적인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위 기사내용 중 일부는 과장되고, 어떤 사실의 일면은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8인승 크루저를 건조하였다는 내용은 진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크루저에 관한 내용은 부수적인 사실에 관한 것이나, 크루저는 규모에 의하여 호화성 요트로 인식되어 원고의 명예와 관련된 사항이라 할 것이다), 원고의 요트 취미에 관한 위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4)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노사분규를 중재해 주고 사용자측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받았다가, 이후 그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를 반환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노사분규를 조정하면서 위 금 20,000,000원 외에 노(勞)와 사(社) 양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소문의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 바, 어떤 소문을 보도한 기사는 그러한 소문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기사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노사분규를 조정하면서 노(勞)와 사(社) 양쪽에서 돈을 받았거나, 노사분규과정에서 「재미」를 보았다는 소문을 게재한 부분은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상당한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중 그 내용의 일부분이 진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원고 및 위 김 ○ ○ 과의 인터뷰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게재된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려면 언론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지대함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기사 작성자의 신뢰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일간신문의 사건보도와 달리 주간지의 특정 인물에 관한 기사인 경우에는 그 기사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근거의 요청이 더욱 강하다 할 것인 바,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 이전에 게재된 원고에 관한 잡지등의 기사로는 피고 조선일보가 발행한 1987. 9. 20.자 주간조선, 1988. 12월호 가정조선, 1988. 12월호 월간조선, 1989. 4. 2.자 주간조선 및 소외 중앙일보사가 발행한 1989. 4. 20.자 이코노미스트에 게재된 기사가 있는데,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피고 우 ○ ○ 은 1987. 9. 20.자 주간조선에 원고의 구속과 관련하여 원고의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등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였고, 또 1989. 4. 2.자 주간조선에 원고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하여 원고의 과거의 행적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등에 관한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및 원고와 피고 우 ○ ○ 과의 1990. 9. 18. 같은 달 19. 같은 달 25. 3차례의 인터뷰 및 소외 김 ○ ○ 과 피고 우 ○ ○ 과의 1990. 8.경 인터뷰에 의하여 작성된 을제6,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녹음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위에서 본 (1) 원고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내용, (2) 인권변호사로서의 원고의 활동이 과장되었다는 내용, (3) 요트 타기를 즐겼다는 내용, (4)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 중 위 각 허위의 사실에 관하여, 위 기사

내용의 작성자인 피고 우 이 위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1) 원고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내용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우 과의 위 인터뷰에서 「1987. 7.경 자동차매매상사를 하는 친구에게 금 150,000,000원을 투자하여 부산 사상공단에 위 자동차매매상사의 부지 98평을 매입하였다가, 1989. 7.경 위 부지를 매도하여 금 250,000,000원을 받아 이를 형에게 빌려 주었고, 형은 자신의 땅을 팔지 않고 위 돈으로 집을 샀다, 원고의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와 부인 명의의 부산 대연동 소재 대지 40평 정도와 형에게 빌려 준 위 금 250,000,000원이다, 내가 형에게 위 돈을 빌려 줌으로써 형은 땅을 팔지 않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피고 우 이 원고의 현재의 재산에 관하여 위 아파트등과 원고가 위 노건평에게 빌려준 위 금 250,000,000원 이외에, 위 노건평 명의로 된 평당 시가 금 5,000,000원인 위 김해군 진영읍 땅 200평과 같은 읍 소재 잡종지 1,500평이 원고의 현재 재산에 포함된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우 이 위 기사내용이 진실함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에 의하여 위 기사를 작성하였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인권변호사로서의 원고의 활동이 과장되었다는 내용

위 기사내용 중 원고가 「부림사건」때 처음 시국사건을 맡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과 이에 관하여 부산의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 부분 중 「선배 변호사가 원고에게 부림사건 때 맡아 달라고 부탁했을 때 ‘돈도 되지 않는 사건을 내가 왜 맡느냐’며 고사했다, 그는 돈이 되지 않는 사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은 위에서 본 위 김 과 피고 우 의 인터뷰 내용에 비추어 피고 우 이 위 기사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우 이 위 기사내용이 진실함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에 의하여 위 기사를 작성하였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요트 타기를 즐겼다는 내용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우 과의 인터뷰에서 원고가 탄 요트는 제작비가 금 1,200,000원의 범선이고, 원고가 김 에게 요트의 돛을 제작하도록 도움을 준 공장은 건물의 지하실 50평 정도임을 밝혔고, 또 8인승 크루저의 제작에 관하여 「위 김 의 공장에서 2년 전에 8인승 크루저를 제작하였는데, 위 요트를 만들 때 회원을 모집할 때 너도 멤버로 한다는 말은 해놓았으나 정식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단지 내가 과거 위 클럽의 회

원이었으니, 부산에 가면 한번쯤 공짜로 탈 수는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며, 위 김은피고우과의 인터뷰에서「원고가 탄 요트는 유람용은 아니고 운동으로서의 요트정도이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우은 이 사건 기사 작성 당시 원고가 1982년부터 1985년 사이에 탄 요트의 종류 및 그 가격과 원고가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 요트공장의 규모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과장하여 원고가 호화사치성 요트취미에 빠진 인상을 주었다고 보여지고, 또 위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피고우이 원고가 위 크루저를 건조하였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사실이 진실함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에 의하여 위 기사를 작성하였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노사분규과정에서 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우과의 인터뷰에서「동료의원이 당시 민주당의 총재인 소외 김영삼의 지시라고 하면서 어떤 기업체의 노사분규의 중재를 부탁하여, 노동자의 편에서 중재를 했다. 그 이후 그 기업체에서 그 동료의원과 원고에게 금 20,000,000원을 주었는데, 중간에 든 사람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서 사회단체에 기증하였는데, 그 후에 그 업체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 그 기업체에서 그 문제를 회피해 달라고 하여, 형에게 돈을 얻어다가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말했고, 위 김은피고우과의 인터뷰에서「원고가 노사분규 현장에서 뛰면서 노사 양쪽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다는 소문들은 많이 있었다. 중요기업체에서는 원고가 나서면 비상대책을 세웠다. 그래서 원고가 중재를 하는 일이 많이 생겼다. 나는 돈과 관련된 문제는 모르겠고, 김영삼 총재가 원고에게 부산의 탄약 만드는 기업체등에 중재를 시켰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피고우이 사용자로부터 위 금 20,000,000원을 받았다가 이를 돌려 준 이외에 원고가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노, 사 양쪽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사실이 진실함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에 의하여 위 기사를 작성하였음은 인정되지 않는다.

생각컨대,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명예와 관련된 일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어떤 사실에 관하여 일면만을 적시하면서 다른 면은 누락하고, 또 원고의 인격에 관하여 상반된 평가나 인상을 줄 수 있는 별개의 내용을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결시키며(시국사건의 변론과 요트문제, 위 노건평의 부동산투기와 원고의 재산), 또 진실에 근거하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소문을 기사내용 중간에 인용함으로써, 기사의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원

고가 깨끗한 정치인이고, 근로자와 농민들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라는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재산을 얻기 위하여만 노력하는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에 의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은 명예가 훼손됨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강제5호증의 1 내지 3, 강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내용은 1992. 4.경 시행된 14대 국회의원 선거의 유세과정에서 원고가 출마한 선거구인 부산 동구에서 원고와 함께 출마한 민자당 소속 후보인 소외 허 의 연설문 및 지역구 홍보지에서 인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과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경위, 원고의 사회적 지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금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간되는 주간조선에 별지 1 기재 공고문을 각 게재함이 상당하다.

5.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된 1991. 10. 6.부터 피고들이 그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2. 12.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선일보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처음 발간되는 주간조선에 별지 1 기재 공고문을 각 게재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용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2. 4.

재판장 판사 이 진 영
판사 문 영 화
판사 배 진 한

〈별지 1〉 공고문

본사는 1991. 10. 6.자 제1171호 주간조선의 34면부터 39면까지 『노무현 의원은 재산가

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원에서 본사는 「위 기사에서 노무현에 대한 현재의 재산상태와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이 과장되어 있다, 요트 타기를 즐겼다, 노사분규 중재과정에서 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의 일부 사실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노무현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별지 2〉 공고문

제목 : 노무현 씨의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본사가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 : 본사는 1991. 10. 6.자 제1171호 주간조선의 34면부터 39면까지 『노무현 의원은 재산가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사는 법원으로부터 「위 기사는 노무현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지나치게 거두절미하고 왜곡하여 구성한 것으로 노무현에 대한 관련 사실들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노무현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 금 3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별지 3〉

1. 정가에는 원고가 통합야당의 대변인으로 발탁된 것을 계기로 언론에 자신의 프로필로 보도된 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1991. 9. 18. 각 신문사 및 방송사의 정치부에 해명서를 보낸 것에 관하여 뒷 이야기가 무성하다.

1. 원고가 프로필 내용 중 문제삼은 부분은 「한때 부산 요트클럽 회장으로서 개인 요트를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산가로 알려졌다」는 부분이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해명 내용은 「부산 요트클럽협회장과 관련하여, 82년 경 요트를 취미생활로 탄 일은 있으나, 척당 가격이 2백만원 내지 3백만원 정도의 소형 스포츠용이고, 요트동호인 클럽회장을 지낸 적은 있으나, 부산요트협회장을 지내지는 않았으며, 현재는 요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상당한 재산가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변호사로서 가난뱅이는 아니며, 국회의원 중 부자소리를 들을 만한 수준도 아니며, 사회적인 평으로서 재력가는 더욱 아닙니다」라는 것이다.

1. 정가의 분위기는 원고의 해명이 과연 사실일까 의아해 하는 눈치인데, 그 이유는 원고의 재산이 상당하다는 얘기가 1년 전부터 파다했으며, 매스컴을 통하여 알려진 원고의 이미지와 실제의 모습이 같지 않다는 말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이다.

1. 당시 정가에 나돈 얘기는 원고가 겉으로는 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재에 밝아 재산이 상당액에 달하며, 인권변호사로서의 역할도 상당부분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요트타기를 즐겼을 뿐만 아니라, 노사분규 과정에서 「재미」를 보았다는 얘기도 들렸다.

1. 원고의 실제 모습이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다면 이는 정치인의 도덕성 차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원고의 경우는, 5공 청문회 때 찰막하고 논리적인 질문과, 평범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집안형편 때문에 부산상고를 마치고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한 점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국민들은 원고가 깨끗한 정치인이고, 근로자와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권변호사인 줄 알았기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1. 「상당한 재산」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원고가 돈을 벌게된 과정을 더듬어 보면, 원고는 어린시절 무척 고생했고, 집안형편 때문에 대학진학이 어려운 처지였으며, 부산상고를 나와 10년간 독학 끝에 76년 사법시험에 합격, 77년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재산을 일구게 된다.

1. 원고는 7개월만에 판사직을 사퇴했는데, 법복을 벗은 이유는 관료주의 체질에 대한 회의도 있었지만 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였다.

1. 돈을 벌기 위해 사표를 냈기 때문에 개업한 뒤 주로 한 일은 민사사건이었고, 형사사건은 개업 후 초창기에 관여하다가 바로 민사로 돌아섰으며, 원고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부산상고 동문들의 도움을 받아 약 1년 동안 관례상 사법서사의 직역으로 인정되어 있는 등기사무에 관여하여 부산지역 사법서사들의 반발을 샀으며, 변호사가 등기업무에 관여한 것은 원고가 처음이다.

1. 원고가 82년 「부림사건」 때 처음 시국사건 변론을 맡아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부산의 한 변호사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부산에서 첫 시국사건 재판이어서 변호인을 물색하기 어려워, 선배 변호사가 원고에게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원고는 ‘돈도 되지 않는 사건을 내가 왜 맡느냐’며 고사했다. 겨우 그의 마음을 달래 5인의 변호인 중 한 사람으로 참여시켰다. 재판이 끝난 뒤 그는 ‘시국사건은 재미도 없고 끝나도 고맙다는 인사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다시는 맡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돈이 되지 않는 사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85년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재판 때 두번째로 시국사건 변호인이 되었는데 이때도 이름만 걸어놓았지 변론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

1. 이 무렵 원고는 요트에 폭 빠져 있었다. 82년 요트동호인 10여명과 함께 부산요트클럽을 결성, 회장에 앉은 그는 아는 사람에게 요트공장을 차려주고 요트를 만들게끔 하였으며, 2인승 당기롤 5, 6채나 만들었고 8인승짜리 크루저도 한척 건조했다. 동료변호사들이 「농민의 아들에게 요트는 어울리지 않는 취미」라고 충고하면, 「재미가 보통이 아니다」며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다녔다. 요트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82년부터 85년 사이 정신없이 빠진 적이 있다. 돈도 많이 낭비했다. 그러나 요트를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면서, 「올림피아라 이름 붙인 8인승 크루저도 한 척 만들었으나 타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1. 원고는 85년 당시로서는 고급에 속했던 18평짜리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450만원에 구입했다.

1. 원고는 85년 10월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을 맡았고, 86년부터 조세사건과 노동사건을 제외한 변호사업무를 중단하였으며, 이로써 재산증식도 멈추었다.

1. 변호사시절 번 돈에 대하여 원고는 「87년 7월 구속되었을 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정리해 자동차 종합매매상을 하던 친구에게 투자하여, 부산 사상공단에 있는 공장부지 98평을 약 1억5천만원에 매수하여 주고, 그 대가로 매달 1백20만원씩을 받았다」고 말했다.

1. 원고의 말대로라면 87년 7월 경 원고의 재산은 40여평자리 아파트 한 채, 콘도회원권 하나, 친구에게 투자한 1억5천만원이 전부이고, 원고 스스로도 86년 이후 변호사업무를 거의 중단했기 때문에 재산증식이 멈췄다고 했으나 그 이후 그의 재산은 줄지않고 늘었다.

1. 원고의 재산과 관련하여 눈여겨 볼 부분은 그의 형 노건평의 재산이다. 건평 씨는 69년부터 78년까지 약 10년간 세무서에 근무하다가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고향인 진영뿐만 아니라 부산, 마산, 창원, 창녕 등지의 논, 밭, 임야, 잡종지, 대지 등을 가리지 않고 투자했다. 건평 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과수원을 84년에 7천여만원에 팔아 이를 밑천으로 부동산 매매에 나섰다. 건평 씨가 땅을 집중적으로 사고 판 시기는 88년, 부동산 경기가 막 살아날 무렵이었고, 그가 소유했던 부동산은 김해군 에 산 10만 평, 부산 북구 에 논이 6백여평, 김해군 진영읍에 잡종지가 약 6백여평, 대지가 70여평, 김해군 진영읍 에 논이 2천여평, 경남 창녕에 대지 2백여평, 밭이 약 5백평, 임야가 90평이나 되고 그밖에 김해군 진영읍 와 경남 창원에도 수백평의 땅을 갖고 있었다. 지번으로 따져 그가 사고 판 부동산의 개수는 40여개에 육박하고, 어떤 부동산은 은행에 수십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될 만큼 고가였을 뿐만 아니라, 건평 씨의 부인도 한 때 수만평의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것은 건평 씨가 구입한 뒤 부인명의로

이전한 것도 있다. 건평 씨의 재산은 수십억원 이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 건평씨는 부동산투기로 큰 돈을 벌었다. 건평 씨가 어떤 식으로 재산을 모았고 그것이 모두 얼마나 되든지 간에 그것은 원고와 관계가 없을 것이나, 건평 씨가 사들이는 과정에서 원고의 돈이 일부 투자되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1. 건평 씨의 부동산 매매에 원고의 돈이 얼마나 건네졌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드러난 것은 85년 2월 건평 씨가 평당 5백원 하는 임야 8만평을 구입했을 때 원고가 두번에 나눠 모두 1천5백만원을 지원했고, 88년 김해군 진영읍에 잡종지 1천5백평을 살 때도 원고의 돈이 건너갔으며, 원고가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2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매달 생활비를 타다쓰고 있다. 원고는 「85년에 건네 준 1천5백만원은 나중에 3천만원 상당의 버스 1대로 대신 받았고, 2억5천만원은 형이 진영읍내 땅을 사는데 사용됐다」고 말했으며, 건평 씨도 「평당 2백만원씩 주고 산 진영읍내 땅 2백평을 동생 몫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평당 시가가 5백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1. 13대 총선을 계기로 원고는 목돈을 만지게 된다. 당시 민주당 총재인 김영삼 씨가 원고에게 2억원을 지원했고, 부산의 변호사들과 인권단체에서도 수천만원씩을 거둬 주었으며, 선거를 치르고 나서 원고는 약 1억원의 돈이 남았는데, 원고는 이 돈 가운데 일부를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여의도 아파트(47평) 구입자금으로 썼다.

1. 원고가 밝힌 그의 현 재산은 여의도 아파트 한채, 콘도 회원권 하나,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산 대연동의 택지 40평, 형에게 빌려준 돈 2억5천만원 등이고, 원고는 작년에 증권에 2천만원을 투자했으나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를 합치면 본인의 말처럼 「가난뱅이도 아니지만 부자도 아니다」고 해석될 수 있으나, 원고 명의로 된 것은 아니지만 진영읍내 잡종지 1천5백평과, 평당 2백만원씩 2백평을 살 때 원고의 돈이 건너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1. 「상당한 재산」과 함께 구설수에 올랐던, 노사분규 과정의 「재미」도 약간의 실체가 드러났다. 소문은 원고가 노사분규를 조정하면서 勞와 社 양쪽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 원고는 사용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원고는 「3당 합당 전 민주당 시절 동료의원 한명이 김영삼 총재의 지시라면서 어느 기업의 노사분규를 중재해달라고 했다. 중재를 한 후 그 의원이 누구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그 의원과 나에게 봉투를 하나씩 주었다. 받아보니 2천만원이 들어있었다. 한동안 우물쭈물하다가 이름을 밝히기 곤란한 어느 사회단체에 기증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기업에서 부탁이 들어왔다. 아차 싶어, 형에게 2천만원을 빌려 기업체에 돌려주고 말았다」고 말했다.

1. 원고는 의원이 되고 변호사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데도 돈에 쪼들리는 구석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겸업 의원들이 원고에게 항상 궁금해하는 부분이 무슨 돈으로 의정생활을 꾸려나가느냐는 것이다. 원고를 아는 부산 변호사들은 이 점에 대해 「위낙 이재에 밝은 사람이 돼서 제 속은 이미 차려 놓았다」고 입을 모았다.

1. 원고는 「노동문제를 취급하다보니 돈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변호사 생활을 10년 넘게 한 경력에 비춰볼 때 내 재산은 적은 것도 아니며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1. 원고는 그의 재산과 관련된 소문이 번지자 한번은 후원회 모임에 나가 이런 말을 했다. 「제 자신이 과대 포장돼 있다는 사실을 뒤에 알더라도 납득해 주십시오」 □

.....

김일성 초상이 들어 있다하여 논의가 된
걸개그림을 원고 스스로 떼어내는 과정을 기사화한
이 건 보도는 공공의 관심과 이해가 큰 사항이고,
보도 목적이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0. 10. 12.자 판결(89가합18505)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황우여 부장판사)는 1990년 10월 12일 문화방송노동조합이 동아일보사를 상대로 낸 사죄광고 게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고 보도의 목적이 인식공격이나 사생활폭로가 아니라 공익의 추구인 경우 비록 MBC노조 입장에서 보도가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보도와 평론의 공정성이 배제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MBC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MBC노조는 동아일보가 1989. 9. 8.자 14면 『국실장 신임 평가제 도입이 쟁점, 김일성 그림 걸어 논란』 제하의 기사와 같은 날짜 『평형감각 있는 운동을』 제하의 사설에서 노조의 단체 교섭과정 및 파업 결정에 관해 보도하면서, MBC본관 1층에 걸려 있던 걸개그림을

「김일성 얼굴이 들어 있는 걸개그림」이라고 표현, 노조가 북한 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듯이 독자들에게 보이도록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사죄광고 게재 및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전 기사가 공익을 도모할 목적이 아닌,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있는 걸개 그림” 또는 “걸개 그림속의 김일성 초상화”라는 표현을 썼다하여 걸개 그림에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 있어 논란이 되었던 것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진실이 아닌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判 決 文

사 건 : 89가합18505 사죄광고등

원 고 : 주식회사 문화방송 노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자 위원장 강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용 환, 이 석 태, 김 형 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 상 운

피 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병 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승 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 장 환

변론종결 : 1990. 8. 24.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하는 동아일보에 별지 제1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별지 제2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재하고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9. 9. 8.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

다 라는 판결 및 위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및 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기자등 사원 1,100여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간신문인 동아일보를 제작, 발행, 배포하는 신문사인 사실, 피고가 위 동아일보의 1989. 9. 8.자 14면에서 6단 박스기사로 『국실장 신임평가제 도입이 쟁점』이라는 제하에 원고 노조와 위 소외 회사간의 단체 교섭과정 및 원고노조의 파업결정에 관해 보도하면서 그 하단에 『김일성 그림 걸어 논란』이라고 고덕채 활자로 중간 제목을 넣은 다음 「한편 서울 여의도 MBC 본관 1층 현관에 노조측이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 있는 걸개그림을 걸어 놓은 것이 문제가 돼 노사 양측이 한때 논란을 벌였으나 노조측이 자진 철거했다. 최 사장은 7일 오전 11시에 열린 특별조회에서 ‘걸개그림에 MBC 노사문제와 상관없는 김일성의 초상화가 왜 들어가느냐’고 지적, 조회가 끝난 뒤 모회사간부가 그림을 떼내려 하였으나 노조원들의 항의를 받고 그만 뒀다. 그러나 MBC노조측은 걸개그림 속의 김일성 초상화에 대해 일부 노조원들까지 항의해 오는 등 파문이 커지자 이날 오후 4시 반경 걸개그림을 떼어냈다」라고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한 사실, 같은 날자 2면 사설란에서는 『평형감각 있는 운동을』이라는 대주제에 『증오의 증폭보다 설득력있는 방법을』이라는 소주제를 달고 「어젯밤 동국대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하는 북한의 가극 <피바다> 공연이 경찰의 저지로 중단됐다. 또 파업을 앞둔 MBC노조가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있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가 회사와 노조 내부의 반발로 떼어내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밖에 대구 효성여대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등을 둘러싼 학내분규로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학원소요사태와 노사쟁의의 양상이 마치 지난 봄의 극렬상의 재현을 보는 듯하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선 학생운동이나 노사분규 그 자체가 아니라 극단적인 과격주의로 치닫는 운동의 양식이다.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은 합법성이 유지되는 평화롭고 설득력있는 대화를 통해서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국민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물론 법으로 금지된 김일성의 얼굴을 내거는 일이나 북한의 이른바 주체사상의 연원이 된다는 김(金)의 항일빨치산활동을 소재로 한 가극 <피바다>의 공연이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어떻게 도움이 된단 말인가. 가극 <피바다>는 <꽃파는 처녀> <한자위 단원의 운명> 등과 함께 북한의 3대 혁명가극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지난해 <민중의 바다>로 개제(改題) 출판된 일도 있고 지난 6월에는 서강대에서 공연되는 등 대학가에서 몇차례 공연된, 운동권학생들이 한사코 관심을 기울이는 작품이다. 학생들은 이 공연이 ‘임수경 양의 평양축전참가에 이어 계속된 통일운동을

고양시킬 것'이라 강변하는 모양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같은 학생들의 북한편향의 극단적인 사고가 오히려 사회적 국민적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북한편향적 사고와 근로자들의 폭력적 극단주의의 뿌리가 5공 아래서의 억압과 독선적 리더십에 대한 반발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한때의 학생노동운동의 양상이 비타협적 모험주의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6공 출범 2년을 바라보며 지난날 독선과 억압정치의 틀이 깨어지고 대화와 타협을 우선가치로 하는 개방과 자율화의 역사의 장이 열리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5공의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민주와 자유의 6공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대한 뼈아픈 자성과 함께 오늘의 비리와 모순에 대한 가차 없는 채찍이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남과 북의 현실을 바로 볼 줄 아는 균형감각임을 알아야 한다.

남(南)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북(北)의 허구에 찬 역사를 미화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 남의 역사적 모순에 내리는 채찍을 똑같이 북의 허구적 역사, 45년의 독재와 비인간화의 정치사회에도 내려야 한다. 가극 <피바다> 공연이나 김일성의 얼굴을 내거는 일이 얼마나 균형감각을 잃은 편향과 독선의 산물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또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시위현장이나 농성장의 폭력의 배제이다. 아무리 훌륭한 목표라 해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없이 이에 도달할 수 없다. 지난 2년간의 학생운동 노동운동 등의 교훈을 거울삼아 우리가 찾아야 할 사회적 가치는 대화와 타협이다. 이 대화와 타협의 운동양식을 익히지 않고는 민주주의도, 남북통일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사설(이하 「이 사건 사설」이라 한다.)을 게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 노조의 파업은 자신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편 그동안 정치권력에 예속되었던 소외 회사로 하여금 그 본래의 주어진 사명에 따라 국민에 의한, 국민의 방용으로 거듭 나게 하려는 일선 방송인들의 자기 반성의 몸부림이었는데 수많은 독자를 가진 동아일보지의 발행사인 피고는 이를 외면하고 반공이데올로기가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김일성을 추종한다거나 북한편향적이라는 낙인이 가져올 사회적, 법적 결과의 엄청난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보도와 사설을 통하여 그 독자들에게 원고 노조가 북한편향적인 사고를 가진 듯이 보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원고의 활동을 위축시켰었거나 이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자

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으로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과문을 게재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금 50,000,000원 상당의 금전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인정되는 사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각 사진), 갑제4호증(항의문), 갑제8호증의 1(주간조선 표지), 을제5호증의 2(유인물),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그림해설)의 각 영상 및 기재(다만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갑제4호증의 일부기재는 제외)와 위 증인 및 증인 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인 의 일부증언은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9. 9. 7. 소외 회사에 대하여 요구한 보도, 편성국장의 직선제 및 국, 실장에 대한 신임평가제 도입문제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같은 달 8. 6 : 00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에 앞서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단체교섭과정에서 원고가 소속된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이하 언론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고의 쟁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증된 걸개그림을 1주일 정도 소외 회사 1층 현관벽에 걸어 놓은 사실, 위 걸개그림은 원고를 비롯한 전국 52개 언론사 노동조합이 가입하고 있는 산별노동조합 연맹인 언론련이 같은 해 2. 경 집행위원회를 열고 언론련 출범 100일 기념행사등 각종행사와 소속 단위노조의 행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외 박 에게 언론민주화, 민주언론의 역할, 분단극복과 통일염원을 형상화하여 언론노조운동을 상징하는 걸개그림을 발주하여 같은 해 3. 경 제작, 완료한 것으로서 그 후 언론련의 각종행사는 물론 한국일보, 평화신문, 대전일보, 중앙일보의 행사 및 노조운동시 산하 단위노조의 쟁의 등에 사용하였던 사실, 이 그림은 그 중간에 언론을 상징하는 펜과 마이크로 지울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각계 각층의 국민대중을 상징하는 얼굴을 그림으로써 언론이 모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기본적 진실을 표현하는 한편 우리시대의 최대의 비극인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남과 북의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비전을 표현하기 위하여 남과 북의 두 체제의 지도자인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의 얼굴을 소외 조선일보사가 발행하는 1989. 1. 8.자 주간조선 1032호의 표지에 나타난 사진을 소재로 사실적으로 그려 분단의 현실을 나타낸 다음 역시 남과 북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붉은색이 무지개 빛으로 아름답게 화합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 그 주변의 불타는 원형부분의 바깥은 퇴폐, 사치, 향락 등 온갖 도덕적 타락을 보이는 사회상을 폭로하고 이를 언론인의 노력으로 바로잡아 나가 정화시킨다는 의지를 나타내었고 그 아래쪽에는 궁

극적으로 언론노동자들의 단결된 힘과 노력으로 언론을 민주화시켜 「권력의 손에서 민중의 품으로!」 되돌아 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자 한 그림인 사실, 같은 해 9. 7. 11 : 00 열린 소외 회사 임시 직원총회에서 소외 회사 최 사장이 위 걸개그림에 김일성의 초상화가 들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문제 삼자 위 소외 회사 사업부 부국장인 소외 김

이 총회 종료 후 위 그림을 떼어 내려 하였으나 다수의 원고 노조원들로부터 「노조의 게시물을 무슨 권한으로 떼어내려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고 그만 둔 사실, 그 후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원고의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위 걸개그림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공연한 트집 거리를 줄 필요가 없으니 위 그림을 떼어내자」라는 의견과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림이니 그대로 걸어 놓자」라는 의견으로 나뉘어져 논의한 결과 지엽적인 것으로 인해 원고의 쟁의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정적인 시비거리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그 경 원고가 위 걸개그림을 자진 철거한 사실, 피고소속 기자인 소외 홍 는 당시 원고의 쟁의 활동을 취재하는 일환으로서 위 걸개그림을 직접보고 노조측과 회사측 관계자들을 만나 취재한 결과를 같은 날 오전에 원고로 작성된 기사를 송고한 후 같은 날 14 : 00경 전화로 사진기자를 오게 하여 위 걸개그림을 촬영케 하는 한편 위 걸개그림의 철거에 관한 기사를 이 사건 보도와 같이 요약하여 피고에게 전화로 송고한 사실, 다만 위 홍 기자는 기사의 송고시 「김일성 그림」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으며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 있는 걸개그림」 또는 「걸개그림 속의 김일성 초상화」라는 표현을 썼으나 편집국 면 담당자가 소제목을 붙이는 과정에서 통례에 따라 이 사건 걸개그림을 보지 아니한 채 『김일성 그림 걸어 논란』이라는 제호를 한 사실, 위 기사는 같은 달 8일자 지방판인 3판 및 4판에만 게재되어 일반 독자들에게 배포된 사실, 같은 달 8. 아침 피고 논설위원들은 통례에 따라 회합을 갖고 그 날의 사설 작성에 관하여 의논을 한 후 논설위원 중 소외 이 이 이 사건 사설을 작성하기로 되어 위 소외인은 위 걸개그림을 보거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는 없이 관례대로 이 사건 기사만을 보고 이 사건 사설을 작성하였고 논설이 작성된 후 논설주간등 회사의 간부들이 이를 검토하여 사설로 확정된 사실, 소외 이 은 원고 노조의 파업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의사는 없었으나 동국대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한 피바다 공연이나 대구 효성여대 학생들의 총장실 검거, 그리고 원고가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 있는 플래카드를 내건 일과 같은 일련의 사태가 당시의 사회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이는 1989. 상반기의 양상과 같은 극렬상의 재현을 보는 듯하다는 우려 아래 학생운동이나 노사운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극단적인 과격주의로 치닫는 이러한 운동의 양식에 대하여 포괄적인 경고를 하고 평형감각 있는 운동을 촉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사설을 작성하

게 된 사실, 위 소외인은 한국의 특수한 실정에 비추어 김일성의 얼굴을 내거는 것은 특히 노동운동이라는 상황하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고가 근로자들의 쟁의광경이 그려진 걸개그림에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 있는 것을 내건 것은 법으로 금지된 일이라고 보았고 이는 극단적인 과격주의로 치닫는 운동의 양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균형감각을 잃은 편향과 독선의 산물이라고 판단하여 이 점을 이 사건 사실에서 지적한 사실, 위의 동아일보 보도와 사실이 나간 후 일시적이거나 원고에게 무수히 많은 항의전화가 걸려와 원고를 빨갱이로 비난하거나 왜 김일성의 사진을 거느냐고 항의를 하였던 사실이 있고, 급기야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서 걸개그림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던 사실. 피고는 같은 달 9.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항의를 받고 같은 날 일단 기사로 그 사실을 게재하였고 같은 달 11. 경찰에서 그 그림에 대하여 내사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원고측의 해명내용을 함께 1단기사로 보도한 후 그 내사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이 사건 걸개그림의 사진과 함께 같은 달 12.자 신문에 게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강제4호증, 강제5호증(보도자료)의 일부기재와 증인 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4. 당원의 판단.

가.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하여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바, 피고 법인과 같은 인적 집단의 경우에도 독자적인 활동영역이 있는 한 사회적 평가의 대상으로서의 명성, 신용 등의 명예가 부여되므로 피해자를 공중의 증오, 경멸, 멸시,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하거나 피해자의 사업 혹은 직업적인 능력면에서 그를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일응 명예훼손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와 같은 날짜의 사실이 지방판인 3판 및 4판에 게재되어 불특정의 독자들에게 배포됨으로써 일시적이거나 원고에게 무수히 많은 항의전화가 걸려와 원고를 빨갱이로 비난하거나 왜 김일성의 사진을 거느냐고 항의도 받은 사실이 있고, 급기야는 경찰과 검찰에서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서 걸개그림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던 사실이 있어 원고의 노조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명예가 실추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진실한 보도와 공정한 논평.

피고는 이 사건 보도와 사실은 진실에 기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고 논평의 자유의 범위내의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보도와 논평은 원

고에 관한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악의에 찬 비방을 가한 것이라고 다룬다.

즉, 이 사건 보도와 논평과 같이 하나의 예술작품을 미학적인 관점에서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장자의 정치, 사회적 견해를 이념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신중한 고려를 거쳐야 하는데도 피고는 지극히 편파적이고 개인적 견해를 갖고 독자에게도 그러한 평가를 받아 들이게 하려는 의도 아래 이 사건 결개그림에 대하여 사건의 진상을 비슷하게나마 상상할 수조차 없도록 보도, 논평을 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위 결개그림의 주제는 한 가운데의 두 남자가 부둥켜 안고 있는 이산가족의 재회장면이지 다른 부분과 함께 배경으로서 그림의 주제를 보완하고 있을 뿐인 김일성의 얼굴이나 그와 같은 크기로 대칭면에 자리잡은 노태우 대통령의 얼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인물그림부분은 특별히 김일성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하거나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려는 과장이나 기교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적인 방법의 그림이며 또한 폭력을 주장하거나 이를 정당화하려는 어떤 극렬한 태도를 드러내는 점도 보이지 아니함에도 소위 홍 기자는 위 그림에 김일성의 얼굴부분이 포함되어었으니 특별한 뉴스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얼굴부분은 원고의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원고가 하려는 과업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굳이 김일성만을 특정하여 강조하여 위 그림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한 채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있는 결개그림」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에게 일정한 암시를 한 것이고 또한 편집담당자도 사실확인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 기사만에 근거하여 『김일성 그림』으로 소재목을 제호함으로써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보도의 표제와 기사에서 위 그림이 마치 김일성의 얼굴만을 그려 놓고 있는 듯한 암시를 하고 위 그림의 철거 경위에 대하여 노조원들이 항의를 하였으며 결국은 「노조원들까지 항의를 해오는 등 파문이 커지자」 이를 철거했다고 허위의 보도를 더함으로써 원고 및 그 조합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정 정치이념의 신봉자들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실에 관하여 피고 논설위원은 사실작성시에 객관적인 사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일방적인 주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결개그림사진을 보지도 아니하고 결개그림의 주제를 표현하는 부수적 소재에 불과한 김일성의 얼굴이 마치 결개그림의 전부인 듯이 보도한 이 사건 기사만을 보고 사실을 쓴 나머지 원고의 과업과 결개그림 부착이 동국대학생들의 피바다 공연이나 효성여대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와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 내용과 의미가 전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멋대로 동렬에 배치한 다음 전혀 논리적 합리성이 없는 왜곡, 과장, 날조된 비방을 퍼붓고 마치 원고가 김일성과 북한

의 역사를 추종하고 찬양하는 북한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극단적 폭력을 일삼는 집단인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당시 진행중이던 원고의 파업에 「붉은색」의 이데올로기적인 왜곡, 비방의 낙인을 찍음으로써 파업의 진행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명예훼손과 신문의 자유

그러므로 이 사건 보도와 사실이 진실한 보도이고 공정한 논평으로서 면책의 범위에 해당하지를 살피건대, 이는 곧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관계 및 그 경계의 문제인 바 무릇,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표현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직결되어 자유로운 사유를 통하여 형성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발현하도록 하는 권리로서 인간 인격의 직접적인 표현을 보장하는 가장 고귀한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한편, 국민간에 자유로이 발표되는 사상은 이른바 사상의 자유시장을 형성하여 이곳에서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과 공개적인 대결은 토론의 대상으로 된 진리에 관한 정당성을 주장, 전파하고 오류를 색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금석인 사상의 경쟁을 가능케 하며 이로써 자유롭게 얻어진 여론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실천적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선거와 투표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는 곧 민주정치가 존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생명선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그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사실로서 보도하고 공정한 논평을 하는 것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는 신문의 자유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하겠다. 물론 표현의 자유라도 무제한 보장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그 내재적인 한계를 벗어나 다른 한편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 자체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에서 흘러나오는 개인의 명예와 같은 인격권 또한 이에 못지 않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헌법도 같은 법조 제4항에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피해의 배상을 위한 기본적이고도 원칙적인 제도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는 때에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보도의 진실성.

일반적으로 사실의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표현활동이 비록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진실보도의 면책과 그에 대한 적절한 요구를 위 두 법익의 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실의 보도가 때로는 진실할수록 명예훼손의 정도가 클수도 있겠으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진실한 보도는 여론형성의 요인으로서 여론의 올바른 형성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게 되므로 진실을 표현하는 것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한편 신문의 진실 보도 의무는 신문의 자유를 높이 평가하면 할수록 개인의 알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서라도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진실의무의 적절한 요구 또한 이익형량의 원리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 아래서 판단할 문제이고 언론의 상기한 특권적인 지위에 비추어 신문에 표현의 자유가 숨을 쉴 수 있는 여백을 부여하는 범위에서 요구되어야 하고 결코 언론에 위축적인 효과를 가져와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기사를 살펴건대, 신문보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보도하였다고 추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같은 언론사의 파업을 주도하는 언론노조의 파업현장의 사태진전은 그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더우기 김일성의 초상이 들어 있다고 하여 논의가 되었던 걸개그림을 원고 스스로 떼어내게 된 과정을 기사화한 이 사건 보도는 공공의 관심과 이해가 큰 사항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그 보도의 목적에 있어서도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중인 김평호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이 사건 기사가 공익을 도모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어떤 암시를 주거나 착각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추측이 사실의 기술로 되지는 아니하고, 진실은 의도적으로 왜곡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왜곡은 특정인에게만 알려진 중요한 사실관계를 공공에게 은비함으로써 가능하다 하겠으나, 공표된 사실의 진실성은 반드시 세부에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하면 좋고 비록 그러한 진실의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위법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원고 노조의 쟁의현장에서의 일련의 움직임을 다룬 것이지 위 걸개그림 자체를 묘사하는 취지의 기사는 아니므로 원고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도에 있어서 위 그림의 전체적인 설명을 생략한 채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 있는 걸개그림」 또는

「결개그림 속의 김일성 초상화」라는 표현을 썼다 하여 위 결개그림에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 있어 논란이 되었던 것을 기사화함에 있어서 진실이 아닌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기사의 표제에 『김일성 그림 걸어 논란』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 자체로는 원고가 김일성의 얼굴만을 그린 그림을 걸어 놓은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없지 아니하나 논란의 대상이 김일성의 그림부분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일정한 지면의 제한 아래 고도의 함축성과 간결성을 기하여야 할 호제를 함에 있어서는 이로써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에 연이은 기사에서 분명히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 있는 결개그림이라고 보도하여 비록 그 「일부분」으로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위 결개그림의 일부로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있음을 규지할 수 있는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로써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노조원들까지 항의를 하였느냐는 점에 관하여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공연한 트집거리를 줄 필요가 없으니 위 그림을 떼어내자」는 반대의 의견이 있었고 또 위 의견이 우세하여 원고가 자진철회한 것은 사실이었으니 이를 노조원들까지 「항의」하였다고 표현하여 기사화하였다 하여 진실한 보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다. 논평의 공정성

한편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명으로 이루어진 즉, 평가를 포함한 보도인 평론이나 해설은 공공적 사항에 관한 공정한 평론인 한 그 평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의견인지, 사회의 다수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또한 이로써 피평론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었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으며 평론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할 것인 바, 이때에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또는 일반 공중의 관심사로 되는 사안에 관하여서 그것이 공적 활동과 무관한 사생활의 폭로나 인신공격이 아닌 한 그에 대한 평가는 의견, 비판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당할 필요는 없고 주관적으로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족하며 중립적이지 않고 당파적으로 일방에 치우치거나 그 용어와 표현이 격렬, 신랄하고 그 결과로서 피평론자의 사회로부터 받는 평가가 저하되어도 이로써 공정한 논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의 이은 이 사건 사실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 사건 결개그림을 실제로 본 바는 없으나 원고가 김일성의 얼굴이 들어 있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가 소의 회사와 원고 내부의 반발로 떼어냈다는 사실의 보도 자체에 기하여 이 사건 사실을 작성하였는데 위 보도가 허위의 사실이 아닌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고도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신문에 있어서 논설위원에게 위와 같은 사실보도에 근거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사실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으며 나아

가 이러한 사건은 그밖의 동국대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의 「피바다」 공연이나 효성여 대학생들의 총장실 점거와 같은 사회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사건으로 보고 노동쟁의현장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김일성의 얼굴이 내걸려서는 아니된다는 견해와 노조운동은 반대하는 바 아니지만 극단적인 과격주의로 치닫는 운동의 양식에 대하여서 만큼은 우려할 바로 보아 이를 경고하는 사실을 쓴 것이므로 이는 비록 일부 원고가 위 걸개그림을 내 건 의도나 위 걸개그림이 나타내고자 하는 본 뜻과는 원고측에서 볼 때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편파적인 견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하나의 의견으로 성립될 수 있는 사상의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공정한 평론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아울러 위 소외인인 이 사건 사실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가 방송민주화를 위하여 파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목적을 위하여 파업하는 듯이 조장하려는 의도 아래 이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이 법원이 배척하는 증거 외에는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도와 논평은 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고 비록 원고의 입장과 행동이 피고의 사실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동조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평론의 공정성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로써 원고의 명예가 다소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면책된다 할 것이다. 즉, 원고로서 또 다른 논평과 반론에 의하여 피고의 입장을 교정하고 토론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보도와 평론자체를 불법행위로 단정하여 우리의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축출할 만한 사안은 결코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보도와 사실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와 그 구성원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위법을 저질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1990. 10. 12.

재판장 판사 황 우 여
판사 이 경 철
판사 강 동 세

1. 사과문

MBC 노동조합에 사과 드립니다.

저희 동아일보는 9월 8일자 14면의 MBC 노조의 단체교섭에 관한 기사와 2면의 사설에서 MBC 노조가 김일성 그림을 내건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고 그것이 북한편향적 사고와 폭력적 극단주의에 기인하고 있는 듯이 평가한 데 대하여 MBC 노동조합에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더욱이 이 보도와 사설로 MBC의 파업사태를 보는 국민여론을 오도시킨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위 기사와 사설은 MBC 노조가 걸었던 그림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취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문제된 그림은 결코 김일성 그림이 아니었음을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 그림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서 발주, 제작한 것으로 이미 여러 신문사의 쟁의 현장에서도 전시되었습니다. 그림의 기본구도는 언론민주화를 위한 의지와 조국통일의 비원을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펜과 마이크 및 이산가족 재회 현장의 장면을 그림의 중앙에 배치한 다음 남북분단의 현실을 두 체제의 지도자로 압축 표현코자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의 사진을 양쪽에 배치하고 남과 북이 무지개빛으로 화합하는 아름다운 묘사를 함으로써 민족통일 과정에 있어서 언론의 사명과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기사와 그에 바탕을 둔 사설 등으로 MBC 노조 및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기관까지 내사에 나설 정도로 사태가 악화되는데 책임을 느끼고 방송민주화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MBC 노조에 거듭 사과 드립니다.

—동 아 일 보 사—

2. 사과문 게재방법

사과문 게재방법

가. 이 사건 판결선고일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동아일보의 1면 최우측 하단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4단 크기로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과문」을 게재한다.

나. 사과문의 둘레에는 두 줄로 사각형의 테두리를 만들어 다른 기사 및 광고와 구별되도록 하고, 사과문 상단의 『MBC 노동조합에 사과 드립니다.』라는 제목 및 하단의 「동아일보사」라는 단어는 1호 고딕 활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사과문의 내용은 본문 활자로 표기한다. □

원고의 수기를 무단으로 게재, 저작공표권을 침해하고 성폭행 경험만을 묘사한 것으로 오인케하여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사과문을 게재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1. 17.자 판결(90가합15896)

事實概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13부(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1991년 1월 17일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 권 씨가 자신의 수기 「하나의 벽을 넘어서」의 일부를 발췌 게재한 「우먼센스」를 상대로 낸 사죄광고 청구소송에서 주장 일부를 인용,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 및 명예의 원상회복을 위해 사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권씨는 「우먼센스」가 1990. 1월호 『문 은 권양을 이렇게 성추행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자신의 어린시절부터 대학을 마치고까지의 경험담 의식의 변화 등을 그린 수기 「하나의 벽을 넘어서」중 성폭행 부분만을 발췌해 무단으로 게재하자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사죄광고 게재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기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사후 승락없이 잡지에 무단 게재하여 원고의 저작공표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만을 발췌 강조하고 기사와 관련 없는 선정적 사진을 삽입하고, 성폭행 장면만을 강조하는 리드 기사를 삽입하는 등으로 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원고의 성폭행 경험을 묘사한 것으로 오인케 하였고, 원고에 대해 건전치 못하다는 등의 인상을 받게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判 決 文

사 건 : 90가합15896 사죄광고

원 고 : 권

원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중 현, 김 선 수, 박 주 현, 김 한 주

피 고 : 주식회사 서울문화사

서울 중구 서소문동 39의 1

대표이사 심 상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만 조

변론종결 : 1990. 12. 6.

주 문 : 1. 피고는 월간 우먼센스지 한면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의 크기로 제목은 2호 활자, 내용은 4호 활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사과문을 1회 게재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이 판결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우먼센스지에 3회에 걸쳐 제1면 전면에 제목은 특호 활자로, 내용은 2호 활자로 하여, 별지 2 기재 사죄광고문을, 이 판결송달 후 3일 후 발행되는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15면 및 한겨레신문 11면 광고란의 하단에 가로 38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크기로 제목은 2호, 내용은 3호의 활자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죄광고를 각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1호증의 2(우먼센스 표지 및 내용), 강제3호증의 1, 2(월간 멋 표지 및 내용), 을제2호증의 1, 2(하나의 벽을 넘어서 표지 및 내용), 증인 유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강제2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원고 제출의 참고자료(위 수기의 책자)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인 수기형식의 「 넘어서」(이하 이 사건 수기라 한다)의 저자로서 1989. 12. 소위 경영의 거름출판사를 통하여 이 사건 수기를 발간하였던 바, 위 책의 내용은 원고의 어린시절부터 대학시절을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여러가지 경험과 의식의 변화, 정신적인 갈등과 극복의 과정을 성장 단계별로 쓴 것으로서 특히 대학시절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인 평범한 디자이너로서의 희망을 버리고 농촌활동등의 경험을 통하여 소위 운동권학생으로 변화하게 되어 학생의 신분을 숨기고 공장

에 취업하여 노동자 생활을 하다가 주민등록증 위조혐의로 부천서에 연행되어 그 심문과정에서 위 경찰서 소속 형사인 문 ○○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위 공문서위조로 인한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하여 노동상담활동등으로 지내게 되었다는 등을 묘사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유 ○○는 월간 잡지 「레이디경향」등의 월간 여성잡지사로부터 이 사건 수기를 게재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만약 위 성폭행 과정등을 삭제한다면 승락하겠다고 하여 어떠한 월간 잡지회사와도 정식으로 그 게재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던 차에 피고회사의 조대웅 주간으로부터도 위 수기의 게재요청을 전화로 해와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만 응답했을 뿐 위 게재 요청에 관하여 원고나 위 유 ○○는 승락한 바가 없었던 사실, 그러나 월간여성잡지 「우먼센스」의 발간 업체인 피고는 그 발행의 위 「우먼센스」 1990년 1월호에, 표지 전면에는 1호크기의 활자로 『권 ○○양의 자신의 성폭행 과정을 솔직히 쓴 문제의 수기』라는 제목을 붙이고, 위 잡지 474면에서부터 485면까지에는 우선 기사 첫머리에 특호 활자의 크기로 『문 ○○은 권 ○○양을 이렇게 성폭행 했다』라는 제목을 붙이고 그 아래 부분에 위 수기의 7면부터 44면까지의 내용인 「1986년 6월 4일,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날도 나는 부천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너무 지쳐 있었는지, 아니면 고개를 파묻었기 때문인지, 담요에 절어 있는 사람의 냄새에 의한 안도감 때문인지 어쨌든 나는 잠이 들었다.」 부분을 그대로 발췌, 인용하여 게재하되, 다만 위 인용기사를 네 단락으로 나누어 각 단락마다 「첫째날 연행」, 「둘째날 심문」, 「셋째날 성고문」, 「넷째날 성고문 2」 등의 소제목 붙이고, 그 각 소제목 하단에는 위 수기의 내용 중 원고가 부천서에 연행되어 심문당했다는 내용을, 고덕체의 글자로서 본문의 활자보다 큰 활자로 날자별로 요약하되 위 세번째 단락과 네번째 단락에 이르러서는 위 요약내용에 덧붙여 우측 가장자리의 공란에 위 요약내용과 같은 활자로 「머리가 아득해졌다. ...차라리 그가 날 죽여주는 것이 훨씬 깨끗하고 고마울 것 같았다.」라는 등의 성폭행 장면을 중점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소위 리드(Lead,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문안) 기사로 처리한 사실, 또한 위 잡지의 각 면마다 약 반면의 크기로 여자의 잠옷이 의자에 걸쳐있는 사진이나, 여자가 치마를 위로 벗으면서 다리부분이 드러나있는 사진 등 비교적 선정적인 사진(이는 포토그래퍼스라는 독일 화보첩에서 인용한 것임)을 같이 게재한 사실, 그후 위 잡지 표지 전면의 위 제목은 위 잡지의 일간신문 하단의 통광고란 및 포스터, 전철내의 광고물 등에 그대로 활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조대웅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제1호증(신문), 을제3호증의 1, 2(인덱스 포토그래퍼스 표지 및 내용), 을제4호증의 1, 2(월간 몇 표지 및 부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

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수기의 발췌 게재에 관하여 위 수기의 저작권자인 원고의 사전동의나 사후승락 없이 위 잡지에 무단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위 수기에 관한 저작공표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수기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아무런 서술 없이 전체의 일부만을 발췌 강조하고 기사와 관련이 없는 선정적 사진을 삽입하여 성폭행 장면만을 강조하는 리드 기사를 삽입하는 등으로 위 수기의 구독자뿐만 아니라 앞서 본 광고등을 본 사람들에게 위 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이 원고의 성폭행 경험을 묘사한 수기로 오인되게 하였고 원고에 대해 건전치 못하다는 등의 인상을 받게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잡지 출판시 그러한 것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위와 같이 침해된 원고의 저작권 및 명예의 원상회복으로서 별지 1 기재의 사죄문을 위 「우먼센스」에 주문 제1항과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함이 상당하다 할 것(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의 사죄광고문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잡지와 신문에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저작권 및 명예훼손의 양태 및 그 정도, 사과문 게재에 따른 비용 등을 참작할 때 이 정도가 상당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고 가집행은 불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1. 17.

재판장 판사 김 종 식
판사 윤 종 현
판사 홍 석 점

〈별지 1〉 사 과 문

당사가 발행한 월간 잡지 「우먼센스」 1990년 1월호의 474면부터 485면까지 『문 은

권 양을 이렇게 성폭행 했다』라는 제목하에, 권 씨의 수기인 「 넘어서」의 내용 중 성폭행 장면만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 게재함으로써 권 씨의 위 수기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그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하는 바입니다.

주식회사 서울 문화사

대표이사 심 상 기

〈별지 2〉 사죄광고문

폐사는 폐사가 발간하는 월간 잡지 「우먼센스」 90년 신년호에 『문 은 권 양을 이렇게 성폭행했다』라는 제하로 권 씨의 「 넘어서」를 본인의 허락 없이 무단 게재한 바 있습니다.

위 권 씨는 여성의 성이 노동탄압과 반민주적 억압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공개하여 이를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권력의 부도덕성을 고발하고 인간성을 유린하는 고문에 온 몸으로 맞서 싸워 우리 민주화운동과 여성인권 노동인권 향상에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폐사는 독자의 흥미만을 염두에 둔 나머지 상업적인 위 잡지에 『문 은 권 양을 이렇게 성폭행했다』라는 성적 흥미를 유발시키는 제목하에 권 씨의 작품 중 성폭행 장면만을 발췌하여 무단 게재하고 그 옆에 일반인의 성에 대한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들을 덧붙임으로써 권 씨의 뼈아픈 성고문 고발을 성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성을 상품화 하는 데 악용하여 권 씨의 명예를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폐사는 권 씨에게 끼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잡지의 공적 책임과 윤리를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흥미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주식회사 서울문화사(「우먼센스」 발행사)

□

원고가 문 목사의 방북 및 지하철 노조
파업사태등을 교육내용으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논평은 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고 공익을 목적으로
보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2. 2. 20.자 판결(89가합13975)

事實概要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윤여현 부장판사)는 1992년 2월 20일 최씨가 MBC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과방송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방영이 원고의 사회적,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들의 이 사건 사실보도와 논평은 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보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의 입장과 교육활동이 원고가 의도한 바와는 달리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면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문화방송 1989. 5. 14자 21:00 뉴스시간 『천방지축조의 담임』 제하의 기사에서 자신의 그릇된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학교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학교교육이 무너져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사로서의 자격등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내용이 보도하자, 이로 인해 자신의 성명권, 초상권,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거나, 왜곡했다고 볼 수 없으며, 고의로 원고의 교육활동을 비난하고자 취재대상자를 편파적으로 선정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히고 「원고의 입장과 교육활동에 어떤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한 것은 언론 기관의 평론의 자유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전에 본인으로부터 사용용도나 목적등에 관해 동의를 얻어 그 범위내에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성명권 또는 초상권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성명권,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判 決 文

사 건 : 89가합13975 사과방송 등

원 고 : 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용 환, 이 석 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진 국, 신 장 수

피 고 : 1. 엄

서울

2. 주식회사 문화방송(文化放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1

대표이사 최 창 봉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재 후, 한 만 수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 병 석, 항 영 주, 최 재 경

변론종결 : 1991년 11월 22일

주 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9.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이 유 : 1. 이 사건 보도

원고는 1989. 3. 2.부터 서울 소재 신방학국민학교에서 담임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이하 피고 문화방송이라고만 한다)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하는 방송법인이며, 피고 엄 은 피고 문화방송의 보도국 사회부 소속 기자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 피고 문화방송은 1989. 5. 14. 21:00 텔레비전 뉴스센터 시간에 약 11분20초에 걸쳐 『천방지축조의 담임』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당시 담임을 맡고 있던 신방학국민학교 의 학급 교육활동에 관하여 피고 엄 이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동 보도의 도입부에 동 프로그램 진행자인 소외 손석희가 「교육이라는 것은 발전적인 변화를 추구하되 서서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

반적인 교육이론의 하나입니다. 특히 어린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가치관을 갑작스럽게 심어줄 때 거기에는 혼란이 따를 것이고, 먼 훗날 그 어린이가 오도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신방학국민학교를 배경으로 엄 기자가 화면에 등장하여 「이 학교는 지금 한 젊은 여교사 때문에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은 우리나라 국민학교 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라고 서두를 꺼낸 다음 「올해 살된 여교사 최 씨가 부임과 동시에 학급담임을 맡은지 채 보름도 안되는 지난 3월 14일부터 이 학교에 파문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숙제도 채대로 내주지 않고, 사회시간에는 이상한 내용의 수업을 하는 것 같다는 항의 전화가 잇따랐습니다」라고 보도함과 동시에 위 신방학국민학교의 교감인 소외 노 이 원고에게 보낸 「사회시간에 교과내용은 잘 취급하지 않고 울산등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로자 데모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의 말, 과제를 내주지 않는다, 김일성에게 편드는 듯한 내용의 말, 자녀를 다른 반으로 옮기고 싶다, 다른 반 아이들의 공부한 내용을 보면 부럽다,라는 취지의 학부 모로부터 항의전화가 왔으니 사실이면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와 「노교감 선생님께 라는 제하의 위와 같은 학부모들의 항의는 사실이 아니며,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전화는 유언비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이러면 교사탄압사례로 생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원고의 반박편지를 낭독한 후, 피고 엄 은 계속하여 「최 교사는 익명으로 된 전화는 교권 침해와 교사탄압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상한 내용의 가사가 적힌 이른바 운동권에서 흔히 부르는 노래가 여러 어린이들의 일기장이나 약속장이라는 데에서 발견이 됩니다. 급기야 4월 20일 학부모 29명은 최 교사에게 어린이를 맡길 수 없다는 탄원서를 관찰 교육구청에 냅니다」라고 보도하고, 신방학국민학교 학부모 2명이 원고가 교육한 노트 및 학급에 있는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학습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원고가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한 문익환 목사 북한방문문제, 노사분규관계, 학생데모 관계 등은 국민학교 학년 과정에 부적합하고, 원고가 담임하였던 의 특별활동 조 명칭이 괴상하며,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계속한다면 더이상 어린이를 맡길 수 없으므로 전화로 항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대담장면을 학부모들의 얼굴을 화면에 담지 않은 상태에서 방영하고, 다시 교실을 배경화면으로 하여 피고 엄 이 등장하여 「문제의 교실입니다. 책상은 물론 교실 전체가 아주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칠판에는 내일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해서 풀어야 할 숙제까지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보름전만 해도 이 교실의 분위기는 이렇게나 앓았습니다. 이 교실에서 이와 같은 것이 발

견되었기 때문입니다. 1분단 2분단 같은 통상적인 분단 이름 대신에 말썽천재조, 핵폭탄과 유도탄조, 천방지축조 등등 기상천외의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라고 보도한 후, 원고가 위와 같은 분단의 명칭은 학생들이 만화를 보고 나름대로 정한 이름일 뿐 원고의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항변하는 내용의 대담장면을 방영하고, 「남북음악축전은 열려야 한다, 대통령이 선거때는 보통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문 목사도 통일에 대한 문제로 방북을 한 것인데 별을 주면 옳지 않다]라는 내용의 학생들의 학습 활동자료를 낭독한 후 「최 교사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른 인물이었음이 학교 관계자가 찍어 놓은 사진들과 복사물들이 말해 주고 있다」는 말과 함께, 「원고는 교장을 규탄하는 소리, 또 게시물의 끝부분에 연호를 표기함에 있어 헤어져 살아온 45년 ○월 ○일이라 표기하고, 보안법이 어떻고, 자유당 때 이승만 박사가 왕창 돈을 먹어 버렸다 라는 내용의 4·19 관계 만화, 기타 도시빈민 자포자기의 말, 경희여상 데모 찬양 등 내용의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학교 배면 칠판에 게시하였다」고 비난하는 신방학국민학교의 교장인 소외 은치안의 원고에 대한 비난 대담장면을 방영하고, 이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한 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사회 동태성의 민감한 배양 기타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과 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는 사회과 교육 목표에 따라 행하여진 것인데, 신문스크랩 내용은 이를 직접 지도한 바는 없고 단지 학생들의 교육자료로 게시한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반박대담장면을 방영하고, 이어서 피고 엄 은 「결국 최 교사는 지난달 25일 학교로부터 담임자리를 박탈당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원고의 전 근무지인 방학국민학교의 학부모들이 원고를 담임직에서 박탈한 신방학국민학교의 처사는 부당하다면서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보도와 함께, 「원고가 전 근무지에서 학생들에게 자연식품을 많이 권한다든가 외국상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시키는 등의 교육활동을 보고 젊은 교사가 패기있게 교육을 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였는데 깊은 내용은 잘모른다」는 취지의 원고의 전 근무지인 방학국민학교의 학부모와의 대담장면과 원고와 함께 근무하고 있던 신방학국민학교 학년 학년주임교사인 소외 황 이 「원고가 참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신의 교직경력이 20년 되나 원고와의 교육방식이 다르니 결국 자신이 참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밖에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담장면을 각 방영한 후, 문교부 장관 및 장학관 수실장 방을 배경화면으로하여 피고 엄 은 「문교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일선 국민학교 교단에서 무슨 일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말과 함께 「최씨는 학년에 알맞지 않은 교육을 시켰고 사회 전체가 합의를 본 교과 내용에서 벗어난 주관적인 주장을 학생에게 강요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내

세워 학생들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교육자 양성지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나 심지어 동료교사들은 최교사가 어떻게 교원자격증을 받았고 또 어떻게 임용되었으며 또 어떻게 담임까지 맡았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방영이라 줄여 쓴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문화방송의 이 사건 텔레비전 보도프로그램인 9시(오후) 뉴스센터는 방송망을 타고 전국에 방영되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다.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교육활동을 소위 「의식화교육」으로 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보도를 위한 취재활동을 하면서 ① 취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교육활동에 반대하는 학부모 5명(그중 1명은 대체로 중립적이었으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과 원고의 교육활동을 의식화 교육으로 단정하여 원고를 담임직에서 박탈한 위 신방학국민학교 교장 소외 은치안 등을 상대로 대담의 형식으로 원고의 교육활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편파적 태도를 보였고, ② 사회과목 수업시 정규의 교과과정을 수업하면서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문 목사의 방북문제, 지하철노조 파업 사태 등에 관한 시사문제를 교육한 것임에도 사회시간에 책에 있는 것은 전혀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으며, ③ 「일요일이 다가오는 소리」등은 문공부 등록을 마친 음반에 실려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흥겹고 경쾌하며 오히려 기존 유행가에 실린 병적인 정서를 배제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노래를 가르치려고 한 것인데 이러한 노래를 근거없이 소위 「운동권노래」로 단정 보도하였고, ④ 「미완의 4·19」 만화는 「이야기 한국사」에서 발췌하여 원고가 그린 그림으로서 당시 4월을 맞이하여 학생들에게 불의에 항거한 4·19의 숭고한 민주이념을 기념하고 이를 계승시키고자 게시한 것이며, ⑤ 배면 첩판에 게시한 신문기사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건전하고 올바른 판단력과 비판력 창의력을 개발시키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교육시키고자 부착하였던 것이고, ⑥ 연호를 사용함에 있어 서력기원 대신 「헤어져 살아온 45년 ○월○일」을 사용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민족분단의 아픔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사용토록 하였던 것이며, ⑦ 원고는 확일적으로 부과하는 숙제보다는 학생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개별 숙제를 부과하였음에도 전혀 숙제를 내주지 않는다고 보도하였고, ⑧ 학급 분단의 명칭에 있어서도 이는 학생들이 만화에 나온 명칭을 따 자율적으로 붙인 것으로 원고의 어떠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 명칭 중에는 노벨조, 파란새싹조, 꿀꿀이조, 비둘기조, 달려라 꿀찌조 등 건강하고 평화로운 명칭이 있음에도 마치 원고의 의도에 따라 조의 명칭을 붙이고 거기에는

천방지축조, 말썽천재조, 핵폭탄과 유도탄조, 세대교체조 등의 명칭만 사용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며, ⑨ 기타 보도 제목의 선정에 있어서도 『천방지축조의 담임』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교육활동이 마치 정상적인 교육활동의 궤도에서 현저히 벗어나 천방지축조의 교육을 하였던 것으로 보도하였으며, ⑩ 원고의 그릇된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학교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학교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교사로서의 자격등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3. 인정되는 사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만화),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갑제16호증, 을제1호증의 1, 2(각 신문 기사), 갑제11호증의 3(중재신청서), 4(대답내용), 5, 6(각 중재조서), 갑제12호증의 3(의견서), 6, 7, 8(각 피의자 신문조서), 9(추가진술서), 갑제13호증의 7 내지 31, 37, 38(각 피의자 신문조서), 34, 36(각 진정서), 갑제14호증의 1(서울신방학국민학교 교사 사안철), 2, 3(각 보고서), 4, 5(각 문답서), 6(진술서), 7(학부형 진정사안 처리), 8(학부형 진정사안 처리결과 보고), 9(교사 사안 보고), 10(회의록), 11(학교장 소견서), 12(편지발송경위보고), 13(보도자료), 14(지도결과 보고), 15(지도철저), 갑제17호증의 1 내지 4(각 노트), 갑제18호증의 1(이야기 한국사 표지), 2(목차), 3(내용), 갑제20호증의 1, 2(즐거운 노래 표지 및 목차), 갑제21호증의 1, 2(노래모음집 표지 및 목차), 갑제29호증의 1(검증조서), 2(녹취서)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신방학국민학교 담임을 맡아 지도를 해오면서 학생들에게 사회과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문 목사 방북문제, 지하철노조의 파업 사태, 남북음악회의 개최 여부 기타 대통령을 토론의 주제로 선정하여 각 조별로 토론을 하게 하고 그 내용을 글로 쓰게 하여 교실내에 비치, 보관하게 한 사실, 또 교실의 배면 칠판에 교장선생님을 비판하는 내용의 학생의 작문과 『우리의 정의로운 경희여상 아이들』이라는 제하의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경희여자상업고등학교의 학내분규로 인한 데모등에 관한 내용의 기사 및 『도시빈민 자포자기』 『가난이 운명은 아닐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픈 데가 더 많아요』라는 제하의 도시빈민에 관한 각 신문기사 등과 「미완의 4·19」라는 제목으로 자유당 정권의 부패와 4·19등에 관한 내용이 그려진 만화를 게시한 사실, 원고가 담임하고 있던

의 학급특별활동조 명칭은 학생들이 스스로 정하는 대로 붙이도록 하여 말썽천재조, 핵폭탄과 유도탄조, 천방지축조, 노벨조, 달려라 꼴찌조, 새싹조, 꿀꿀이조, 파란새싹들조, 세대교체조 등의 명칭을 붙여 사용해 왔고, 배면 칠판에 게시된 각종 작문 기타 일기

등의 말미에는 서력기원 대신 「헤어져 살아온 45년 ○월○일」이라는 연호를 표기하였던 사실, 그 이외에 원고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수록된 노래 이외에 「일요일이 다가오는 소리」 「도깨비 뺨스」 「아침이슬」 「춤백이」 등의 노래 등도 가르쳐온 사실, 그런데 1989. 4. 6경부터 익명을 요구하는 원고 담임학급의 학부모들이 「원고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주지 않는다. 원고가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내용이 5학년 과정에 적합하지 못하며 소위 의식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등의 항의전화를 하기에 이르자 위 신방학국민학교의 교장인 소외 은은은 원고에게 학부모들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항의전화가 왔으니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익명의 항의전화는 그 출처가 의심스럽고 교권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해명도 없이 1989. 4. 6. 부터 같은 8일까지 학교를 결근하였던 사실, 이에 위 소외 은은은 같은 달 7. 교감인 소외 노과학년 학년주임 교사인 소외 황을 시켜 원고 학급의 배면 칠판에 게시되어 있는 부착물을 일부 수거하고 원고의 책상서랍을 뒤지기에 이르자 원고는 같은 달 13. 경 위 소외 은치안에게 위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교권탄압이라는 이유로 교사회의석상에서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한 사실, 또한 같은 달 20일에는 위 신방학국민학교의 관할 교육구청인 북부교육구청에 원고가 소위 의식화교육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교육활동을 비난하는 내용의 학부모 27명 연명의 진정서가 제출되기에 이르자 위 북부교육구청에서는 소외 은에게 사실을 확인한 후 문제가 있으면 담임을 교체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위 소외 은은은 같은 달 25일 담임교사를 원고에서 소외 김교사로 교체한 사실, 그후 같은 달 26일 위 소외 은이 담임교사 교체사유를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학부모회의를 소집한 결과 원고의 전 근무지인 방학국민학교 학부모 14명이 위 회의에 참석하여 원고에 대한 담임 교체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격렬히 항의를 하였던 사실, 그러자 1989. 5. 1 일간지인 중앙일보는 『의식화 교사 담임직 박탈』이라는 제하에 「신방학국교는 이 학교 5학년 2반 담임 최교사가 사회과 수업시간등을 통해 문목사 방북 사건등을 학생들에게 토론시키는 등 의식화학습을 해 왔다는 이유로 담임직을 박탈하였다」라는 기사를 게재하고, 같은 날 동아일보에서는 『의식화교육 학부모 항의 빈발』이라는 제하에 소위 의식화교육사례라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원고가 학생들에게 헤어져 살아온 지 ○○년이란 연호를 사용하도록 강조하였으며 노대통령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여 그 비판적 내용들을 대자보 형식으로 교실 게시판에 부착하는 등 의식화 활동을 함으로써 최근 학부모들의 고발로 담임을 박탈당했다」라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원고의 교육활동으로 인한 일련의 사태가 각 일간지에 보도되기에 이르렀고, 위 북부교육구청은 같은 달 10. 「국민학교 학생

에게 의식화교육을 한 담임교사 교체」라는 제목하에 「원고 담임 학급의 학부모 27명이 원고가 판단력 없는 국민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의식화교육을 했으며 진정함에 따라 학교장은 1989. 5. 25 학급담임을 교체하였으며 교육구청에서 엄중 경고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의식화교육의 사례로 「문」 목사가 북한에 간 것은 잘한 일이다. 남북음악회는 열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선거 때에는 보통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연호를 서기로 사용하지 않고 헤어져 살아온 45년 ○월○일이라고 사용 지도하였으며, 노사문제 비판을 통한 기층의식을 주입하고, 비교육적인 학습 분단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공표한 사실, 이에 문교부 출입기자이던 피고 엄은 피고 문화방송 사회부장 소외 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태동과 더불어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어 있던 소위 「의식화교육」문제에 관하여 취재하면서, 원고는 물론 위 신방학국민학교 교장인 소외 은, 같은 학교 5학년 학년주임교사인 소외 황, 원고의 교육활동을 교육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5학년 2반 학부모 5명 및 원고의 전 근무지 신방학국민학교 학부모 기타 북부교육구청 학무과장, 모 사범대학장 등에 대한 각 대담을 거치고, 소외 은 및 학부모들이 제시하는 원고의 학습활동자료(약속장 및 토론결과 메모용지 등) 및 배면 칠판 게시물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당원의 판단

가. 명예훼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영은 취재대상인 원고나 학부모, 교장 등의 동의 아래 녹화, 녹음된 내용을 피고측이 취사하여 하게 된 것으로 대상자들에 관한 사실과 의견진술이 주종이 되고 있으나 방영 도입부의 손석희 앵커나 피고 엄의 발언내용, 방영 끝부분의 피고 엄의 타인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한 원고의 평가 등을 피고측이 취사한 주된 내용과 비교, 종합하여 볼 때 결론적으로 원고의 교육활동에 관하여 원고가 특정의 목적하에 문익환 목사의 방북 문제, 남북음악회 개최문제, 근로자들의 대모관계 등을 국민학생들에게 교육시킴으로써 그로 인하여 위 신방학국민학교에 파문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위와 같은 원고의 교육내용으로 보아 원고의 교사로서의 자질 및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등의 취지로 귀결되고 그와 같은 이 사건 방영이 수많은 시청자에게 공표됨으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볼 것이다.

(원고는 그 이외에 이 사건 보도로 인하여 원고의 성명권, 초상권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법률상 성명권, 초상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privacy)에 관한 것으로서

본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할 경우 성명권 또는 초상권의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나, 사전에 본인으로부터 사용의 용도나 목적 등에 관하여 동의를 얻어 그 범위내에서 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명권 또는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앞서 본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엄 ○의 취재 요구에 따라 동 대담내용이 방송으로 방영될 것을 예상하고 위 피고의 대담에 응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와의 대담장면을 방영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원고의 성명권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귀책사유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진실한 사실의 보도

언론출판등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 있어서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국민의 관심사를 사실로 보도하고 또 거기에 공정한 논평을 가함으로써 건전한 여론조성을 주된 사명으로 하는 언론을 통한 표현의 자유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으나, 한편으로 우리 헌법이 역시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포함되는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 역시 표현의 자유에 못지 않게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헌법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기본권들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터이다.

따라서 같은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보호라는 두개의 법익이 상충되는 경우에 어떻게 이를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경우와 사안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실의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 표현활동이 비록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할 것인 바, 여기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비추어 동 보도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한편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위하여 그 조사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자료 또는 근거에 고도의 확실성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특히 공적 인물(Public figure)의 경우 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에 따라 동인의 어떠한 사회적 활동이 공공의 이해와 주요 관심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론기관이 여론의 올바른 형성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보도기관을 위촉시켜 민주정치의 지주가 되는 보도의 자유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3) 평론의 자유

한편,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명으로 이루어진 즉 평가를 포함한 보도인 평론이나 해설은 공공적 사항에 관한 공정한 평론인 한 그 평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당할 필요는 없고 주관적으로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 즉, 그것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당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평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의견인지, 사회의 다수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또한 이로써 피평론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기관이 가지고 있는 평론자유 범주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4) 위법성의 조각

(가) 진실한 사실의 보도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방송에 보도된 대로 원고가 국민학교 학년 담임을 맡아 교육에 임하면서 문 목사의 방북 문제, 지하철노조의 파업 사태, 남북음악회 개최 여부 기타 대통령을 토론의 주제로 각 조별로 토론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학급의 배면 칠판에 위와 같은 학생의 작문 및 신문 기사 등을 부착·게시하였으며, 「헤어져 살아온 ○년○월○일」의 연호를 사용하였으며, 특별활동조의 명칭을 학생들 의견대로라고 하여 위와 같이 말썽천재조등과 같이 보통 찾아보기 힘든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기타 원고의 위와 같은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원고의 교육활동에 비판적인 일부 학부모들이 연명의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학생들의 학습발달 정도에 합치되지 아니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담임이 교체되었고, 원고의 교육활동에 찬동하는 전 근무지의 학부모들이 신방학국민학교에 집단적으로 몰려와 항의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위 신방학국민학교에는 일련의 파문이

생겼던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보도를 위한 취재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피고들이 고의로 원고에 대한 교육활동을 비난하고자 편파적으로 선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보도 프로그램에서 일정한 시간의 제한 아래 고도의 함축성과 간결성을 기하여야 할 호제를 선택하여야 함을 감안한다면 비록 이 사건 보도의 제목으로 『천방지축조의 담임』을 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학급의 특별활동조 명칭에서 따온 것으로서 이로써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록 「아침이슬」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 등의 노래가 문공부의 심의를 얻어 음반으로 등록되어 있는 노래라 하더라도 그 노래가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정황적 분위기등을 통하여 그것에 어떠한 의미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국민학교 교육의 소재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이른바 운동권에서 흔히 불리는 노래」로 표현하였다 하여 이를 진실한 보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며, 그 외에 원고의 위와 같은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의 보도가 비록 원고의 입장과 교육활동이 원고가 의도한 바와는 달리 어떠한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이를 평가하여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기관의 평론의 자유 범주 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교육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국민학교 교육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목적으로 모든 국민이 만 6세가 되면 6년동안 의무적으로 받게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학교 학생은 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사고나 정서, 사물에 대한 이해가 미숙하여 그의 교육은 교육기관 뿐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연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는 바 피고들이 한 이 사건 방영의 전제가 된 원고의 국민학교 교사로서의 학습활동은 그 자체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가 국민학생을 상대로 교육한 문목사의 방북 문제 및 지하철노조의 파업 사태 등은 당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가 큰 사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를 국민학교 학년 학생의 교육내용으로 한 것은 그 공공성의 정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심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원고의 교육활동에 관한 보도가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방송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등의 이 사건 방영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방송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사실보도와 논평은 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을 위하여 보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의 입장과 교육활동이 원고가 의도한 바와는 달리 보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면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2. 20.

□

재판장 판사 윤 여 현

판사 전 오 영

판사 오 종 윤

녹화된 강의 프로그램 내용을 임의로 삭제
수정 방송하여 중민이론가인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告知放送을 하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2. 5. 14.자 판결(90가합1404)

서울고등법원 1994. 9. 27.자 판결(92나35846)

事實概要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1994. 9. 27. 서울대학교 한 교수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죄광고방송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 한국방송공사에 「본 방송사는 한 교수의 강의 프로그램 녹화방송시 20분간의 내용을 삭제

하여 중민이론가로서의 한 교수의 강연내용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고지방송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0분간 방송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그 녹화내용대로 방송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삭제 수정 방송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계약을 침해함과 동시에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을 손해를 전보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강좌를 녹화한 후 그 내용의 일부를 삭제·편집하는 것은 방송운영 주체의 고유한 권리인 편성권에 속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판결했다.

원고는 1989. 10. 14.에 피고인 KBS-3TV와 『KBS 21세기 강좌』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본 서기 2000년대의 우리나라 미래상에 대한 60분짜리 강연을 하기로 계약하고 10. 24. 60분동안 「중민화의 길」이란 제목으로 「중민」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대적이고 진취적인 집단들의 성장과정, 이들의 성격 및 지향을 분석하고 이들이 계속 전진하는데 부딪치는 문제 또는 장애 요소들에 관한 강연 내용을 녹화했다.

그러나 KBS-3TV는 1989. 10. 29자 방송에서 위 녹화물 중 20분을 일방적으로 삭제 편집하여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원고)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방송한 것은 명백한 전횡이자 권리침해이며 이로인해 강의흐름의 중단, 논리의 비약, 내용의 왜곡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며, 원래 녹화된 내용을 재방송해달라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했다(89서울중재73).

중재결과 피신청인이 편집 이전의 녹화테이프는 보관이 되어 있지 않아 재방송이 불가능하며, 편성권은 방송국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과 방송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불성립되자,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사죄광고방송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피고측에 강좌 내용을 여러 부분 삭제해 모호한 형태로 시청자들에게 방송, 원고의 〈中民 이론가〉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20분간의 강의 내용의 삭제로 말미암아 중민이론가로서의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하라고 판결하자 피고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0가합1404 사죄광고

원 고 : 한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 성 철

피 고 : 한국방송공사(韓國放送公社)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서 기 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휴 섭, 오 성 환

변론종결 : 1992. 4. 9.

주 문 : 1. 피고는 피고 제2텔레비전 일요일 오후 7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도입부에 별지 제1목록 1기재와 같은 내용을 같은 목록 2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방송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케이.비.에스(KBS) 텔레비전 채널 중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도입부에 별지 제2목록 1기재와 같은 내용을 같은 목록 2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방송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사죄광고를 구하는 것이어서 피고공사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공사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안을 피고공사의 텔레비전에 방송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지 피고공사에 대하여 그의 양심에 반하여 원고에게 동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사과를 구하는 것이 아님이 청구취지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및 피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이고, 피고공사는 이 사건 당시 제1, 2, 3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을 통한 국내외에 대한 방송실시, 방송문화보급 및 이에 수반된 사업을 하는 언론기관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1호증의 7(중재조서), 증인 심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강제1호증의 4(언론중재신청서), 5(케이.비.에스 제3텔레비전 왜곡방송에 대한 중재의뢰), 6(내용증명), 8(강의초록), 강제2호증의 2(비디오테이프 녹취록), 강제3호

중(삭제되기 전 강의서),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강제1호증(한국방송학회 정기 포럼 발표논문)의 각 기재(다만 강제1호증의 7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사는 1989. 가을 텔레비전 프로그램 개편 당시 서기 2000년에 펼쳐질 우리나라 사회 각 분야의 미래상을 조명하는 교양프로그램으로서 「케이.비.에스 21세기 강좌」를 신설하여 같은 해 10.경부터 피고공사 제3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매주 일요일 오후 7:00부터 8:00까지 1시간씩 방송하기로 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공사는 그 일환으로 피고공사 교양국 제작3부장이자 위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인 소와 이 를 통하여 같은 달 14. 1980년 이후 대두되고 있는 사회변혁론과 관련하여 전진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신중산층, 근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층, 그리고 청년학생세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른바 「중민이론」을 주창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회학적 측면에서 본 서기 2000년대의 우리나라 미래상에 대한 60분짜리 강연을 하기로 하는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같은 달 24. 피고공사에서 약 60분 동안 「중민화의 길」이란 제목으로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녹화강연을 하였는데 피고공사는 같은 달 29. 오후 7:00부터 피고공사 제3텔레비전에 원고의 위 강연중 20분 분량에 해당하는 별지 제4목록 기재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만을 40분에 걸쳐 방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강제1호증의 7, 9(각 중재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

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이 사건 강연에 대하여 저작권권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공사는 21세기를 맞는 우리 사회에서의 미래의 주역은 「중민」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그 개념 및 중민화의 길의 장애와 그 극복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원고의 강연 중 그 중심내용이라고 할 오늘날의 관료적 권위체제의 특징과 한계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주역으로서의 「중민」의 등장, 필요성 부분(삭제 1, 2부분), 중민이 진보성과 참신성을 가질 수 있는 전제로서의 청년학생 세대의 민중성 부분(삭제3 부분), 중산층과 중민의 개념차이와 중민화의 길의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법 부분(삭제4 부분), 중민의 미래과제로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민주주의를 통합하고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중심화의 이념축의 확립 부분(삭제5 부분), 중민화의 길 이외의 대안은 없다는 결론부분(삭제6 부분) 등을 일관성 없이 강연 여러 부분에 걸쳐 삭제하여 원고의 강연내용을 동일성이 상실된 채 모호한 형태

로 시청자들에게 방영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방영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중민이론가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 위 「케이.비.에스 21세기 강좌」는 그 방송시간이 60분으로 짜여 있으나 그 속에 순수한 원고의 강연내용 외에 5분 내지 6분 정도가 소요되는 스테이션 브레이크(Station Break,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방송주체를 알리는 것), 스포트(Spot, 막간을 이용한 짧은 내용의 고지방송), 다음 방송 예고, 프로그램 전후의 타이틀 백(Title Back)등이 포함되어 결국 순수한 원고의 이 사건 강연 방영시간은 54분 정도로 제한될 수 밖에 없었는데 원고의 위 강연은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분량이어서 부득이 그중 일부내용을 빼고 편집한 것일 뿐 아니라, (나) 원고는 위 강연에서 관료적 권위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전문억압집단이 있고 그 예로 군, 안기부, 정보기관을 거론하는 한편 새로운 혁신정당의 태동이 바람직하고 기대된다는 등 특정집단을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견해를 밝혀 이를 그대로 방영하는 경우 피고공사가 방송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지 않거나 특정한 집단 또는 정당을 옹호하거나 비판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그러한 부분을 삭제한 것이며, (다) 원고의 이 사건 강좌를 녹화한 후 이를 편성함에 있어 그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방송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공사의 편성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삭제는 정당한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이하 순차로 살핀다.

먼저 위 (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이 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60분 분량으로 편성된 이 사건 강좌의 순수한 방영시간이 스테이션 브레이크 방송등으로 인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54 내지 55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스테이션 브레이크 방송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강좌의 순수한 방영시간이 피고 주장과 같이 54 내지 55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 당시나 이 사건 강좌 녹화시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고 이 사건 강좌 내용을 54 내지 55분 분량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그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고지도 없이 원고의 위 강연을 60분에 걸쳐 녹화한 후 시간상의 이유로 원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강좌내용을 삭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가)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강연은 방송프로그램의 기능에 따른 분류상 교양프로그램에 해당하므로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

다」는 방송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방송에 의한 보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방송은 특정한 정당, 집단, 이익, 신념, 또는 사상을 옹호할 수 없다」는 규정은 방송사가 그 자신의 의견으로 보도 내지 논평을 통하여 특정 정당, 집단 등을 옹호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외부출연자가 강연을 하면서 헌법 또는 기타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집단등을 지지,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원고의 위 강연 중 삭제된 부분이 헌법등에 위반하여 특정한 집단이나 주의를 지지 또는 비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더욱이 앞서 본 강제1호증의 4, 8 강제2호증의 2, 강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강연 중 관료적 권위주의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개관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국한하여 설명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의 한 유형으로 산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사회에서 등장하는 일반적인 관료적 권위주의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어서 특정집단을 비판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나)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끝으로 위 (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방송법 제3조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는 보장되고, 누구도 방송순서의 편성, 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국가권력, 특정집단으로부터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국이 방송사항의 종류, 내용, 분량 및 배열을 결정하는 권한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케이.비.에스 21세기 강좌」라는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이를 매주 일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각 분야별로 주제를 정하여 원고를 포함한 외부강사들을 출연시켜 그들의 강연을 방영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피고공사의 편성권에 해당하여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공사가 위 방영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학적 측면에서 본 2000년대의 한국」이라는 강연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전망을 강연을 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이에 원고가 피고공사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강연의 내용을 구성하여 녹화강연한 이상 피고공사의 편성권은 이미 행사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녹화강연의 내용, 배열을 변경할 수 없고 불가피한 상황이 일어나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원고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화질이 나쁜 부분을 제거하거나 배경음악, 색상 등을 바꾸는 정도의 편성권한만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공사가 원고의 위 강연내용을 3분의 1 정도 삭제하여 동일성을 침해하여 방송한 것은 편성권의 범위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그밖에 피고공사는 이 사건 강좌를 녹화한 후 이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 녹화

내용중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방송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항변하나 이 법원이 믿지 아니는 갑제1호증의 7, 9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명예회복의 방법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공사가 위와 같이 원고의 위 강연을 20분 삭제한 채 방영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적당한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강좌내용의 일부 삭제의 경위 및 정도, 원고의 명예훼손의 정도, 원고 및 피고공사의 사회적 지위, 방송된 요일과 시각 및 이 사건 방송 후 피고공사 제3텔레비전 채널이 교육개발원의 교육방송으로 전환되고 제1 및 제2텔레비전 채널만 보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공사 제2텔레비전 일요일 오후 7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도입부에 별지 제1목록 1기재와 같은 내용을 같은 목록 2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방송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5. 14.

재판장 판사 송 기 홍
 판사 정 호 건
 판사 여 훈 구

제1목록

1. 방송의 내용

본 방송국이 1989. 10. 29. 19 : 00 「21세기 강좌」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서울대학교 한 교수의 「중민화의 길」 강의는 60분 내용으로 녹화되었으나 지나친 편집으로 20분간의 강의내용이 삭제된 채 40분 내용만 실제로 방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방송국은 법원으로부터 「위 20분간의 강의내용의 삭제로 말미암아 한 교수가 21세기의 주역으로 등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민의 개념, 역할 등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여 중민이론가으로서의 한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 방송방식

위 1항 기재 위 두 문단을 각 독립적인 프레임으로 하되 매 프레임을 30초간 방송, 1회 모두 1분씩 연속하여 2주에 걸쳐 총 2회 방영한다.

제2목록

1. 원고가 구하는 방송의 내용

본 방송국이 1989년 10월 29일 오후 7시 「21세기 강좌」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서울대 한 교수의 「중민화의 길」 강의는 60분 내용으로 녹화되었으나 지나친 편집으로 20분간의 강의내용은 삭제하고 40분 내용만 실제로 방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방송국은 법원으로부터 「위 20분간의 강의내용의 삭제 때문에 21세기를 향한 중민의 역할등 핵심 내용과 강의의 결론부분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여 중민이론 자체가 시청자들에게 모호하고 왜곡된 형태로 소개되었고 그 결과로서 중민이론가로서의 한상진 교수의 사회적 명성을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원고가 구하는 방송방식

위 두 문단을 각 독립적인 프레임으로 하되 매 프레임을 45초간 방송, 1회 모두 1분 30초의 방송을 연속하여 5주에 걸쳐 총 5회 실시한다.

제3목록(원고의 원래 강연내용 요지)

1. 서론

21세기를 앞둔 현재 선진국으로의 진입등을 이루기 위하여 종래의 정부지도력에 의한 사회조직에서 새로운 민주적 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2. 21세기에 접근하는 방법

-해방 이래 우리나라는 국가가 중심이 되었는데 이를 관료적 권위주의로 표현할 수 있으며(관료적 권위주의의 일반적 특징을 지적하고-삭제 1), 우리나라는 그중 부정적 측면이 많지만 경제가 성장, 근대화한 성공적인 관료적 권위주의에 해당한다고 평함.

-성공한 관료주의의 국가들은 산업화가 어느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기존의 강압적 정치사회제도로는 더 이상의 발전이 정체되는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고(우리나라도 사회의 체질개선 내지 체제변혁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삭제 2), 미래사회의 주역을 둘러싼 경쟁모델로서 기존에 주창되는 부르조아와 기층민중이라는 집단과 구별되는 이른바 중민이라는 대안을 제시.

3. 21세기 주체세력의 분석

원고가 21세기 주체세력이라 주장하는 중민의 개념에 포섭되는 계층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구중간계급과는 다른 광의의 화이트칼라 계층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신중간층, 노동자계급과는 다른 핵심공업에 종사하는 고학력의 진취적인 근대적 노동자, 청년학생세대들인데 이들의 고학력화 및 수적인 증가를 통계자료에 의하여 논증하고 (학생청년세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가하고-삭제 3), 위 각 집단을 중민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함.

4. 중민의 성격 및 21세기 전망(원고의 강의초안에는 4, 5, 6장으로 나누어져 있음)

-중민의 개념은 기층민중만을 의미하는 민중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

(-기존의 계급분류에 의한 「중산층」과 중민의 개념상의 차이 및 중민의 역사주체화를 막는 장애와 그 극복방법을 주장-삭제 4)

(-미래의 중심화의 이념층의 기반에 대하여 설명-삭제 5)

5. 결론(원고의 강의초안에는 7장으로 되어 있음)

역사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실천적인 능력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면서(현시점에서 중민화의 길이 최선의 대안임을 강조 삭제6).

제4목록(원고의 강연내용 중 삭제된 부분)

제3목록기재내용 중

(삭제1)

관료적 권위주의는 (1) 지지기반이 상류층이고, (2) 군, 정보기관 등 억압수단이 권력의 핵심이며, (3) 민중이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4) 권력의 정당성이 취약하며, (5) 경제적 분

배구조가 악화하고, (6) 국민경제의 탈민족화, (7) 사회문제의 탈정치화 등의 특징이 있다.

(삭제 2)

우리나라도 지배층의 신뢰가 하락하여 미래사회의 주역에 대하여 부르조아 세력, 기층 민중이라는 견해 등이 있으나 이와 다른「중민」이라는 대안을 제시

(삭제 3)

청년학생세대는 고유한 민중성으로 독특한 민중문화를 형성하면서 사회변혁의 전위로서 활동하여 1987. 6월 항쟁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기성사회에 진입하여 우리사회의 신 중산층에 민중성을 제공하여 미래의 핵심적 변수를 차지하고 있다.

(삭제 4)

21세기 전망에서 기존의 중산층은 21세기에는 권력연합에 포섭되는 중산층과 민중연합에 포섭되는 중산층으로 분화되는데 그 중 변화를 요구하며 젊고 근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민중연합에 포섭되는 중산층인 중민이 역사의 주연이라고 설명하고 우리사회에 있어 이들 중민의 전진을 막는 장애요소는 (1) 관료적 권위주의 체질의 국가기구, 군대의 역할 등 구시대의 유산, (2) 상류 특권층의 기득권 집착, (3) 정당의 지역화, 사당화 등 왜곡된 정당구조등이고 그 극복방법으로는 (1) 중민 구성 집단간의 연대 확보, (2) 기층민중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계, (3) 새로운 정치문화, 정당구조의 확립 등이라고 주장

(삭제 5)

중민은 민주주의 기반에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통합하고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를 지켜야 하는 중심화의 이념축의 기반을 확립해야한다고 주장

(삭제 6)

중민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득권 세력이 양보하지 않고 민중의 저항을 억압하는 파시즘체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

2審 判決文

사 건 : 92나35846 사죄광고

원고, 피항소인 : 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용 철

복대리인 변호사 임 동 진, 하 민 호, 박 익 환

피고, 항소인 : 한국방송공사

대표자 사장 홍 두 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휴 섭

변론종결 : 1994. 7. 5.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2. 5. 14. 선고 90가합 1404 판결

주 문 :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 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가 관리하는 제2텔레비전의 일요일 오후 10시 내지 11시 사이의 스테이션 브레이크에 다음 인용부 안에 기재된 내용을 구술로 방송하되, 그중 2개의 문단을 각 독립적인 프레임으로 하고 매 프레임을 각 30초간으로 하여 1회 방송하라.

「본 방송국이 1989년 10월 29일 오후 7시 <21세기 강좌>에서 방송한 서울대학교 한 교수의 <중민화의 길>이라는 강의프로그램은 원래 60분간 방송할 예정으로 녹화되었으나 지나친 편집으로 20분간의 강의내용이 삭제된 채 40분 내용만 실제로 방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방송사는 법원으로부터 위 20분간의 강의내용의 삭제로 말미암아 한 교수의 중민이론 중 21세기의 주역으로 등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민의 개념, 역할 등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게 되어 위 강연내용에 대한 한 교수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KBS 텔레비전 채널 중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도입부에 별지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방송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1. 사실관계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1호증의 6(내용증명),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강제1호증의 7, 9(각 중재조서), 원심 증인 의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강제1호증의 8(강의초록), 강제2호증의 1(녹화테이프), 같은 호증의 2(녹취서)의 기재와 위 증인과

증인 및 당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 피고간의 방송출연계약

원고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인데, 1980년 이후 대두되고 있는 사회변혁론과 관련하여 전진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신중산층, 근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층, 그리고 청년학생세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른바, 「중민이론」을 주창하여 왔다.

피고공사는 한국방송공사법(1972. 12. 30. 법률 제2418호)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자 공익법인으로서 국내외의 방송을 실시하고 방송문화의 보급과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 사회정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옹호, 교육혁신과 문화의 창달, 국민체육의 진흥 및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을 실시하는 방송법인으로서 텔레비전 방송은 교양정보채널의 제1텔레비전, 가족오락채널의 제2텔레비전, 교육채널의 제3텔레비전으로 구분 방송하여 왔는데, 제3텔레비전의 채널은 1990. 12. 27. 교육부 산하 교육개발원에 이관되었다.

피고공사는 1989년 가을 텔레비전 프로그램 개편에 즈음하여 제3텔레비전의 교양프로그램으로서 서기 2000년에 펼쳐질 우리나라 사회 각 분야의 미래상을 조명하는 「KBS 21세기 강좌」를 신설하여 같은 해 10. 경부터 피고공사 제3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매주 일요일 오후 7:00부터 8:00까지 1시간씩 방송하기로 하였다. 위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사람씩 출연하여 그 전공분야의 시각에서 강좌형식으로 진행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이었다.

피고공사는 그 일환으로 같은 해 10. 14. 피고공사 교양국 제작3부장이자 위 프로그램의 프로듀서인 소외 이 를 통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사회적 측면에서 본 서기 2000년대의 우리나라 미래상에 대한 60분짜리 강연을 하기로 하는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의 강연을 녹화제작하여 10. 29. 60분에 걸쳐 방송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강좌내용

그에 따라 원고는 10. 24. 피고공사에서 약 63분 동안 「중민화의 길」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의 강연을 녹화하였다.

(1) 서론

21세기를 앞둔 현재 선진국으로의 진입등을 이루기 위하여 종래의 정부지도력에 의한

사회조직에서 새로운 민주적 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2) 21세기에 접근하는 방법

해방이래 우리나라는 국가가 중심이 되었는데 이를 관료적 권위주의로 표현할 수 있으며(관료적 권위주의의 일반적 특징을 지적하고-삭제 1), 우리나라는 그중 부정적 측면이 많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근대화한 성공적인 관료적 권위주의에 해당한다. 성공한 관료주의의 국가들은 산업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기존의 강압적 정치 사회체제로는 더 이상의 발전이 정제되는 한계상황에 이르게 되고(우리나라도 사회의 체질개선 내지 체제 변혁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삭제 2), 미래사회의 주역을 둘러싼 경쟁모델로서 과거에 이미 주창되어 온 부르조아와 기층민중이라는 집단과 구별되는 이른바 중민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3) 21세기 주체세력의 분석

원고가 21세기 주체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중민의 개념에 포섭되는 계층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구 중간계급과는 다른 광의의 화이트칼라 계층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신 중간층, 노동자계급과는 다른 핵심공업에 종사하는 고학력의 진취적인 근대적 노동자, 청년학생세대인데 이들의 고학력화 및 숫적인 증가를 통계자료에 의하여 논증하고(학생청년세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삭제 3), 위 각 집단을 중민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한다.

(4) 중민의 성격 및 21세기 전망(원고의 강의초안에는 4, 5, 6장으로 나누어져 있음)

중민의 개념은 기층 민중만을 의미하는 민중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계급분류에 의한 「중산층」과 중민의 개념상의 차이 및 중민의 역사주체화를 막는 장애와 그 극복방법을 주장-삭제 4)

(미래의 중심화의 이념축의 기반에 대하여 설명-삭제 5)

(5) 결론(원고의 강의초안에는 7장으로 되어있음)

역사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실천적인 능력에 의하여 만들어지는데 (현시점에서 중민화의 길이 최선의 대안임을 강조-삭제 6)

다.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피고의 수정 및 방송

피고공사는 1989. 10. 29. 오후 7:00부터 원고의 위 강연내용을 제3텔레비전에 방송함에 있어서 위 인정의 녹화내용 중 23분의 분량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40분에 걸쳐 방송하였다.

(삭제 1)

관료적 권위주의는 ① 지지기반이 상류층이고, ② 군, 정보기관 등 억압수단이 권력의

핵심이며, ③ 민중이 정치적으로 배제되고, ④ 권력의 정당성이 취약하며, ⑤ 경제적 분배 구조가 악화하고, ⑥ 국민경제의 탈민족화, ⑦ 사회문제의 탈정치화 등의 특징이 있다.

(삭제 2)

우리나라도 지배층의 신뢰가 하락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에 대하여 부르조아 세력, 기층 민중이라는 견해 등이 있으나 이와 다른 「중민」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삭제 3)

청년학생세대는 고유한 민중성으로 독특한 민중문화를 형성하면서 사회변혁의 전위로서 활동하여 1987. 6월 항쟁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기성 사회에 진입하여 우리 사회의 신 중산층에 민중성을 제공하여 미래의 핵심적 변수를 차지하고 있다.

(삭제 4)

21세기 전망에서 기존의 중산층은 21세기에는 권력연합에 포섭되는 중산층과 민중연합에 포섭되는 중산층으로 분화되는데, 그중 변화를 요구하며 젊고 근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민중연합에 포섭되는 중산층인 중민이 역사의 주인이다. 우리사회에 있어 이들 중민의 전진을 막는 장애요소는 ① 관료적 권위주의 체질의 국가기구, 군대의 역할 등 구시대의 유산, ② 상류 특권층의 기득권 집착, ③ 정당의 지역화, 사당화 등 왜곡된 정당구조 등이 고 그 극복방법으로는 ① 중민구성 집단간의 연대 확보, ② 기층민중의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계, ③ 새로운 정치문화, 정당구조의 확립 등이다.

(삭제 5)

중민은 민주주의 기본에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통합하고 통일을 위한 민족주의를 지켜야 하는 중심화의 이념축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삭제 6)

중민화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기득권 세력이 양보하지 않고 민중의 저항을 억압하는 파시즘체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원고가 연출하여 제작한 이 사건 강좌프로그램을 60분간 방송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의 강좌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과 결론 등을 자의적으로 삭제 방송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강의의 균형과 체계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강좌의 중요한 메시지가 희석되거나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원고가 연출한 이 사건 어문 저작물의 동일성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의 중

민이론 자체가 시청자들에게 본질적으로 모호하고 왜곡된 형태로 소개된 결과 논리의 비약과 핵심내용의 부재로 인해 중민이론가로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출연계약과 신의성실의 원칙

살피건대 원, 피고 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출연계약은 원고는 그의 정신적 저작 내용을 정리하여 연출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액의 출연료를 지급함과 동시에 그의 방송시설과 기술인력을 이용하여 방송물을 제작하고 그 제작물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채널을 통하여 방송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른바 유상쌍무계약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방송출연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일회적 급부로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가 요청되는 계약이고, 그러한 계약일수록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상호협력의무를 부담한다. 즉, 제작자인 피고공사로서는 제작하게 될 프로그램의 편성 의도와 제작목적 및 주제, 출연계약의 상대방이 제작출연에 기여하게 될 형태(인터뷰 또는 토론)와 내용, 생방송되는가 또는 녹화방송되는가의 여부, 녹화방송시에는 프로그램의 편집 여부와 삭제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정도,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의 순번, 비중, 주어질 질문의 내용, 범위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출연자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한 취급으로 기만당하였다고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며, 출연자인 원고로서도 녹화방송임을 예상하였고 녹화된 부분 중 적어도 기술적 조정이 필요하리란 것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측으로부터 방송내용에 관해 법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이 있어 방송에 부적합한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 수정편집에 적극 협력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이 사건 원고의 저작물은 피고의 요청으로 제작되었고 저작권 성립과정에서부터 피고측의 기여가 컸던 점 및 피고는 공공의 소유라고 생각되는 유한한 전파를 사용하는 공적 매체로서 법령상 그 편성과 제작에 있어서 다양성의 요청과 공정성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이 원고의 개인적인 학자로서의 소신을 피력한 저작물이고 원고가 사계의 전문가로서 학문적 권위를 향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공매체를 타고 국민에게 공표되는 경우 원고의 저작자로서의 개인적인 동일성 유지권이 완전히 관철될 것을 요구할 수는 없고, 매체를 관리하는 자의 협조 요청에 응하여야 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 피고의 이 사건 출연계약을 둘러싼 신의칙상의 의무위반정도는 원고에게 부여될 구제수단의 종류, 정도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다. 불완전이행 및 불법행위의 성립

제1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공사와의 방송출연계약에 따라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이 사건 강연물로서 녹화된 위 인정의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을 갖게 되었으며 저작권자로서 그 저작물의 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제1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60분간 방송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그 녹화내용대로 방송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일관성 없이 23분 분량의 내용을 임의로 삭제 수정하여 40분간 방송함으로써 원고와의 위 출연계약을 적극적으로 침해함과 동시에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갖는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고의에 의한 불완전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라. 명예훼손이 있었는가?

원고는 이미 여러 논문과 강의, 방송,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이른바 중민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발표하여 학계나 사회로부터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학문적 업적도 인정받아 왔는데, 원고의 강연내용 중 중민이론의 핵심 및 결론부분이 일방적으로 삭제됨으로써 강의의 흐름이 중단되고 논리의 비약이 심했으며 부분적으로는 원고의 의사가 왜곡되어 시청자에게 전달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학자적 권위와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저작내용을 일부 삭제 수정하여 방송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손상시켰다기 보다는 원고가 창도하여 꾸준히 연구 발표해온 이른바 중민이론의 이론적인 체계성과 동일성을 손상케 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자기의 이론에 대하여 갖는 신념과 확신을 훼손하여 결국 학자로서 또는 저술가로서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다소간의 손상이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

저작권법 제13조는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나(동조 제1항),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한, 이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바(동조 제2항 3호), 이 사건 제작된 프로그램의 성질,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피고의 위 삭제 변경행위가 부득이한 것이었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방송기술상 불가피한 제한이라는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KBS 21세기 강좌」는 그 방송시간이 60분으로 짜여 있었으나 그 속에는 순수한 원고의 강연내용 외에 5분 내지 6분 정도가 소요되는 스테이션 브레이크(Station Break,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방송주체를 알리는 것), 스폿(Spot, 막간을 이용한 짧은 내용의 고지방송), 다음 방송예고, 프로그램 전후의 타이틀 백(Title Back) 등이 포함되어 결국 순수한 원고의 이 사건 강좌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은 54분 정도로 제한될 수 밖에 없었는데, 원고의 위 강연은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분량이었어서 부득이 그 중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이의 일부 증언 이외에는 60분 분량으로 편성된 이 사건 강좌프로그램의 순수한 방송시간이 스테이션 브레이크 방송등으로 인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54 내지 55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실제 방송된 내용 중 스테이션 브레이크는 1분에 불과하였다), 가사 그와 같은 스테이션 브레이크 방송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강좌의 순수한 방송시간이 피고 주장과 같이 54 내지 55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 당시나 이 사건 강좌 녹화시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고 이 사건 강좌 내용을 54 내지 55분 분량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그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고지도 없이 원고의 위 강연을 63분에 걸쳐 녹화한 후 임의로 23분에 걸친 강좌내용을 삭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삭제 수정이 방송의 자유로서 편성권의 행사 범위에 속한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강좌를 녹화한 후 이를 편집함에 있어 그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방송운영의 주체인 피고가 고유한 권리로서 보유하는 편성권에 기한 것이며, 피고공사가 방송법 제3조에 따라 편성권의 행사로서 행한 위와 같은 삭제는 정당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방송법 제3조는 방송편성의 자유는 보장되고, 누구도 방송순서의 편성, 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른바 헌법상 언론자유조항에 근거한 방송의 자유 중 가장 핵심적인 편성의 자유를 법률로써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편성권

원래 헌법상 방송의 자유란 방송의 편성 및 운영 등 방송주체의 존립과 활동이 국가권력

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함을 의미하는데 그 주안점이 있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국가권력 이외에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 제세력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에서 방송의 자유는 방송의 설립 및 조직과 운영 편성 등 방송활동 일체에 관한 여러 국면에서 방송의 운영주체 및 그 종사원 등 관계자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 헌법상 국민의사 결정의 원리에 따라 다양성 원칙과 공정성 의무에 의해 제한되는 제도적 자유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체제 아래서 제도적 자유로 이해되는 방송의 자유 내지 편성권의 주체는 전파법상 허가를 받고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을 경영하는 방송법인(전파법 제4조, 방송법 제2조 제4호)이라 할 것이고, 방송법인이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을 위한 제 권한은 법령상 방송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통괄하는 방송법인의 기관이 담당한다고 할 것이다(이와 같이 편성권이란 헌법상 보장되는 방송의 자유의 한 가지 개념으로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방송등 언론에 대한 통제 경향에 대항하여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주로 언론인들에 의해 주창되어 온 정치적 항의적 개념으로 논의되게 되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편집권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논쟁으로 진전되어 언론계 또는 특정 언론기업의 내부에서 기업주와 기자그룹간의 논쟁을 유발하게 된 바 있었으나, 이는 이른바 방송의 내적 자유에 관한 문제로서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상술을 요하지 않는다).

(2)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저작권과 방송사의 편성권 간의 관계

이와 같이 피고공사가 방송법인으로서 편성권을 가지며 그것을 국가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편성권을 행사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내부적 계획을 세운 후 방송사의 소속원이 아닌 제3자와 출연계약을 맺게 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일방인 피고공사는 그 사법상의 출연계약에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작하고 방송할 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가 갖는 편성권이 제3자인 원고의 저작권을 임의로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주장은 주장자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법한 것이어서 삭제 수정이 정당하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집, 편성권은 방송사에 있을 뿐 아니라 방송법 제5조에 의하면 방송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

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하고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인데, 원고는 위 강연에서 ① 관료적 권위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전문억압집단이 있고 그 예로 군, 안기부, 정보기관을 거론하는 한편 ② 학생운동의 전위적 선도적 역할과 그 민중적 성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급진적 학생운동을 찬양 고무한 부분이 있었고, ③ 한반도의 통일정책에 관하여 남북한 정책을 비교 설명하면서 남한의 통일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비판한 부분이 있어 북한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었고, ④ 새로운 정당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당시 새로이 태동하고 있는 민중을 대변할 정당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는 요지 등이 들어 있어서 당시의 특정 혁신정당을 지지 선전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방송하는 경우 피고공사가 방송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 위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지 않거나 특정한 집단 또는 정당을 옹호하거나 비판한다는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었고, 공공이익에 반하게 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녹화내용을 일부 삭제편집하여 방송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 요청에 비추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매체의 관리자가 방송내용을 심사할 수 있는 여부와 정도는 그 위법사항이 범죄 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가의 여부 또는 단순한 편성상의 원칙규범을 위반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리고 그 제3자가 관여하게 되는 프로그램의 성질과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에 순차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매체관리자로서 피고의 지위

피고공사는 매체의 관리자인 방송법인으로서 방송내용을 심사하고 수정할 권한을 갖는다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우선 방송한 내용에 대하여 방송법인이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방송매체를 관리하는 방송법인은 그 운영 방송채널을 통하여 송출한 내용전반에 관하여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프로그램의 종류와 제작형태에 따라서 법적 책임의 귀속과 부담의 정도는 달라진다.

방송되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방송법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의 매체로서의 전파기능을 저해하고 방송을 통한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매체가 단지 타인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불과한 순수한 채널 내지 의견의 시장으로서만 기능하는 경우, 예컨대 국회의 회의나 기타 공개토론 등 공적 행사를 생중계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방송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수정한다거나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거기에서 표현된 제3자의 표현내용에 대하여 방송사에게 책임을 지우게 되는 경우란 생각할 수 없다.

방송사 소속 임, 직원의 표현내용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 이를 수정 삭제할 권한이 방송법인의 기관에게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다. 방송국의 경영자인 방송법인은 형사상의 처벌법규에 위반하는 표현내용을 방송하거나 그 방송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 실제상의 행위자와 함께 민, 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전파법 제77조, 제79조, 제80조, 제87조 및 방송법 제30조의 2, 제32조, 제45조 제1항 4호 참조), 이러한 법리의 당연한 귀결로서 방송법인은 편성과 방송을 행함에 있어서 방송 내용에 관하여 심사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사외의 제3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나 저명한 인사등이 스스로 출연하여 일정 주제에 관하여 개인적 소견을 진술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원칙상 제작자 또는 원진술자인 제3자에 귀속되고 매체의 관리자인 방송공사가 위 제3자의 표현행위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외부의 제3자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법인이 편집제작하여 방송한 진술내용이 예컨대 명예훼손, 음란 또는 내란선동 등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 경우에 이를 전파한 방송법인은 그것이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면책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도 방송법인은 그 방송내용으로 인하여 방송법인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사항을 심사하고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관리자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사건 원고가 연술한 강연내용에 관하여 보면 거기에 범죄가 될 내용이라든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니 이를 이유로 삭제 또는 수정할 수는 없었다 할 것이다(앞서 본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강좌내용 중 문제가 된 것은 한국의 정치적 장래의 전망과 관련하여 특정 계층 내지 계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을 뿐 그 자체가 어떠한 형벌법규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주장이 없다).

(3) 방송법상 편성규범의 법적 의의

다음 원고의 강연내용이 방송법상의 공정성 원칙등 편성규범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였다는 피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우선 방송법상 편성규범의 법적 성질 및 효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하고 특정한 정당, 집단, 이익, 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방송이 공공의 소유라고 생각되는 유한한 자원인 전파를 사용하여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불가결한 여론의 형성에 기여하

는 중대한 기능에 비추어 방송에 부과되는 헌법적인 요청을 법률로써 명문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정성의 원칙이란 방송법인이 방송할 사항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엄 존중이라는 헌법상의 기본적 합의를 토대로 한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구성원의 의견과 이익이 다양함을 전제로 하여 각계 각층의 관심사 중 논란되는 현안의 쟁점을 주제로 선택하고 그에 관련되는 모든 이해관계의 입장이 실제상의 중요성에 상응하도록 합당한 비중으로 다루어질 것을 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방송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이러한 원칙은 의견이 대립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을 편성 또는 제작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론형성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방송법 제4조 제2항 참조) 방송법인은 프로그램편성에 있어서 이렇게 논란되는 공적 쟁점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할 뿐 아니라 방송법인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에 관하여는 위에서 본 공정성 원칙에 따라 사회내의 찬반 입장 또는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실제상의 비중에 따라 의견이 표현되도록 프로그램을 형성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정성 요건을 충족하려면 다수의 견해가 동시에 주장되고 반박됨으로써 토론이 이루어지는 형식의 프로그램이 바람직하고, 반박과 토론이 있을 수 없는 개인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 개인주장 프로그램의 형식을 취하려면 여러 입장의 다양한 견해를 가진 다수 인사의 의견을 실제적 중요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또는 시리즈의 형태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다양성과 공정성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성 원칙등 방송법이 규정하는 여러가지 편성규범은 방송주체가 편성권을 행함에 있어서 헌법상 요청되는 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방송주체인 방송법인 및 그의 편성권 행사를 보조하는 소속 임, 직원은 편성을 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인 기준에 구속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러한 방송법인의 의무는 국민일반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로서 방송위원회 및 국회 등 감독기관의 감독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방송법상 편성과 제작에 있어서 일응의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는 추상적인 편성규범은 방송법인 및 그 소속 임, 직원을 수명자로 하여 명령된 규정일 뿐 헌법상 의견표현의 자유를 보호받는 원고 개인이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공사는 이러한 조항들을 내세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개인주장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정 삭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피고가 이러한 조항을 내세워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제3자의 표현내용을

검열하고 수정할 수 있다면 의견의 시장으로서 자유롭고 공개적인 토론에 의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방송의 공적 과업은 저해되고, 방송을 통한 정보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일실되고 말 것이다.

(4) 이 사건 원고 출연프로그램의 성격

피고가 제작한 원고의 이 사건 강연프로그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장래에 사회계층 중 그 중심세력의 소재와 그 역할에 관한 원고 개인으로서의 견해를 밝히는 프로그램이어서 이른바 개인적 관점의 프로그램이라 할 것인 바, 위에서 확인한 그 내용에 의하면 그 주제는 우리사회의 장래에 대한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가 기획한 위 21세기의 한국이라고 하는 시리즈 내에 위 원고의 주장에 반대되는 입장의 의견이 표현된 프로그램이 별도로 편성되었는가의 여부는 기록상 명백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가 일단 개인주장 프로그램의 형식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하고 원고와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계약을 맺은 이상, 그리고 사전에 또는 계약에 즈음하여 피고의 제작의도와 편집에 의한 수정 삭제권을 유보하지 않은 이상, 설사 피고공사가 편성권을 행사한 결과 제작된 원고의 강연내용이 논란되는 공적 쟁점 문제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편향된 주장을 담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종전 그의 주장과 학설내용에 비추어 방송의 중립성을 저해할 내용으로 판단된다면 애당초부터 편성을 하지 않든가, 아니면 원고의 주장내용을 반박 또는 대응하는 타 학자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시리즈내에 편성할 수 있을 뿐 주관적인 의견의 제시가 특징인 이 사건 원고의 개인 주장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피고가 방송법이 규정하는 편성원칙에 어긋나 이를 삭제하였다는 부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법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나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가 수정에 동의했다는 주장

피고공사는 이 사건 강좌를 녹화한 후 이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그 녹화내용 중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방송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며, 설사 원고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위 이 가 편집에 앞서 사전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문제점에 관하여 지적하고 편집에 대한 양해와 함께 공동으로 편집할 것을 2차례에 걸쳐 제의하였으나 원고는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응답하였는 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결국 삭제 편집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제1호증의 7, 9의 각 기재 및 증인 이 ○의 증언 이외에는 원고가 피고의 수정행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공사의 제작담당 소위 이 ○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녹화한 후 10. 27. 원고에게 전화로 일부 삭제 편집이 불가피함을 고하고 원고의 양해를 구했으나 원고는 이튿날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30분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위 이 ○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피고가 임의 수정할 때에는 그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가. 불완전이행과 불법행위의 효과

위에서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60분간 방송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그 녹화내용대로 방송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삭제 수정하여 40분간 방송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계약을 침해함과 동시에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갖는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고의에 의한 불완전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채무의 본지에 좇지 않은 불완전한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다시 완전한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음은 물론이고 그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금전으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원고는 이러한 구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피고가 관리하는 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부적법한 청구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의 이 사건청구가 사죄광고를 구하는 것이어서 피고공사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공사가 원고의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의 내용을 피고공사의 텔레비전에 방송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이지 피고공사에 대하여 그의 양심에 반하여 원고에게 동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주관적 의사표명으로 사과를 구하는 것이 아님이 청구취지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인격권 침해시의 구제수단

불법행위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금전배상의 원칙만이 인정될 뿐 이른바 원상회복청구권 내지 이른바 만족청구권은 명문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격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명예가 훼손된 경우 현행 민법(제764조)은 법원이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보거나, 지배적인 학설이 일반적 인격권에 대하여 배타적 지배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원은 피해자가 바라는 경우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이외에 원상의 회복을 위한 조치 또는 피해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발전하는 법질서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구제수단을 다양화하여 형평을 기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저작권법은 저작권 그밖의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동법 제91조 제1항),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동법 제95조).

라. 이 사건에서 적절한 원고의 구제수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원상회복이나 만족을 위한 조치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로 구하는 바에 대하여 원심은 2차례에 걸쳐 피고가 관리하는 제2텔레비전 채널을 통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각 1분간의 고지방송할 것을 명하고 있다. 이것은 원심이 원고에게 이른바 만족청구권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옳았다고 보이나, 그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음에 실시하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필요 이상의 만족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이 사건 방송출연계약의 이행을 둘러싼 원, 피고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신의칙위반의 정도, 이 사건 강좌내용의 일부 삭제의 경위 및 정도, 피고는 방송내용의 보존의무(방송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분쟁이 제기된 이 사건 녹화테이프의 편집 이전의 테이프를 말소 폐기한 사실,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일에서 중재부장은 피고공사로 하여금 재녹화하여 방송할 것을 권고하고 피고의 대리인도 이에 응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공사측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면서 재녹화의 제의를 거부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 삭제로 지성인으로서 감내키 어려운 수모를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금전배상을 구하지 아니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원고의 강연프로그램

이 방송된 요일과 시각 및 이 사건 방송 후 피고공사 제3텔레비전 채널이 교육개발원의 교육방송으로 전환되고 제1 및 제2텔레비전 채널만 보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 방송 당시 교육채널이었던 제3텔레비전의 시청률과 현행 제2텔레비전의 같은 시간대의 시청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공사는 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그의 만족을 위하여 피고공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2텔레비전 일요일 오후 10시 내지 11시 사이의 스테이션 브레이크에 주문기재와 같은 내용을 그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방송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당원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9. 29.

재판장 판사 박 용 상
판사 이 대 경
판사 박 종 훈

〈별지목록〉

1. 원고가 구하는 방송의 내용

본 방송국이 1989년 10월 29일 오후 7시 「21세기 강좌」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서울대 한 교수의 「중민화의 길」 강의는 60분 내용으로 녹화되었으나 지나친 편집으로 20분간의 강의내용은 삭제하고 40분 내용만 실제로 방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 방송국은 법원으로부터 「위 20분간의 강의내용의 삭제 때문에 21세기를 향한 중민의 역할등 핵심 내용과 강의의 결론부분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여 중민이론 자체가 시청자들에게 모호하고 왜곡된 형태로 소개되었고 그 결과로서 중민이론가로서의 한 교수의 사회적 명성을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원고가 구하는 방송방식

위 두 문단을 각 독립적인 프레임으로 하되 매 프레임을 45초간 방송, 1회 모두 1분 30초의 방송을 연속하여 5주에 걸쳐 총 5회 실시한다. □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우유 영양가 시험결과에 대해 허위사실의 반박광고를 게재, 원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

춘천지방법원 1991. 2. 26.자 판결(90고단108)

事實概要

춘천지방법원의 형사단독 지대운 판사는 1991. 2. 26. 우유품질을 둘러싼 신문광고와 관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파스퇴르유업 대표 피고인 (· 강원도 횡성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파스퇴르유업측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우유품질 분석결과 발표에 대해 중앙일간지에 실은 반박광고는 광고의 기법상 일반인이 보면 소비자보호원의 견해가 모두 거짓으로 판단할 우려가 높아 소비자보호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파스퇴르유업(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판 우유를 수거 살균방법에 따른 영양가 등에 관해 시험한 결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자 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989. 8. 29.자 세계일보 3면 하단에 마치 소비자보호원이 장난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광고를 게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判 決 文

사 건 : 90고단108 가. 환정보전법 위반

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다. 초지법 위반

- 라. 건축법 위반
- 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바. 업무방해

피 고 인 : 최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 대표이사

19 생()

주거 강원

본적 서울

검 사 : 이 중 환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건 공소사실 중 1989. 8. 23.자 서울신문 및 1989. 8. 25.자 동아일보에 게재한 광고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부분은 무죄.

이 유 :

범죄사실 : 피고인은,

1. 1988. 7월 조순 경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조업중인 위 파스퇴르유업(주) 내에 환경청장의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세척시설, 윤활유 교환도크, 이화학 실험실 등 배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조업을 하고,
2. 1989. 5월 중순 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 1331의 11 답 1,667평방미터 중 662평방미터와 같은 리 1331의 23 답 1,232평방미터 중 571평방미터 등 합계 1,233평방미터의 상대 농지를 주차장 용도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부 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하여 이를 전용하고,
3. 같은 날 위 같은 리 1331의 11, 같은 리 1331의 23 지상 위에 횡성군수에게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함석, 합판 등을 사용하여 건평 65.61평방미터의 공사용 가설건물 1동을 축조하고,
4. 같은 해 9. 16. 위 같은 리 1295 전 1,098평방미터 중 687평방미터, 같은 리 1296 전 1,289평방미터, 같은 리 1297 전 3,068평방미터 중 2815평방미터 등 합계 4,791평방미터의 상대 농지를 택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수산부 장관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하는 등 이를 전용하고,

5. 같은 날 위 같은 리 산 198의 10 목장용지 5,965평방미터 중 1,396평방미터의 초지를 택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의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지작업을 하여 이를 전용하고,

6. 같은 해 9. 18. 부터 같은 달 30. 까지 사이에 위 같은 리 1295, 같은 리 1296, 같은 리 1297 지상 위에 횡성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평 365.49평방미터와 전평 234평방미터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각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근 콘크리트로 기초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건축하고,

7. 같은 해 9. 30. 위 파스퇴르유업(주)에서 조업을 하며 배출시설인 세척설비에서 배출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폐수 약 2톤을 하수구에 유출시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 하지 아니하고,

8.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시판우유를 수거하여 우유의 살균방법에 따른 영양가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89. 8. 18.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험대상 우유 전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등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하자 평소 저온살균 방법으로 제조하는 파스퇴르유업(주)의 우유제품이 초고온 살균방법으로 제조하는 타사제품 우유제품에 비하여 영양가 면에서 우수하다는 홍보를 하여온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상치되는 위 검사결과 발표에 불만을 가지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동 회사 홍보담당자인 공소의 윤

을 통하여, 1989. 8. 29.자 중앙일간지인 세계일보 3면 하단에 「정부예산으로 움직이는 소비자보호원이 또다시 터무니 없는 장난으로 소비자를 우롱한다면」등 마치 소비자보호원이 장난으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후 18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9. 전항 기재와 같이 각종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전국 각지에 배부케 하여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시책의 연구 및 건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 품질, 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실시 등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1 내지 7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원주환경지청장, 횡성군수 작성의 각 고발장 및 고발사항 면적변경 통보, 폐수시험성적서 통보, 초지전용허가신청서 반려 공문 중 판시 1 내지 7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민 , 박 , 유 , 심 , 이 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 1 내지 7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조 의 판시 8, 9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1989. 8. 23.경 윤 으로부터 판시 광고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검사작성의 윤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8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

1. 환경보전법(법률 제3078호) 제66조 제1호, 제15조 제1항(판시 1 사실) 제16조의 2 제1항(판시 7 사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조 제1항(판시 2, 4 사실)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1항(판시 제5 사실) 건축법 제56조 제1호, 제47조 제2항(판시 3 사실) 제55조 제2호, 제5조 제1항(판시 6 사실)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판시 8 사실) 제314조(판시 9 사실) (판시 3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죄 중 범죄일람표 제1의 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판시 제3죄의 벌금형을 병과)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판시 제8 사실은 진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따라서 판시 8, 9 사실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의 외부적 명예이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것이 학술잡지라든가 전문잡지에 실리는 경우와 일반대중이 보는 일간지에 「광고」로 실리는 경우는 위 조문상의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이 전과 같이 어떤 사람의 발표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그 발표 내용에는 들어있지 아니한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과장, 그 내용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임의로 추측하는 것 등의 내용이, 전문지에 실린 경우에는 그것이 자신의 이론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이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허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전체 글의 내용과의 관계에서 허위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것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할 수 있는 반면, 이러한 내용이 일간지에 「광고」로 실리면서 이러한 자의에 의한 삽입, 과장, 추측 등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그 부분만을 큰 글로 실어 강조하는 경우에는 광고의 특성(일반인은 강조된 부분만으로부터 대부분의 정보를 얻거나, 강조된 부분에 비추어 다른 부분을 이해하려 하는 것이 통례이다) 또는 광고주가 그러한 광고로부터 얻으려는 이익과 책임의 비례의 원칙(광고주는 사실상 그 강조부분으로 광고의 효과를 보려고 하면서도 책임은 강조부분만이 아닌 전체 글과의 관계에서만 지려고 한다면 이는 행위에 따른 책임의 원칙 및 형평에 맞지 않는다)을 고려하여 일반대중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 및 이 강조부분에 중점을 두어 전체 글을 해석하는 방법을 종합하여 그 허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건에 있어 설령 전체적으로 보아 광고의 내용에 일부 진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삽입, 과장, 추측 등으로 강조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소비자보호원의 발표내용을 구체적, 이론적 기초에 근거하여 반박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발표내용과는 관계가 없거나, 거리가 있는 임의의 과장, 추측, 삽입 등의 내용에 중점을 두어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 광고내용을 보면 소비자보호원의 견해는 모두 거짓 또는 사실의 왜곡이라고 밖에는 달리 판단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허위의 사실로 위 소비자보호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 이 건 공소사실 중 1989. 8. 23.자 서울신문 및 1989. 8. 25.자 동아일보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그런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의 광고문안의 내용인, 저온과 고온우유의 영양가치 별 차이 없다는 「해피망측」한 발표를 하였다는 부분 또는 소비자보호원 분석의 「허구성」이라는 부분만으로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1. 2. 26.

판사 지 대 윤

〈별지〉

(피고인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시판우유를 수거하여 우유의 살균방법에 따른 영양가등에 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89. 8. 18.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험대상 우유 전 제품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며 시험 항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영양가등 전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검사결과를 발표하자 평소 저온살균방법으로 제조하는 파스퇴류유업(주)의 우유제품이 초고온살균방법으로 제조하는 타사제품 우유제품에 비하여 영양가 면에서 우수하다는 홍보를 하여 온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 상처되는 위 검사결과발표에 불만을 가지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동 회사 홍보담당자인 공소의 윤을 통하여, 1989. 8. 23.자 서울신문 및 1989. 8. 25.자 동아일보에 소비자보호원이 허구적인 분석으로 저온과 고온우유의 영양가치 별 차이 없다는 해괴망측한 발표를 하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

〈범죄일람〉

순번	일자	신문명	내용
1	89. 8. 28.	동아일보 1면	소비자보호원이 사과도 삶아 먹어야 비타민 씨가 증가한다는 식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정부예산으로 움직이는 소비자보호원이 터무니없는 장난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동원의 엉터리 데이터 때문에 국민이 좋은 우유를 마실 기회를 놓친다는 내용
2	89. 8. 29.	세계일보 3면	
3	89. 8. 30.	조선일보 3면	
4	89. 9. 7.	한국일보 1면	
5	89. 8. 30.	조선일보 2면	소비자보호원 직원이 연습삼아 취미삼아 부정확하고 의미없는 데이터를 공표하여 사회보건문제와 연관시킴으로써 소비자를 현혹시켜 국민이 좋은 우유의 선택의 길을 잃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내용
6	89. 9. 1.	한국일보 3면	
7	89. 9. 5.	동아일보 3면	
8	89. 9. 8.	국민일보 3면	
9	89. 9. 1.	한국일보 2면	소비자보호원 직원이 과학술어조차도 자기 형편대로 해석, 사용하여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경제기획원 산하단체인 소비자보호원이 상부기관인 경제기획원이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하여 국민보건에 해를 줄 염려가 있다는 내용
10	89. 9. 5.	동아일보 2면	
11	89. 9. 8.	국민일보 2면	

〈범죄일람〉

12	89. 9. 6.	동아일보 1면	원유가 일반우유에 비하여 파스퇴르유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월등하게 좋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원 관계직원은 분석을 통하여 좋은 우유에 비타민 씨가 적고 나쁜 우유에 비타민 씨가 많다. 비타민 씨가 많은 우유를 저온처리 했을 경우에 비하여 비타민 씨가 적은 우유를 고온처리 했을 때 비타민 씨가 많다고 하였다는 내용
13	89. 9. 11.	경향신문 3면	
14	89. 9. 12.	조선일보 1면	
15	89. 9. 11.	경향신문 2면	민간단체가 아닌 경제기획원 산하단체인 소비자보호원의 직원이 우유와 요구르트를 혼돈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내용
16	89. 9. 13.	조선일보 3면	
17	89. 9. 13.	조선일보 2면	소비자보호원 직원이 우유성분에 관하여 장난같은 무기분석데이터를 내놓고 마치 이것을 우유의 생명인 칼슘, 단백질 등 영양과 관계되는 양 발표하였다는 내용
18	89. 9. 15.	동아일보 2면	소비자보호원이 엉터리 데이터를 과학의 이름을 빌려 악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경제기획원 산하단체이면서 이러한 사회악을 저지르는 것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등의 전화 및 충고가 있을 정도로 사회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

적시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5. 26.자 판결(91고단6158)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5. 25.자 판결(92노4099)

대법원 1993. 9. 24.자 판결(93도1732)

事實概要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만호 대법관, 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993년 9월 24일 피고인 한

국권투위원회 회장 이 과, 부회장 심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고소인인 조 , 유 씨는 한국권투위원회 회원으로서 위 위원회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이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직무집행가처분신청을 했고, 피고인들은 고소인들을 위 위원회에서 제명한 다음 고소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각 벌금 1백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자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 항소했고, 검사측에서도 죄명을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변경하여 항소했다. 2심에서도 피고인들에게 각 1백만원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허위사실적시 혐의에 해당하는 「고소인들이 2천만원을 갈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했다.

1審 判 決 文

사 건 : 91고단6158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 심

주 문 : 피고인들을 각 벌금 1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1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범죄사실 : 피고인 이 은 사단법인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같은 심 은 전 사단법인 한국권투위원회 사무담당 부회장으로서 세계권투협회 부회장인 바,

피고인들은 위 위원회 회원인 피해자 조 , 유 가 1990년 5월 30일 개최된 위 위원회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이 회장에 대하여 불신임안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

고 같은 해 12월 27일 피고인들을 상대로 회장,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자 동인들을 위 위원회에서 제명한 다음 이를 각 언론사에 홍보하기로 공모한 다음 동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1991년 1월 21일 14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삼정빌딩 5층 위 한국권투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심 이 「유 , 조 는 1990년 5월 30일 한국권투위원회 총회를 앞두고 이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등 갖은 협박을 하여 동인등으로부터 2천만원을 갈취하였으며 한국권투위원회 상벌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 전원이 이들의 제명에 동의하였고 검찰에 이를 고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위 상벌위원회에 제출한 공소외 의 3명의 진술서와 함께 동아일보사, 중앙일보사, 한국일보사, 조선일보사, 스포츠서울신문사, 스포츠조선신문사, 일간스포츠사 등 14개 언론기관 프로권투 담당기자들에게 모사전송기를 통해 송부하여서 1991년 1월 24일 동아일보 15면에 『끓을 대로 끓은 주먹세계, 이 회장 주변 금품수수 잦아, 유 씨등 금전갈취혐의』란 제하에 「한국권투위원회는 21일 유씨와 조 (본명)씨를 협박에 의한 금전갈취혐의로 제명하고 이튿날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했다. 한국권투위원회는 유, 조씨가 지난해 대의원 총회에 앞서 이 회장 사퇴주장을 펴며 대의원을 포섭하다 송모 씨등을 통해 대의원 총회에 회장 불신임안을 제출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 해 6월 1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는 취지의 기사가 1991년 1월 23일 스포츠서울에 『한국권투위원회 권투계 분란조장 유 , 조 씨 제명』이란 제하의 「한국권투위원회는 위 2사람이 지난해 5월 30일 대의원 총회를 앞두고 이 회장을 불신임, 성토했다는 등 협박을 일삼아왔고 2천만원을 갈취했다는 이유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는 취지의 기사가 각 게재되게 하여서 출판물에 의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동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 1. 증인 유 , 조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유 , 조 에 대한 진술조서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김재천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동아일보 사본(4백34쪽), 스포츠서울(4백36쪽), 상벌위원회 회의록 사본(4백59 내지 4백65쪽)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언론기관에 공표한 것은 한국권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언론기관에 알리기로 한 동 위원회 출입기자들과의 협약에 따라 비리와 비행을 행하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징계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밝혀야 하기 때문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등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이 규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5. 26.

판사 이 진 성

2審 判 決 文

사 건 : 92노4099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변경된 죄명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1. 이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주거 서울

본적 서울

2. 심 한국권투위원회 부회장

주거 서울

본적 전남

항 소 인 :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 이 용

변 호 인 : 변호사 나 채 규(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 5. 26. 선고, 91고단6158 판결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첫째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징계위원회회를 개최하여 고소인 유 , 조 (일명, 조)를 제명 결정한 것은 적법하게 선출된 한국권투위원회 집행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고소인들에 대하여 한국권투위원회 정관과 상벌규정에 따라 행한 적법한 업무집행행위로서 피고인들에게는 명예훼손의 범의나 위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둘째 피고인 이 은 한국권투위원회 회장으로서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 결정이 난 후에 피고인 심 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았을 뿐이고 언론사에 대한 징계내용 통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심 도 사전에 언론사에 통보를 직접 지시한 사실은 없고 다만 위 위원회 총무과장 고병일이 언론사에 징계내용을 통보한 후 올린 사후결재를 추진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집행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며, 그 제3점은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런데,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시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심판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그 적용법조도 함께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본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결국 변경 전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터잡은 원심판결은 위 각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입가 판단할 필요없이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본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본원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인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살피건대, 일견 기록에 의하면 한국권투위원회와 위 위원회 출입기자단 사이에 한국권투 위원회에서 결정된 국내, 국제 경기 및 각종 행사계획, 인사 등에 관하여 이를 통보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협약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어떤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국법질서 전체의 이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어느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위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없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함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사실은 고소인들이 피고인 이익순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함에 있는 바, 피고인들은 고소인들이 1990. 5. 30. 개최된 판시 한국권투위원회 총회를 앞두고 동 위원회 회장인 피고인 이 무능하므로 해임하여야 한다거나 총회에서 불신임안을 내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면서 은근히 금전을 요구하는 눈치를 보이므로 피고인 이 이를 무마하고 총회를 무사히 끝내기 위하여 공소의 을 통하여 금 20,000,000원을 고소인들측에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모사전송기로 언론사에 보낸 고소인들이 1990. 5. 30. 한국권투위원회 총회를 앞두고 피고인 이익순을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 20,000,000원을 갈취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고소인들이 피고인 으로부터 금 20,000,000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의 원심 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각 진술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일부 기재가 있는 바, 위 각 증거는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의 당심에서의 각 진술, 증인 의 당심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1990. 5. 30. 한국권투위원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고소인들은 동 위원회 회장인 피고인 이 이 무능하여 자격이 없으니 물러가야 하고 정기총회에서 그 비리를 폭로하여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고 다녔고, 이를 전해 들은 피고인 이 은 위 위원회 소속 통일프로모션 대표인 공소외 김 에게 고소인들의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시한 사실, 이에 1990. 5. 27. 경 고소인 유 를 접촉한 위 김 및 정례프로모션 대표 공소외 최 에게 위 고소인은 피고인 이 이 무능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자격이 없는 회장으로서 총회에서 회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고소인 유 가 1988. 5. 경 추진한 무주택 권투인을 위한 재개발구역내의 아파트 입주권 취득문제도 피고인 이 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하여 실패하여 동 고소인이 30,000,000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은근히 금전을 요구한 사실, 위 무주택 권투인을 위한 재개발구역내의 아파트 입주권 취득 문제는 재개발구역내의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소인 유가 피고인 이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무주택 권투인들 명의로 광명시 하안동 재개발구역내의 무허가 건물 15채를 매수하였다가 실제 거주자가 아니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주택공사의 방침에 따라 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이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것이었으나, 위 유 등의 불만사항을 전해들은 피고인 이은 총회에서 고소인들이 회장등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퇴진 운동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워 회장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고 회원들의 신임을 잃게 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김에게 위 유가 주장하는 손해 중 일부를 보상해주고 총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위 김과 최는 위 유에게 금 10,000,000원을 줄 터이니 총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위 유는 고소인 조와 협의하고 나서 이를 거절하였고, 그후 같은 달 28. 다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위 최는 총회 당일인 같은 달 30. 고소인 유에게 금 20,000,000원을 줄테니 총회를 원만히 치를 수 있도록 조용히 있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유는 이를 승낙하고 총회에서 유인물을 낭독하려는 계획 등을 포기하여 위 정기총회는 별다른 사고 없이 끝난 사실, 그후 위 최로부터 위와 같은 협상결과를 전해들은 위 김은 총회 이후인 같은 해 6. 2. 금 10,000,000원을 같은 달 4. 금 10,000,000원을 각 위 유에게 교부하여 합계 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소인들이 위 한구권투위원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무주택 권투인을 위한 아파트 입주권 취득사업으로 인한 손해 명목의 일정한 금원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총회장에서 피고인 이의 비리를 폭로하고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소란을 피울 듯한 태도를 보여 그와 같은 사태로 명예가 실추되고 신임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 이익순으로부터 그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위 손해금 중 일부 명목으로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이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 고소인들이 위 총회를 앞두고 피고인 이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등 협박을 하여 그로부터 금 20,000,000원을 갈취하였다고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5. 25.

재판장 판사 이 홍 복

판사 안 영 진

판사 서 정 결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3도1732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변경된 죄명 :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외 1인

상 고 인 : 검사, 피고인들

변 호 인 : 변호사 나 채 규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5.25. 선고, 92노4099 판결

주 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 중에는 동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할 수 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1993. 9. 24.

□

재판장 대법관 박 만 호

대법관 김 상 원

주 심 대법관 윤 영 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문기자에게 설명, 허위기사가 게재되도록 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1. 14.자 판결(91고단4554)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2. 2.자 판결(93노1025)

대법원 1994. 4. 12.자 판결(93도3535)

事實概要

대법원 제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994년 4월 12일 피고인 미술작가 이 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설명하여,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신문기자로 하여금 허위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피고는 작품전시 및 판매 일체를 미화랑을 통하여만 한다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미화랑의 전속계약작가로서 활동하던 중 다른 화랑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려다 미화랑측의 계약상 권리주장으로 개인전이 무산되자 이 사건 피해자인 미화랑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조선일보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설명하여 조선일보 1991년 8월 1일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보도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성기문 판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제6부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1審 判決文

사 건 : 91고단455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주거 서울

본적 경남

검 사 : 정 대 표

변 호 사 : 변호사 박 회 태, 홍 석 한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범죄사실 : 피고인은 미술작가인 바, 무명작가 시절인 1988. 7. 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미화랑 대표인 피해자 이 과 1993. 7. 30.까지 5년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작품활동을 후원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작품전시 및 판매 일체를 미화랑을 통하여만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4차례의 개인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중견작가로서 성장하게 되자 1990. 3.경 열린 동경아트엑스포 전시회에 피고인의 작품을 출품한 이후부터 위와 같은 전속계약에 불만을 품고 계약해지를 주장해 오던 중 1991. 7. 26.경부터 같은 해 8. 6.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현대화랑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려다 피해자의 위 전속계약상 권리주장으로 개인전이 무산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991. 7. 27. 14: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의 61 소재 조선일보 문화부에 찾아가, 사실은 동경아트엑스포에서 피고인의 작품이 약 8,300여만원에 판매되어 그후 함께 정산을 하였고, 전속 계약시 재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품을 편취한 바도 없고, 피고인이 타 화랑에서 개최하려는 전시회를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문사 문화부 기자인 공소의 김 에게 「1990. 3.경 동경아트엑스포에서 1억 5,000만원의 작품판매대금이 생겼으나 3,000만원을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대주기로 했던 재료

비를 처음 6개월 동안만 대주는 등 후원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품을 부당하게 편취했고, 다른 화랑에서 열릴 예정이던 피고인의 전시회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민사소송소장사본, 전속 계약서 사본 등의 보도자료를 교부하여 위 김 으로 하여금 1991. 8. 1.자 조선일보 11면에 위와 같은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여 그무렵 전국의 위 신문 독자들에게 보급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조선일보 신문기사 사본의 기재(수사기록 15면)

적용법조 :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동기 참작)

1993. 1. 14.

판사 성 기 문

2審 判決文

사 건 : 93노102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주거 서울

본직 경남

항 소 인 : 피 고 인

검 사 : 신 중 대

변 호 인 : 변호사 이 문 재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3. 1. 21. 선고, 91고단 4554판결

주 문 :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1. 피고인의 항소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고소인 이 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공소의 김 기자에게 설명한 것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또한 진실이거나 진실과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으로서 이를 진실이라고 확신한 사실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1) 비방할 목적

피고인이 위 김 에게 아래 (2) 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1990. 6. 30. 위 이 과의 전속계약의 해제를 선언한 후 1991 7. 26.부터 예정된 현대 화랑 전시회가 이 의 방해로 취소되자 언론계에서 관심을 갖고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던 중, 1991. 7. 26. 부산일보에, 같은 달 31, 일간스포츠에 같은 기사가 실려 위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자, 위 김 이 전화로 연락하여 잠시 만나보고 싶다고 하면서 관련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나오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은 진상을 알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신문사로 위 김 을 찾아가니, 위 김 이 스포츠신문에 난 것이 사실이냐고 가볍게 물어보아 피고인은 대충 맞다고 대답하였을 뿐이고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눈 것이 없으며, 위 김 이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소장사본과 위 이 이 재계약 요청을 하면서 제시한 계약서를 전하여 주고 왔을 뿐으로, 위 이 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이 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김 에게 찾아가 기사 재료를 제공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이 위 김 에게 설명한 사실의 허위여부 및 허위사실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인 위 김 을 찾아가 설명한 사실, 즉 ① 1990. 3.경 동경아트엑스포에서 1억5천만원의 작품판매대금이 생겼으나 3000만원만 받았을 뿐이고, ② 피해자 이 이 대주기로 했던 재료비를 처음 6개월 동안만 대주는 등 후원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며, ③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품을 부당하게 편취하였고, ④ 위 피해자가 다른 화랑에서 열릴 예정이던 피고인의 전시회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은 진실 그대로이며 설령 진실과 다소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 이를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음에도 원심은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그 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원심판결과 같이 위 이 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문사 기자인 위 김 에게 이야기 하였다 하더라도, 조선일보에 이진 기사를 게재한 위 김 은 문화부 소속 미술담당 기자로서 그 기사가 어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인지 아니면 공익 특히 작가 전속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보탬이 되는 기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자로서 그 기사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위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그 기사를 게재한 기자나 신문사 자신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보자를 위 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 처단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의 주체를 잘못 해석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한 위 이 의 작품전시 및 방해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자는 피고인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2. 당원의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그 기사를 게재한 기자나 신문사 자신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제보자를 위 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이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그 신문사의 내부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나, 기사가 신문지상에 게재된 이상 이 기사의 기재는 기사재료 제공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 기사재료를 제공한 제보자, 즉 피고인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당시에 이르러 위 김 기자가 다른 신문에 피고인과 이 에 대한 기사가

난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하면서 관련자료를 가져올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은 진상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위 김 기자를 찾아가 그의 질문에 간단히 응한 다음 가지고 간 소장사본등 자료만 준 것으로, 위 이 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히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검찰에서 피고인은 「화랑의 횡포로 인하여 작가가 작품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널리 국민들에게 알려지도록 고의적으로 신문과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도록 하였다.」 「이 이 신문, 텔레비전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떨어지고 화랑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은 명예가 실추되고 화랑 운영에 지장이 있어도 감수해야 할 그러한 사람이다.」 「화랑의 횡포로 인하여 작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저의 한 몸 희생되는 것을 감수하고 이 의 횡포를 신문과 텔레비전에 보도하였다.」 「다시는 화랑이 작가에게 횡포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기자에게 보도를 요청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에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속작가인 피고인과 화랑주인인 위 이 사이에 분쟁이 생긴 결과, 위 이 에 의하여 피고인이 다른 화랑에서 열려던 전시회 개최가 좌절되자 민사소송 제기와 동시에 피고인이 이 을 비난하는 자료를 위 김 에게 제공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위 이 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설명한 위 4가지 사항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가) 동경아트엑스포에서의 판매대금문제

피고인은 1990. 3. 24.부터 4. 3.까지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동경아트엑스포에 피고인의 작품 25점 528호(이 이 별도 보관하던 작품 4점 포함)를 출품하여 그 전부를 공소의 허에게 판매하고, 귀국후 위 이 이 다시 일본으로 가서 위 판매대금을 일화로 받아와 한국에서 한화로 환전한 후 그 중 3천만원을 피고인에게 지불하면서 작품 전부의 판매대금이 8,300여만원이라고 이야기 하고 이를 전제로 계산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출품에 앞서 호당 10만엔 이하로 받아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 이 인수증이나 보관증 또는 환전증서를 피고인에게 보이지 않은 점, 부산일보 기자인 배 에게 위 이 이 판매대금으로 1억8,000만원을 받아왔다고 이야기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작품 판매대금은 적어도 금 1억5천만원은 상회할 것이고, 설령 위 판매대금이 위 이 의 주장대로 금 8,300여만원 정도라고 하여도 피고인으로서의 위 이 이 판매대금이 1억8천만원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공소의 배 기자의 말을 듣고 판매대금이 적어도 1억5천여만원은 넘을 것이라는 생각에 위 김 기자에게 그러한 취지로 말을 한 것이므

로 피고인이 위 김 기자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거나 혹은 사실이라고 믿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공판기록에 편철된 작품리스트 사본(제689정), 수사기록에 편철된 정산서 사본(제10-12정), 피고인의 출판작 명세서(제38정)의 각 기재 및 당심에서의 이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동경아트엑스포에 출판한 작품은 모두 21점이고 거기에다가 화랑 소유인 피고인 작품 4점을 보태어 총 25점이 출판되었는데, 피고인이 출판한 작품 중 20점 및 화랑 소유로 출판한 4점(100호 1점, 30호 1점, 12호 1점, 10호 1점)등 합계 24점이 공소의 허에게 일괄 판매되어 그 총 판매대금이 금 26,500,000엔이었던 사실, 당시 환율을 4.35로 잡아 환산한 금 115,275,000원 중 화랑 소유작품 4점 대금 31,572,850원을 제외한 피고인 출판작품 20점의 판매대금은 금 83,702,150원으로 계산하여, 그중 절반인 금 41,860,750원을 피고인 몫으로 피고인과 위 이 사이에 확정된 후, 그동안 피고인이 위 이 으로부터 가불하여 간 금 12,257,750원을 공제하면 최종적으로 피고인 몫으로 돌아갈 판매대금은 대략 금 3,000만원 정도로 계산하여 정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금 3,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도 피고인 몫으로 분배될 피고인 출판작품의 총 판매대금이 한화로 금 8,300여만원 정도라는 것을 알고 이에 따라 정산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1억5천만원 상당이라고 위 김 기자에게 말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그 이후에 위 배 기자로부터 위 이 이 총판매대금이 금 1억8천만원에 이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듣고서 판매대금이 금 1억8천여만원에 이를 것이라고 확신하였으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서도, 수사기록 제103정에 편철된 배태영 기자가 쓴 1991. 7. 29. 부산일보 기사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1억8천만원에 팔렸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 공판기록 제338정에 편철된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서 사본에도 피고인 스스로 위 배

기자에게 그림 판매대금이 1억5천만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1992. 1. 18.자 탄원서(공판기록 제16-28정)에서 배 기자로부터 들은 경위를, 부산일보 기사를 읽어보니 피고인이 작품판매대금이 1억8천만원이라고 발설한 것 같이 기사화가 되어 있어서 이를 피고인이 위 배 기자에게 확인해 보니 작품대금이 1억8천만원이라고 말한 것은 이 인데 피고인이 발설한 것 같이 오보되었다고 해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료로 배 기자가 쓴 경위서라고 공판기록 제34정에 편철된 메모지를 제출하였으나, 위 부산일보 기사가 보도된 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1. 7. 29.이고, 피고인이 조선일보 기자인 위 김 을 만나 판매대금이 1억5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말한 날은 이를 전인 같은 달 27. 이어서 피고인이 신문 기사를 본 후 부산일보 배 기자에

확인하여 위 김 ○○에게 판매대금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시간상 맞지 않아 그 경위에 대한 변소가 합리성을 잃고 있는 점, 이 ○○은 위 배 ○○ 기자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재료비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은 1988. 7. 30.자 계약체결 당시 위 이 ○○이 피고인의 작품 재료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문서에 명문화시키고자 하였으나 위 이 ○○이 계약서 제2항의 「이 ○○이 피고인의 작품제작 및 작가활동의 제반 관리와 후원자로서 계약한다」는 규정 에 포함되니 걱정말라고 하여 의심없이 위 이 ○○ 제안대로 구두로만 약정한 채 계약서상에 명시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판기록 제429정 및 제647정에 편철된 재료비 정산서, 내역서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속계약 후 1989. 8. 이전에 재료상 ○○○○으로부터 받아 쓴 물감대등이 합계 금 8,712,700원에 이르렀는데 위 이 ○○이 이를 대신 지불하였으나, 피고인은 1989. 8. 27. 위 이 ○○에게 위 재료비중 금 3,240,000원을 피고인의 그림으로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재료비도 장차 피고인의 작품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속한 다음, 1989. 12.경 위 정산약속에 따라 나머지 재료비도 피고인의 작품으로 대물변제한 사실, 그후에도 피고인은 모든 재료를 피고인 자신이 사서 사용해 온 사실, 작가와 화랑의 전속계약의 경우 작품 재료는 작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작가가 재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속계약 당시 재료비 부담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는 이상 재료비는 관례에 따라 작가의 부담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사용한 재료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림으로써 대물변제함으로써 재료비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할 것이므로 재료비를 위 이 ○○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 이유없으나, 한편 이

건으로 문제된 조선일보 기사(수사기록 제15정)의 이 부분에 관한 기사를 보면, 그 기사내용은 연간 3천만원에 달하는 재료비를 화랑측에서 피고인에게 대주기로 약속하여 놓고 처음 6개월 동안만 대주는 등 후원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한 것으로 요약되는데, 위 이 ○○도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하급의 물감을 쓰다가 위 이 ○○으로부터 고급물감을 쓰라는 말을 듣고 이 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고급의 물감을 쓰게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너무 과다하게 물감을 구입하는 바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처음 6개월간의 재료비는 위 이난영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결제하여 준 후 그 대신 그림으로 대물변제 받았으나, 그 이후는 재료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스스로 물감을 구입하여 작품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당시 중인 장호의 1989. 중순 경 피고인이 너무 물감을 많이 써서 위 이 이 재료상인 박 에게 이제부터는 지급못하겠다고 통보하라고 하여 그 취지를 통보한 후 그 이 후부터는 재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진술 및 공판기록 제57정에 편철된 박 의 인증서 중 이 의 책임하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재료에 대하여 결제하기로 하여 재료대금은 이 이가 결제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재료비의 최종 부담은 작가인 피고인이 하는 것이기는 하나, 전속계약 후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피고인이 물감비를 낼 능력이 부족하므로 우선 피고인이 재료상으로부터 물감을 공급받아 사용하면, 이 대금을 위 이 이 지급하고 차후 위 물감대는 피고인이 그림으로 대물변제하는 방식 등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전속계약일로부터 6개월동안만 재료비를 대어주고, 그 이후는 피고인이 비싼 물감을 과다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료비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피고인 스스로 재료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 사실인 이상, 위 보도내용이 다소 과장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 이 이 재료비를 제대로 대 주지 않아 작품활동을 제대로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작품의 편취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김 기자에게 이 이 작품을 편취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없고 단지 피고인이 건네 준 민사소장의 청구원인 중 작품비 횡령부분을 참고하여 기사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위 이 은 전속계약제를 악용하여, 작가전속화랑은 전속작가와 협의한 가격으로 작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그 이하의 가격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협정가액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화랑가의 관례임에도 이 은 작품전시 때마다 협약가격의 절반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니 그 실제판매가격의 반액만 분배한다는 식으로 판매가격의 상당액을 착복하여 왔고, 또한 고의적으로 전시회에서 작품판매를 게을리한 후 팔리지 않은 작품들을 3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매수한 다음 천천히 제값으로 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이 위 김

에게 건네준 민사소장의 작품횡령부분(수사기록 제46정)을 보면, 피고인이 이 에게 준 613호의 작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고, 위 김 은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이 피고인의 작품을 편취하였다고 기사를 쓴 것으로 보이는 바, 결국 이 부분에 피고인의 죄책여부는 위 613호 작품을 이 이 과연 횡령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이 이 횡령하였다고 믿고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 점에 관한 한 공판기록 제29정에 편철된 전속계약서의 기재, 수사기록 제 77정에 편철된 내역서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의 진술,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이 및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이 간의 전속계약시 이 은 피고인에게 생활비로 매월 금 1,000,000원을 계약기간 5년동안 계속 지불하고,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는 등 후원을 하되, 이에 대한 보상조로 피고인은 위 이 에게 연 1,000호의 작품을 무상으로 인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위 613호는 무상제공하기로 약속한 위 1,000호의 일부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이 이 위 작품들을 횡령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사실을 계약당사자인 피고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이 이 피고인의 전시회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이 이 고의로 피고인의 타 화랑에서의 전시회 개최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공판기록 제63정에 편철된 1991. 3. 8.자 통고서, 제412정에 편철된 1992. 1. 13.자 통고서의 각 기재에 당심 증인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이 및 피고인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이 과의 불화가 생긴 후 피고인이 1990. 6. 15.경 전속계약 해지통고를 한 후 1991. 7. 26.부터 같은 해 8. 6.까지 위 박 경영의 강남 현대화랑에서 전시회를 가지려고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전시준비를 다하였으나, 위 이난영이 위 박 에게 위 피고인과의 전속계약이 계속중임을 이유로 위 전시회를 개최하면 그에 대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한 위 박 가 갑자기 위 전시회를 열지 않기로 취소하는 바람에 전시회가 개최되지 못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민사판결에서 피고인과 이 과의 전속계약이 1990. 6. 30.자로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까지 따져볼 필요없이 피고인으로서 위 전시회가 위 이 의 방해로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경험칙상 당연하고, 이러한 판단을 위 김 기자에게 말한 것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보도케 하였다고 볼 수는 도저히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및 사실오인 주장 중 비방목적부분, 판매대금부분, 편취부분은 모두 그 이유 없으나, 사실오인 주장 중 재료비부분 및 방해부분 주장은 그 이유있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범위내에서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당원은 나머지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미술작가인 바, 무명작가시절인 1988. 7. 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미화랑 대표인 피해자 이 과 1993. 7. 30.까지 5년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작품활동을 후원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작품전시 및 판매 일체를 미화랑을 통하여만 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4차례의 개인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중견작가로서 성장하게 되자 1990. 3.경 열린 동경아트엑스포 전시회에 피고인의 작품을 출품한 이후부터 위와 같은 전속계약에 불만을 품고 계약해지를 주장해오던중, 1991. 7. 26. 경부터 같은 해 8. 6.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현대화랑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려다 피해자의 위 전속계약상 권리주장으로 개인전이 무산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991. 7. 27. 14:0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의 61 소재 조선일보 문화부에 찾아가, 사실은 동경아트엑스포에서 피고인의 작품이 약 8,300여만원에 판매되어 그후 함께 정산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품을 편취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문사 문화부 기자인 공소의 김 에게 「1990. 3.경 동경아트엑스포에서 1억5,000만원의 작품판매대금이 생겼으나 3,000만원을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품을 부당하게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민사소송소장 사본, 전속계약서 사본 등의 보도자료를 교부하여 위 김 으로 하여금 1991. 8. 1.자 조선일보 11면에 위와 같은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여 그무렵 전국의 위 신문 독자들에게 보급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법정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원심법정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장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법정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작성의 각 진술서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공소부제기이유서 사본(제338정), 피고인의 탄원서(제16정-28정), 전속계약서 사본(제29정), 판결문 사본(제199정-213정), 작품리스트 사본(제정)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조선일보 신문기사 사본(제15정), 부산일보 신문기사 사본(제103정), 소장 사본(제46정), 내역서 사본(77정), 정산서 사본(10-12정), 출품명세서(제38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동기 등 정상참작)

무죄부분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범죄사실 중 모두 사실기재와 같은 경위로, 사실은 전속계약시 재료를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이 타 화랑에서 개최하려는 전시회를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사 기자인 공소외 김 ○ ○ 에게 「이 ○ ○ 이 피해자가 대주기로 했던 재료를 처음 6개월동안만 대주는 등 후원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다른 화랑에서 열릴 예정이던 피고인의 전시회를 방해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설명하여 위 김 ○ ○ 으로 하여금 1991. 8. 1.자 조선일보 11면에 위와 같은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여 그무렵 전국의 위 신문 독자들에게 보급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부분은, 앞서 항소이유의 요지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돌아가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판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는 단순 1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1993. 12. 2.

재판장 판사 양 태 중

판사 변 현 철

판사 오 중 윤

大法院 判決文

사 건 : 93도3535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 : 이

주거 서울

본적 경남

상 고 인 : 피 고 인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2. 2. 선고, 93노1025판결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소론은, 요컨대, 출판물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출판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출판물에 기사를 게재한 기자나 출판사 자신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부담할 것이지 그 기사내용을 제공한 제보자에 대하여는 같은 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이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오로지 당해 신문의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이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60. 6. 8. 선고, 4292형상71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교부하여,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한 신문기자로 하여금 신문에 허위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론은 또한 이 사건 기사내용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하여 주장되어 이에 대한 판결까지 선고된 상태에 있었고, 다른 일간신문에도 소개되어 세인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므로, 뒤늦게 그와 같은 기사를 정리하여 다시 일간신문에 소개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새삼스

럽게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4. 12.

□

재판장 대법관 김 주 한

대법관 배 만 운

대법관 김 석 수

주 심 대법관 정 귀 호

IV. 헌법소원 사례

사죄광고가 명예회복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면,
가해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내지 굴욕감수를 강요하는
사죄광고제도는 불필요한 국민 기본권의
제한이 된다할 것이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10.자 결정(89카3299)

헌법재판소 1991. 4. 1.자 결정(89헌마160)

事實概要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 법원이 민법 제764조에 따라 내릴 수 있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중 「사죄광고」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 재판관)는 1991년 4월 1일, 東亞日報社가 낸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 특칙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죄광고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고 인격의 존엄을 해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중 △원래기사의 취소광고 △가해자의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문 게재 △가해자가 패소한 민사금전 배상판결의 게재 등은 위헌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원래 사과라는 행위는 윤리적 판단과 감정에 따른 의사 표현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따라서 사죄광고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재판이라는 권력작용을 통해 자기의 신념에 반해 윤리적 판단을 하는 등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東亞日報社가 1988년 여성동아 6월호에 『全敬煥과의 소문기사에 5억 청구한 金星希 진상해명』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게재하자, 金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1988년 7월 민사소송을 내 승소하고 사죄광고게재명령까지 받아내자, 동아일보사측은 1989년 7월 서울민사지법에 위헌제청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민사지법 제14부(재판장 조희태 부장판사)는 「보도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진실 내지 허위보도를 한 경우 그 정정 내지 사과 광

고를 게재하는 것은 헌법적 제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고, 東亞日報社는 1989년 7월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법 위헌제청신청 결정문

사 건 : 89카33299 위헌제청신청

신 청 인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자 회장 김 상 기

2. 김

서울

3. 권

서울

4. 현

서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승 서

주 문 : 신청인들의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1. 신청인은, 민법 제764조의 규정이 김 가 원고, 신청인들이 피고로 된 당원 88가합31161 손해배상(기)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령인 바, 원고는 위 사건 소로써 신청인들에 대하여 위 법조에 근거를 둔 사죄광고를 청구하고 있는데 본조에 의한 사죄광고를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면 대체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대체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공권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본인의 이름으로 사상 및 의견의 표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도 위배되어 헌법위반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심판하도록 제청할 것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764조는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금전배상주의」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일한 예외로서 불법행위의 태양이 명예훼손인

경우「원상회복」의 방법에 의한 손해전보를 인정한 것이다.

본래 손해의 완전한 전보라는 차원에 있어서는 원상회복 방법이 이상적인 것이고 다만 배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가 통용되는 것이며, 독일, 스위스, 일본 등 대륙법계의 입법례에서는 모두 원상회복에 의한 손해배상을 원칙 또는 예외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에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 및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되지 않는 자유」인 침묵의 자유가 포함된다는 것은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으나, 과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하여지는 사죄광고가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건대, 사죄광고의 내용이 채무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현저히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 채무자로서 사실의 진상을 밝히고 진지한 사과의 뜻을 표명함에 그치는 정도의 것이라면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신문등에 게재 명령한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굴욕적 정신적 침해를 과한다거나 윤리적 의사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내용의 사죄광고야말로 채무자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피해자의 법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다. 또한, 모든 국민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짐은 헌법 제21조의 규정상 명백하나, 이는 무제한적 자유가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4항)는 제한 및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이른바 일반적 권리유보로서 「공공복리등에 의한 법률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 그 한계를 지닌다 할 것이고, 한편, 보도기관이 갖는 언론의 자유에 비진실 내지 허위를 보도할 자유가 포함되지 않음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도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진실 내지 허위보도를 한 경우 그 정정 내지 사과광고를 제재하는 것은 앞서 본 헌법적 제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전보의 방법을 금전배상에만 국한한다면 명예라는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권리는 종국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의 규정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7조의 규정에 내재하는 헌법정신은 무시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사료된다.

라. 더구나, 민법 제764조의 규정은 단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고만 되어있을

뿐 사죄광고를 손해전보의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위 조문 자체를 들어 헌법위반이라 주장할 근거는 더욱 박약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7. 10.

재판장 판사 조 희 태
판사 박 종 연
판사 장 성 원

헌법재판소 결정문

사 건 : 89헌마160 민법 제764조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2. 김

서울

3. 권

서울

4. 현

서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 승 서

관련소송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31161 손해배상(기) 청구사건

주 문 : 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동아일보사라고만 한다.)는 일간신문 및 월간잡지인

여성동아등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신문사이고, 청구인 김 ○은 동아일보사의 대표이사 겸 위 여성동아의 발행인이며 청구인 권 ○은 위 여성동아의 주간이고 청구인 현 ○은 위 여성동아의 기자이다.

청구의 김 ○은 위 여성동아 1988년 6월호에 게재된 기사가 자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1988. 7. 18. 청구인들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민법 제764조에 의한 사죄광고를 청구하는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소송사건에서 민법 제764조가 명예훼손의 경우에 사죄광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서울민사지방법원 89카33299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89. 7. 10.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청구인들은 같은 달 15.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서 같은 달 24. 헌법재판소에 위 민법 제764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죄광고를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포함시킬 때 동조항이 위헌인가의 여부로서, 민법 제76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주장

가. 청구인들의 주장

민법 제764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란 주로 사죄광고를 뜻하는데, 법원이 판결로써 사죄광고를 명하고 이를 강제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본인의 본심에 반하여 사물의 시비와 선악의 판단을 외부에 표현하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9조 소정의 양심의 자유의 한 내용인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764조는 헌법 제19조 및 제2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사죄광고의 내용이 채무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현저히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한 채무자로서 사실의 진상등을 밝히고 진지한 사과의 뜻을 표명함에 그치는 정도의 것이라면 사죄광고의 명령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

나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헌법 제21조 제4항)를 벗어난 행동에 대하여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헌법상 가능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민법 제764조의 규정은 단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사죄광고를 손해전보의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문 자체를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위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와 같다.

3. 판단

가. 우리나라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으로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4조), 예외적으로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금전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이와 함께 침해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적 구제를 인정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764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대표적 예가 사죄광고게재인 것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학설·판례였다. 생명권이나 신체권의 침해 즉 살인이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라도 사죄강제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오로지 명예권 침해의 경우에 한정되는 특유한 구제방법이기도 한 것으로, 이에 의한 사죄광고게재를 명하는 판결은 대체집행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통설·판례였다. 이처럼 사죄광고게재가 민법 제764조 소정의 처분에 포함된다고 할 때 과연 동조항이 합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핀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바, 여기의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다른 나라의 헌법과 달리 양심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와도 구별하고 사상의 자유에 포함시키지 않는 채 별개의 조항으로 독립시킨 우리 헌법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며, 이는 개인의 내심의 자유, 가치판단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리의 명확한 확인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초가

되고 인간의 내심의 영역에 국가권력의 불가침으로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불가결한 것이 되어 왔던 정신활동의 자유를 보다 완전히 보장하려는 취의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른바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18조 제2항에서도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게 될 어떠한 강제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죄광고제도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본심에 반하여 깊이 「사과한다」하면서 죄악을 자인하는 의미의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재판이라는 권력작용을 통해 자기의 신념에 반하여 자기의 행위가 비행이며 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을 형성 강요하여 외부에 표시하기를 명하는 한편 의사·감정과 맞지 않는 사과라는 도의적 의사까지 광포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할 것의 강제로 인간 양심의 왜곡·굴절이고 결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형성의 강요인 것으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제약(법인의 경우라면 그 대표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를 요구하는 결과가 된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 나아가 살펴건대 원래 깊이 「사과한다」는 행위는 윤리적인 판단·감정 내지 의사의 발로인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라야 할 것이며 그 때 비로소 사회적 미덕이 될 것이고, 이는 결코 외부로부터 강제하기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이의 강제는 사회적으로는 사죄자 본인에 대하여 굴욕이 되는 것에 틀림없다. 사과의 정도에 따라 굴욕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사과」의 문구가 포함되는 한 그것이 마음에 없는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자존심에 큰 상처요 치욕임에 다름없으며, 「사과문」, 「진사문」, 「해명서」 등 어떠한 명목의 것이든 관계없이 그러하다. 더구나 사죄광고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굴욕적인 의사표시를 자기의 이름으로 신문·잡지 등 대중매체에 게재하여 일반세인에게 널리 광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굴욕적인 내용을 온세상에 광포하면서도 그것이 소송의 성질상 형식적 형성의 소에 준하는 것임에 비추어 그 구체적 내용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의 자발적 의사형성인 것 같이 되는 것이 사죄광고이며 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데도 본인의 이름으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되게 되는 것이 그 제도의 특질이다. 따라서 사죄광고 과정에서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인격권이 무시되고 국가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되어 인격형성에 분열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죄광고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

권에 큰 위해도 된다고 볼 것이다.

나. 이렇듯 양심표명의 강제이고 인격권의 제한임에 틀림없는 사죄광고제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의 명예회복 즉 그 인격권보호와의 상관관계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있는 제한이라고 할 것인가를 다음에서 살핀다.

(1) 우선 사죄광고제도가 헌법적 기준에 입각하여 볼 때 명예훼손의 경우에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764조의 규정취지에 적합한가를 살펴본다. 가해자가 자발적인 사죄를 거부하거나 혹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하면서 불법행위의 성립 자체를 다룰 때에 국가가 사죄광고를 명하는 것은 분명히 가해자의 판단이나 감정을 강제하는 것이고, 가해자에게 부당하고 불필요한 굴욕만을 강요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이다. 물론 그것이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것일는지 모르나 최후의 수단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오히려 필요와 정도를 넘어서는 수단인 것으로 보여진다. 즉 피해자가 받은 굴욕에 대하여, 사죄의 의사가 없거나 혹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데도 국가의 강제력으로 불법행위의 자인·사죄라는 사회적 굴욕을 새로 가해자에게 감수시켜 대응하는 것으로서 이는 분명코 일종의 응보적 보복에 가까운 것이어서 문명국가라면 응당 수호해야 할 기본가치인 인본주의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며 이제는 시대적 감각을 잃은 원시형의 「이에 는 이, 눈에 는 눈」의 현대판 「탈리오」라고 보아 무방할 것이다. 민사책임이 행위자에 대한 형사법적인 공적 제재인 것에서 분화되어 피해자가 받은 손해의 합리적 전보라는 것을 목적으로 바뀐 오늘날에 있어서 국가에 의한 사죄의 강제는 분명히 민사책임의 목적과 본질에 어긋난 불필요한 효과의 추구라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민법 제764조에서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게 한 것은 그 처분에 의하여 사죄를 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응보적 주관적인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만으로는 전보가 안 되는 훼손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객관적인 평가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대저 하기 싫은 사죄의 의사표시를 본인의 이름으로 강제적으로 온누리에 광포시키는 것은 보복감정의 만족에 중점을 둔 고대법적 발상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것이며 명예훼손죄에 의한 형사적 처단으로 만족하여야 할 보복감정을 민사책임에서까지 확장하여 충족시키려고 했다할 것으로 민사책임속에 형사책임이 혼재된 전근대적인 것이며 이 점에서 어디까지나 민사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64조의 제도적 의의와 목적에는 적합치 않은 처분이라 볼 것이다. 현재 명예훼손의 경우에 곧 사죄광고가 주된 구제방법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 역작용으로 이때에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금전배상은 한낱 부수적·장식적 의미밖에 없게 되어 그 배상액은 극히 미미한 정도의 낮은 수액으로

고착되게 됨으로써 헌법 제21조 제4항 후단에서도 밝히고 있는 명예훼손의 경우에 손해전보라는 배상제도의 본질적 기능발휘에 오히려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 나아가 사죄광고제도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필요부득이한가의 여부를 살펴본다. 사죄광고제도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유일한 제도는 결코 아닌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현재 일본에서만 사죄광고의 강제가 인정되고 있으나 그 곳에서도 위헌론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영미, 독일, 불란서, 스위스 등 제국에서는 현재 훼손된 명예회복의 방법으로 사죄광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미의 경우도 명예훼손이 된 때에 회복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해자의 자발적 사죄는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그치고 있으며, 독일, 불란서, 스위스에서는 가해자의 주장의 취소를 명하거나, 명예훼손의 사실을 확인하는 판결 또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요지 공시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764조의 적용에 있어서도 사죄광고를 구하는 판결이 아니고도 ①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 ② 형사 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의 신문·잡지 등에 게재 ③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등의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하여도 사죄광고의 경우처럼 양심결정의 강제나 인격권을 무시하는 등의 헌법위반의 문제는 별로 생길 수가 없다. 취소광고라 하더라도 윤리적 판단이 여기에 개재된 것이 아니고 공연히 적시된 사실의 존재의 취소를 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법 제764조에 기하여 명하는 처분이라함은 피해자에 대하여 일단 생긴 사회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를 가능한 한 정정시키려는 처분 곧 부정적 평가의 자료가 되었던 정보의 정정의 효과가 있는 처분을 뜻한다 한다면 사죄광고 아닌 위에서 본 다른 방법도 민법 제764조의 소기의 목적을 달하기에 필요하고 충분한 방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다른 처분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고 또 금전배상 청구도 배제하지 않는 터이며 결코 사죄광고만이 명예회복에 유일무이의 수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태여 가해자에게 양심표명의 강제 내지 굴욕감수를 강요하는 사죄광고제도는 어디까지나 과도한 것이며 또한 불필요한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제도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없어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

다면 민법 제764조가 동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이라면 동규정은 헌법에 위반될 수 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민법 제764조는 동조 소정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는 민법 제764조와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거나 다의적인 해석가능성이 있는 조문에 대하여 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헌적 의미를 천명한 것이며, 그 의미를 넘어서 확대는 바로 헌법에 위반되어 채택할 수 없다는 뜻이다(당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참조).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견해일치를 보았다.

1991. 4. 1.

□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재판관 이 성 렬
재판관 변 정 수
재판관 김 진 우
재판관 한 병 채
재판관 이 시 윤
재판관 최 광 룰
재판관 김 양 군
재판관 김 문 희

.....

현행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피해자의
반론게재청구권으로 해석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와
합리적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1989. 7. 11.자 결정(89카194)

헌법재판소 1991. 9. 16.자 결정(89헌마165)

事實概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1991년 9월 16일 中央日報社가 정정보

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과 제19조 제3항이 헌법상의 언론자유보장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자유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게 언론보도를 반박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 특색이 있으므로 언론자유와의 관계는 기본권의 조화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평가돼야 한다」면서, 「이 제도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의 조화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낸 한병채·이시윤 재판관은 「정정보도청구권은 일반소송과 달리 약식절차에 따르게 함으로써 언론사의 발행인·편집인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지 못해 평등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中央日報社は 1988년 7월 23일자 「취재수첩」란의 기사에 대해 파스퇴르유업(주)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낸 정정보도청구권심판에서 패소하자 1989. 3. 서울고등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근거가 되는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과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제19조 제3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위반된다고 위헌여부심판제청을 냈다. 서울 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용훈 부장판사)가 이유없다고 기각하자, 1989년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었다.

서울고등법원 위헌여부심판제청 결정문

사 건 : 89카194 위헌여부심판제청

신 청 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이 종 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승 현

주 문 :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이 법원에 계속중인 89나7209호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와 이 사건 신청인간의 정정보도제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청구의 근거가 되는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과 그 재판절차를 규정한 제19조 제3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위반되는 법률로서 위 법률의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위 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되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

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1조는 그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아 대중매체에 의한 개인의 법익의 침해방지와 그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바로 헌법이 규정한 이러한 개인의 명예나 권리가 언론·출판에 관한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와 그 실현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이의대상이 된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그 권리행사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16조 제3항 단서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에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아울러 이로 인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같은 법 제16조 제4항, 제5항과 같은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6조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적 법익과 권리보호의 적절한 조화를 꾀하고 있는 법률로서 그 어느 조항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더우기 같은 법 제19조 제3항이 이러한 정정보도에 관한 재판절차를 긴급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는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전파력이 강한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의 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침해된 인격적 법익 및 권리에 관한 반박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 역시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규정한 위 법률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항, 제4항 어디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7. 11.

재판장 판사 이 용 훈
판사 정 인 진
판사 김 이 수

헌법재판소 決定文

사 건 : 89헌마165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김 동 익

대리인 변호사 장 순 호, 조 치 형

관련소송사건 : 서울고등법원 89나7209 정정보도게재청구

주 문 :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1987. 11. 28 법률 제3979호)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의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는 이 사건 청구인이 발행하는 일반 일간신문인 중앙일보의 1988. 7. 23.자 제8면 「취재수첩」란의 기사가 자신과 관련된다고 주장하면서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그 기사내용에 대한 정정보도게재청구의 심판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 1989. 1. 13. 선고 88카43429로 인용판결을 받았다.

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 사건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 89나7209로써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중 위 법원에 89카194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한 이 법 제16조 제3항 및 그 절차를 규정한 이 법 제19조 제3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및 언론의 자유의 보장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1989. 7. 11.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같은 달 13. 위 결정서의 송달을 받고 같은 달 27. 헌법재판소에 이 법 제16조 제3항 및 제19조 제3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법 제16조 제3항 및 제19조 제3항 소정의 정정보도청구권 및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위 각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정정보도청구권) 제3항 :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정정보도게재청구를 받은 때에

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일간신문과 주 1회 이상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및 통신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같은 정기간행물에, 그 밖의 정기간행물은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발행호에 이를 무료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19조(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 제3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의 게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인의 의견의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이 법 제16조에 규정된 정정보도청구제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나 보도기관의 귀책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 즉 이 법 소정의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정정보도를 당해 정기간행물에 무료로 게재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헌법상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제도이고, 가사 헌법체계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요내용인 보도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질서에 어긋나며, 평등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은 민사소송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소명으로 족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하게 되고, 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집행력이 부여되며, 불복수단마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실질적으로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며, 한편 위 법률조항이 규정한 정정보도의 본질 및 내용은 이른바 피해자의 「반론권」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을 「정정보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법원의 실무관행도 「정정보도문」이라는 표제 아래 반박문의 게재를 명하여 마치 그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비례성 및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과잉제한에 해당한다.

나. 서울고등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법이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헌법 제21조 제4항 소정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는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권리의 보호와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장과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제도이다. 피해자가 그 권리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거나 정정보도의 내용이 사실에 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데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 재판의 절차를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전파력이 강한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이 가진 특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반박하는 권리를 신속하게 실현하여야 할 필요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법무부 장관과 공보처 장관의 의견

이 법 제16조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제도는 이른바 반론권을 제도화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뿐 언론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기관의 귀책 여부를 요구하지도 않고, 보도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근거인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개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도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이 반론권을 입법하면서 그 명칭을 「정정보도청구」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그 제도의 본래의 뜻에 맞지 아니하여 적절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러한 용어의 선택에 따라 권리의 본질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으로도 반박문은 언론기관의 이름이 아닌 정정보도청구인의 이름으로 게재하고 있으므로 권리의 성질이 오해될 위험성은 없다. 정정보도청구사건을 가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속한 권리실현을 위한 것이고, 그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정정보도청구제도는 그 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등 상당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으므로 언론기관이 사실보도에 충실하는 한 청구권행사의 남용으로 인한 언론자유 침해는 물론 재판청구권의 제한은 문제될 수 없다.

라. 관련 소송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같다.

3. 판단

가. 정정보도청구권의 유래 및 의의와 헌법상의 근거

(1) 유래

언론의 자유는 바로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 헌법의 한 특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모든 권리의 출발점인 동시에 그 구심점을 이루는 인격권이 언론의 자유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르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각 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에 관하여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언론에 의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 엄중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방법에 의하여 그 해결책을 찾았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의 시민혁명을 계기로 국가에 의한 검열제도가 폐지되자 언론의 자유의 남용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민·형사상의 일반구제절차만으로는 개인의 인격권의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인식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1822. 3. 25. 출판법 제11조에서 모든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소유자 또는 편집자는 피해자로부터 반론이 있을 때에는 반론의 수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만일 3일 이내에 발행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호에 무료로 반론을 게재할 것을 규정하여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프랑스의 반론권 제도를 본받아 제정된 1874년의 제국언론법이 정기간행물에 관청 또는 개인에 관한 사실이 보도되었을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책임편집자에게 사실적 주장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성질은 언론기관의 고의, 과실 등 주관적 요건을 따지지 아니하며, 보도된 사실적 주장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의 「정정」이라는 용어는 그후 「반박권」 또는 「반론권」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반론권제도를 받아들인 나라들의 법제는 오늘날 크게 프랑스형과 독일형의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프랑스형의 반론권은 사실상의 주장은 물론 논평·비판 등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대하여도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데 반하여 독일형의 경우는 사실적 주장에 대하여서만 반론을 허용하여 반론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

(2) 의의 및 성질

이 법 제16조 및 방송법 제41조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발행인이나 편집인 또는 방송국의 장이나 편성책임자에 대하여 그 피해자의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게재 또는 방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위 법률조항은 비록 그 표제 및 법문 가운데 「정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보면 명칭과는 달리 위에서 본 독일의 예에 따라 언론기관의 사실적 보도에 의한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의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반론권」을 입법화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정정보도청구는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지거나 허위보도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 취지로는 다음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언론기관이 특정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피해를 받은 개인에게도 신속·적절하고 대응한 방어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마땅하며, 특히 공격내용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끔 보도된 매체 자체를 통하여 방어주장의 기회를 보장하는 반론권제도가 적절하고 형평의 원칙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독자로서는 언론기관이 시간적 제약 아래 일방적으로 수집공급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반대주장까지 들어야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진실 발견과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3) 헌법상의 근거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21조의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비록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등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헌법의 위 조항들을 종합해 볼 때 언론기관에 의하여 일반적인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방어의 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이 규정한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바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보도된 사실적 내용에 대하여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여론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 아래 헌법의 위에 든 각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나. 법률조항의 명칭

이 법 제16조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성격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론권임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조항은 이를 정정보도청구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에 관한 실무도 「정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어 마치 언론기관이 자신의 보도에 대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내용의 정정문을 신는 것인 양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보도내용의 진위를 가리지 아니한 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하는 현행 법제 아래에서 정정보도문이 만약 이름 그대로 언론보도의 잘못된 보도내용을 바로잡는다는 정정의 성격을 갖고 그와 같은 의미로 게재된다면, 이는 보도의 자유와 편집·편성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정보도문은 그 명칭의 표현과는 달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도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반박문의 성질을 가지고, 정정보도청구인의 이름으로 게재되고 있는 실무를 고려한다면, 비록 「정정」이라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인격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수단을 임법화함으로써 언론자유에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법문이 비록 「정정보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박문의 표제를 꼭 그와 같이 내세워야 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상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이 신청인의 정정보도문안에 관하여 제목과 내용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칭이 바로 위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1) 문제의 제기

이 법 제16조에 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이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보도내용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정정보도문을 무료로 게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정기간행물의 편집 내지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됨은 물론 간접적으로 보도기관의 보도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영을 압박함으로써 보도의 자유에 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론권은 보도기관이 사실에 대한 보도과정에서 타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직접적 위협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요청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인 것이지 언론의 자유

를 제한하기 위한 소극적 필요에서 마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도기관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의 문제는 결국 피해자의 반론권과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결국은 이 법에 규정한 정정보도청구제도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목적이 정당한 것인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단 또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인격권과의 사이에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는 것인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2) 제한의 목적

이 법이 정한 정정보도청구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기간행물의 보도에 의한 인격권 등의 침해 받은 피해자에게 반론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른바 「반론권」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그 바탕을 둔 것이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켜 제도로서의 언론보장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도 함께 지닌 것이다. 따라서 그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제도의 존재 자체가 곧바로 보도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3) 제한의 적정성

(가) 반론의 범위

우선 정정보도문을 무료로 게재토록 한 것은 피해자의 반박 내지 반론을 보장하는 제도 자체가 이해당사자 사이의 법익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보도기관이 이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평의 원칙에 따른 부득이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먼저 반론의 범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를 무리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과잉제한의 여부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은 첫째,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반론의 대상을 사실적인 주장에 국한함으로써 의견의 진술 등 가치판단의 표현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이 법 제16조 제1항),

둘째,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상당한 이익을

찾지 아니하거나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권의 행사범위를 축소하고 있으며(이 법 제16조 제3항 단서),

셋째,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는 일간신문 또는 통신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인 경우에는 1월 이내로 제한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채택하여 언론기관이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있고(이 법 제16조 제1항),

넷째, 정정보도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에 국한되고 위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으며, 정정보도문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이 된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고(이 법 제16조 제4항, 5항),

다섯째, 정정보도사건의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로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필요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해결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이 법 제19조 제1항).

또한 내용상 반론의 제도인 점에서 언론기관의 이름으로 하는 정정보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으로 해명한다는 점에서 언론기관의 명예 및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으로는 되지 아니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의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는 성질을 가지면서도 반론의 범위를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함으로써 양쪽의 법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나) 심판절차

이 법과 이 법 제1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정정보도등 청구사건심판규칙(1988. 3. 4. 대법원규칙 제1003호, 이하 이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에게 직접 정정보도의 게재를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데 중재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재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정정보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이 법 제18조), 한편 법원의 심판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되 별개의 본안 소송이 있지 아니하는 관계로 민사소송법 제697조 및 제705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법 제19조 제3항 단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제소명령기간의 도과에 의한 취소도 있을 수 없다. 또한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03조에 의한 이의의 신청이나 항소를 제기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재판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이 규칙 제8조).

청구인은 이와 같이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정정보도청구사건을 심판하고 이에 더하여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수단까지 제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재판청구권의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반론권의 제도는 전파력이 강한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의 속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복잡한 실제적인 권리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인정하는 것을 제도의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전치요건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해결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반론권제도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진실발견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보면 이 법이 위와 같은 중재를 필요적으로 거친 후의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심판을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본안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이 유별나게 신속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부당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규칙은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서 변론을 열 수 있도록 하되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쌍방을 심문하도록 하고 있고(이 규칙 제6조 제2항), 또한 민사소송법 제70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이 규칙 제7조 제3항) 담보의 제공만으로 소명을 대신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정보도명령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03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나 항소를 제기하는 외에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규칙 제8조).

이 규칙의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이 정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은 보도내용의 진위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심판한다 하여 그 절차가 부당하게 간이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 특별한 사정에 의한 취소, 제소명령기간도과에 의한 취소(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단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소환신청기간도과에 의한 취소가 본안 소송이 따로 없는 관계로 성질상 적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복절차의 제한은 법리상 당연한 것이다.

피해자는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하여 즉시 반박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게 자신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본안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그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면 대중이 그 사실을 망각한 다음에야 비로소 구제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 반론은 그것이 너무 늦게 집행된 나머지 현안성을 상실하여 독자나

시청자가 반론의 전제가 된 원래의 보도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반론권을 인정하는 근거 중의 하나인 공정한 여론형성에 참여할 자유나 객관적 질서로서의 언론제도를 보장하는 데도 반하는 것이 된다.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그 자체가 인격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여론의 형성을 위한 도구인 것일 뿐 진실을 발견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요건은 비교적 형식적인 사유에 기한 제한적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하도록 완화되어 있다. 또한 예외사유도 이 법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판단이 가능한 경우들이므로 반론권을 제도로서 인정하고 있는 한 그 심리를 위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민사소송법에 정한 본안절차에 따르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처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이 제도의 본질에 적합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오늘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론의 형성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거대한 언론의 전파력과 언론기관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리적인 언론기업의 막강한 위세와 편견에 의하여 부당히 침해되고 노출될 경우에는 개인의 권익을 신속·적절히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또한 마련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물론 부당한 보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정한 전통적인 일반원칙과 절차에 따라 명예훼손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로써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에 의하여 침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의 방법은 사후적인 것이고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의 곤란 등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으로써 명예회복의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에는 부족함이 적지 아니하다. 이에 반하여 반론권은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보도가 행해진 시간과 근접하여 그 사실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주는 점을 특색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론의 제도와 언론의 자유의 관계는 단순히 제도의 평면적 비교나 판단보다 기본권 사이의 조화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현행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론게재청구권으로 해석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와는 비록 서로 충돌되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전체적으로는 상충되는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인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은 결코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중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4.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하의 정정보도청구권이 반론권임이 명백하다는 전제하에서 합헌이라고 이론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이 우리 법의 구조상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지 않으며 쉽게 논증되기가 어렵다. 원래 우리나라의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은 독일의 바덴 뷔르템부르크주의 언론법상의 반론권이 그 모법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대비하여 살펴본다.

첫째로, 독일법은 우선 표제부터 반론청구권(Gegendarstellungsanspruch)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기왕의 보도내용에 관련있는 자 자신의 반론제재요구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나, 우리 법의 경우(법 제16조)는 어디에도 반론권 내지 반박권이라는 표현은 없고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도자에 대한 그 보도내용의 정정요구인 것으로 보이게 하였다.

둘째로, 독일법은 기사에 관련있는 자의 반론(Gegendarstellung)을 인쇄할 의무로 규정하여 기왕의 보도된 것은 별도로 두고 그에 대한 반박문을 내어 줄 것의 청구로 이해되게 되어 있으나, 우리 법에서는 정정보도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의무로 규정함으로써 기왕의 보도된 내용은 별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고쳐 바로잡아 보도할 것의 청구로 보이게 하였다. 즉 문언상 이른바 정정기사청구로 보이게 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법에 있어서는 문제된 기사와 동일한 간행물 부분에 동일한 문자로써 인쇄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가히 보도된 내용과 대조되는 관계 당사자의 반대 입장의 보도임을 뚜렷히 하였으나, 우리 법에서는 정기간행물의 어디에 어떠한 문자로 보도하는 것인지에 대해 규정하지 아니하고 기왕의 보도내용의 자수보다는 정정보도문의 자수가 초과할 수 없다고 할 뿐으로 기왕의 기사에 대한 관련자의 반박문 보도로 해석될 소지가 별로 없다. 우리 법상 정정보도의 내용이나 크기에 관하여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피해자측과 협의한다고 하고(법 제16조 제3항), 법원이 정정보도의 내용을 정한다고 하였기 때문에(심판규칙 제7조) 청구권자가 정정보도문을 주도적으로 정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셋째로, 독일법의 경우는 관련자(Betroffen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보도의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기사 관련자의 그와의 반대입장을 게재하는 절차로 이해하게 하였지만, 우리 법에서는 「피해자」를 정정보도청구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권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구제절차인 것으로 해석하기에 적합하며, 더구나 본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의 일환으로 각 규정함으로써 오보에 의한 명예권의 침해가 있었는가를 가리는 절차로 보여지기 쉽게 되어 있다.

넷째로, 우리 법에서는 중재 전치주의를 취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쳐야 한다(법 19조). 이 점이 중재절차의 전치 없이 바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독일법과는 다른데, 만일 정정보도청구절차가 단순한 기사의 관련 당사자의 반박문게재청구절차에 그친다면 이와 같은 중재절차의 중간개입은 공연히 절차만 지연시키는 것뿐 제도목적에 걸맞는 것이 될 수 없다. 법 제17조 제1항을 보면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고 하였으며, 중재절차에서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정기간행물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발행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법 제18조, 법 시행령 29조 단서), 이 또한 보도내용의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기사관련자의 반박문게재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근거라고 할 것이다.

이상 본 바를 종합하면 정정보도청구절차는 보도내용의 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보도기사 관련자 자신의 반론게재청구절차임을 분명히 한 독일법과는 거리가 있으며 문리상으로나 논리상으로 오히려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따져 이를 정정하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 보아 무방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정보도청구권이 입법 연혁상 독일법의 반론권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고 판례에서도 반론권인 것으로 판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 본지 대로 실무상 반론권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돌이켜 1987년 이 법이 제정된 후 4년이 지난 지금에도 언론중재위원회측은 신문·방송·잡지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는 언론중재위원회와 상의할 것을 당부하는 홍보를 내는 실정이다.

나. 이렇듯 용어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반론권이라고 단정되기 어려움에도 법 제19조 제3항은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의 가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하였다(법 제19조 제2항). 따라서 가처분절차에 의하는 이상 대석적 변론을 열어야 하는 필요적 변론절차가 아니며 대석변론 없이 당사자 쌍방을 심문하는 것으로 족하다(심판규칙 제6조 제2항). 변론을 열지 않고 결정으로 재판할 수 있으며 공개재판에 의할 필요

가 없다. 청구의 이유에 대해 증명까지 이르지 않고 소명만으로도 족하다. 또 상소제기의 경우에 민소법 제473조, 제474조에 의해 재판의 집행정지를 시킬 수 없다. 결국 정정보도 청구절차는 대석적 공개심리주의에 의하지 않으며 신속에만 치중하는 간이 약식재판 절차인 것이다. 생각컨대 기왕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관련 당사자의 반박문게재청구절차 정도의 가벼운 것이고 우리 법제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약식절차에 의하여도 어떠한 절차적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다.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현행법상의 정정보도청구제도 역시 민법 제764조와 마찬가지로 명예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원상회복청구 제도로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통상인의 이해력을 기준으로 할 때에 기사 관련자의 반박문게재청구인 것으로 이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법 제764조가 명예훼손 일반의 경우에 원상회복에 관한 것이라면, 정정보도청구는 정기간행물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특수 경우의 원상회복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적합하다. 이 점은 심판규칙 제7조 제2항에서 법원은 정정보도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뒷받침이 된다.

다. 그렇다면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도 민법 제764조에 의한 청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의 소송사건처럼 정식 재판절차에 의하는 것이 옳지 통상의 소송사건과 달리 약식절차에 의하게 함으로써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하여금 명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충분한 방어 기회 보장하지 않고 상소의 경우 집행정지규정의 배제 등 절차상 불이익을 받게 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기간행물의 발행 주체에 대한 법적 차별이며 법원 앞에서의 평등(헌법 제11조,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아가 현행법의 정정보도청구제도를 그대로 존치시키는 한 정식 재판절차에 보장되는 헌법 제109조의 대석적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판결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절차적 기본권의 침해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본다.

생각컨대 법 제19조 제3항이 위헌임을 면하려면 기사 관련 당사자의 반박문게재청구인 것으로 순화되고 뚜렷해지도록 현행법의 표현부터 재정비 되어야 할 것이고 언론기관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처분이 정정보도청구인 것으로의 오해소지가 불식되도록 법이 새로 고쳐지고 다듬어져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는 반박문게재의 재판절차가 비록 가처분절차에 의하여 심리된다 하여도 헌법상의 절차적 기본권의 침해의 위헌소지는 깨끗이 청산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며 이에 우리는 위헌요소 제거를 위한 새 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1. 9. 16.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재판관 이 성 렬

재판관 변 정 수

재판관 김 진 우

재판관 한 병 채

재판관 이 시 윤

재판관 최 광 루

재판관 김 양 균

재판관 김 문 희

재판관 이성렬은 정년퇴임으로 서명할 수 없음.

재판장 재판관 조 규 광

언론중재 신청과 처리 절차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업무

*訂正報道請求 및 追後報道請求에 의한 분쟁을 仲裁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 제도적 장치로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자와 해당 언론기관 간의 訂正報道請求 및 追後報道請求에 의한 분쟁을 仲裁하여 합의를 성립시켜 줌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회복시켜 주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침해의 내용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언론기관의 발행인에게 是正을 권고하여 건전한 언론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신청서의 제출요령

- 중재신청서는 異議대상인 報道의 본문과 게재를 요청하는 訂正報道文 및 중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피신청인의 수에 해당하는 副本의 제출을 바랍니다.
- 신청인의 대리인(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이 중재를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창구에는 중재신청서 용지를 비치하고 무료로 배부해 드립니다.

중재신청 및 처리결과

*중재신청기간

- 정정보도청구의 경우에는, 분쟁된 공표가 있는 후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추후보도청구의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재사건 처리기간

- 접수된 후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위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는 중재불성립으로 간주됩니다.

***중재기일에서의 중재대리인에 대한 중재부의 허가**

- 중재기일에 중재대리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중재대리허가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당해 중재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신청 내용대로 정정기사를 게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철회간주**

- 중재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신청**

-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訂正報道請求 및 追後報道請求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訂正報道請求 및 追後報道請求의 신청은 중재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提起하여야 합니다.
- 중재불성립의 증명을 要求하시는 분에게는 그 증명서를 교부해 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

***전국 14개 중재부, 중재부의 장은 현직법관**

言論仲裁委員會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70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에 사무처가 있습니다.

70명의 중재위원들은 각 시도별로 설치된 중재부에 소속되어 仲裁業務를 담당하고 있으며, 5인 이내로 구성된 중재부는 서울에 4개, 부산, 대구, 광주, 수원, 춘천, 청주, 대전, 전주, 창원, 제주에 각 1개씩 모두 14개의 중재부가 있습니다. 중재부의 長은 현직법관이 맡고 있습니다.

***중재부의 관할구역**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되는 언론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합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방송관련법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조항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第16條(訂正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公表된 事實의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公表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日刊新聞 또는 通信의 경우에는 14日 이내에, 그밖의 定期刊行物의 경우에는 1月 이내에 書面으로 發行人이나 編輯人에게 訂正報道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訂正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記事의 本文과 게재를 요청하는 訂正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發行人 또는 編輯人이 訂正報道掲載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과 訂正報道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日刊新聞과 週 1回 이상 발행하는 定期刊行物 및 通信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日 이내에 같은 定期刊行物에, 그밖의 定期刊行物은 編輯이 완료되지 아니한 다음 發行號에 이를 無料로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訂正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나 請求된 訂正報道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訂正報道는 事實의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 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⑤ 訂正報道의 내용은 讀者投稿의 形式으로 게재할 수 없으며 訂正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와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記事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7條(言論仲裁委員會) ① 訂正報道請求에 의한 分爭을 仲裁하고 定期刊行物의 게재 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言論仲裁委員會(이하 “仲裁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仲裁委員會는 40人 이상 70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委員은 學識과 經驗 및 德望이 있는 者 중에서 公報處 長官이 위촉하되, 委員의 5分の 2이상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者 중에서 法院行政處長이 추천한 者를 위촉한다.

③ 仲裁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을 두되, 각각 委員 중에서 互選한다.

④ 仲裁委員會의 委員長·副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각각 3年으로 한다.

⑤ 政黨의 黨籍을 가진 者와 公務員(法官의 資格을 가진 者 및 教育公務員은 제외한다)은

仲裁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⑥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法律과 良心에 따라 獨立하여 職務를 행하며, 職務上 어떠한 指示도 받지 아니한다.

⑦ 仲裁委員會의 委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當과 實費補償을 받을 수 있다.

第18條(仲裁節次 등) ① 訂正報道請求權이 있는 者 또는 그 상대방은 紛爭된 公表가 있는 날로부터 1月(第16條 第1項의 경우에는 訂正報道를 請求한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書面으로 仲裁委員會에 仲裁를 申請할 수 있다. 仲裁申請에 관하여는 第16條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仲裁는 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된 仲裁部에서 하되, 그 仲裁部의 長은 法官의 資格이 있는 委員이어야 한다.

③ 仲裁部의 長은 필요한 경우 당해 仲裁事件의 대상 定期刊行物의 發行人에게 仲裁對象 表現物이나 그 寫本의 제출을 命하거나 仲裁에 필요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④ 仲裁部의 長은 仲裁當事者나 利害關係者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는 者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출석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仲裁申請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을 撤回한 것으로 보며, 被申請人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仲裁申請 內容대로 訂正記事를 게재하기로 合議된 것으로 본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正當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疏明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仲裁結果 當事者間에 合議가 成立된 경우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合議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裁判上 和解와 동일한 效力이 있다.

⑦ 仲裁는 仲裁申請이 접수된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期間이 경과한 때에는 仲裁가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仲裁委員會는 定期刊行物에 의한 침해사항을 審議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發行人에게 是正을 勸告할 수 있다.

⑨ 仲裁의 節次와 仲裁部의 구성방법, 그 管轄, 事務處의 組織, 是正勸告의 방법과 節次, 仲裁委員會 委員의 手當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訂正報道請求事件의 審判) ① 仲裁委員會의 仲裁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法院에 訂正報道請求의 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法院에 訂正報道請求의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仲裁가 成立되지 아니한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請求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한 第1審 裁判은 被告의 普通裁判籍 所在地의 地方法院 合議部의 管轄로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에 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假處分節次에 관한 規定에 의하여 裁判하며, 請求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法院은 第16條 第3項 내지 第5項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訂正報道의 게재를 命할 수 있다. 다만, 民事訴訟法 第697條 및 第705條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 訂正報道請求事件의 裁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20條(追後報道請求權) ① 定期刊行物에 의하여 犯罪嫌疑가 있다거나 刑事上의 措置를 받았다고 報道된 者는 그에 대한 刑事節次가 有罪判決 이외의 형태로 終結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 이내에 書面으로 發行人이나 編輯人에게 이 사실에 관한 追後報道의 게재를 請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追後報道의 내용은 請求人의 名譽나 權利回復에 필요한 範圍에 局限한다.

③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訂正報道請求權에 관한 이 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1條(補助金) 國家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仲裁委員會에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언론중재위원의 위촉등)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보처 장관은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대우) 중재위원회는 그 위원에 대하여 중재위원회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의 지급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24조(중재신청)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중재신청서를 중재위원회 사무처 또는 당해 사건을 관할하는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중재관할권등) ① 중재관할권은 중재대상이 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지를 관할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다만, 동일한 관할구역안에 수개의 중재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재사건을 담당할 관할중재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외지사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중재관할권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중재부에 속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중재부가 법령상 또는 사실상 중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중재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중재절차) ① 중재부의 결정은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중재부의 장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대상 표현물이나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장의 출석요구를 받은 중재당사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피신청인이 1차 중재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중재부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게재를 요하는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게재방법 등을 정하여 출석요구서와 함께 2차 중재일을 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송부한다.

⑤ 피신청인이 법 제18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중재부에 중재일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당해 중재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신청인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시 중재일을 지정한다.

⑦ 중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재에 관한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중재화해조서 및 중재조서) ① 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중재화해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가 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중재부는 중재조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합의성립통지서 및 그 중재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9조(시정권고) ① 법 제1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다만, 중재신청사건에 대한 시정권고는 관할중재부가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

④ 시정권고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 명의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권고한다.

⑤ 중재신청사건에 대한 시정권고는 당해 중재부의 소속 중재위원 5분의 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중재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하며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서면으로 권고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시정권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받은 시정권고소위원회는 당해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권고를 철회한다.

⑧ 시정권고소위원회의 운영, 시정권고의 세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사무처) ① 중재위원회의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중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각 중재부에 사무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사무처 직원의 정원·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제31조(관계서류의 보존) ①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중재절차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계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예산등) ① 중재위원회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보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보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 추후보도청구사건의 중재신청·관할·중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방송법

第41條(訂正報道請求權) ① 放送에 公表된 事實의 主張에 의하여 被害를 받은 者(이하 “被害者”라 한다)는 그 公表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4日 이내에 書面으로 放送局의 長이나 編成責任者에게 訂正報道的 放送을 請求할 수 있다.

② 訂正報道請求書에는 被害者 또는 그 代理人의 署名·捺印과 住所를 기재하고, 異議對象인 報道內容과 放送을 요청하는 訂正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는 訂正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被害者 또는 代理人과 訂正報道的 內容 등에 관하여 協議한 후 이를 無料로 放送하여야 한다. 다만, 被害者가 訂正報道請求權의 행사에 正當한 이익을 갖지 아니하는 경우나 請求된 訂正報道的 內容이 명백히 事實에 반하는 경우 또는 商業的인 廣告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의 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訂正報道는 事實의 陳述과 이를 명백히 傳達하는데 필요한 說明에 局限되고 違法한 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訂正報道文의 字數는 異議의 대상이 된 公表內容의 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放送局의 長 또는 編成責任者가 행하는 訂正報道는 그 公表가 행하여진 동일한 放送周波數에 의하여 동일한 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의 公開會議과 法院의 公開裁判節次에 관한 事實放送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2條(다른 法律의 準用) 放送에 관한 訂正報道請求에 의한 紛爭의 仲裁과 그 節次에 관한 사항과 訂正報道請求事件의 審判에 관한 사항 및 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定期刊行物의 登錄등에 관한 法律 第17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39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합유선방송법

第45條(訂正報道請求權) ① 綜合有線放送에公表된 사실적主張에 의하여被害를 받은者(이하“被害者”라 한다)는 그公表가 이루어진 날부터 30日 이내에書面으로綜合有線放送局의長이나編成責任者에게訂正報道的放送을請求할 수 있다.

② 訂正報道請求書에는被害者 또는 그代理人의署名·捺印과住所를 기재하고,異議對象인報道內容과放送을 요청하는訂正報道文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綜合有線放送局의長 또는編成責任者는訂正報道請求를 받은 때에는지체없이被害者 또는代理人과訂正報道的內容등에 관하여協議한 후 이를無料로放送하여야 한다. 다만,被害者가訂正報道請求權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나請求된訂正報道的 청구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 또는商業的인廣告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이의放送을 거부할 수 있다.

④ 訂正報道는 사실적陳述과 이를 명백히傳達하는 데 필요한說明에局限되고,違法한內容을 포함할 수 없다.

⑤ 訂正報道文의字數는異議의 대상이 된公表內容의字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綜合有線放送局의長 또는編成責任者가 행하는訂正報道는 그公表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채널 및時間帶에 동일한效果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⑦ 第1項의訂正報道請求에 프로그램供給者가 함께 관련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供給者도第6項의規定에 의한 방법으로訂正報道義務를 이행하여야 한다.

⑧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公共團體의公開會議와法院의公開裁判節次에 관한事實放送의 경우에는第1項 내지第7項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綜合有線放送에 관한訂正報道請求에 의한紛爭의仲裁와 그節次에 관한 사항과訂正報道請求事件의審判에 관한 사항 및追後報道請求權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法律第17條 내지第20條의規定을準用한다.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법 제4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의 중재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항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및 지역중재부 주소

사 무 처 및 서울 중 재 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02)732-6031~4 725-0050 FAX.730-9420·5487
부 산 중 재 부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1가 2-3(대광오피스텔 408호)	(051)247-3486
대 구 중 재 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1-9(3·1빌딩 301호)	(053)755-0108
광 주 중 재 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20-31(금오빌딩 4층)	(062)222-7033
경 기 중 재 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46(송림빌딩 703호)	(0331)211-9027
강 원 중 재 부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대양빌딩 6층)	(0361) 55-2878
충 북 중 재 부	충북 청주시 석교동 37-5(성화빌딩 302호)	(0431) 52-1250
충 남 중 재 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 3동 151-13(선화현대빌딩 203호)	(042)257-0039
전 북 중 재 부	전북 전주시 중앙동4가 50-2(대한생명보험빌딩 4층)	(0652) 88-0010
경 남 중 재 부	경남 창원시 용호동 73-39(동산빌딩 301호)	(0551) 63-1787
제 주 중 재 부	제주도 제주시 이도2동 이도지구 39B 1L(현곡빌딩 4층)	(064) 22-3328

國內言論關係判例集 第2輯

(言論仲裁 통권55호 부록)

1995년 7월 20일 인쇄

1995년 7월 30일 발행

編著 言論仲裁委員會 調査研究室

發行 言 論 仲 裁 委 員 會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빌딩

전 화 : 732-6031~4, 725-0050,

730-9498, 7317-571, 588

FAX : 730-9420, 5487

(이 책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자금으로 출판되었습니다)

